

博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車 文 燮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
— 「大靜縣戶籍中草」를 中心으로 —

1 9 9 5

檀國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韓國史專攻

金 東 栓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

－ 「大靜縣 戶籍中草」를 中心으로 －

이 論文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5. 2

檀國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韓國史專攻

金 東 栓

金東栓의 博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_____印

審 查 委 員_____印

審 查 委 員_____印

審 查 委 員_____印

審 查 委 員_____印

1995. 2

檀國大學校 大學院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

- 大靜縣 「戶籍中草」를 中心으로 -

史學科 金東栓

指導教授 車文燮

本稿는 濟州島라는 특정 지역의 사례를 통하여 18·19세기 신분변동의 실상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도 大靜縣 戶籍中草를 기본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호적분석은 크게 두 측면에서 특징지을 수 있다. 하나는, 당시 제주도의 전체적인 신분구조의 변화를 살피기 위하여 호적에 기재된 職役을 兩班·中人·常民·奴婢로 구분하고, 각 신분층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신분변동의 구체적 양상을 鄉吏層과 畚漢 職役者의 신분 변동을 통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제주지역의 전체적인 신분구조는 1786년(I期), 19세기 전반(II期), 19세기 후반(III期), 1898년(IV期) 등 4時期로 구분하여 살핀 결과, 兩班戶는 I期에 17.6%, II期에 24.8%, III期에 31.5%, IV期 75.1%로 나타난다. 中人戶는 I期 21.8%, II期 38.1%, III期 43.8%, IV期 13.4%였으며, 常民戶는 I期에 15.4%였으나 II期인 1807년에 43.2%(II期の 상민호 평균 33.4%), III期 23.4%, IV期 11.0%이다. 마지막으로, 奴婢戶는 I期 45.2%, II期 3.5%, III期 1.3%, IV期 0.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신분의 시기별 특징으로 1786년(I期)의 경우, 주민의 약 50%에 가까운 수가 공노비로 구성되어 있었고, 상민의 절대적인 부족현상이 초래된 가운데 약 40%의 양반·중인이 존재하고 있어 신분폐쇄성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1801년의 공노비 혁파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즉, 1801년의 공노비 혁파는 제주지역 신분해체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1801년 이후 Ⅱ期와 Ⅲ期에 걸쳐 兩班과 中人이 끊임없이 증가하였다. 이는 하층신분이 상층신분으로의 성장을 의미한다. 상민은 Ⅰ期에 비하여 Ⅱ期인 1807년에 갑자기 증가하는데, 그 요인은 1801년에 공노비 혁파가 단행되면서 Ⅰ期에 광범하게 존재했던 공노비가 양인화한 결과였다. 그후 상민은 상층 신분으로의 진출에 따라점차 감소해 나갔다.奴婢는 1801년 공노비 혁파로 官奴婢 · 校奴婢를 제외한 모든 公奴婢가 양인화되었기 때문에 Ⅱ期·Ⅲ期에 4.4% ~ 1.2% 내외의 분포를 보인다. 1894년의 갑오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의 시기인 Ⅳ期의 특징은 양반이 급속하게 증가한 반면에, 중인과 상민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노비의 경우, 1894년에 노비제가 제도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존속하는 양상을 지닌다.

이러한 제주 지역의 신분변동은 다른 지역과 비교한 결과, 제주의 신분제는 18세기 말까지 신분폐쇄성이 강하게 남아 있었으나, 1801년을 계기로 심한 동요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욱 심하게 전개되고 있어, 당시 제주 향촌사회의 역동성을 확인해 준다.

18세기 말, 주민의 약 50% 가까이 존재했던 공노비는 다른 지역과 달리 姓·本貫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良役に 충당되고 있었다. 공노비의 혼인양상은 약 85%가 노비간에 서로 혼인이 행해지고 있었고, 다른 신분과의 交婚은 15%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공노비의 신분폐쇄성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말한다. 雇工·私奴婢를 보유하고 있는 신분의 대부분은 향리층과 양반이었으나, 그 규모는 상당히 미약하였다. 고공의 경우, 후대로 올수록 여성화하는 경

향을 나타내며, 고공의 연령은 장년층이 압도적이다. 또한 그들의 신분은 몰락한 농민 외에 다수의 중인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한편, 19세기 제주지역의 신분변동이 심한 동요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향리층들은 그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일시 千總·城將 등의 직역을 취득한 후, 양반으로의 성장을 모색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제주도 지방에서 ‘六苦役層’의 하나였던 畓漢의 경우, 18세기 후반에 이들의 신분은 대부분 공노비였다. 그러나 1801년 이후 신분제의 동요가 일어나면서 이들은 상층신분으로의 성장이 점차 가능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답한 직역자는 그 역이 자손에게 계속 세습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답한의 역이 지니는 苦役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제주지역의 신분제는 1801년 이전까지 신분 폐쇄성이 강하게 남아 있었지만, 1801년의 공노비 혁파를 계기로 신분제의 동요·혼효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하층민이 상층민으로의 진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19세기의 제주 향촌사회는 단기간에 걸쳐서는 다른 어느 지역 못지않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분제가 해체되고 있었다.

여백

目 次

國文要約	i
表目次	vii
圖目次	x
I. 序 論	1
II. 對象地域과 資料	10
1. 濟州島의 歷史的 背景	10
2. 濟州島의 戶籍制 運營과 戶籍中草	22
III. 大靜縣의 戶口와 그 變動	40
1. 戶口數의 時期別 推移	40
2. 性別·年齡別 構成과 그 變動	52
IV. 大靜縣 住民의 身分·職役別 構成과 그 推移	63
1. 職役의 身分別 分類	63
2. 住民의 時期別 身分構成 樣相	74
(1) 1786年(I期)의 身分·職役別 構成	75
(2) 19世紀 前半(II期)의 身分·職役別 構成	77
(3) 19世紀 後半(III期)의 身分·職役別 構成	84
(4) 1898年(IV期)의 身分·職役別 構成	89
3. 身分의 時期別 推移와 特徵	91

V. 雇工·奴婢의 存在樣態 -----	99
1. 雇工 및 雇主의 成分 -----	99
(1) 雇工의 成分 -----	99
(2) 雇主의 成分 -----	106
2. 私奴婢와 그 所有戶의 成分 -----	107
3. 公奴婢의 實態 -----	111
(1) 公奴婢의 數 -----	111
(2) 公奴婢의 役 -----	116
(3) 公奴婢의 結婚樣態 -----	120
VI. 鄉吏層의 地位와 身分職役 變動 -----	124
1. 時期別 鄉吏 輩出家門 -----	126
2. 家系別 職役變動의 推移 -----	133
(1) 李繼昌·益昌의 家系 -----	133
(2) 金仁祿의 家系 -----	136
(3) 金致奉의 家系 -----	137
(4) 趙完番의 家系 -----	139
(5) 河順得의 家系 -----	141
(6) 金應天의 家系 -----	142
3. 鄉吏의 婚姻實態 -----	143
4. 奴婢·雇工의 保有狀況 -----	148
VII. 畚漢의 地位와 身分職役 變動 -----	152
1. 六苦役層과 畚漢의 役 -----	152
2. 畚漢의 身分的 地位 -----	156

3. 畚漢의 身分變動	163
(1) 職役變動	163
(2) 家系分析	171
1) 金道信의 家系	171
2) 安東一의 家系	174
3) 姜宗成의 家系	176
VIII. 結 論	181
參考文獻	189
附錄 1. 1786年 東城里 戶籍中草 整理表	205
2. 1786年 中文里 戶籍中草 整理表	217
3. 1786年 自丹里 戶籍中草 整理表	231
4. 1795年 今勿路里 戶籍中草 整理表	238
英文抄錄	247

表 目 次

<表 2-1>	濟州牧·大靜縣·旌義縣 主要事項 比較	13
<表 2-2>	大靜縣 行政區劃의 編制와 戶口	17
<表 2-3>	東城里·中文里·今勿路里·自丹里 戶籍中草의 現存與否	34
<表 3-1>	18·19世紀 濟州島의 戶口狀況	43
<表 3-2>	里別 戶內 口數에 따른 戶의 分布(1807)	47
<表 3-3>	里別 戶內 口數에 따른 戶의 分布(1861)	49
<表 3-4>	年齡別 男女의 分布(1807년)	54
<表 3-5>	大靜縣의 年齡別 男女 人口數 構成圖	59
<表 3-6>	大靜縣의 5世別 男女 人口數 分布表	60
<表 3-7>	彦陽縣 年齡別 男女 人口數 構成圖	61
<表 3-8>	鎭海縣 年齡別 男女口數 構成圖	61
<表 4-1>	戶籍大帳의 職役에 의한 既存의 身分分類	65
<表 4-2>	1786年度(I期) 戶主의 職役別 分布	76
<表 4-3>	19世紀 前半(Ⅱ期) 戶主의 職役別 分布	79
<表 4-4>	19世紀 前半(Ⅱ期) 身分別 戶主의 分布	83
<表 4-5>	19世紀 後半(Ⅲ期) 戶主의 職役別 分布	85
<表 4-6>	19世紀 後半(Ⅲ期) 身分別 戶主의 分布	89
<表 4-7>	1898年(Ⅳ期) 住民의 身分·職役別 構成	90
<表 4-8>	時期에 따른 身分別 戶數의 百分比	92
<表 4-9>	大邱府·蔚山府·彦陽縣의 身分別 戶數의 百分比	94
<表 4-10>	大靜縣과 大邱府·蔚山府·彦陽縣의 比較	96
<表 5-1>	雇工 및 雇主戶의 數	102
<表 5-2>	雇工의 性別 構成	103

<表 5-3> 雇工의 年齡別 構成 -----	104
<表 5-4> 雇工의 身分別 構成 -----	104
<表 5-5> 雇主의 身分 -----	106
<表 5-6> 總戶數에 대한 私奴婢所有戶의 占有比 -----	110
<表 5-7> 1793年頃 濟州島의 公奴婢 數 -----	113
<表 5-8> 寺奴婢의 良役實態 -----	119
<表 5-9> 公奴婢의 年齡分布 -----	121
<表 5-10> 公奴의 結婚樣態 -----	121
<表 5-11> 公婢의 結婚樣態 -----	122
<表 6-1> 朝鮮後紀 濟州地域 鄉吏의 額數 -----	129
<表 6-2> 時期別 鄉吏를 輩出한 家門 -----	130
<表 6-3> 19世紀 大靜縣 鄉吏의 婚姻實態 -----	144
<表 6-4> 鄉吏層의 奴婢·雇工 保有現況 -----	149
<表 7-1> 濟州三邑 官屯畓의 所有規模 -----	154
<表 7-2> 官屯畓의 收稅 -----	155
<表 7-3> I 期(18世紀 後半) 畓漢 職役者와 妻 4祖의 職役 --	158
<表 7-4> I 期(18世紀 後半) 畓漢 職役者의 身分 -----	160
<表 7-5> II·III 期(19世紀) 畓漢 職役者 및 그 妻의 4祖 -----	161
<表 7-6> II·III 期(19世紀) 畓漢 職役者의 職役變動 現況 ----	165
<表 7-7> II·III 期(19世紀) 畓漢 職役者의 職役變動 類型 ----	169

圖目次

<圖 6-1> 李繼昌·益昌의 家系圖	-----	134
<圖 6-2> 金仁祿의 家系圖	-----	137
<圖 6-3> 金致奉의 家系圖	-----	138
<圖 6-4> 趙完番의 家系圖	-----	139
<圖 6-5> 河順得의 家系圖	-----	141
<圖 6-6> 金應天의 家系圖	-----	142
<圖 7-1> 金道信의 家系圖	-----	172
<圖 7-2> 安東日의 家系圖	-----	175
<圖 7-3> 姜宗成의 家系圖	-----	177

I. 序 論

18·19세기는 朝鮮前期의 제반 殘影을 간직한 속에 자체 내의 變革을 통하여 近代社會로 이행해 나가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社會相을 밝히는 데 주목해 온 연구 대상 중의 하나가 바로 身分變動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었다. 그것은 혈통과 세습에 기초하여 형성된 身分制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차등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社會體制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身分制의 動搖와 崩壞는 그 社會의 해체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朝鮮後期の 신분제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¹⁾ 그 결과 조선후기 신분제는 17세기 이후 農業生産力の 향상과 상업적 농업의 진전, 商工業의 발달과 이에 따른 商

-
- 1) 朝鮮後期 身分制에 대한 研究成果의 정리는 다음의 글들이 참조된다.

金泳謨, 「韓國 身分史의 研究와 그 課題」, 『韓國社會階層研究』 (一潮閣, 1982); 韓永愚, 「美國內 韓國身分資料 및 朝鮮時代 신분사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13, 1985; 金俊亨, 「朝鮮後期 身分制·鄉村秩序의 研究現況과 ‘國史’教科書의 內容分析」, 『歷史教育』 39, 1986; 金仁杰, 「朝鮮後期 身分史 研究現況」, 『韓國中世社會 解體期の諸問題(下)』 (한울, 1987); 韓相權, 「回顧와 展望(朝鮮後期)」, 『歷史學報』 116, 1987; 韓榮國, 「朝鮮後期の 身分制變動에 대한 研究現況과 課題」, 『第十九回 東洋學學術會議講演抄』, 1989; 金炫榮, 「조선후기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1979-1988」, 『國史館論叢』 10, 1989; 李泰鎭, 「朝鮮後期 兩班社會의 變化-신분제와 향촌사회 운영구조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1992); 金錫禧, 「朝鮮後期 地方社會史 研究動向과 課題-戶籍大帳 研究를 중심으로-」, 『韓國文化研究』 5, 1992.

品貨幣經濟의 발달로 인해 동요·해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被支配層들은 기존 身分制度下에서 강요되어 온 신분제의 속박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결국 신분을 上昇시키려는 욕구로 표면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軍功·納粟에 기인한 身分上昇이 제도적으로 용인되고 있어서 신분계층의 심한 混淆現象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8·19세기에 이르러 더욱 격심한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朝鮮後期 신분변동의 양상은 일반적으로 兩班戶의 격증, 常民戶의 부분적인 감소, 奴婢戶의 격심한 감소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主資料로 이용되어 온 것은 戶籍大帳이었다. 戶籍을 자료로 이용한 연구는 1930년대 四方博에 의해 선행된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계승·발전되어 왔다. 四方博은 1690년부터 1858년까지의 大邱府 戶籍을 분석한 결과, 후대로 내려올수록 兩班戶가 증가하는 반면에 奴婢戶가 격감하고 있으며, 常民戶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²⁾ 그러나 그는 이러한 身分의 變化를 조선사회의 해체과정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사회상의 문란으로 해석함으로써 철저하게 朝鮮後期史의 停滯性論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대구부 호적이 보여 주는 兩班戶의 증가와 奴婢戶의 격감 현상을 단순한 사회문란이 아니라, 신분제도의 붕괴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金容燮에 의해 비롯되었다.³⁾ 그후 이러한 해석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鄭奭鐘은 蔚山府의 戶籍을

2) 四方博, 「李朝人口に 關する 身分階級別的 觀察」, 『朝鮮經濟の研究 第三』(京城帝大法學會論集 10冊), 1938. 『朝鮮社會經濟史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1986에 재수록.

3) 金容燮, 「朝鮮後期에 있어서의 身分制의 動搖와 農地所有」, 『史學研究』 15, 1963; 『朝鮮後期 農業史研究』(一潮閣, 1976) 재수록.

분석하여 18세기 이후 兩班戶口의 급증, 常民戶의 격감, 外居奴婢의 소멸, 率居奴婢의 끈질긴 존속 등을 계량적으로 입증하였다.⁴⁾ 그리고 金錫禧와 朴容淑은 丹城縣과 彦陽縣 호적대장,⁵⁾ 朴性植은 단성현 호적대장,⁶⁾ 李光奎는 울산부 호적대장,⁷⁾ 金泳謨는 大邱·蔚山·尙州·丹城 등 4개 지역의 호적대장⁸⁾을 분석함으로써 신분제의 해체과정을 구체화하였다.

그런데 朝鮮後期 身分制의 變化를 인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실상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들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韓榮國은 大邱戶籍에 나타나는 「新戶」의 분석을 통하여 四方의 분석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적어도 19세기 중엽까지는 兩班-常民-奴婢의 구성비가 역피라미드를 형성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四方의 연구 결과는 都市部에 인접한 農村地域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얻어진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일반화되는 현상을 초래했음을 지적하였다.⁹⁾

崔承熙는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호적대장의 職役을 실제의 신분으로 파악하는 것은 큰 오류임을 제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18·19세기의

4) 鄭奭鐘, 「朝鮮後期 社會身分制의 崩壞-蔚山府戶籍大帳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第9輯, 대동문화연구원, 1972.

5) 金錫禧·朴容淑, 「18世紀 農村의 社會構造-慶尙道丹城縣의 경우」, 『釜大史學』 3집, 1979; 金錫禧, 「朝鮮後期 慶尙道 彦陽縣戶籍大帳에 關하여」, 『釜大史學』 7집, 1983; 朴容淑, 『朝鮮後期鄉村社會研究』, 慶北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6.

6) 朴性植, 「18世紀 丹城地方의 社會構造-丹城戶籍 所載 職役別 統計를 中心으로-」, 『大丘史學』 15·16, 1978.

7) 李光奎, 「朝鮮朝 後期の 社會構造와 變動-蔚山地域 戶籍을 中心으로-」, 『韓國文化』 5집, 韓國文化研究所, 1984.

8) 金泳謨, 『朝鮮支配層研究』, 一潮閣, 1977.

9) 韓榮國, 「十八·十九世紀 大邱地域의 社會變化에 關한 一試論 -大邱府 戶籍의 '新戶'를 中心으로-」, 『朝鮮學報』 80, 1976; —, 「府의 戶口와 그 構成分布」, 『大丘市史』 제1권, 1973.

幼學 중에는 兩班身分外에 中人·良人 身分이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양반호에 포함시켜서 얻어진 양반층의 급격한 증가라는 결론은 허구일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¹⁰⁾ Suzan Shin은 조선후기 신분제의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金化縣 戶籍의 분석 결과, 금화지역의 사회변동은 신분이 下向移動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는 金化라는 지역이 江原道 山間僻地로써 농업생산력 증대,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이라는 요인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해석함으로써 身分變動의 地域的 차이를 규명하였다.¹¹⁾

李俊九는 호적상의 職役의 신분적 지위가 通時的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및 사회상황과 유기적으로 관계하면서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丹城縣 戶籍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그는 納粟品職, 業儒·業武, 武學, 閑良, 幼學, 諸衛屬의 직역과 婦女子의 呼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시대에 따른 신분적 지위의 차이점을 규명하였으며, 부녀자의 호칭은 夫職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親父의 신분 내지 庶孽從母의 원칙에 준하고 있음을 밝혔다. 호적상의 신분변동은 兩班戶 및 中人戶의 격증과 奴婢戶의 격감으로 파악하였다. 양반신분 격증의 변수는 幼學의 직역이었으며, 중인의 경우에는 業

10) 崔承熙, 「朝鮮後期 鄉吏身分變動與否考-鄉吏家門 古文書에 의한 事例研究-」, —, 『金哲垞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3; —, 「朝鮮後期 鄉吏身分變動與否考(2)-草溪卞氏 鄉吏家門 古文書에 의한 事例研究-」, 『韓國文化』 4, 1983; —, 「朝鮮後期 身分變動의 事例研究 - 龍宮縣 大邱白氏家 古文書의 分析-」,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5; —, 「朝鮮後期 ‘幼學’·‘學生’의 身分史的 意味」, 『國史館論叢』 1, 1989. 任敏赫 역시 幼學戶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19세기의 身分構造는 유학호의 증가에 따른 兩班戶의 급증으로 형성된 역피라미드의 모습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任敏赫, 「朝鮮後期の 幼學」, 『清溪史學』 8집, 清溪史學會, 1991).

11) Suzan Shin, 「17세기 金化地域의 社會構造」, Occasional Papers on Korea I, 梨花女子大學校 史學科研究室編譯, 『朝鮮身分史 研究』(法文社, 1987).

儒·業武의 격증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해명하였다.¹²⁾

한편, 조선후기 신분제의 변화를 강하게 부정하는 견해들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호적대장의 분석을 통한 이러한 견해는 E.W. Wagner와 J.N. Sommerville[徐義必]이다. E.W. Wagner는 北部帳戶籍의 분석을 통하여 임란이후 兩班 중심의 身分制가 動搖되었다는 통설을 부인하고 17세기 전기간에 이르기까지 양반 중심의 엄격한 신분제가 진행되었음을 지적하였다.¹³⁾ J.N. Sommerville은 蔚山府 호적의 분석을 통하여 18세기말까지도 전통적인 兩班의 지배권은 사회변동에도 불구하고 건재하였음을 파악하였다.¹⁴⁾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대표하는 학자는 宋俊浩였다. 그는 全羅道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조사와 譜學的인 연구방법을 이용한 事例研究를 통하여 전통적인 양반의 지위와 지배력이 韓末까지 유지될 정도로 조선 사회의 강한 지속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¹⁵⁾

이상 戶籍大帳을 이용한 朝鮮後期 身分變動에 관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선후기 신분제의 변화를 강하게 부정하는 일부의 논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18·19세기에 걸쳐 兩班數의 증가, 奴婢數의 감소라는 신분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신분제의 붕괴 실상의 정도와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하는 점에 다소의 異見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연구의 내용이 대부분 일정한 地域을 대상으로 삼고 이루

12) 李俊九, 『朝鮮後期身分職役變動研究』, 一潮閣, 1993.

13) Wagner, Edward W., 「Social stratification in Seventeenth-Century Korea: Some Observations from a 1663 Seoul Census Register」, Occasional Papers on Korea NO.1, 1972.

14) 徐義必, 「18世紀 蔚山地方 鄉班社會研究 — 身分變化를 통해서 본 社會變動」, 『승전어문학』3, 1974.

15) 宋俊浩, 『朝鮮社會史研究』, 一潮閣, 1987; —, 「身分制를 통해서 본 朝鮮後期社會의 性格의 一面」, 『歷史學報』133집, 1992.

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즉, 현존하는 戶籍大帳의 거의 모두가 경상도의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부 지역에 한정된 호적대장의 분석을 당시 조선후기 전체 地方社會의 현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호적관련 자료의 발굴과 아울러 이를 이용한 분석 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더구나 身分制가 해당 지역의 역사적 조건위에서 형성되어 그 사회의 성격을 일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때, 이와 같은 노력은 더욱 요망된다. 그래야만 각 지역의 戶籍을 이용한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신분제도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鄉村社會相을 규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호적의 내용이 얼마나 당시 地域의 실정을 사실대로 담아내고 있는가 하는 점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호적이 役을 부과하기 위한 基本臺帳이었음을 감안한다면, 籍吏와의 결탁에 의한 僞祖나 冒稱·冒錄이 매우 심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때문에 호적대장의 자료적 가치가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僞祖·冒錄·冒稱 그 자체가 朝鮮後期 사회의 일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떻든 현재로서는 당시 각 지역 住民들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자료로 戶籍大帳 이상의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戶籍資料가 지니는 다소의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한계를 나름대로 인식한 바탕위에서 호적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의 모색과 보조자료의 발굴이 절실히 필요하다.

필자는 朝鮮後期 身分制의 變化 또는 崩壞라는 견지에서 濟州島 지역 신분변동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제주도 지방에 대한 신분제

의 연구는 이미 조성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연구된 바가 있다.¹⁶⁾ 그의 연구는 제주지역 신분구조의 rb명을 위한 최초의 글이라는 점에서, 이후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그간 방치되다시피 한 戶籍中草를 신분구조 해명의 일차적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에서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가 분석한 자료는 1867년과 1876년의 槀達里 戶籍中草(각 式年の 戶數는 34호, 36호) 2式年分과 1908년 新豐里 각 호의 戶口單子를 모아 작성한 戶籍單子(127호)였다. 제한적인 이 두 마을의 호적자료를 가지고 조선후기 제주도 지방의 신분구조를 일반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따라서 제주지역 신분구조의 규명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의 분석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각 직역의 시대별 변동에 대한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성과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濟州地方의 일부 마을에서 발견되는 戶籍中草를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당시 濟州地域 住民의 身分構造와 그 변동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본 논문의 主資料로 활용한 戶籍中草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호적중초가 지니는 자료적 가치를 확인하고, 아울러 이 과정속에서 濟州地方 호적제 운영의 실상을 살필 것이다. 다음으로 18·19세기 濟州島 住民의 身分構造를 4時期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특징과 시대에 따른 신분구조의 전체적인 변동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호적상의 職役과 身分의 관계를 兩班-中人-常民-奴婢로 분류하여 파악하고, 他郡縣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주지역 신분구조의 해체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6) 조성윤, 「조선후기 제주도 지방의 신분구조」, 『한국의 전통사회와 신분구조』, 문학과지성사, 1991.

이와 함께 최하위 신분층인 雇工과 奴婢의 존재양태를 다루고, 특히 노비 중에서는 1801년 寺奴婢 혁파 이전 제주도에 광범하게 존재했던 공노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職役의 變動推移를 살필 수 없는 현실속에서 末端行政使役人인 鄉吏層의 職役變動과 제주도 지방에서 所謂 ‘六苦役’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온 畚漢의 職役變動을 살펴 qhdkT다.

이상의 연구를 위해 大靜縣 4개 마을(東城里·自丹里·中文里·今勿路里)의 호적중초 즉, 東城里 戶籍中草 36책, 中文里 戶籍中草 41책, 今勿路里 戶籍中草 47책, 自丹里 戶籍中草 45책 등 모두 169책을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있다.¹⁷⁾ 이들 호적중초¹⁸⁾는 1783년에서 1908년에 이르는 總 125年間の 시기의 것에 해당한다. 169책 모두를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자료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公奴婢가 혁파되는 1801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18세기 호적은 1786년 호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세기 호적은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편의상 18年間の 간격을 두고 전반은 1807년, 1825년, 1843년의 호적을, 후반은 1861년, 1879년의 호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1894년 甲午改革 이후의 실상은 1898년의 호적을 이용하였다.

각 시기의 身分構造와 시대에 따른 身分의 變化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戶主의 職役을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각 戶主의 家系圖를 작성하여 그 직역의 의미를 일일이 추출해 내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속에서 어쩔수 없는

17) 資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II-2를 참고 할 것.

18) 戶籍中草에는 一名 戶籍重草·戶籍仲草·戶口中草·戶口重草·戶口仲草 또는 中草라고만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일이 구분하지 않고 戶籍中草 혹은 戶籍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호적중초의 해당 式年이 대부분 中國의 年號로 표시되어 있으나, 以下 이를 西紀로 환산하여 해당 式年을 나타낸다.

연구방법이었다. 이러한 한계성을 다소나마 보완하는 의미에서 鄉吏層과 畚漢의 家系에 따른 職役의 변동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大靜縣의 일부 마을에 국한한 호적 자료만을 가지고 얻어진 결론을 濟州島 전체의 身分構造로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평면적 분석에 치중되어 있다. 이는 본고가지니는 한계성이기도 하다. 또한 戶籍上의 職役을 어떤 身分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호적의 분석을 통하여 身分構造를 해명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대부분이 지니는 고민이지만, 필자의 분류는 자료의 한계로 말미암아 제주의 지역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성들은 일시에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호적 자료를 통해 제주지역 신분구조를 해명하고자 하는 한, 끊임없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문제라 생각한다. 따라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한 계속적인 보완이 차후 절실히 요구된다.

II. 對象地域과 資料

1. 濟州島의 歷史的 背景

濟州島 地方에 처음 耽羅郡이 설치된 것은 高麗 肅宗 10년(1105)의 일이다.¹⁾ 그 이전 고려는 句堂司 파견, 武散階 수여 등의 방법을 통하여 耽羅國의 지배세력을 懷柔·包攝함으로써 간접적인 통치를 행하였다.²⁾ 耽羅郡이 설치된 이후 毅宗代에 일시 耽羅縣으로 강등되기도 하지만, 제주도 지방에 대한 고려의 지배권은 점차 강화되어 나갔다.

이 당시 耽羅縣(耽羅郡)에 대한 지배는 界首官(主牧) 지역인 羅州牧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³⁾ 그러나 1273년부터 제주도가 元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고려의 지배권은 일시 약화되었고, 그것은 몇 번에 걸친 귀속문제로 나타났으나, 元이 멸망할 무렵인 1367년(공민왕 16)에 제주도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제주도에 대해 원의 간섭이 진행되는 동안 제주도 지방은 東·西道縣體制로 채택되어 갔다. 즉, 제주도의 동·서도현체제는 원의 14개 목장 중

1) 『高麗史』地理志, 耽羅縣條.

肅宗十年 改毛羅爲耽羅郡 毅宗時降爲縣令官.

2) 高麗時代 濟州島의 地方行政에 대해서는 다음의 論文이 참고가 될 것이다. 高昌錫, 「耽羅의 郡縣設置에 대한 考察」, 『論文集』14, 제주도, 1982; 文暲鉉, 「耽羅國 星主·王子考」, 『龍巖車文燮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同刊行委員會, 1989.

3) 앞의 책, 羅州牧條.

의 하나였던 제주도 목장⁴⁾을 관리하기 위하여 1300년(忠烈王 26)에 설치한 東西阿幕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濟州島는 元의 간섭을 받는 기간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그것은 元에 의한 牧馬場의 설치로 더욱 증대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인식은 제주도가 원의 관할에서 벗어나 완전히 고려에 환속된 이후 또는 조선이 성립된 이후에도 그러하였다. 특히, 조선이 성립된 이후 조정에서는 明과의 馬貿易을 위해 제주도 목장의 말은 더욱 필요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곧 제주도 지방에 대한 정책의 강화로 나타났다. 1397년(太祖 6)에 元의 직제였던 萬戶를 없애고 牧使를 설치한 일이라든가, 1400년(定宗 2)에 判官으로 하여금 敎授를 겸하게 한 일⁶⁾등은 모두 중앙정부가 제주도지방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는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그러나 보다 획기적인 조치는 1416년(태종 16)에 이루어졌다.

濟州都安撫使 吳滉과 前判官 張合 등이 이 지방의 事宜를 올렸다. 아뢰기를 ‘제주에 郡을 설치하던 초기에는 한라산의 四面에 모두 17縣이 있었습니다. 北面의 大村縣에 성을 쌓아서 本邑으로 삼고, 동서도에 靜海鎭을 두어 軍馬를 모아 沿

4) 元이 제주도에 목장을 설치한 것은 1276년(충렬왕 2) 8월 蒙古馬 160필을 水山坪에 방목하면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高麗史』地理志 耽羅縣條의 충렬왕 3년에 원이 제주도 목장을 개설했다는 내용은 충렬왕 2년의 착오이다(高昌錫, 「元의 濟州島 牧場」, 『濟州史學』創刊號, 1985, p.7).

5) 제주도에 설치한 아막은 주로 목장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설치한 일종의 牧舍이며, 여기에는 愛馬·孳長官·提領 등의 직명을 가진 牧胡 즉 哈赤이 주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동서아막의 위치는 동아막이 현재 城山邑 水山里, 서아막은 翰京面 高山里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고창석, 앞의 논문, pp. 9-10).

6) 李元鎮, 「耽羅志」, 建置沿革條(『邑誌 6:濟州道』, 亞細亞文化社, 1983).

邊을 방어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서도의 都司守는 각각 부근의 군마를 고찰하고 겸하여 목장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땅이 크고 백성은 조밀하여 소송이 번다합니다. 東西道の 山(漢拏山)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牧使가 있는 本邑을 왕래하는데 단지 걷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사 때는 갔다왔다 하기에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또 靜海鎭의 군마와 목장을 겸임한 많은 職員이 무지배들을 거느리고 軍馬를 고찰한다 핑계하고 백성을 침해하여 폐단을 일으킵니다. 혹은 아무 때나 사냥하면서 약한 백성들을 어수선하게 만들지만 牧使와 判官이 또한 그 연고를 알지 못하니 어찌 고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해를 거듭하여 커다란 폐단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東西道에 각각 縣監을 두되 文武의 재주를 겸하고 공렴정직한 자를 보내어 목장을 겸임하게 하십시오. 이로 하여금 東西 靜海鎭의 군마를 고찰하고 고수하게 하며, 또 말은 목장에서 馬匹繁殖의 많고 적음과 牧子들이 牧養을 잘 하였는지 못하였는지를 살피게 하십시오. <중략> 바라건대 지금부터 本邑에는 東道の 新村縣·咸德縣·金寧縣, 西道の 貴日縣·高內縣·涯月縣·郭支縣·貴德縣·明月縣을 소속시키고, 東道の 현감은 旌義縣으로 本邑을 삼고 兎山縣·狐兒縣·洪爐縣 3縣을 소속시키며, 西道の 현감은 大靜縣을 本邑으로 삼아 貌來縣·遮歸縣 2縣을 소속시키십시오.…임금이 그대로 따랐다.⁷⁾

이와 같이 제주도의 행정구획은 都安撫使兼牧使 吳湜의 건의에 의하여 종래 17縣을 모두 폐합하고, 濟州牧 외에 大靜縣·旌義縣을 신

7) 『太宗實錄』太宗 16년 5월, 丁酉條.

설하였다. 이로써 제주도는 제주목·대정현·정의현으로 나뉘어져 1牧·2縣의 三邑體制로 정비되었다. 당시 각 邑治別 分속된 屬縣은 다음과 같다.

濟州牧 : 新村縣·咸德縣·金寧縣·貴日縣·高內縣·涯月縣·郭支縣·歸德縣·明月縣

大靜縣 : 狔來縣·遮歸縣

旌義縣 : 兎山縣·狐兒縣·洪爐縣

<表 2-1> 濟州牧·大靜縣·旌義縣 主要事項 比較⁸⁾

邑 項	濟州牧	大靜縣	旌義縣
守令	牧使(正3品)	縣監(從6品)	縣監(從6品)
官員	判官(從5品), 敎授(從6品) 檢律(從9品), 審藥(從9品)	訓導(從9品)	訓導(從9品)
戶口	5,207戶, 8,324口	1,357戶, 8,500口	685戶, 2,073口
軍丁	2,066名: 馬軍(843名) 步軍(1,223名)	馬軍(202名) 步軍(468名)	馬軍(376名) 步軍(254名)
墾田	3,977結(畝31結)	2,227結(畝85結)	3,208結
土姓	高 · 梁 · 夫	左 同	左 同
馬匹	3,352匹	2,009匹	3,352匹

8) 이 표는 『世宗實錄』地理志, 全羅道 濟州牧條를 토대로 당시 三邑의 주요 사항을 비교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郡縣改編에 따라 守令으로 제주목에는 牧使, 대정현과 정의현에는 각각 縣監이 파견되었다. 朝鮮初期 三邑의 상황을 몇가지 사항에서 비교해 보면 <表 2-1>과 같다.

위 표를 토대로 戶口와 墾田結數면에서 三邑을 비교해 보자. 당시의 호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異見⁹⁾이 있기는 하지만, 대정현의 호구는 軍丁이나 墾田으로 미루어 볼 때 제주목·정의현에 비하여 戶口數가 과대하게 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世宗實錄』 地理志 내용 중에 대정현의 口數는 기재상의 착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墾田結數는 제주목이 3,977결, 대정현이 2,227결, 정의현이 3,208결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에 畓은 정의현에는 전혀 없고, 제주목에 31결, 대정현에 85결이나 분포하고 있어 주로 대정현 지역에 畓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령 외의 관원으로 제주목에는 목사의 보좌관격인 判官과 향교의 업무를 총괄하는 教授, 법률을 관장하는 檢律 및 약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審藥 등이 있었으나, 대정·정의현에는 향교의 업무를 총괄하는 훈도만이 나타나고 있다.

三邑守令간의 관계는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즉, 조선시대의 郡縣은 일반적으로 郡縣相互間에 수령의 品秩에 있어서만 高下가 있었을 뿐, 郡縣간에는 上下관계 없이 직접 道에 연결되는 並列的인 관계를 형성하였다.¹⁰⁾ 다시 말해 각 군현에 파견된 수령은 道에 파견된 觀察使와만 직접 명령관계가 형성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수령은 地方行政體系上 관찰사의 감독·규찰을 받으면서 所屬邑에 대한 행정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수령간에는 上下 명령관계가 형성되고 있지 않았다.

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3장 1절을 참조.

10) 朝鮮時代의 郡縣制에 관해서는 다음 論著가 참고된다.

李存熙, 『朝鮮時代地方行政制度研究』, 一志社, 1990.

그러나 제주도지방인 경우는 이와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신설한 縣監(대정현감·정의현감:필자주)의 政績, 殿最는 都安撫使가 다른 領內의 관례에 따라 그때 그때 고찰하여 觀察使에게 보고하면 관찰사는 牧使·判官의 정적을 아울러 고찰하여 褒貶을 시행하십시오.…임금이 그대로 따랐다.¹¹⁾

제주 都安撫使에게 명하여 정의·대정의 兩 縣令(縣監의 오기:필자주)을 褒貶하라 하였다.¹²⁾

濟州三邑은 제주목사가 等級을 매겨서 관찰사에게 보고한다.¹³⁾

위 자료는 都安撫使의 직책을 띠고 파견된 濟州牧使의 경우 전라도 관찰사의 褒貶을 받고, 大靜·旌義縣監의 경우 全羅道觀察使가 아닌 제주목사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타 지방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주도가 지리적으로 전라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로 전라도 관찰사가 매년 제주도에 와서 3읍 수령을 褒貶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관찰사의 권한 중 일부를 濟州牧使에게 이양함으로써 大靜·旌義縣監의 경우는 제주목사를 통하여 적절히 통제해 나갔던 것이다. 때문에 제주도 지방은 특수하게 수령간에 명령체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다시말해 제주목사는 所管인 제주목을 총괄하면서 대정·정의

11) 『太宗實錄』 卷31, 太宗 16年 5月, 丁酉條.

12) 『太宗實錄』 卷3, 太宗 17年 3月, 丁未條.

13) 『經國大典』 卷1, 吏典, 褒貶條.

현감을 감독·규찰하는 임무를 띠었다.

요컨대, 제주목사가 대정·정의현 지역의 순찰시 濟州牧에 관계된 사항은 제주목사의 行政補佐官인 判官이 대행하였으며 혹은 목사가公私로 시간이 없을 때 판관이 대신하여 대정·정의현의 업무를 감독하기도 하였다. 제주목사는 소관 제주목 외에 대정현·정의현을 감독·규찰하였기 때문에 濟州島의 책임자나 다름이 없었다. 따라서 제주목사의 경우 正3品에서도 堂上官인 通政大夫 이상을 파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그러므로 제주목사는 대부분 行牧使로 파견되었다.¹⁴⁾ 또 防護使·安撫使·防禦使·節制使와 같은 직책을 겸임하고 있었던 것¹⁵⁾ 역시 지역방어 임무 외에도 제주도의 실질적인 책임자라는 사실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三邑 중에서 본고의 연구대상 지역인 대정현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역사적 배경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정현은 1416년(태종 16)에 기존의 제주목에서 나뉘어 설치되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建置沿革條에 의하면, 대정현은 “본래 제주의 西道였는데, 本朝(조선) 태종 16년(1416)에 비로소 현감을 두었다”¹⁶⁾고 한다. 대정현은 고려후기 제주의 동·서도체제내에서 西道에 해당하였으며, 태종 16년에 제주도가 삼읍체제로 나뉘어지면서 현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그후 약 500 여년간 지속되었다.

大靜縣의 境界는 다소 변경은 있었으나, 대체로 大靜縣城으로부터 동쪽 旌義縣과의 경계가 57里, 서쪽 濟州牧과의 경계가 35-37里, 남

14) 이는 行守法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階가 높고 職이 낮으면 行이라 칭하고, 階가 낮고 職이 높으면 守라 칭하였다(『經國大典』 吏典, 京官職條).

15) 濟州牧使의 겸직 실태는 『肅宗實錄』, 肅宗 39년 6월, 丁丑條 參照.

1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大靜縣 建置沿革條 參照.

<表 2-2> 大靜縣 行政區劃의 編制와 戶口¹⁷⁾

面名	里 名	戶	口	男(名)	女(名)
右 面	東城里	123	595	253	342
	今勿路里	75	436	196	240
	自丹里	59	228	106	122
	犯川里	45	223	94	129
	洞水里	44	205	83	122
	甘山里	61	338	136	202
	通泉里	43	229	93	136
	西城里	95	394	169	225
	下慕瑟里	118	668	302	366
	日果里	129	677	291	386
	頓浦里	36	206	103	103
	上慕瑟里	145	761	349	412
計	12里	973	4,960	2,175	2,785
左 面	倉川里	85	461	204	257
	上貌來里	60	300	130	170
	下貌來里	82	443	189	254
	城山里	47	212	90	122
	穡達里	37	159	85	74
	中文里	154	734	303	431
	大浦里	75	298	105	193
	下院里	44	212	81	131
	石宋里	51	224	90	134
	江汀里	96	459	199	257
計	10里	731	3,499	1,476	2,023
總計	22里	1,704	8,459	3,651	4,808

17) 『濟州邑誌』(正祖年間) 坊里條 參照.

쪽 바다까지가 10里, 북쪽으로는 濟州牧과의 경계가 32里에 이르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¹⁸⁾

1780年代에 편찬된 『濟州邑誌』에 의하면 대정현은 右面과 左面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우면은 東城里 · 自丹里 · 今勿路里를 포함하여 12里, 좌면은 中文里를 포함하여 10里로 구성되었다. 당시 각 里의 규모는 <表 2-2>와 같다. <表 2-2>에 의하면, 里의 규모는 가장 적은 경우가 37호이며, 가장 많은 경우는 154호이다. 50호 미만으로 형성된 里가 犯川里·洞水里·通泉里·頓浦里·城山里·橋達里·下院里 등 7개이며, 100호 이상으로 구성된 里는 東城里·下摹瑟里·日果里·上摹瑟里·中文里 등 5개 里이다. 그 외는 모두 50-100호 미만에 해당한다. 이들 마을 중에서 본 논문의 분석대상이 되는 동성리·금물로리·자단리·중문리 등 4개 마을에 대하여 구체적인 戶口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하자.

1780년경을 기준해서 볼 때, 먼저 우면 東城里의 戶數는 123戶이고 口數는 595口이며, 今勿路里는 75戶에 436口, 自丹里는 59戶에 228口이다. 좌면 中文里의 戶數는 154戶, 口數는 734口이다. 4개 마을의 전체 戶數는 411戶로 대정현 호수의 24.1%를 차지하며, 口數는 1,993口로 대정현 전체 주민의 23.6%를 점하고 있다. 大靜縣 전체의 戶當平均 人口數는 4.96명인데, 4개 마을의 호당 평균 인구수는 다소 낮기는 하지만 4.85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男女의 비율 역시 전체적인 비율이 여자 100에 대한 남자가 75.9%이나 4개 마을은 75.6%로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4개 마을 중에 中文里는 1783년 이후 마을 명칭이 변동없이 유지되었지만, 다른 3개 마을은 중간에 改名되었다. 즉, 大靜縣 城內에 위

18) 『濟州大靜旌義邑誌』附屬 大靜縣誌, 道路條; 『耽羅誌草本』大靜縣 道路條.

치했던 東城里는 1879년에 仁城里와 安城里로 分里되어¹⁹⁾ 현재에 이르며, 自丹里는 1831년 기존 자단리에서 分里하여 新堂里로 개명되었고, 그 후 1840년에 다시 신당리는 德修里로 개명되어²⁰⁾ 현재에 이른다. 今勿路里는 1840년에 沙溪里로 개명되어²¹⁾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조선시대 대정현에 流配되었던 인물들은 직·간접적으로 이 지역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496-1840년 사이 대정현에 유배된 대표적인 유배인은 다음과 같다.

金舜孫(1496년 : 燕山君 2)	李世蕃(1521년 10월 : 中宗 16)
鄭 蘊(1614년 : 光海君 6)	申命圭(1673년 : 顯宗 14)
吳始復(1702년 5월 : 肅宗 28)	尹 志(1725년 6월 : 英祖元年)
任徵夏(1727년 8월 : 英祖 3)	趙觀彬(1731년 12월 : 英祖 7)
權 瑩(1733년 : 英祖 9)	李宜哲(1752년 7월 : 英祖 28)
趙榮順(1754년 : 英祖 30)	宋文載(1763년 7월 : 英祖 39)
任觀周(1767년 6월 : 英祖 43)	權震應(1771년 : 英祖 47)
盧聖中(1779년 6월 : 正祖 3)	俞彦鎬(1788년 12월 : 正祖 12)
金正喜(1840년 9월 : 憲宗 6)	

金舜孫은 內官으로 있으면서 연산군의 부도덕한 행위를 간했다가 유배되었는데, 그는 영구히 제주 民戶에 편입되어 定役을 담당하다가 끝내 大靜縣에서 사망하였다. 1504년(연산군 10)에는 조정에서 그의 모든 가족까지 제주로 옮기기까지 하였다. 李世蕃은 己卯土禍에 연루

19) 「1879年 東城里 戶籍中草」表題 및 內題 參照.

20) 「1831年 自丹里 戶籍中草」; 「1840年 自丹里 戶籍中草」表題 및 內題 參照.

21) 「1840年 今勿路里 戶籍中草」表題 및 內題 參照.

되어 1521년(중종 16) 1월에 대정현에 유배되었다. 그는 대정현 屯浦(지금의 新桃里)에 謫居하면서 地方子弟들을 訓學하다가 1526년(중종 21)에 病死하였다.

鄭蘊은 영창대군이 사형에 처해지자 이를 탄핵하는 상소가 원인이 되어 1614년(광해군 6) 8월에 대정현으로 유배되었고, 8년간 대정현에서 儒生들을 훈학하다가 仁祖反正을 계기로 유배가 풀려 소환되었다. 그후 이원조 목사는 鄭蘊의 적거지에 1842년(현종 8) '洞溪鄭先生謫廬碑'를 세우고 松竹祠를 건립하기도 하였다.

申命圭는 효종이 승하한 후 陵役을 담당하였는데, 남인들로부터 효종의 陵石에 하자가 있다고 탄핵받고 1673년(현종 14) 7월에 유배되어 7년간 유생들을 훈학하였다. 1706년(숙종 32) 문과에 급제한 吳庭賓은 그의 문하생이다.

吳始復은 장희빈의 巫蠱獄에 연루되어 1702년(숙종 28) 5월에 대정현에 유배되었고, 尹志는 1725년(英祖 元年) 金一鏡의 옥사에 연관되어 그해 6월에 유배되었다. 任徵夏는 1725년(英祖 元年) 소론파를 탄핵하는 時務六策을 상소한 것이 연유가 되어 順安으로 유배되었다가 1727년(英祖 3) 7월에 대정현으로 유배되어 지방 유생들을 훈학하였다.

權瑩과 李宜哲은 英祖를 비난하는 상소를 계기로 각각 1733년(英祖 9)과 1752년(英祖 28)에 유배되었다. 宋文載와 權震應도 각기 1763년(英祖 39)과 1771년(英祖 47)에 대정현에 유배되었으며, 任觀周는 1767년(英祖 43), 恩彦君은 1771년(英祖 47)에 대정현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이밖에 趙觀彬·趙榮順·盧聖中·俞彦鎬, 1801년 황사영의 帛書事件에 연루되어 유배온 황사영의 아내 鄭蘭珠(마리아), 金正禧 등이 대정현에 유배되었다. 특히, 김정희는 대정현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 불휴의

명필 秋史體를 완성하였으며, 歲寒圖도 이곳에서 그려 제자 李尙迪에게 보냈다. 이들은 유배기간 동안에 대정현 지역의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세번 등과 같이 유배를 계기로 제주에 후손을 남김으로써 제주 入島의 始祖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 이세번을 제외한 대정현에 유배되어 왔던 유배인들의 후손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으나, 김순손의 경우 영원히 제주 민호에 편입되었고, 그의 모든 가족들까지 제주로 보내진 사실을 감안할 때, 유배인들의 후손은 적지않게 제주에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호적에 등재된 인물 중에 이들 유배인들의 후손의 職役은 어떻게 기재되어 나타나는지를 추후 각 姓氏의 족보를 통하여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大靜縣은 제주목·정의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兩班勢力이나 鄉校의 영향력이 약한 편이었다. 그 결과 대정현은 島內 죄인들의 유배지로 주로 이용되어, 重罪를 지었을 경우는 대정현 소속의 加波島, 馬羅島로 유배지가 선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정현 출신의 科宦者 역시 兩邑(제주목·정의현)과 비교해 미미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國朝文科榜目』에서 확인되는 대정현 출신으로서 登科한 자는 李九成·金墉·邊景鵬 등 3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적인 제주도 거주자로서 등과한 자 60 여명의 5%에 지나지 않는다.

『國朝文科榜目』에서 확인되는 대정현 거주의 登科者 중에서 李九成은 1702년(숙종 28)에 태어나 1739년(英祖 15)에 庭試에 응시하여 丙科로 등과하였다.²²⁾ 자는 子韶, 본관은 古阜이며, 1521년 대정현에 유배되었던 이세번의 8세손이다. 金墉은 1783년(정조 7) 增廣文科別試 殿試榜으로 등과하였다. 邊景鵬은 1795년(정조 19) 式年文科 殿試榜으로 합격하였는데, 본관은 原州이며, 字는 萬里, 父의 이름은 聖

22) 『國朝文科榜目』(太學社, 1988), P.1104.

休이다.²³⁾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보더라도 삼읍 중에서 大靜縣이 가장 邑勢가 약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2. 濟州島의 戶籍制 運營과 戶籍中草

濟州島에서의 戶籍 作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 속에서 야기된 폐단은 무엇이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矯救策으로 어떠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는지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戶籍關聯 節目²⁴⁾을 주로 이용

23) 위의 책, P.1371.

24) 이들 절목은 1822년에서 1900년에 이르는 것으로 주로 19세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절목을 통하여 18·19세기 제주지역 호적제 운영을 이해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資 料 名	作成年代	里 名	長 數
戶籍所定式條例成冊	1822年 2月	道頭, 長田, 今岳	1冊 7張
三邑戶籍人口穀及 統籍米救幣節目	1839年 11月	道頭, 水山, 今勿	1冊 12張
籍草紙本錢設置節目	1872年 11月	道頭	1冊 5張
考籍人情木防給節目	1880年 3月	道頭	1冊 5張
統籍債及食物債防弊節目	1884年 8月	道頭	1冊 5張
戶口穀代錢救弊節目	1893年 12月	河源, 道文, 沙溪	1冊 4張
戶籍紙本錢設置節目	1900年 8月	長田, 沙溪, 道文	1冊 5張

하였다.

戶籍 작성은 국가체제를 유지하는데 긴요한 役과 賦稅²⁵⁾의 수취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朝鮮朝의 戶籍制度²⁶⁾는 高麗의 호적제를 계승하여 그 초기에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쳐 世宗代에 이르러 대체로 체계적인 윤곽이 잡히고, 그 후 『經國大典』에서 완전히 체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자료는 濟州牧의 今岳理·道頭里·水山里·長田里, 大靜縣의 河源里·道文里(回水)·沙溪里(今勿·西沙溪)에 국한되어 있다. 이 마을들은 모두 제주도의 西部地域에 해당하는 마을로 東部地域 특히 旌義縣 소속의 마을에 해당하는 절목이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필자가 검토하는 호적관련 절목이 일정한 한계성을 갖을 수 있으나, 제주지방 호적제 운영의 폐단과 대책을 살피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설사 정의현 지역의 마을에서 호적관련 절목이 수집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의현 지역의 특수적인 것일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즉, 절목의 내용은 대부분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정현 지역에 해당하는 절목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은 전반적인 제주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25) 여기서 徭役과 賦稅는 家戶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여러 형태의 부담을 지칭한다. 즉, 다음의 4가지 형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원래 田結 단위로 노동력의 직접 수취를 책정하고 있던 邑役 및 이의 연장으로서의 雜役과 그 轉化 形態, 둘째 大同法 시행이후로도 각 郡縣의 의무로 남아 있던 특수 貢物, 셋째 郡縣의 民戶가 부담하는 進上物의 상납, 마지막으로 각 郡縣에서 잡다한 용도에 충당하던 여타의 雜多한 徵收 등을 의미한다. 이들 여러 가지는 서로가 뒤섞이어 사실상 구분조차 애매한 채 혹은 地域에 따라 혹은 境遇에 따라 輕重이 다르게 징수되기도 하였다 (丁若鏞著, 茶山研究會譯註, 『譯註 牧民心書 3』, 戶典 六條, 戶籍條, P.76 참조).

26) 조선시대 호적제도의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할 수 있다.

崔弘基, 『韓國戶籍制度史研究』, 서울대 출판부, 1975.

渡邊業志, 「朝鮮に於ける戶籍制度の變遷(一)-(六)」, 『戶籍』四卷 六號 -十二號, 1944.

有井智德, 「朝鮮初期の戶籍法について」, 『朝鮮學報』39·40, 1966.

제화되었다. 그리고 『經國大典』에 규정된 조선의 호적제도는 그 별칭이 세밀화 또는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인 골격은 변화되지 않고 19세기 말까지 유지되어 나갔다.²⁷⁾

일반적으로 호적의 작성은 覈法과 寬法の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핵법은 1口, 1戶도 누락시키지 않음으로써 호적 작성을 엄하게 실시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관법은 口를 전부 기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戶 역시 모두 찾아내지 않고 里에 사사로운 장부를 두어 徭役과 賦稅를 할당하고, 官에서는 그 대강을 잡아서 都總을 파악함으로써 호적작성을 너그럽게 이끌어 가는 것을 말한다.²⁸⁾ 조선후기의 호적작성은 대체적으로 관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常例였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호적 작성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다만 호적의 법식을 보면 他州와는 구별됨이 있다. 매 式年에 누락된 戶가 하나도 없고, 누락된 이름이 하나도 없다. 또 内外로 草籍이 있다.²⁹⁾

라 한 바와 같이, 제주지역의 호적은 매 式年에 누락되는 戶口가 없이 핵법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다른 지역의 호적작성 방법으로 이용되는 관법과는 달리 제주지역의 경우는 핵법에 의해

27) 崔弘基, 앞의 책, P.103, 104 참조. 조선의 호적제가 근대적인 호적제로 변천된 것은 1896년의 戶籍調査細則과 規則의 반포에 의해서이다.

28) 『與猶當全書』, 第5冊 「牧民心書」 戶典六條, 戶籍條.

覈法者 一口無漏於口簿 一戶無落於戶籍 使無籍者 被殺而無檢 被劫而無訟 務得實數 束以嚴法者也 寬法者 口不必盡錄 戶不必盡括 里中自有私曆 以攤徭賦 府中執其大綱 以知都總 務從均平馭以柔道者也

29) 「籍草紙本錢設置節目(道頭里)」, 1872年(高宗 9) 11月 日.

第見籍式 與他州有別 而每式年 無一漏戶 無一漏名 而且有内外草籍之地.

호적이 작성되었다. 그만큼 제주 지역의 호적작성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역의 부담이 과중했던 제주지역의 경우, 철저한 호구조사를 시행함으로써 피역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内外로 草籍(戶籍中草)이 작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호적을 改修하는 式年에는 각 호구를 대상으로 米와 錢을 거두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남부지방은

南方의 관례로는 人口米가 매 口에 1승, 人情錢이 매 戶에 2푼, 正書租(벼의 찢지 않은 것을租라 한다. 서북지방에서는粟으로써 대신한다-原註)가 매 호에 1두가 있으니, 매양 그해의 호구에 비추어 여러 里에서 거두는데, 쌀은 아전이 먹는 것이요, 돈은 京司에 호적을 마감할 때의 비용으로 쓰는 것이며, 租는 호적대장을 謄書할 때에 쓰는 비용이다.³⁰⁾ (紙·筆·墨 및 書手의 工價로 쓴다-원주)

라 한 바와 같이, 매 口를 대상으로 人口米를 1升, 매 호를 대상으로 2푼의 人情錢과 1斗씩의 正書租를 받아 들이고 있었다. 그 所用을 볼 것 같으면, 人口米로 거두어 들인 것은 衙前의 몫이었고, 人情錢은 京司에 호적을 마감할 때의 비용, 租(찢지 않은 벼)는 謄書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는

30) 丁若鏞, 『牧民心書』 卷6, 戶典 6條, 戶籍.

南方之例 人口米每口一升 人情錢每戶二分 正書租每戶一斗(稻不刈者謂之租 西北以粟代之) 每視今年戶口 收於諸里 米是吏食錢是京司磨勘之所用 租是大帳謄書之消費(紙筆墨及書手工價).

- 一. 매 인구에 皮穀 3되를 舊例에 따라 거두어 들일 것.
- 一. 매 호에 米 1되를 구례에 따라 거두어 들일 것.
- 一. 매 口의 皮穀 3되와 매 戶의 米 1되를 제외하고 거두어
들이거나 거두어 줄 때에는 비록 合·作이라 하더라도
만일 더 거두는 폐단이 있으면 곧 횡령에 대한 본물로
다스릴 것.
- 一. 戶米 한 되는 例用條로 統籍色에게 거두어 주고, 口穀
3되 가운데 1되 5홉은 磨堪債 및 例用條로 兩籍色에게
나누어 주고, 1되 5홉은 帳籍과 周挾의 書債로 書寫 등
에게 나누어 줄 것.³¹⁾

이라 하여, 戶를 대상으로 米를 징수했으며, 人口를 기준해서는 穀을 거두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용도로 戶口米는 統籍色에게 지급하였으며, 人口穀 3升 중에서 1승 5홉은 마감채 및 예용조로 兩籍色(左面色·右面色)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승 5홉은 帳籍·周挾의 書債로 書寫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壬亂以後 조선의 호적제도는 그 운영에 있어서 많은 폐단이 대두되었다. 더구나 각 郡縣의 守令들은 籍吏의 差任을 賂物額數의 多寡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리들의 횡포는 묵인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당시 籍吏들이 戶口單子를 거두어 들이면서 백성들을 침학하는 폐단이 천하의 해독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였다. 적리들은 제 뜻에 차지 않으면 父·祖를 들추어 욕을 하고, 술과 안주

31) 「戶籍所定式條例成冊」(道頭里·今岳里·長田里), 1822年(壬午) 2月 日.

一每人口 皮穀三升 依舊例收捧是齊 一每戶米一升段 依舊例收 捧是齊 ... 戶米一升段 依例用條 收給於統籍色是遣 口穀三升內 一升五合段 以磨堪債及例用條 折給於兩籍色是遣 一升五合段 以帳籍周挾書債 折給於書寫等處是齊.

를 내 주어도 완강하게 버티는 등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의 욕심을 채우고 나서야 다른 곳으로 발길을 옮기는 실정이었다.³²⁾

濟州島의 경우도 호적 작성과 관련하여 많은 폐단들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폐단은 色吏들이 호구단자를 수합하면서 일반 백성을 상대로 雜物을 횡령하는 것이었다. 즉,

通知하여 시행할 일. 지난 겨울 호적을 수합할 때에 있었던 횡령의 폐단은 지난달 췌에 부임하는 길에 이미 한 두 가지를 들어 알고 있다. 이에 즉시 각 面의 面任을 불러 모아 여러 갈래로 탐문하였더니, 각 洞의 任掌輩들이 前例라 칭하고 혹은 고을에서 쓸 米布·鷄酒·蓋草·涼竹·南草라 칭탁하며, 허다한 종류를 마음대로 誅求하여 오로지 橫侵만을 일삼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일일이 조사해 내어 엄중한 형률로 다스리고, 낱낱이 찾아내어 당사자에게 돌려 주었다.

33)

라 하여 각 洞의 任掌輩들이 前例 혹은 邑에서 사용할 용도라 칭하며, 일반 백성들로부터 米布, 닭과 술, 지붕 덮는 새, 涼竹(갓양태의 재료), 南草 등을 제 멋대로 誅求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호적을 마감한 후에 考準(대조작업)의 절차가 있었는데, 이 때에도 色吏들은 人情³⁴⁾의 명목으로 역시 백성으로부터 討索하였다. 심지어 考

32) 『牧民心書』卷6, 戶典六條, 戶籍.

33) 「戶籍所定式條例成冊」(道頭里·今岳里·長田里), 1822年(壬午) 2月 日.

爲知委舉行事·昨冬收籍時 橫斂之弊 前月리營之路 已有一二入聞乙仍于 卽爲招致各面之任 從以多岐廉探 則各洞任掌輩 或稱前例 或托邑用米布也 鷄酒也 蓋草也 涼竹也 南草也 許多쇄쇄之種 恣意誅求 專事橫徵 今方一一查出 繩以重律 箇箇推出 還給當者是在果.

34) 각 종 稅의 捧納이나 공문서의 발급 및 접수 등에 부탁하는 뜻으

準者들이 빈손으로 왔을 경우는 호적의 대조마저 기피하였다.³⁵⁾ 이에 1822년(임오) 2월 李元八 목사는 호적 작성 또는 호적 대조와 관련하여 前例라 이르며 몰래 준 자와 받은 자는 모두 嚴刑하고 영원히 牧子로 定配할 것을 천명하였다.³⁶⁾ 또한, 雜物을 橫斂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교구책으로 戶米와 人口穀의 징수만을 허락하였지만, 이는 또 다른 폐단을 야기하고 있었다. 즉,

밤낮으로 保助할 방도를 생각해 왔는데, 마침 修籍하는 해가되었다. 온 섬의 宿弊는 戶籍米 한 조목이다. 한편으로 統籍米라고도 말하고, 또 帳籍 書債라고도 하고, 또 이를 該色에게 例給하는 人情條라고도 말한다. 戶마다 1升의 쌀과 인구마다 3승의 곡물을 일시에 모두 걷으니, 本州에 있어서는 千餘包가 되고, 대정은 140석, 정의는 300석이 된다. 그리고 거두어 들일 때를 당하면 각 리의 厘正들이 큰 되로 걷을뿐만 아니라, 點退가 무상하여 늙고 파리하여 죽기가 멀지 않은 자에게까지 그릇을 기울이면서 出徵하고, 입에서 젖내 나는 겨우 나서 얼마 안되어 강보에 있는 자도 수렴에 응해야 한다. 이는 참아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³⁷⁾

로 주는 일종의 뇌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담당자의 수고를 위로하는 수수료 형태로 人情米, 人情木, 人情錢이 하나의 명목이 되었다.

35) 앞의 책. 見今勘籍不遠 考準時至分叱除良 雜種既罷之後 更無可入之物 始自明日 只以空手而來 惟事準籍而還爲旆.

36) 앞의 책. 如是嚴飭之後 雖至微細之物 謂以前例 萬一有潛自與受之弊 則與者受者 斷當嚴刑 永定牧子.

37) 「三邑戶籍人口穀及統籍米救弊節目」(道頭里·水山里·今勿里), 1839年(己亥) 11月 日.

其所一分保助之道 宵夙思量矣 適值修籍之年 渾島宿弊 卽戶籍 米一款也 一謂之統籍米 一謂之帳籍書債 一謂之該色例給及人情條 每戶一升米 每口三升穀 一時並責 則在本州爲千餘包 在大靜爲一百四十石 在旌

라 한 바와 같이, 改修하는 해에 온 섬의 숙폐는 바로 戶米와 人口穀
임을 지적하고 있다. 戶籍米는 統籍米라고도 하는데 戶마다 1升의 쌀
을 징수하는 것이며, 人口穀은 帳籍 書債 또는 해당 色吏에게 예에
따라 지급하는 人情條 등으로 인구마다 3승의 곡물을 받아들이는 것
을 말한다. 그 양은 濟州牧이 1,000여석, 大靜縣이 140석, 旌義縣이
300석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일시에 島民들에게 부과했기
때문에 도민들의 원성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더구나 당시 도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감안하면³⁸⁾ 도민
들의 불만은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각 리의 厘正들은 호적미·인구곡을 징수함에 큰 되로써 거
두어 들였을 뿐만 아니라, 點退를 일삼아 늙고 파리하여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자, 또는 태어난지 얼마 안되어 강보에 쌓인 어린애에게까
지 징수하는 폐단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이에 1839년(憲宗 5) 11월에
具載龍 목사는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戶米 및 人口穀의 징
수를 혁파하기에 이르렀다. 그 대안으로 마련된 矯救策이 月廩錢·平
役餘米·供彼錢의 일부를 가지고 변통하는 것이었다.³⁹⁾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籍弊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
았다. 籍吏·厘正·監考 등 호적 관련자들은 여전히 일반 백성으로부터
일정한 뇌물을 받고 年齡의 增減⁴⁰⁾ 또는 出生과 死亡의 點退를 자의

義爲三百石 而每當收斂之際 各里厘正輩 責以大升 點退無常 則白首老
耄 死將不遠 而傾囷出徵 黃口乳穉生未幾 而在祿應斂 是可忍爲之事
乎.

38) 權仁赫,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哲宗朝
濟州民亂과 관련하여-」, 『李元淳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同 간행위원
회), 敎學社, 1986, 참조.

39) 「三邑戶籍人口穀及統籍米救弊節目」(道頭里·水山里·今勿里), 1839年
(己亥) 11月 日.

40) 『續大典』, 戶典, 戶籍條에는 호적 작성시 漏戶, 漏丁, 漏籍者, 年歲增

적으로 행하는 폐단은 계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사망자 1인에 출생자 1인으로 대체토록 하는 한편, 반드시 出生과 死亡者 成冊을 작성케 하였다.⁴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례화되어 온 호적제 운영상의 폐단들은 시정되지 않았다.

戶籍制 運營上에 나타나는 또 다른 폐단은 호적 작성시 소용되는 籍紙에 대한 것이었다. 더구나 濟州地域의 경우는 각 마을마다 戶籍 中草 또는 統籍冊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戶籍紙의 마련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1840년에 매 호에서 징수하던 호적지 징수를 금지하고, 補民庫의 還米를 가지고 取耗하여 종이를 마련토록 하였다.⁴²⁾ 그리고 1872년에는 殘廩錢 500냥을 損出하여 각 마을의 大小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그 利錢으로 籍草紙를 마련케 하는 방안⁴³⁾이 강구되었으나, 좀처럼 시정되지 않았다. 심지어 본전을 마련했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의 소홀 혹은 이전의 부족으로 본전이 유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경우 본전을 관리하는 유사 혹은 감고를 바꾸거나 엄히 다스렸지만 본전의 유실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에 다시 본전을 마련하여 지급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돼

減, 虛戶, 冒錄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연세증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범 법 행 위	처벌 대상자	처 벌 규 정
1년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當事者 · 家長	杖 80 杖 100 杖 80, 徒 2년 杖 100, 徒 3년
6명 이하 6 - 10명 10명 이상	統首 · 任掌	杖 60, 徒 1년 次 加 杖 100, 徒 3년

41) 「三邑戶籍人口穀及統籍米救弊節目」, 附錄 追節目(1840年 4月)參照.

42) 앞의 책과 같음.

43) 「籍草紙本錢設置節目」(道頭里), 1872年 11月 日.

곤 하였다.⁴⁴⁾

이와 같이 19세기 제주지방 戶籍制 運營上의 폐단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 변통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 籍政의 문란은 단순한 籍政 자체의 제도적 차원에서 치유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시 사회의 커다란 신분변동이 호적제 운영을 극도로 문란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호적제 운영에 대한 폐단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19세기 사회변동의 커다란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호적제 운영을 바탕으로 제주의 호적중초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자. 『牧民心書』에 의하면 「中草란 草本이다. 이것이 臺帳에 비하여 좀더 사실에 따른 것이다」⁴⁵⁾라 하여 官에서 보관하던 戶籍보다 마을에 보관하고 있는 戶籍中草⁴⁶⁾가 더욱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호적중초의 사료적 가치는 관에 보관되어 있던 호적대장보다 오히려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필자가 확인한 바가 있는 호적중초는 제주목 지역의 道頭里·今德里·上加里 등과 대정현의 大浦里·回水里·河源里·月坪里·東城里·今勿路里·自丹里·中文里 등 모두 11개 마을에 존재하고 있다.⁴⁷⁾ 정의현 지역의 경우, 吳文福이 소장하고 있는 1908년에 기준하여 작성된 「隆熙二年 戊申 一月 日 新豊里 戶籍單子」 1책만이 존

44) 「戶籍紙本錢設置節目」(長田里·西沙溪里·道文里), 1900年 8月.

45) 『牧民心書』 戶典 6條, 第4條 戶籍條.

中草者 草本也 其循實 勝於大帳.

46) 현재, 濟州地域외에 學界에 보고된 호적중초로 南原 屯德坊戶籍中草 1888年分과 1891年分이 있다(全炘穆, 「19세기 말에 작성된 南原 屯德坊의 戶籍中草와 그 성격」, 『古文書研究』 3, 1992).

47) 이 외에 대정현 색달리 호적중초의 일부 즉, 1867년과 1876년분의 호적중초가 현재 제주대학교 향토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다.

재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호적중초는 대정현 지역에서 주로 발굴되고 있으며, 제주목 지역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주목이었던 지역의 도두리 호적중초는 현재 제주시 탐라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금덕리 호적중초는 현재 마을리사무소에 보관 중이다. 상가리의 호적중초는 현재 애월읍 상가리의 姜相文이 보관하고 있다. 이들 호적중초는 본래 마을 청사에 보관되었던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제주목의 호적중초는 대정현 지역의 호적중초와는 달리 보관상태가 모두 두루마리 형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표지가 떨어져 나가 있거나, 매 式年마다 작성된 호적중초가 서로 뒤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同一 式年の 호적중초라 할지라도 戶의 순서가 서로 뒤엉켜 있어 자료의 정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8세기의 호적중초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모두 19세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호적중초의 작성 형식은 대정현과 동일하다.

대정현의 호적중초는 비교적 보관 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모두 舊里事務所 혹은 現里事務所에 보관되어 있다. 東城里戶籍中草는 18세기에 해당하는 것이 3책, 19세기 이후에 해당하는 것이 33책이다. 自丹里戶籍中草는 18세기에 해당하는 것이 4책, 19세기 이후의 것이 38책이다.⁴⁸⁾ 今勿路里戶籍中草는 18세기의 것이 2책, 19세기 이후의 것이 45책이며, 中文里戶籍中草는 18세기의 것이 1책, 19세기 이후의 것이 40책이다. 大浦里戶籍中草는 1804년에서 1908년에 이르는 33책이며, 河源里戶籍中草는 1810년에서 1903년에 이르는 36책,⁴⁹⁾

48) 자단리의 호적중초에서 19세기 이후의 호적중초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탐라문화총서(11) 『濟州大靜縣德修里戶籍中草』(I・II・III・IV)로 1993년에 영인하여 간행되었다.

49) 하원리의 호적중초 중에서 1810년에서 1903년에 이르는 31책의 호적중초는 1992년에 서울대 규장각에서 『濟州河源里戶籍中草』(1・2)로 영인 간행되었다.

회수리의 호적중초는 1852년부터 1908년에 이르는 26책, 월평리의 호적중초는 1861년부터 1909년에 이르는 14책이 현존하고 있다. 그간의 조사를 통해볼 때, 앞으로 계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더많은 호적중초가 확인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호적중초에서 本稿에서 활용한 호적중초는 東城里·自丹里·今勿路里·中文里 4개 마을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의 4개 마을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18세기의 호적중초가 현존하기 때문이다. 19세기의 경우 다른 지역의 호적중초를 모두 활용하여야 하나, 위 4개 마을에 국한시킨다 하더라도 제주도 지역의 신분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커다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⁵⁰⁾

本考의 분석대상인 호적중초중, 東城里 36책은 24책이 마을명이 東城里로 되어 있으나, 12책은 安城里 戶籍中草로 표기되어 있다. 自丹里的 42책에는 자단리 호적중초로 되어 있는 것이 8책, 新堂里 호적중초라 표시된 것이 3책, 德修里 호적중초로 된 것이 33책이다. 今勿路里 47책은 16책이 금물로리, 31책은 沙溪里로 되어 있다. 中文里는 마을 명칭의 개명이 없었기 때문에 41책이 모두 중문리 호적중초라 되어 있는 실정이다. 4개 마을 호적중초의 現存與否는 다음 <表 2-3>과 같다.⁵¹⁾

제주 지역의 경우 郡縣의 인구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戶籍大帳은 濟州牧·大靜縣·旌義縣 어느 지역에서도 아직까지 확인되지

50) 대정현의 하원리·회수리·색달리·대포리·월평리 호적중초에 나타나 는 호주의 신분·직역별 구성에 대한 부분은 1994년 간행예정인 『舊 中文面綜合學術報告書』(미간행)를 참조할 것.

51) 4개 마을 중에 東城里는 1879년에 安城里로 개명되었으며, 今勿路里는 1840년에 沙溪里로 개명되었다. 自丹里는 1831년 新堂里로 개명되었다가 1840년에 德修里로 개명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東城里·今勿路里·自丹里 호적중초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表 2-3> 東城里·中文里·今勿路里·自丹里 戶籍中草의 現存與否

資料年度 \ 里名	東 城 里	中 文 里	今 勿 路	自 丹 里
1783년(正祖 7)	0	x	x	x
1786년(正祖10)	0	0	x	0
1789년(正祖13)	0	x	x	0
1792년(正祖16)	x	x	x	0
1795년(正祖19)	x	x	0	0
1798년(正祖22)	x	x	0	x
1801년(純祖 1)	x	0	0	x
1804년(純祖 4)	x	0	0	0
1807년(純祖 7)	0	0	0	0
1810년(純祖10)	0	0	0	0
1813년(純祖13)	0	0	0	0
1816년(純祖16)	0	0	0	0
1819년(純祖19)	0	0	0	0
1822년(純祖22)	0	0	0	x
1825년(純祖25)	0	0	0	0

資料年度 \ 里名	東 城 里	中 文 里	今 勿 路	自 丹 里
1858년(哲宗 9)	0	0	0	0
1861년(哲宗12)	0	0	0	0
1864년(高宗 1)	0	0	0	0
1867년(高宗 4)	0	0	0	0
1870년(高宗 7)	0	0	0	0
1873년(高宗10)	0	0	0	0
1876년(高宗13)	0	0	0	0
1879년(高宗16)	0	0	0	0
1882년(高宗19)	0	0	0	0
1885년(高宗22)	0	0	0	0
1888년(高宗25)	0	0	0	0
1891년(高宗28)	0	0	0	0
1894년(高宗31)	x	0	0	0
1897년(光武1)	x	x	0	0
1898년(光武2)	0	0	0	x

1828년(純祖28)	0	0	0	0
1831년(純祖31)	0	0	0	0
1834년(純祖34)	0	0	0	0
1837년(憲宗 3)	x	0	0	0
1840년(憲宗 6)	0	0	0	0
1843년(憲宗 9)	0	0	0	0
1846년(憲宗12)	x	0	0	0
1849년(憲宗15)	0	0	0	0
1852년(哲宗 3)	x	0	0	x
1855년(哲宗 6)	0	0	0	x

1899년(光武3)	0	0	0	0
1900년(光武4)	0	0	0	0
1901년(光武5)	0	0	0	0
1902년(光武6)	0	0	0	0
1903년(光武7)	x	0	0	0
1904년(光武8)	x	0	0	0
1905년(光武9)	0	x	0	0
1906년(光武10)	x	x	0	0
1907년(光武11)	x	x	0	0
1908년(隆熙2)	0	x	0	0

*. 1825년 今勿路里 戶籍中草와 1902년 中文里 戶籍中草는 2책,

않고 있다. 아마 이러한 資料의 발굴은 그간의 조사에 의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로 생각된다. 만일 호적대장의 발굴만 이루어진다면 戶籍大帳과 戶籍中草의 차이점 뿐만 아니라, 隱戶·漏戶의 실태 등 호적대장을 이용한 연구의 한계성을 보다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가 요원한 상황에서 그나마 濟州 鄉村社會相을 다양하게 밝혀낼 수 있는 호적중초가 현재까지 소멸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면 호적중초는 어떠한 과정속에서 작성되었는지가 관심이 된다. 일반적으로 호적의 작성은 式年(干支가 子·卯·午·酉인 해) 그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前年인 寅·申·巳·亥를 포함하는 해의

7월부터 시작되었다. 즉, 이 시기에 이르면 수령은 호적의 작성 업무를 담당할 都監을 두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해 나가게 된다.

호적 작성 업무에 관여하는 각 里의 厘正·監考·別有司·尊位는 각 戶의 戶口單子(2통)를 수합하여 里 자체적으로 호적중초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⁵²⁾ 그리고 里에서는 각 戶에서 수합한 호구단자와 자체적으로 작성한 호적중초를 11월 혹은 12월 경에 해당 官廳에 제출하였다.

이를 받은 官廳에서는 지난 式年の 호적대장과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朱書로 정정하고, 統戶를 기재하여 수령의 署押이나 관인을 찍은 다음 각 리에 내려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里에서는 호구단자의 경우 각 戶에 나누어 주고, 戶籍中草는 마을에 보관하면서 徵稅 및 徵役에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호적의 작성은 이와 같이 式年の 전해에 이루어지지만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式年에 기준해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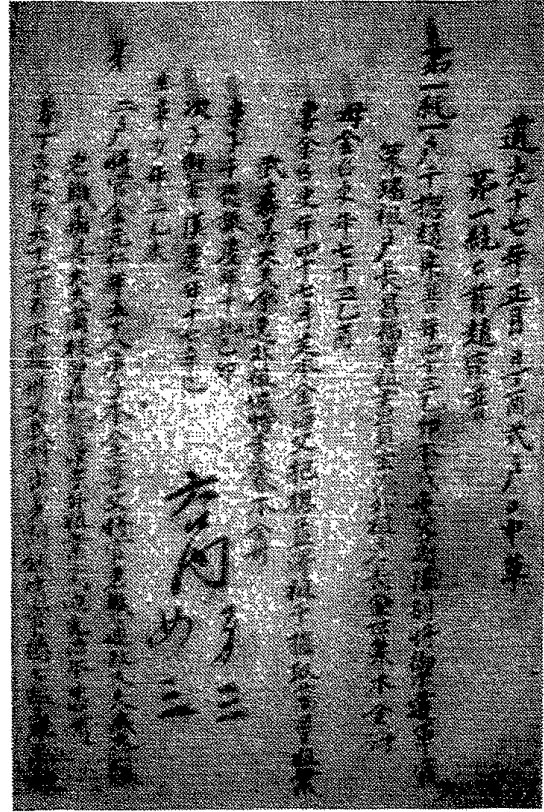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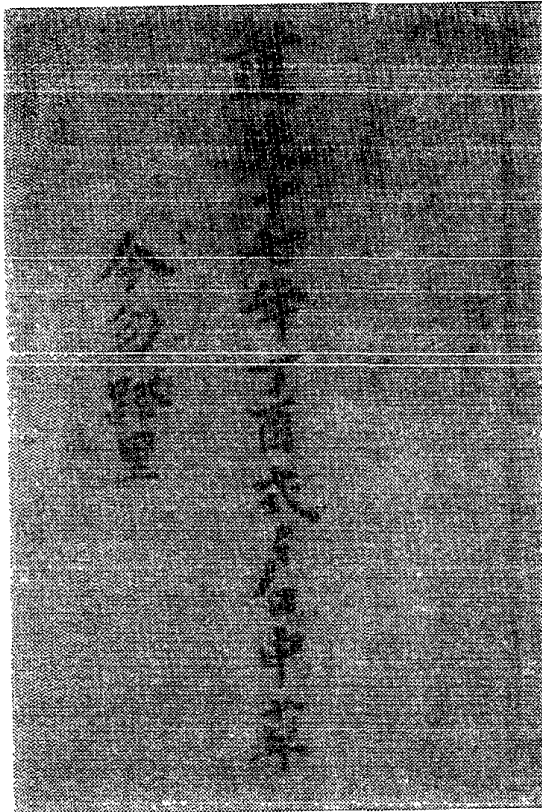
戶籍中草의 編成體制를 살펴보면, 우선 表紙의 경우는 <寫眞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年號 正月 日 干支(該當 式年の 干支)式 戶籍中草」라 쓰고 別行으로 해당 마을을 기입하고 있다.

첫장 1행은 <寫眞 2>와 같이, 다시 表紙의 내용을 재기입하고 別行으로 해당 마을의 面里를 표시한 후 五家作統法(1896년 이후는 十家作統法)에 의하여 1統, 2統의 순으로 기재해 나가고 있다. 기재형식은 戶口單子와 같이 別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南原 屯德坊 호적중초 뿐만 아니라, 他地域의 호적대장이 모두 準戶口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連書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作統은 煙家 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같은 마을 내

52) 모든 호적중초의 末尾에는 호적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厘正·監考·別有司·尊位の 기록이 나타나는데, 厘正·監考는 성명을 기재하고 있으나 別有司와 尊位는 姓만 기재하고 手決을 하고 있다.

<寫眞 1> 戶籍中草 表題의 例 <寫眞 2> 戶籍中草 作成內容의 例



에 있어서도 1統 1戶를 차지하기 위해 住民간의 内分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였다.⁵³⁾ 각 戶의 내용은 戶主의 職役·姓名·나이·本貫, 父·祖·曾祖의 職役과 이름, 外祖의 職役·姓名·本貫, 戶主 妻의 姓·稱號·나

53) 이는 현재 濟州島 北濟州郡 涯月邑 長田里事務所에 소장된 1897년 (丁酉) 12월일의 「立議」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立議」는 尊位, 警民長, 洞長, 頭民 7명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作統에 의한 마을간의 内分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이후에는 煙家順에 따라 統戶를 배정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本貫 및 四祖(父·祖·曾祖·外祖)의 職役과 이름, 그리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子女는 물론 花妾·奴婢·雇工, 借入者가 있을 경우에도 빠짐없이 상세히 기록하였다. 또한 각 戶마다 男女의 수를 구분하여 기재하기도 하였다. 戶籍中草의 기재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中文里：1804年 13統 4戶의 例

第四戶 留鄉座首 李東新 年五十七 戊辰 本古阜 父 留鄉座首 殷成 祖 留鄉座首 漢芳 曾祖 留鄉座首 敬元 外祖 留鄉別監 姜遇載 本晉州

妻 玄氏 年四十一 甲申 籍咸德 父 學生 垂範 祖 學生 昌殷 曾祖 學生 載厚 外祖 學生 吳命流 本軍威

率子 留鄉別監 大榮 年四十二 癸未

率婦 梁氏 年三十七 戊子

率孫子 宗礪 年十二 癸巳

率婢 姜德 年二十九 丙辰 父 姜連聖

率婢 金德 年十九 丙午 父 金重昌

率奴 順東 年十二 癸丑 父 金奎彩

率婢 永月 年三十二 癸巳 父 李永得

借入 平役品官 姜興宗 年二十七 戊戌 父 業武 德成

合人口 十內
男壯三 男弱二
女壯五

② 自丹里：1828年 6統 2戶의 例

第二戶 武科初試 金章何 年四十五 甲辰 本金海 父 將官 壽泰 祖 秉節校尉龍讓衛副司果 仁聖 曾祖 展力副尉兼司僕 元寶 外祖 旗牌 李進寶 本古阜

母 李召史 年七十一 戊寅

妻 姜召史 年五十 己亥 本晉州 父 城將 敏周 祖 城將 世大 曾祖 納粟察訪 興望 外祖 學生 梁聖喬 本濟州

率子 業武 麗柱 年二十 己巳

率婦 李召史 年二十四 乙丑 父 將官 廷根

生 率孫女 年二 丁亥

次子 營旗牌 漢柱 年十 己卯

率女年六 癸未

率弟 牧執事 宗何 年三十七 壬子

次弟 城將 命何 年二十 己巳

合 十六口內
男 九
女 七

率弟妻 林召史 年二十五 甲子 父 將官 奉好

率異姓八寸 鎭撫 姜啓義 年十一 戊寅 父 鎭撫 奉祥

率異姓三寸 金召史 年五十三 丙申

率外侄 鎭撫 梁仁采 年十五 甲戌 父 把摠 益祥

生次外侄 業武 梁仁順 年四 乙酉

率侄子 營旗牌 金應連 年十七 壬申 父 宗何

末尾에는 元(原)戶, 人口와 男女의 통계(壯·老·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도 있음), 逃亡者 또는 漂流者가 있을 때에도 이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호적작성에 참여하였던 厘正과 監考는 성명을 기재하였고, 別有司와 尊位는 姓과 手決로 표시하였다. 마지막에는 해당 관청 수령의 署押이 있다.⁵⁴⁾

官에서는 일일이 지난 式年の 호적과 대조하여 冒錄·冒稱이 있는 경우, 일일이 朱書로 정정하고 후일에 있을 이와 같은 일의 발생을 우려하여 各面마다 官印을 일일이 찍음으로써 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冒錄·冒稱者들은 심한 경우, 호적 관리자들과 결탁하여 일정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그 부분이 다른 종이에 써서 붙여 놓은 경우도 간혹 확인할 수 있다.

54) 記載 例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1825年 中文里 戶籍中草).

以上 元戶 一百五十六戶, 都人口九百七十八, 男丁四百五十三內 逃亡男三 漂流 男一, 女丁五百二十五 逃亡 女二 別有司 李(手決), 尊位 李(手決), 厘正 康文喆, 監考 李始漢(縣)監 (手決).

Ⅲ. 大靜縣의 戶口와 그 變動

1. 戶口數의 時期別 推移

大靜縣 戶口數의 時期別 추이를 살피기에 앞서, 먼저 18·19세기 濟州島 人口變化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전체 생산력이 낮았던 傳統時代에 있어서 인구의 증감 현상은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인위적인 인구의 통제 수단이 결여되었던 전통사회에서 사회의 부양 능력을 넘어서 과잉 인구는 사회의 안정에 중대한 위협 요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疾病·自然災害 등으로 인해 급격히 줄어든 인구는 전통사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여 이 역시 사회 구조의 안정 유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¹⁾

朝鮮時代 人口와 관련한 자료는 몇몇 문헌에서 散見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문헌에서 확인되는 戶와 口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이 없는 실정이다. 조선초기의 호구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戶數는 각종 力役과 貢物의 賦課·徵收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編戶로 일종의 法制戶이며, 口數는 그에 속한 16세-60세의 男丁 또는 良役負擔者를 의미한다는 견해들²⁾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반하여 戶數는 각종 力役과 貢物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실제

1) 은기수, 「조선 후기 인구 자료로서의 호적에 관한 일연구」, 『한국사회의 신분계급과 사회변동』(文學과知性社 1987), p.40.

2) 金錫亨, 「李朝初期 國役編成의 基底」, 『震檀學報』 14, 1941; 金載珍, 『韓國의 戶口와 經濟發展』, 박영사, 1967.

의 戶와 口數를 참작하여 各道 各官에 適宜 配정한 貢役賦課單位로서의 호수의 定額인 元額 곧 戶總이며, 口數는 軍役을 비롯한 각종 의무를 지니는 男丁의 數라는 견해³⁾와 그리고 최근에는 戶數는 기본적으로 田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家戶(漢城과 같은 도시에서는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가호)이며, 口數는 그에 속한 男丁(일부의 기록은 老弱을 포함한)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⁴⁾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초기의 戶와 口에 대한 의미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조선후기 戶籍上의 戶口數에서 戶數는 주로 挾戶를 제외한 主戶의 수이며, 이를 기초로 한 定額이 호총이고, 또 배정된 호총에 따라 成籍된 호가 곧 호구통계에서의 호수라는 의견⁵⁾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조선후기의 호구파악은 주로 자연호에 의존하고 있는데, 호구통계상에 있어서 호구의 완전성은 40%미만에 이를 정도로 매우 부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⁶⁾

물론 당시 戶口統計의 내용이 실지 호구 그대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世宗實錄 地理志』 제주지역의 경우를 참조하면, 戶數는 7,249호, 口數는 18,897구이다.⁷⁾ 이는 지리지의 내용⁸⁾보다 3년 뒤의 내용인 1435년의 제주 삼읍의 戶口數가 9,935호에 63,093구로⁹⁾

3) 李樹健, 「朝鮮初期 戶口研究」, 『嶺南大學校論文集(人文科學編)』 5, 1971.

4) 韓榮國, 「朝鮮 初期 戶口統計에서의 戶와 口」, 『東洋學』 19집, 1989, p.251.

5) 李榮薰, 『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1988.

6) 權泰煥·愼鏞廈, 「朝鮮王朝時代 人口推定에 關한 一試論」, 『東亞文化』 第14輯, 東亞文化研究所, 1977.

7) 『世宗實錄』 地理志, 濟州牧·大靜縣·旌義縣條 參照.

8) 『世宗實錄地理志』는 1454년(단종 2)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지만, 그 내용은 1432년(세종 14)에 작성된 『新撰八道地理志』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은 세종 14년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지의 내용보다 호수는 1.37배나 많은데 비하여 구수는 무려 3.33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3년 간격을 둔, 두 내용의 기록은 口數가 서로 다른 원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朝鮮王朝實錄이나 邑誌類에서 산견되는 제주지역의 호구수가 실지 호구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기에도 곤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18·19세기 제주지방의 戶口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 문헌을 통하여 그 일단을 정리하면 <表 3-1>과 같다.

위 표를 통해서 18·19세기 제주도 지방의 人口變動에 대한 몇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먼저, 戶口의 증감현상을 보기로 하자. 1702年 濟州 三邑의 戶數는 9,552戶이며, 口數는 43,515口이다. 1780~1785년 경의 호구는 10,721戶에 62,243口로 80여년간 1,169戶, 18,727口가 증가하였다. 대략 연평균 0.13%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는 人口學적으로 볼 때 높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율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시기로 연평균 0.2%의 증가율이 가장 합리적인 증가율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질병·기근·자연재해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할 때 0.2% ~ -0.2%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¹⁰⁾ 따라서 제주지방에 대한 兩資料의 호구조사는 일단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 있다.

다만, 호구의 증감과 관련하여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1827년 이후로 추정되는 「耽羅事例」의 내용과 1873년 12,169戶에서 1904년의 경우 1873년에 비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戶數는 15,892戶나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다. 1827년 이후의 자료로 추정되는 「耽羅事例」의 호구 내용은 1789년의 호구 내용과 비교했을 때, 433戶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는 1795년의 대대적인 飢

10) 權泰煥·愼鏞廈, 앞의 論文 참조.

<表 3-1> 18·19世紀 濟州島の 戸口狀況

年 度	邑 名	戸 數	口 數	男	女	戸當 平均 口
1702年	濟州牧	7,319	-	-	-	
	旌義縣	1,436	-	-	-	
	大靜縣	797	-	-	-	
	計	9,552	43,515	-	-	4.56
1780 ~17 85年	濟州牧	6,692	39,374	17,074	22,300	5.88
	旌義縣	2,325	14,406	6,306	8,100	6.20
	大靜縣	1,704	8,463	3,653	4,810	4.96
	計	10,721	62,243	27,033	35,210	5.81
1786年	濟州牧	6,692	39,392	17,039	22,353	5.89
	旌義縣	2,325	14,508	6,362	8,146	6.24
	大靜縣	1,704	8,516	3,634	4,882	5.00
	計	10,721	62,416	27,035	35,381	5.82
1789年	濟州牧	6,700	39,762	17,052	22,700	5.93
	旌義縣	2,325	14,829	6,536	8,293	6.38
	大靜縣	1,733	8,725	3,748	4,977	5.03

9) 『世宗實錄』卷 70, 世宗 17年 12月 己酉條.

年 度	邑 名	戸 數	口 數	男	女	戸當 平均 口
	計	10,758	63,316	27,336	35,970	5.89
1792年	三邑	10,779	64,582	27,870	36,712	5.99
1793年	濟州牧	6,707	40,111	17,130	22,981	5.98
	旌義縣	2,336	15,372	6,789	8,592	6.58
	大靜縣	1,733	9,027	3,934	5,092	5.21
	計	10,776	64,510	27,853	36,665	5.99
1827年 頃	濟州牧	6,851	42,083	18,050	24,078	6.14
	旌義縣	1,768	9,337	4,349	4,988	5.28
	大靜縣	1,724	11,664	5,252	6,412	6.77
	計	10,343	63,084	27,651	35,478	6.10
1841年 頃	濟州牧	7,017	47,499	21,443	26,046	6.77
	旌義縣	1,939	15,163	6,818	8,345	7.82
	大靜縣	1,859	12,669	5,925	6,741	6.81
	計	10,815	75,331	34,186	41,132	6.97
1842年	三邑	10,820	76,081	-	-	7.03
1846年	三邑	10,896	76,701	-	-	7.04
1850年	三邑	11,124	79,910	37,771	42,139	7.18
1854年 頃	濟州牧	7,130	48,954	23,583	25,371	6.87

年 度	邑 名	戶 數	口 數	男	女	戶 當 平 均 口
1854年頃	旌義縣	2,042	17,309	7,794	9,515	8.48
	大靜縣	2,037	14,578	6,921	7,657	7.16
	計	11,209	80,841	38,298	42,543	7.21
1855年	三邑	11,426	81,896	38,704	43,192	7.17
1873年	三邑	12,169	87,927	39,965	47,962	7.23
1904年	三邑	28,061	86,189	40,701	45,488	3.07
1912年	濟州郡	23,173	105,402	52,149	53,253	4.55
	旌義郡	7,760	38,642	19,100	19,542	4.98
	大靜郡	6,440	27,210	13,289	13,921	4.23
	計	37,373	171,254	84,538	86,716	4.58

<資料> 1702年: 李衡祥, 『南宦博物』, 誌地條. 『耽羅巡曆圖』, 「濟州操點」・「旌義操點」・「大靜操點」參照. 1780~85年: 『濟州邑誌』(奎章閣圖書10796). 1786年: 『度支志』. 1789年: 『戶口總數』. 1792年: 『正祖實錄』, 正祖 16年, 12月 甲午條. 1793年: 『濟州大靜旌義邑誌』. 1827年頃: 『耽羅事例』. 1841年頃: 李源祚, 『耽羅誌草本』. 1842年: 『憲宗實錄』, 憲宗 8年, 3月 乙丑條. 1846年: 『憲宗實錄』, 憲宗 12年, 正月 甲申條. 1850年: 『哲宗實錄』, 哲宗 元年, 4月 丁丑條. 1854年頃: 『耽羅營事例』, 『濟州事例』. 1855年: 『哲宗實錄』, 哲宗 6年, 12月 戊午條. 1873年: 『高宗實錄』, 高宗 10年, 12月 29日條. 1912年: 『朝鮮總督府統計年譜』 P.91.

民의 발생으로 인하여 17,963명의 인구가 감소된 바가 있었으며,¹¹⁾ 1822년에도 전염병이 만연하여 수천명의 인명이 손실되기도 하였다. 12)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자료 자체의 부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

11) 『正祖實錄』 正祖 20年, 正月 壬戌條.

다. 1904년의 호수 증가는 1896년 「戶口調査細則」이 반포되면서, 父母·兄弟·子孫이라도 分居하면 원칙적으로 分戶해야 하는 사실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즉, 1896년 이전 제주지역의 경우 分居하고 있다 할지라도 戶主를 기준으로 하여 1戶로 파악하였지만, 1896년 新戶籍法 실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分居하게 되면 別戶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호당 평균 인구수에 있어서 1873년에 7.23인 이었던 것이 1904년에 와서 그 절반 이하인 3.07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도 分戶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戶當 平均 人口數는 18세기초가 4.56명으로 金錫禧가 산출한 전국 평균 4.24명¹³⁾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18세기 후반의 호당 평균 인구수는 5.81명에서 5.99명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세기의 호당 평균 인구수는 18세기 후반보다 높은 1827년이 6.10명에서 1873년에는 7.23명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新戶籍法の 성립 이후는 호적 작성에 따른 차이로 말미암아 호당 평균 인구수는 현격히 줄고 있다.

三邑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18세기의 경우 大靜縣 지역이 제주목이나 정의현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4.96명에서 5.21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19세기의 경우는 오히려 대정현 지역의 호당 평균 인구수가 정의현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제주목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당시 대정현 지역이 火田 경작지로 대두하면서 삼읍의 인구가 점차 대정현 지역으로 유입되는 현상¹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2) 『純祖實錄』, 純祖 22年, 10月 庚申條.

13) 金錫禧, 「18·19세기 戶口의 實態와 身分變動-新例 彦陽縣 戶籍臺帳을 중심으로-」, 『人文論叢』 26집(부산대), 1984, P.354.

14) 李建弼, 「濟州牧按覈狀啓謄錄」, 『壬戌錄』(韓國史料叢書제8, 國史編纂委員會, 1958, P. 154).

다음으로 1807년과 1861년의 호적 자료를 토대로 大靜縣 호구 구조의 실태를 살핍으로써 대정현 호구수의 변화에 대하여 해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表 3-2>를 작성하였다.

<表 3-2> 里別 戶內 口數에 따른 戶의 分布(1807年)

口 里	東城里	自丹里	今勿路里	中文里	計 (%)	總口數
1口	8	4	2	2	16(3.99)	16
2	25	18	11	29	83(20.69)	166
3	7	5	7	14	33(8.23)	99
4	20	5	12	21	58(14.46)	232
5	28	20	29	35	112(27.93)	560
6	9	8	7	9	33(8.23)	198
7	7	3	4	12	26(6.48)	182
8	8	4	3	11	26(6.48)	208
9		1		2	3(0.75)	27
10	1		1	1	3(0.75)	30
11				2	2(0.50)	22
12	1	1		1	3(0.75)	36
13	1			1	2(0.50)	26
14				1	1(0.25)	14
合計	115	69	76	141	401(100)	1,816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성리 115호, 자단리 69호, 금물로리 76호, 중문리 141호 총 401호의 口數에 따른 분포는 1口에서 14口까지 총 14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5口로 112호인 27.9%가 이에 해당한다. 대정현의 戶數 가운데 거의 1/3에 가까운 戶가 5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셈이다. 대다수의 호는 2구에서 5구로 전체의 71.3%이다.

單獨戶의 경우도 16호로 전체의 4%에 이르고 있다. 戶內에 14구로 최고의 戶를 형성한 사례는 한 호에 불과하다. 이 戶의 구성은 부부, 아들 내외와 손녀, 次子와 손녀(2口), 庶女 1口, 노비 4口(노 1구, 비 3구), 借入者(元召史 38세) 1口¹⁵⁾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13口인 戶의 구성은 母, 夫婦, 子 3口, 妹 2口, 外姪女 2口, 庶母, 庶妹, 借入者 1口¹⁶⁾이다. 대체적으로 많은 口數를 포함하는 호의 가족구성은 순수한 가족외에 非血族의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다. 즉, 예를 들면 奴婢·雇工·借入者 등이 이에 해당 한다.

戶當 平均 人口數는 東城里 4.36명, 自丹里 4.30명, 今勿路里 4.50명, 中文里 4.79명으로 전체 호당 평균 인구수는 4.48명이다. 이는 10여년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앞의 <表 3-1>에 보이는 1793년의 大靜縣 호당 평균 인구수 5.21명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19세기 후반의 경우를 검토하기 위하여 1861년의 호적중초를 이용하였다. 1807년 401호에서 54년 후인 1861년의 戶數는 486호로 85호가 증가하였다. 中文里는 오히려 호수가 감소되고 있으나, 東城里의 경우는 무려 85호가 증가하고 있다. 이 호적상에 의하면 동성리로 많은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추세였음을 감안할 때, 미미한 호수의 증가 혹은 감소는 일시적인 자연 재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동성리를 제외한 지역에 국한했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단·금물로·중문리 호적중초의 부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긍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앞서 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 제주 지역 호적제의 운영은 엄격하게 覈法에 의하여 호구를 조사함으로써 1

15) 「中文里戶籍中草」, 1807年 13統 5戶 參照.

16) 위의 책, 11통 5호, 前把摠 李樹鳳의 戶.

<表 3-3> 里別 戶內 口數에 따른 戶의 分布(1861年)

口 里	東城里	自丹里	今勿路里	中文里	計 (%)	總口數
1口				1	1(0.2)	1
2	8	3		5	16(3.3)	32
3	20	5	2	14	41(8.4)	123
4	28	11	5	24	68(14.0)	272
5	33	10	8	18	69(14.2)	345
6	37	19	12	11	79(16.3)	474
7	19	10	8	9	46(9.5)	322
8	18	2	9	5	34(7.0)	272
9	9	6	5	8	28(5.8)	252
10	11	5	5	12	33(6.8)	330
11	7		1	3	11(2.3)	121
12	6	1	1	5	13(2.7)	156
13		2	2	2	6(1.2)	78
14	1		2	2	5(1.0)	70
15				2	2(0.4)	30
16		2	4		6(1.2)	96
17	1		3	3	7(1.4)	119
18	2		2		4(0.8)	72
19			2	1	3(0.6)	57
20		1			1(0.2)	20
21			2		2(0.4)	42
22			1	1	2(0.4)	44
23			1		1(0.2)	23
24				2	2(0.4)	48
25			1		1(0.2)	25
27			1		1(0.2)	27
28			1		1(0.2)	28
34			1		1(0.2)	34
38				1	1(0.2)	38
41				1	1(0.2)	41
合計	200	77	79	130	486(99.9)	3,592

戶, 1口도 빠뜨리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세 마을의 호수상의 감소는 마을 分里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自丹里는 1831년에 新堂里라 개칭하였다가 1840년에 德修里로 개명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마을에 비하여 호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마을의 分里過程을 일정하게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今勿路里는 1840년 沙溪里로 개명되고, 그 이후 일부의 호수는 西沙溪里를 칭하며 본래의 금물로리에서 이탈되어 나갔다. 중문리는 1858년 道文里가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호적상으로는 이와 같이 호수의 감소로 나타나는 것이다.

人口의 증가는 1,816명에서 3,592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즉 戶數의 증가는 85호로 21.2% 증가한데 반하여 口數는 98.5%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시기적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大靜縣의 인구증가는 1793년 1,733戶, 9,027名에서 1854년경에 2,037戶, 14,578名으로 증가하였다. 1793년을 기준으로 1854년의 증가분은 戶數가 304戶로 17.5%, 口數는 5,551명으로 61.5%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위 네개 마을을 大靜縣 호구의 일반적인 증가와 비교했을 때 戶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인구의 증가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矣縣之光淸里 山僻土沃 三邑無恒産之類 犯禁燎原 就食於此境矣’¹⁷⁾라 하여 19세기이래 無恒産者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山僻土沃’한 대정현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에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대정현 지역으로의 이러한 人口流入은 한정된 지역에 인구가 많음에 따른 火田 경작이 더욱 조장되기에 이르렀고, 관아에서의 火田稅 남짓은 나아가 대정현

17) 李建弼, 「濟州牧按覈狀啓謄錄」, 『壬戌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료총서 제8), P.154, 座首 李國老 供白.

지역에서의 민란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口數에 따른 戶의 分布는 1명에서 많은 호는 41명에 이르기까지 33등급으로 1807년에 비하여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6명으로 구성된 戶의 경우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5명, 4명, 7명, 3명 순으로 나타난다. 單獨戶는 한 사례에 불과하며, 1807년 자료의 戶口構成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15口 이상이 36사례로 7.2%에 해당한다.

가장 최고의 인원으로 구성된 戶는 中文里 3통 1호 執事 李仁孫(67세)의 戶로 모두 41명이다. 戶主, 子 夫婦 2명, 孫子 夫婦 2명, 孫子 2명, 戶主妾 1명, 妾子 夫婦 2명, 妾次子 婦 1명과 孫女 1명, 妾次子 夫婦 2명과 孫女 1명, 妾次子 夫婦 2명, 弟妻 1명·姪妻 1명·宗孫 3명, 次姪子 夫婦 2명, 次弟妻 1명·姪子 夫婦 2명·宗孫女 1명·宗孫 1명, 次姪子 夫婦 2명·宗孫 1명, 次弟妻 1명·姪子 夫婦 2명·宗孫女 1명, 私奴 1명 그리고 借入 4명을 포함하고 있다.¹⁸⁾ 이 호는 비혈족 가족 5명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36명의 가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38口의 戶인데 중문리 13통 3호에 거주하는 留鄉座首 李最榮(59세)을 호주로 하는 호이다. 구체적인 호의 구성은 戶主 夫婦 2명, 婦侄 1명, 宗孫 夫婦 2명, 宗孫 夫婦 2명과 曾孫 1명, 侄 夫婦 2명과 孫女 1명, 侄 夫婦 2명과 宗孫 2명, 子 夫婦 2명과 孫子 1명·孫女 1명, 次子 夫婦 2명, 次子 夫婦 2명, 次子 夫婦 2명, 次子 夫婦 2명, 奴 2구, 婢 9구로 형성되어 있다.¹⁹⁾ 즉, 한 울타리 안에 노비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10쌍의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들은 부부를 단위로 서로 다른 가옥에서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한 울타리내에 상당수의 가옥이 필요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戶籍에서의 戶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家屋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²⁰⁾ 그러나 제

18) 「1861年 中文里戶籍中草」, 3統 1戶 參照.

19) 앞의 책, 13統 3戶 參照.

주지역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41명 또는 38명으로 구성된 戶가 한가옥에 거주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호적작성시에 호의 파악은 혹 분거하여 생활하고 있을지라도 타지역과는 달리 호주를 중심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 즉, 예를 들어 次男·三男이 分居하여 인근 지역²¹⁾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戶主人 父가 생존시에는 호적작성시에 次男·三男이 단독호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父의 戶에서 일괄적으로 파악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호당 평균 인구수 역시 1807년에 비하여 증가를 보이고 있다. 동성리 6.30명, 자단리 6.44명, 금물로리 10.48명, 중문리 7.66명으로 평균 7.36명이다. 그러나 7인 이하의 가족이 65.9%로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당 가족의 수가 12인 이하는 92%에 이른다. 그러므로 실지 호당 평균 인구수가 높게 나타나는 요인은 전체 호수의 9%에 이르는 13口에서 41口로 형성된 戶들 때문이다.

2. 性別·年齡別 構成과 그 變動

호적중초에 기재된 姓과 年齡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戶籍中草가 지니고 있는 자료로서의 유용성 또는 한계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호적에 기록된 그대로의 人口狀況이 前近代社會가 지니고 있는 人口構造와 어떻게 부합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20) 韓榮國, 「朝鮮王朝 戶籍의 基礎的 研究」, 『韓國史學』 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p. 209.

21) 이 경우 동일한 마을내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 마을이 아닌 경우에는 別戶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1807년의 호적중초를 택하여 里別로 年齡別 男女의 분포를 작성하였다.

우선 <表 3-4>를 통해 男女의 性比를 파악하기 위하여 男女別로 弱(1~16세), 壯(16~60세), 老(61세 이상)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弱의 경우 남자가 244명, 여자가 287명이다. 性比²³⁾는 85.0%이다. 壯은 남자가 421명, 여자가 617명으로 성비는 68.2%이며, 老의 경우는 남자가 100명, 여자가 135명으로 성비는 74.1%이다.

일반적으로 큰 전쟁이나 인구이동이 없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성비는 95~102 사이로 나타난다. 성비가 90이하이거나 105이상일 때는 일단 자료를 의심해 볼 수 있다. 1807년의 자료에서는 壯·老·弱 어느 경우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이 자료는 당시의 실상을 왜곡된 방향에서 전해 주고 있다고 밖에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당시의 실상을 전혀 반영해 주고 있지 못하는 무의미한 자료일까. 물론 자료가 지니는 다소의 한계성이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제주 지역의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까. 이와 관련하여 제주 지방의 거의 모든 邑誌類에서 확인되는 다음의 사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다. 구혼하는 사람은 반드시 술과 고기를 준비한다. 納采하는 자도 그렇다. 혼인하는 날 저녁에 사위가 술과 고기를 준비하여 신부의 부모를 뵈고 취한 뒤에야 신방에 들어간다.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어서 중들도 절 옆에 집을 마련하여 처자를 두며, 거지라 하더라도 모두

23) 性比는 일반적으로 여자를 100으로 하여 산출한 남자의 수를 말한다.

<表 3-4> 年齡別 男女의 分布(1807年)

里 姓 年 齡	東城里		白丹里		今勿路里		中文里		計		總 計	性 22) 比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1歲	11	11	3	7	4	12	14	23	1	53	1	68.1
2	5	6	2	2	3	1	6	9	32	18	85	
3	3	4	3	6	1	3	1	7	14	14	32	
4	3	8	3	3	7	6	10	11	23	28	21	
5	5	1	5	2	3	5	15	8	28	16	51	
6	4	4	2	2	2		3		11	4	44	97.7
7	8	9	4	8	3	8	7	13	22	38	15	
8	1	2	1	8		2	3	2	5	14	60	
9	4	6	5	1	2	3	9	6	20	16	19	
10	5	9	1	4	4	6	8	3	18	22	36	
11	2	4		2	3	2	10	10	15	18	40	94.1
12	4	4	1		4	1	9	5	18	10	33	
13	2	5	1	2	3	6	6	11	12	24	28	
14	5	4	1		4	4	8	4	18	12	36	
15									18	12	30	
1-15 (%)	62	77	30	45	43	59	109	106	244 31.4	287 27.6	531 29.4	85.0
16	2	4		1	3	6	4	7	9	18	27	82.7
17	5	11	2	1	1	5	7	6	15	23	38	
18	1	3		2	4	1	8	4	13	12	25	
19	4		1	1	4	3	4		13	8	21	
20	7	4	3	1	1	6	6	9	17	20	37	58.9
21	3	7		6		2	1	6	4	21	25	
22	1	2				1	1	4	2	7	9	
23	1	4	1	1	3	6	5	6	10	17	27	
24	4	7	2	2	3		3	10	12	19	31	
25	6	2		2	3	2	6	3	15	9	24	63.2
26	8	6	3	1	3	4	3	11	14	22	36	
27	4	3	1	2	1	1	4	9	10	15	25	
28		9	2	4	3	3	4	6	9	22	31	
29	5	5	2	4	3	6	4	2	14	17	31	
30	3	2	4	2	1	6	5	9	13	19	32	81.8
31	6	8	2	5	6	4	8	7	22	24	46	
32	3	2	3	4	2	1	3	7	11	14	25	
33	3	4	2	2	2	1	1	5	8	12	20	
34	1	2	1	3	1		9	8	12	13	25	
35	4	5	3	1	2	1	1	7	10	14	24	66.0
36	1	3		2	2	1	3	2	6	8	14	
37	1	1	1				1	4	3	5	8	
38		4				1	5	4	5	9	14	
39	4	6	1	6	2	1	3	1	10	14	24	
40	4	1	2	2	1			8	7	11	18	
41	4	8	6	2	1	3	4	7	15	20	35	
42	4	2	4	1	1	2	1	6	10	11	21	
43	1	5			1	3	3	6	4	14	18	
44	5	3		3	1	2	1	3	7	11	18	

22) 性比는 매 나이에 따라 산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5세별 인구에 따라서 산출하였다. 그리고 60세 이상의老是 일괄적으로 파악하였다.

里 姓 年 齡	東城里		自丹里		今勿路里		中文里		計		總 計	性 比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45	5	1	2	4	4	3	4	2	15	10	25	78.5
46		3	1	1	3	1	2	4	6	9	15	
47	1	5		1	2	3	2	5	5	14	19	
48	6	2	1		2		4	3	13	5	18	
49		3		1	3	3	4	7	7	14	21	
50	2	3	2	4	1	2	4	5	9	14	23	67.7
51	2	1			3	6	2	4	7	11	18	
52		2		1		1	2	6	2	10	12	
53	2	8		2	1	1	2	5	5	16	21	
54	3	7		4	3	9	6	9	12	29	41	44.7
55	2	2		1	2	2	6	5	8	10	18	
56		3		5	2	4	3	3	5	15	20	
57	1	3	5	3	1	2	1	1	8	9	17	
58	2	1		1		2	1	1	3	5	8	
59		1	1	1	2		1		4	2	6	
60	5	2	4	6		2	3	5	12	15	27	69.6
16-60 (%)	126	170	62	96	78	113	155	238	421 55.0	617 59.4	1038 57.5	68.2
61	1	1	1	1	2	2	1	4	5	8	13	
62	2	3		1	2	1	2	4	6	9	15	
63	3	2	2	3	1	1	5	8	11	14	25	
64	1	1		5	1	3	4	7	6	16	22	
65	1	3	1	2				2	2	7	9	
66	3	1	2	1	1		1	4	7	6	13	
67	2	3		1		1	3		5	5	10	
68	1	3	1	1	1	2	2	3	5	9	14	
69	2		1	1	1		1	3	5	4	9	
70		2	1	1	1	1	3	2	5	6	11	
71	1	1	1	1		1		3	5	6	8	
72	1	1		1		1	1	5	2	7	9	
73	3	4		2	2	2		2	5	10	15	
74	1	1	2	5		3			3	9	12	
75			1	1	1		1	1	2	2	4	
76	1		3	1	1				5	1	6	
77	1		2		2		1	1	6	1	7	
78	1	2		2	1	1	2	1	4	1	7	
79			2		2		1	2	5	2	10	
80					1		1		2		2	
81							1		1		2	
82						1		2		3	3	
83			1						1		1	
84	1							1	1		1	
86						1				2	2	
87		1						1		1	1	
89	1								1		1	
91							1		1		1	
93						1	1		1		1	
97						1				1	1	
123			1						1		1	
61이 상(%)	27	29	22	29	20	22	31	55	100 13.1	135 13.0	235 13.1	74.1
총계	215	276	114	170	141	194	295	399	765	1039	1804	

처첩을 둔다. 또 公私로 화물을 운반하고 장사하는 배가 잇달아 끊어지지 않는데 바닷길이 험하고 멀어서 자주 표류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난다. 그래서 주민들은 딸 낳는 것을 중히 여긴다.²⁴⁾

라 하여 제주 지역의 女多 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제주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육지와 왕래가 어려웠고, 표류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여 의사자가 많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역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남자들의 상당수가 육지로의 도망도 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남자의 수가 적고, 여자의 수가 많게 되자, 대부분의 남자들은 妻妾을 두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필자가 분석하고 있는 戶籍中草에서도 妾의 기재가 매우 빈번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제주 지역의 경우 性比는 당연히 낮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만 그 수치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1807년의 자료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으나, 일정한 부분에서 당시 제주의 실상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1세부터 15세까지의 성비는 85.0%로 상대적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16세부터 60세까지의 성비는 68.2%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丹城縣·彦陽縣·鎭海縣의 경우²⁵⁾ 등 일반적으로 실제 役의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16~60세의 남자에 대한 호적상의 기재는 여자에 비해 남자의 경우가 弱·老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

24) 李元鎭, 『耽羅志』, 濟州 風俗條.

求婚者 必備酒肉 納采者 亦然昏夕 壻備酒肉 謁婦之父母 醉後乃入房
女多男少 僧皆作家寺傍 以畜妻子 雖行乞者 並畜妻妾 且公私運販之船
絡繹不絕 海路險遠 屢致漂沒 故州人 以生女爲重.

25) 은기수, 앞의 논문, PP.53-65 참조.

주 大靜縣의 경우는 그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타 지역에서 남자에 대한 조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1세~15세까지의 성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의 경우는 1세~15세까지의 남자에 대한 조사가 16세~60세까지의 남자에 비하여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일까. 이는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왜냐하면 실지 법전상의 國役 담당자에 대한 조사보다 國役에서 제외되는 계층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당시 제주의 경우 실지 국역 대상자인 남자의 수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이 제주 지역 남자의 경우는 1人 10役을 담당할 정도로 役의 賦課가 과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15세 이하의 남자에게까지 役을 부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된다. 男丁에 대한 役의 과중은 궁극적으로 도망을 통한 避役者를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이에 豆毛岳²⁶⁾이라 칭하는 특수 계층의 발생을 가져 왔던 것이며, 그 수는 한 때 濟州島民의 거의 반에 이르는 대규모이기도 하였다.²⁷⁾ 1629년(인조 7)에서부터 1823년(순조 23)까지 근 200여년간 제주도민의 出陸을 금지하는 조치를 마련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年齡別 人口構造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表

26) 豆毛岳은 豆禿也只·頭無岳·頭無惡·豆毛惡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원래는 한라산을 頭無岳 또는 豆毛岳이라고 칭한 데서 말미암은 제주도인에 대한 속칭이었지만, 15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는 이른바 出陸濟州島民, 즉 원주지인 제주도를 불법적으로 이탈하여 주로 전라·경상도 연해지역에 거주하던 제주도민을 가리키는 공식명칭이었다(韓榮國, 「‘豆毛岳’考」, 『韓祐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P.809).

27) 韓榮國, 「‘豆毛岳’考」, P.814.

3-4>를 토대로 연령별 男女 人口의 구성도를 작성한 것이 <表 3-5>이며, 5세별 인구에 따른 남녀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 <表 3-6>이다. <表 3-7>²⁸⁾과 <表 3-8>²⁹⁾은 大靜縣의 연령별 구조를 彦陽縣·鎮海縣과 비교하기 위하여 인용한 것이다

大靜縣의 弱(1~15세), 壯(16~60세), 老(61세 이상)에 따른 인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1~15세 29.4%, 16~60세 57.5%, 61세 이상 13.1%이다. 이를 彦陽縣 1~15세 23.2%, 16~60세 65.9%, 61세 이상 10.9%,³⁰⁾ 그리고 鎮海縣 1~15세 8%, 16~60세 78.4%, 61세 이상 13.7%³¹⁾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1~15세의 경우 彦陽縣과 鎮海縣에 비해 각각 6.2%, 21.4%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大靜縣의 호적 작성이 彦陽縣·鎮海縣에 비하여 15세 이하의 童幼에 대한 조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1세의 경우 호적에 「生」이라 표시하여 이를 구별하고 있는데, 호적 작성이 前年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호적중초가 官의 확인을 거치는 사이에 출생한 경우에 이를 기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07년의 자료에 1세의 경우 男兒 1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에 연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表 3-5>, <表 3-7>, <表 3-8>의 人口 構成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세 이하의 경우 大靜縣 지역이 비교적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60세의 경우 鎮海縣, 彦陽縣, 大靜縣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鎮海縣과 彦陽縣이 15세 이하의 인구에 대한 조사의 불철저에서 오는 상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별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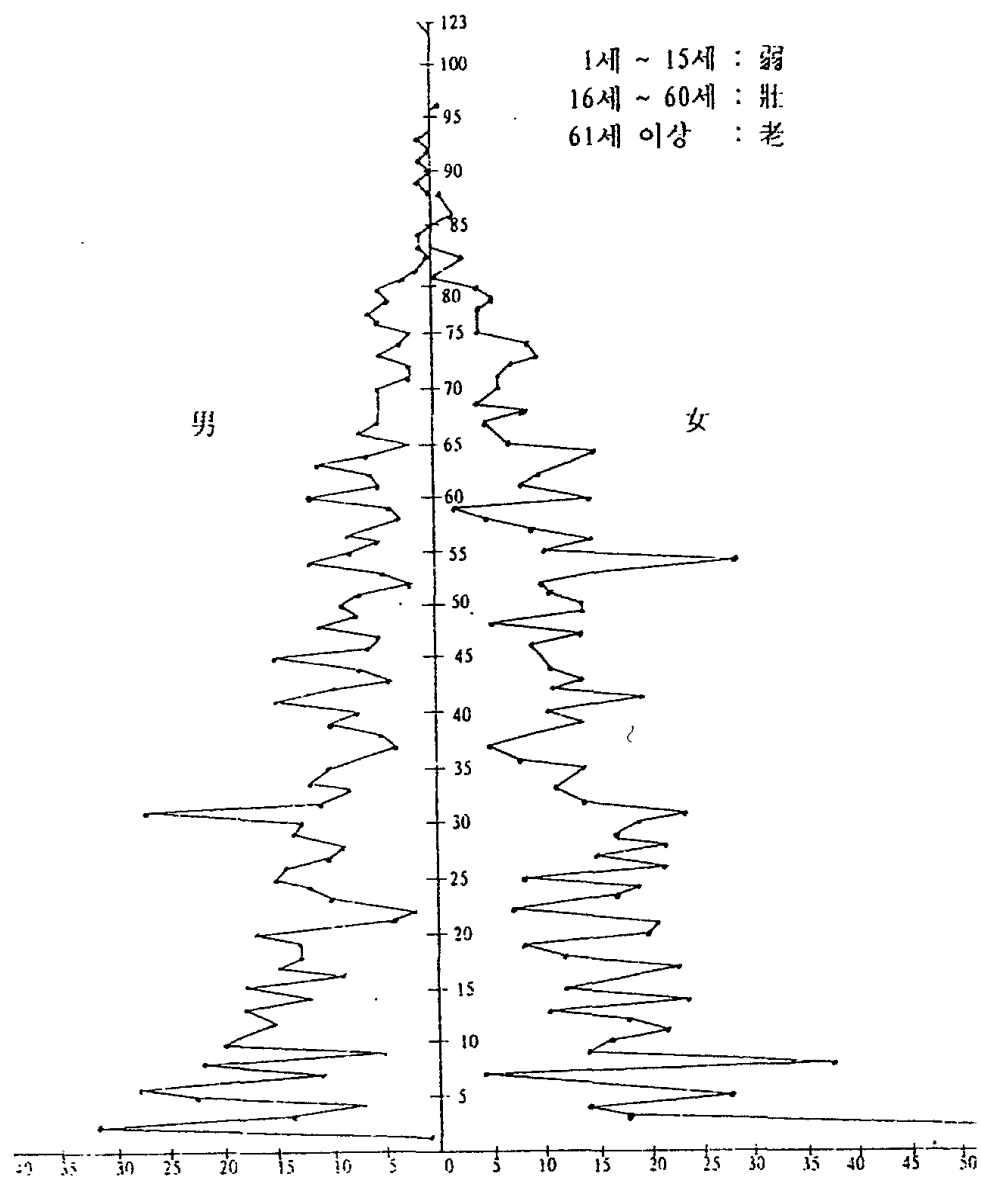
28) 金錫禧, 「18·19세기 戶口의 實態와 身分變動」, P. 364에서 再引用.

29) 武田行男, 「19世紀 鎮海縣의 社會構造とその變動」, 『學習院大學藏 朝鮮戶籍臺帳の基礎的研究』, P.48에서 再引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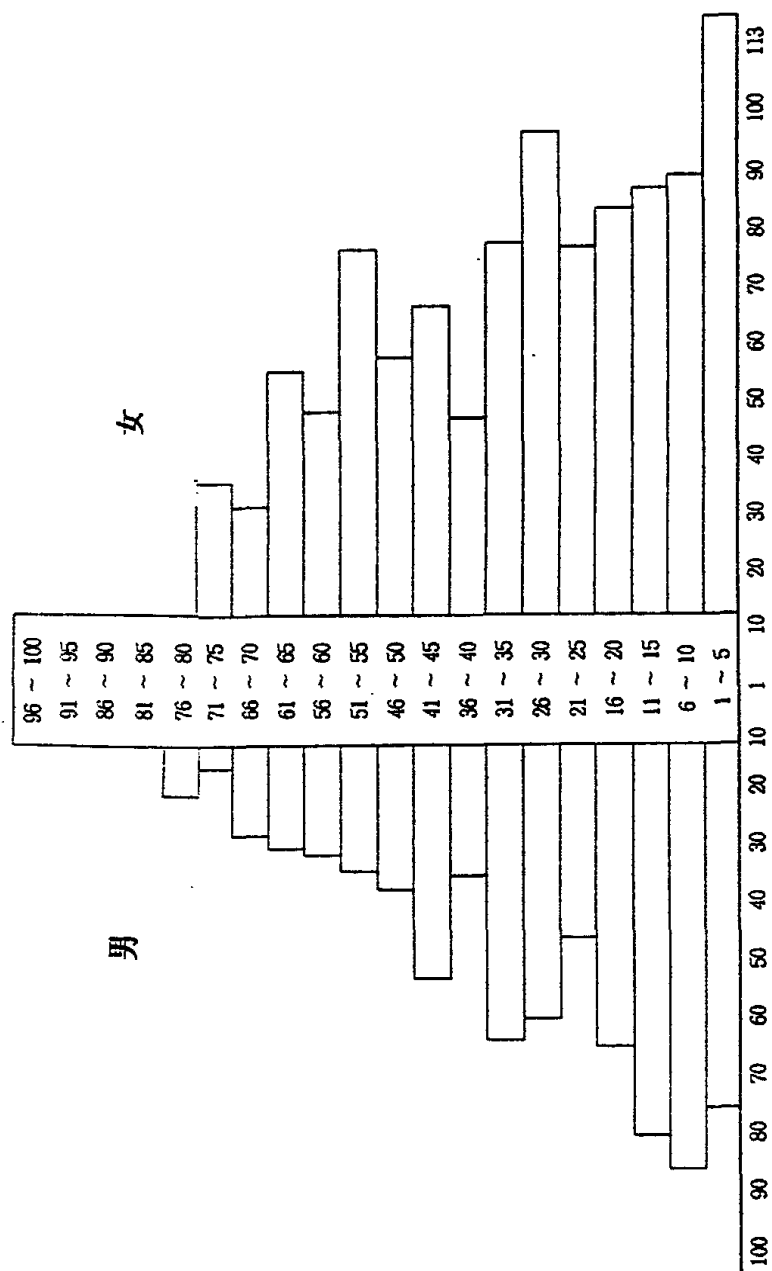
30) 金錫禧, 「18, 19세기 戶口의 實態와 身分變動」, P. 368 참조.

31) 武田幸男, 앞의 논문, P. 4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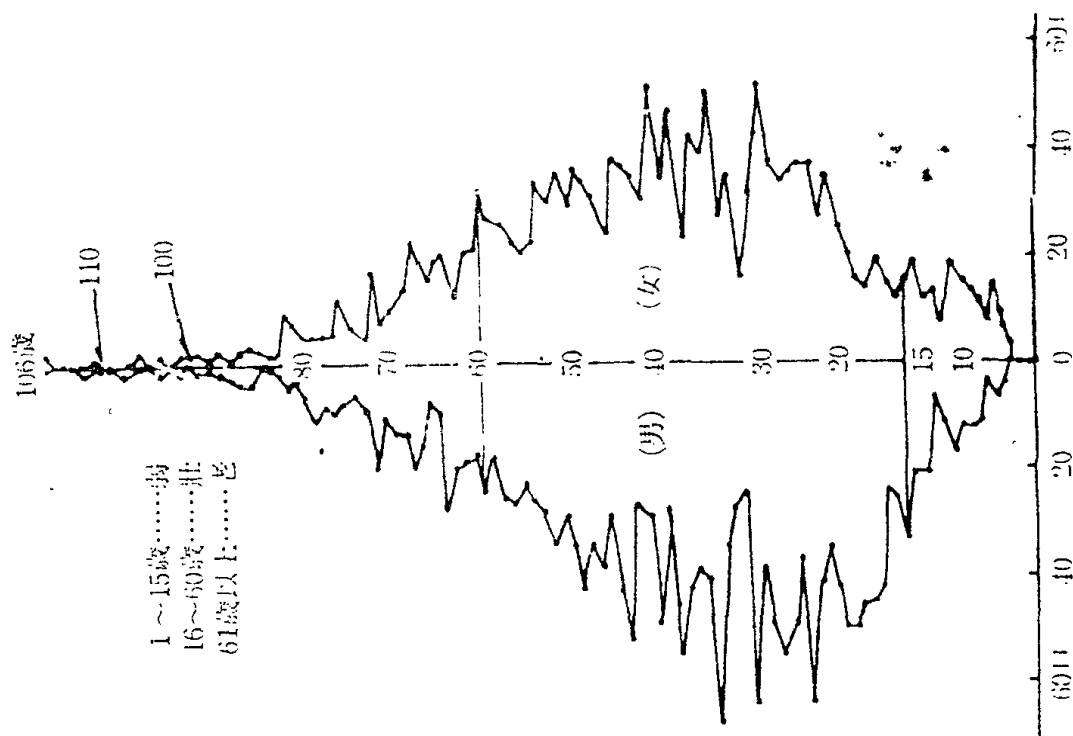
<表 3-5> 大靜縣의 年齡別 男女 人口數 構成圖(1807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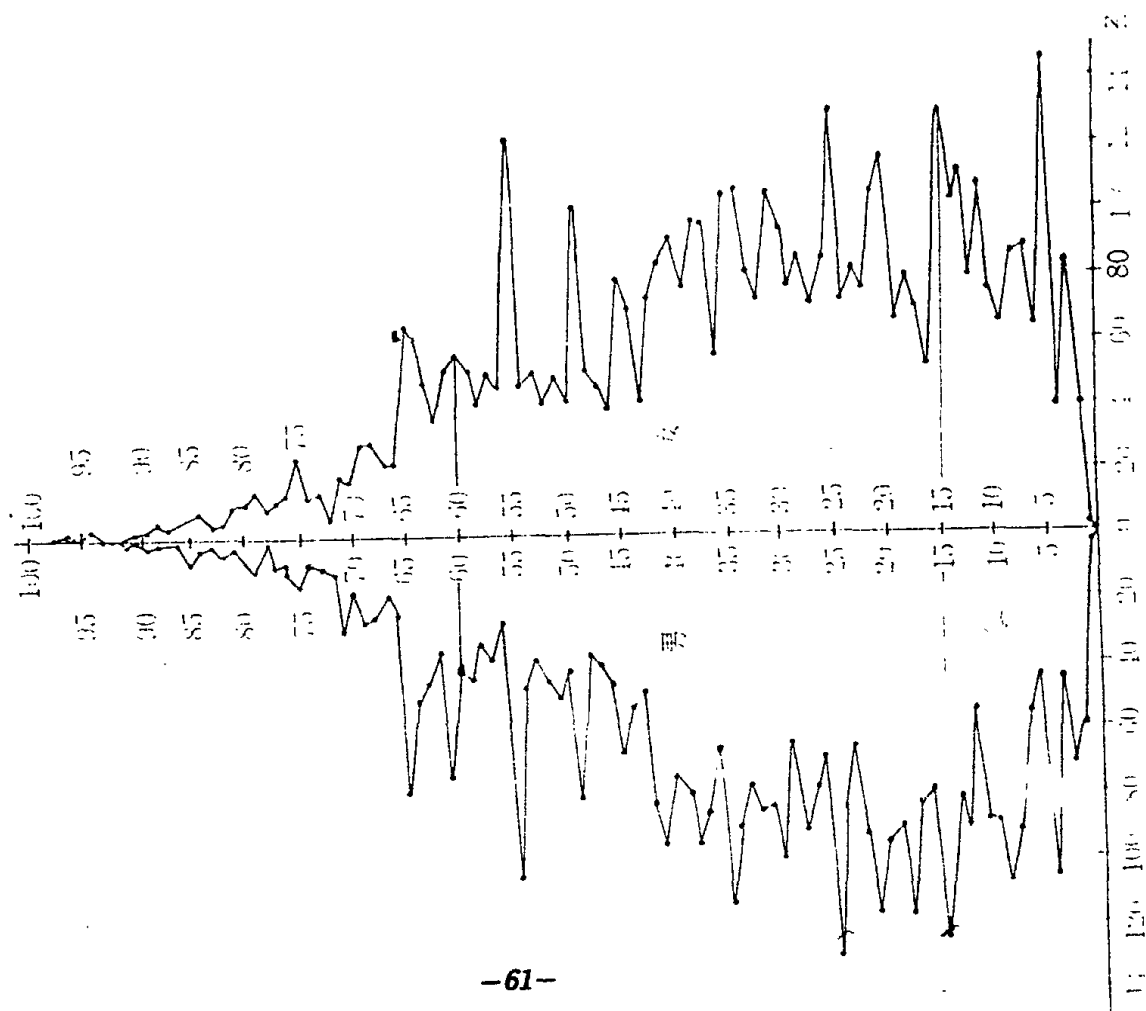
<表 3-6> 大靜縣의 5世別 男女 人口數 分布表(1807年)



〈表 3-8〉 鎮海縣 年齡別 男女口數 構成圖
(1825年)



〈表 3-7〉 彥陽縣 年齡別 男女人口數 構成圖
(1798年)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못한다.

61세 이상의 인구는 大靜縣·彦陽縣·鎭海縣이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위 3개현의 인구 구성도에서 大靜縣과 彦陽縣은 비교적 피라미드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鎭海縣은 15세 이하의 조사가 거의 누락되어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결국 大靜縣의 인구조사가 당시의 실상을 가장 잘 반영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제주지역 호적작성이 그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Ⅳ. 大靜縣 住民의 身分·職役別 構成과 그 變化

1. 職役의 身分別 分類

戶籍資料를 이용하여 身分變動의 실상을 규명하는 학자들의 커다란 고민 중의 하나는 호적자료에 나타나는 職役을 가지고 어떻게 身分을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戶籍大帳은 신분을 구별해 놓은 자료는 아니다. 호적 작성의 목적은 軍役을 포함한 각종 身役을 부과하기 위한 기본대장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對民政策을 위한 가장 원천적인 파악대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호적대장에 신분을 명시해 놓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호적대장에는 男子의 경우 그가 담당하고 있는 國役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일컬어 흔히 職役이라 한다. 혈통과 세습에 기초하여 인간과 인간을 차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형성된 身分制는 朝鮮社會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사회속에서 男子들이 부담해야 하는 직역의 경우도 인간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호적상의 직역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분석해냄으로써 身分構造 및 變動의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즉, 어느 職役을 어떤 身分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身分制가 해당 地域의 일정한 역사적 조건위에서 형성된 일종의 사회 구성물이라 할 때, 時期에 따

라, 혹은 地域에 따라 職役의 身分 設定이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朝鮮後期는 전기의 社會秩序가 해체되어가는 과정의 시기이기 때문에 職役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신분을 규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에 연유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濟州地域의 호적자료인 戶籍中草에 나타나는 職役을 身分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기존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제주 지방에서 확인되는 職役을 身分과 연결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기 때문이다. <表4-1>은 호적대장의 職役 分析에 따른 身分 分類의 다양한 견해들을 학자들에 따라 구분해 본 것이다.

<表4-1>의 분류 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분을 兩班-中人-常民-奴婢, 兩班-準兩班-中人-常民-奴婢 혹은 兩班-常民-奴婢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職役을 서로 다른 신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는 같은 신분 속에서도 각기의 원칙에 따라 직역을 달리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이다. 위 분류를 그대로 제주도 지방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의 분류 기준에 일정한 示唆를 받고, 여기에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身分에 따른 職役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주 지방의 身分別 職役의 분류를 설정하기 위하여 필자는 먼저 戶籍中草에 담긴 다양한 정보들 가운데 신분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추출해 내어 검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우선 戶籍中草 作成上에 나타나는 記載形式의 차이를 통해 賤人과 良人의 良人 신분을 구분할 수 있다. 둘째는 職役의 내용을 앞서 살핀 학자들의 견해를 참조하면서 제주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속에 각 신분 별로 직역을 분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婦女者의 呼稱을 검토하여 신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추출하여, 이를 신분 분류에 적용

〈表 4-1〉 戶籍大帳의 職役에 의한 既存의 身分分類

身分 學者	兩班	中人	常民(平民)	奴婢
韓榮國 ¹⁾	A: 諸 實·散職 帶職者(現·前)一切 B: 諸 品階 所有者 一切 C: 進士, 生員, 幼學, 出身, 及第 D: 學生, 校生, 院生, 童蒙, 閑良, 武學, 樂儒, 樂武 E: 諸 衛 所屬者 一切 F: 諸 軍官 一切 G: 各色 都訓導, 各色 旗牌官, 各色 知縣官, 各色 哨官, 各色 將官, 別將, 別武士	吏胥層 H: 安逸戶長, 戶長, 各色 人吏, 各色 貢生, 各色 書·算員, 各色 小童, 各色 伺候, 司僕 諸員, 巡廳 有司, 鄉有司, 假鄉所, 退吏	良人層 I: 諸 軍役 帶役者 一切(N類 除外), 無役良人 J: 諸 軍保 帶役者一切(M類除) K: 各色 匠人 一切(L類 除外) 良人(賤役)·賤人層 L: 店汗, 藥工, 需米軍, 全黃軍, 探銀軍, 卒習軍, 造軍, 船鐵 軍, 炭軍, 皮匠, 柳器匠 M: 水保, 格保, 燒保, 軍牢保, 束 伍保, 軍鎗保, 藥保, 驛保, 騎 保, 各色 吏保, 巡廳將保, 各 色 工匠保, 繕工監保, 藥工保 , 藥色保, 歌唱保, 調唱保, 歌 僧保, 補役保 N: 水軍, 水鎮軍, 水軍別隊, 水陸 軍, 沙工, 格軍, 浦軍, 烽燧軍, 擗發軍, 束伍, 各色 火兵·軍牢 O: 各色 倉直, 各色 庫直(子), 各色 下典, 各色 使令, 各色 廳率, 各色 通引, 各色 妓生, 藥生, 藥干, 水庫干, 文書直, 客舍直, 竹田直, 藥直, 杖答直 , 梧子山直, 驛吏(卒) P: 才人, 乞乞人, 巫屬	雇工, 各色 奴婢
金泳謨 ²⁾	〈兩班〉 前·現文官, 前·現武官, 文武品階, 納粟, 生員, 進士, 及第 〈準兩班〉 校生, 院生, 童蒙, 閑良, 武學, 出身, 幼學(學生), 衛所屬者, 軍官, 選武 軍官, 都訓導, 別將, 別武士	樂武, 樂儒, 雜職(醫生, 律生) 衙前(戶長, 人吏, 貢生, 書員, 算 員, 小童, 司僕, 假鄉所, 羅將)	〈良人〉 良軍, 軍保帶役者 一切, 匠人 一切, 贖良, 〈賤役良人〉 賤匠, 賤保, 水軍, 束伍, 賤軍 〈賤人〉 驛吏(卒), 下典, 直, 使令, 通引, 妓生, 馬夫, 才人, 巫屬	私奴婢, 官奴, 公奴, 奴+賤人 奴+良人 奴+賤役 良人
朴性植 ³⁾	〈兩班〉 1類: 前·現職官者, 帶品者, 進士, 生 員, 儒學, 校生, 院生, 童蒙, 出 身, 閑良 〈準兩班〉 2類: 老職受帖者, 軍職受帖者, 納粟 受帖者, 功臣 與 同後裔, 諸衛 , 許通, 樂儒, 樂武, 武學, 庶	〈軍官, 鄉吏〉 3類: 諸戶長, 記官, 鄉吏, 貢生, 律生, 醫生, 假吏, 書員 等	〈色人(軍·保·匠)〉 4類: 良人, 諸兵 與 保, 水軍 與 保, 烽燧軍 與 保, 探藥軍, 各營所屬軍 與 保, 束伍軍 與 保, 官匠, 官匠保, 私匠 〈良·賤(官屬 與 保)〉 5類: 書寫郎廳, 小童, 日守, 使令 , 鄉校齋直, 獄監考, 藥夫, 司僕諸員 等, 軍器監, 諸保 (內官, 醫生, 醫女 等) 諸屬(鄉校, 作廳, 鄉廳 等) 諸保(使令, 軍官廳, 書院) 〈良·賤人(雜)〉 6類: 雇工, 기타(露夫, 病人, 盲 人, 巫夫, 居士, 僧人, 定配 罪人, 花郎, 向化子孫	7類: 內奴, 寺奴, 官奴 校奴, 驛奴, 院奴, 私奴, 良役 寺奴

1) 韓榮國, 「府의 戶口와 그 構成分布」, p.367.

2) 金泳謨, 『朝鮮支配層研究』, pp.35-36. - 65 -

金錫禧 ⁴⁾	<兩班> A: 前·現職者 및 帶品者(四祖 중 兩班이 아니거나 孀女者 呼稱이 氏가 아닌 자는 제외) B: 進士, 及第 등 科試合格者 C: 幼學, 童蒙 <準兩班> D: 軍官, 閑遊者 등으로 妻가 氏 E: // // 妻가 姓, 召史 F: 帶品職者 중 A類에서 제외된 者로 妻가 氏·姓·召史, 納粟帶品者	安邊戶長, 記官, 貢生 등의 吏胥層	良人의 諸軍役帶役者, 諸軍保帶役者, 驛吏, 驛保, 各色匠人, 鄉廳有司, 鄉校齊直, 官廳下典, 巫夫 등	奴婢
李俊九 ⁵⁾	前·現職官 및 帶品職, 進士, 生員, 及第, 出身, 幼學, 忠義衛(18c 중반 까지), 業儒·業武(숙종 22년 이전), 武學·기타 諸衛(17c 초까지), 孀女子(氏)	일시적 免役 및 歇役 閑遊者, 忠義衛(18c 후반 이후), 武學·기타 諸衛(17c 중반 이후), 校生, 院生, 閑良, 出身(中·常民), 諸軍官, 旗牌官, 知數官, 都訓導, 蒙司僕, 庶孽, 許通, 業儒·業武(肅宗 22年 以後), 戶長, 記官, 貢生, 律生, 醫生, 帶品職(兩班에 瑕疵가 있는者, 孀女子(姓))	各色下級衙前(中人類 除外), 各色 軍役 및 搖役, 各色 保人, 各色 匠人, 驛屬人, 無役良人, 孀女子(召史, 助是, 良女, 驛女)	公賤 公賤婢 私賤 私賤婢

3) 朴性植, 「18世紀 丹城地方의 社會構造」, pp.357-358.

4) 金錫禧, 앞의 논문, 『人文論叢』 26, 부산대, 1984, p.369.

5) 李俊九, 『朝鮮後期身分職役變動研究』, p.32.

하고자 한다.

먼저 戶籍中草 작성상에 나타나는 기재양식의 차이부터 검토해 본다. 다른 지역의 호적대장에서 기재양식상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류는 일반적으로 노비와 그 외의 신분층, 소위 넓은 의미의 良人과 賤人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호적 기재양식은 戶主와 妻의 姓, 本貫, 이름, 나이, 職役, 4祖(父·祖·曾祖·外祖)의 직역과 이름(외조의 경우 姓·本貫도 기재)을 각각 기재하고, 同居家族·소유 奴婢 및 雇工을 차례로 기재한다. 그런데 노비의 경우는 소유관계와 그 신분의 유래를 밝히는 것이 특징이다. 奴婢戶는 크게 公奴婢와 私奴婢로 구분된다. 공노비는 소유의 주체가 국가 또는 官廳인 경우이며, 사노비는 개인 소유 노비를 말한다. 따라서 공노비는 소속 官廳을 기재하고, 사노비는 上典의 이름을 기재한다. 사노비 중에서 外居奴婢는 居住地를 반드시 기재하였다.

濟州島의 戶籍中草상에서 확인되는 奴婢戶는 모두 公奴婢戶이다. 私奴婢가 호주인 경우는 한 戶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노비호의 기재상의 특징을 확연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다른 지역과 대동소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公奴婢戶의 경우 그들의 소속 관청을 반드시 기재해 놓고 있다. 예를 들면 內資寺, 內贍寺, 仁順府, 仁壽府, 司贍寺, 宗親府, 典醫監, 官奴, 校奴, 院奴 등이 그것이다.

또한 公奴婢戶는 戶主 자신과 妻의 父母를 철저하게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그 신분의 由來를 살피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공노비가 單獨戶를 구성하지 않고 다른 戶에 예속되어 있는 경우도⁶⁾ 부모의 職役과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奴婢戶의 경우

6) 이 경우의 公奴婢는 거의 私奴婢와 다름 없는 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시말해 공노비를 데리고 있는 주인이 그를 마음대로 매매할 수는 없었지만, 소속 官廳에 지불할 身貢을 대신 지불하는 代價로 사노비와 다름없이 취급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는 그 소속 및 戶主母와 妻母의 良人 혹은 賤人 여부를 밝히고 있어서 다른 戶와 확연히 구분된다.

다음으로 職役의 내용에 따른 신분 분류의 방법이다. 身分制 社會에서 戶籍에 나타나는 職役은 일정한 신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冒錄·冒稱은 있다 할지라도 職役에 관한 기록은 호적이 작성되었을 당시, 그 사회에서의 사회적 地位를 어느 정도는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地域의 역사적 조건과 시대적 推移에 따라 직역과 신분의 관계는 매우 유동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수많은 職役에 대한 하나하나의 의미를 낱낱이 분석, 검토하여야 하는 장구한 시간과 힘겨운 작업이 요청된다. 다시말해 각 집안 구성원의 職役 變動을 家系別로 일일이 作成·檢討하여 어떠한 보편성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개인의 작업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몇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職役과 身分을 연결지음으로써 濟州島 地域의 전체적인 身分構造의 틀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첫째, 通德郎·將仕郎·明月萬戶의 官品者와 儒生, 幼學, 鄉貢進士 등의 직역은 양반 신분으로 설정한다. 통덕랑과 장사랑은 代加⁷⁾에 의하여 취득한 관품이라 생각되며, 이 경우 代加에 의하여 취득한 散階는 양반의 가문을 유지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

7) 代加制는 조선시대에 文·武 現직 관원이 堂上官(정3품 통정대부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실시한 제도이다. 즉, 조선시대에는 정기승급이 아닌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에 특별히 산계를 더하여 주었다. 그러나 본인이 資窮(정3품 통훈대부)에 막혀 더 이상 관직을 오를 수 없을 때에 자신에게 別加된 산계를 대신 아들·사위·아우·조카에게 加하여 주었다(崔承熙, 「朝鮮時代 兩班의 代加制」, 『震檀學報』 60, 1985).

다.⁸⁾ 명월만호는 濟州鎭管의 明月浦에 설치되었던 從4品の 관직이다.⁹⁾ 유학은 일반적으로 사족으로서 벼슬하지 못한 양반층을 말한다. 그러나 19세기의 幼學을 모두 양반 신분으로 규정하는데에 대해서는 일부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⁰⁾ 즉 19세기에 이르러 兩班의 급격한 증가는 幼學戶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양반·중인·상민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경우 유학의 현격한 증가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더구나 濟州島에서는 유학의 직역을 冒錄·冒稱함으로써 양반으로 상승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19세기에 이르기까지 幼學戶를 양반으로 파악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¹¹⁾

掌議·齋長 등의 직역도 양반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당시 제주도내에서 향교의 출입은 양반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제주도의 오랜 관행은 향교의 출입 자체가 다른 사람과의 차등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¹²⁾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제주 지역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掌議의 職役을 冒錄·冒稱하는 현상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 점이다. 즉 장의 직역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本考에서는 일단 이들을 모두 양반 신분으로 파악하였다.

留鄉座首·留鄉別監·風憲 등 향청과 관련된 직역 역시 양반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었던 직역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양반 신분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직역 역시 掌議·齋長 등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의 호적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직역이다. 제주도의 경우, 향교에서의

8) 崔承熙, 「朝鮮時代 兩班의 代加制」, 『震檀學報』 60, 1985.

9) 『大典會通』 卷4, 兵典 外官職條(全羅道).

10) 崔承熙, 앞의 논문, 『國史館論叢』 1, 1989.

11) 제주지역 호적중초에서 확인되는 유학 직역자들의 가계를 살펴보면, 19세기의 경우도 대부분 양반으로 파악된다.

12) 조성윤, 앞의 논문, p.196.

직책과 鄉職을 양반임을 상징하는 職役으로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은 특이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는 제주도민의 경우 그만큼 中央官僚職에 진출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科試를 통한 중앙관료직으로의 진출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었던 것이다. 설사 이를 극복하고 중앙에 간다하더라도 경제력의 부족으로 장기간의 체류가 곤란하였다. 조선후기 제주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邑誌類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濟州島民의 風俗 중의 하나로 ‘不貴京職’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점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中人身分¹³⁾의 직역으로 職役名에 同知 혹은 僉知가 붙거나, 가계상으로 보아 양반으로서 瑕疵가 있는 品職者들은 대부분 納粟品職者¹⁴⁾로 판단하여 중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品官이라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양반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중에는 濟州子弟¹⁵⁾로

13) 中人은 협의의 중인과 광의의 중인으로 구분된다. 협의의 중인은 譯官醫官·算官·律官·曆官 등 技術官을 총칭하며, 광의의 중인은 기술관뿐만 아니라, 鄉吏·胥吏·土官·將校 등 중간신분층을 의미한다. 필자는 중인을 광의의 중인 즉, 중간신분층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14) 納粟品職者에 대한 신분은 諸家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납속품직자를 兩班, 準兩班, 中人, 常民 등으로 서로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납속의 경우 자신 當代의 免役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양반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며, 그리고 상민과는 그 처우에 있어서 구별되는 존재로 생각되기 때문에 중인으로 분류하고자 한다(李俊九, 「朝鮮後期 身分構造 理解의 諸問題 檢討」, 『大丘史學』 34, 1988, 참조).

15) 濟州島는 원래 耽羅國이라는 독립국이었다. 1105년(숙종 10)에 탐라국이 해체되었으나, 조선초기까지 기존 탐라국의 지배세력인 星主中心의 土官制가 운영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제주지역에 대한 懷柔策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濟州子弟의 上京·從仕·受祿의 제도였다. 濟州牧使가 제주 三邑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仕官에 적합한자를 택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관찰사는 왕에게 아뢰어 확정지으며, 그 인원은 30명이다. 병조에서 이들을 관장하여 매일 근무케 하였으며, 兩都目(正月, 7月)으로 仕滿 450일에 加階하고, 종6품 1인,

서 취득한 품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구분할 방도가 현재로서는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는 못한 土官의 성격이 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직역자 중에는 가계에 따라 양반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제주지역 地方軍¹⁶⁾의 將校層에 해당하는 助防將·千摠·把摠·哨官·城將 등의 직역 역시 중간신분층인 중인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記官·戶長·貢生·作吏·假吏 등 鄉吏層의 직역도 중인층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이 외의 職役은 대부분 常民 身分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鎭撫·旗牌·假率·防軍·募軍·烽軍·烟軍·遺軍·牙兵·城丁·旗手·修工軍 등 軍役과 관련된 직역, 書堂直·軍器直·果直·山直·院直·漆直 등 ‘~지기(지키는 사람)’의 직역, 목장의 업무와 관계된 群頭·牧子·習馬 등의 직역, 手工과 관련되는 弓匠·席匠·紙匠·水鐵匠·矢人·匠人·弓人 등의 직역, 관둔전 경작자인 畚漢과 한약을 캐는 일을 담당하는 藥漢 등이다.

종7품 1인, 종8품 2인, 종9품 2인의 遞兒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주자제의 임무는 서울에 머무르면서 매일 병조에 출근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上京하여 王城을 지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뿐, 실제로는 職事가 없는 상태였다(『經國大典』 卷4, 兵典 番次都目 濟州子弟; 『大典會通』 卷4, 兵典 番次都目 濟州子弟, 參照).

16) 正祖年間의 資料인 「濟州兵制烽臺摠錄」(奎章閣圖書 No.4485)에 의하면, 당시 濟州三邑의 軍制는 正兵과 雜色兵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정병은 다시 束伍兵·牙兵·馬兵으로 구분되며, 그 조직은 속오병이 3部 6司 30哨, 아병이 4哨, 마병이 2隊 10哨로 편성되어 있었다. 정병의 규모는 44초에 6,039명이다.

한편, 잡색병은 濟州牧이 4,216명, 大靜縣이 816명, 旌義縣이 1,422명이다. 이를 모두 합한 병력이 12,493명이며, 이 속에 지휘관으로 萬戶 1員, 別將 2人, 千摠 3人, 把摠 6人, 哨官 44人, 執事 13人, 城將 8人, 助防將 8人, 雉摠 36人이 있었다.

한편, 職役만으로 신분을 명확히 분류할 수 없는 경우는 婦女子의 호칭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부녀자 호칭에 있어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호칭이 신분의 尊卑를 나타내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夫(남편)와 親父 가운데 어느 쪽의 신분을 따르는지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四方博의 연구 이후에 부녀자의 호칭은 夫(남편)에 준하는 것¹⁷⁾으로 파악하는 것이 통설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李俊九는 이 견해를 비판하고 부녀자의 호칭은 夫職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親家の 姓과 결합되어 親父의 신분 내지 庶孽從母의 원칙에 준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¹⁸⁾ 필자도 대체적으로 이 견해에 동조한다.

조선시대의 호적대장에 나타나는 부녀자의 호칭으로 外命婦·(姓)氏·(姓)姓·(姓)召史·(姓)助是·良女·婢 등을 들 수 있다. 外命婦·(姓)氏는 양반 부녀자를 지칭하고, (姓)姓은 중인 신분의 부녀자를 호칭하며, 그리고 (姓)召史·(姓)助是·良女는 상민 부녀자에게 붙여 부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濟州地域의 戶籍中草에서는 부녀자의 칭호로 (姓)姓·(姓)助是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他地域의 호적에서 확인되지 않는 (姓)女·(姓)父·(姓)德 등의 호칭이 나타난다. 여기서 (姓)父·(姓)德의 경우, 父와 德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父와 德이 어진이, 순덕이·복덕이 등을 의미하는 부녀자들의 이름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의미를 단정할 수가 없어 일단 호칭으로 간주하여 둔다. 그렇게 볼 때 제주 지역의 경우 兩班 신분의 부녀자 칭호는 (姓)氏이며, (姓)召史는 中人和 常民 신분의 부녀자 호칭으로 생각된다. (姓)女·(姓)父·(姓)德은 상민 부녀자에게 붙여 부른 것인데, (姓)父·(姓)德은 상민 신분 중에서도 주로 下層 常民層 婦女子의 칭호로 추정된다.

17) 四方博, 앞의 논문, p.378.

18) 李俊九, 앞의 책, pp.15-19.

이러한 몇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하면 호적중초상에 나타나는 직역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¹⁹⁾

A.兩班 : 明月萬戶, 副護軍, 司果, 副司果, 兼司僕, 通德郎, 將仕郎, 同知中樞府事, 出身, 武科初試, 儒生, 幼學, 留鄉別監, 留鄉座首, 風憲, 鄉貢進士, 掌議, 齋長, 訓長, 青衿, 廩生, 院生, 校生, 業儒 등.

婦女子:(姓)氏.

B.中人 : 品官, 閑良, 忠翊衛, 助防將, 千總, 城將, 把總, 將官, 御營哨官, 平役軍官, 業武, 巡將, 戶長, 鄉吏, 記官, 執事, 貢生, 譯生, 漢生, 接生, 待闕生, 製述生, 作吏, 假吏, 鎮吏, 鎮書記, 鎮訓導, 馬監 등.

婦女子:(姓)召史(常民戶 제외).

C.常民 : 義士蔭, 孝蔭, 復戶, 書員, 假率, 小童, 使令, 旗牌, 旗手, 鎮撫, 城丁, 募軍, 直軍, 平役軍, 烽軍, 烟軍, 遺軍, 牙兵, 修工軍, 羅將, 騎將, 書堂直, 軍器直, 果直, 山直, 院直, 漆直, 群頭, 牧子, 習馬, 紙匠, 水鐵匠, 弓匠, 矢人, 席匠, 冊

19) 제주지역의 호적중초를 자료로 호적상 직역의 신분별 분류에 대한 선행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조성윤, 「조선 후기 제주도 지방의 신분 구조」, 『한국의 전통사회와 신분구조』, 한국사회사연구회, 文學과知性社, pp.186-187).

兩班 A : 幼學, 儒生

B : 座首, 別監, 訓長, 齋長, 掌議

中人 A : 校生, 免講, 閑良, 司果, 品官

B : 戶長, 貢生, 記官, 作吏, 兵吏, 主事, 執事

平民 : 書員, 書記, 使令, 將官, 千總, 把總, 鎮撫, 城將, 旗牌, 旗手, 假率, 防軍, 軍器監, 番漢, 群頭, 皮匠

匠, 匠人, 畚漢, 藥漢 등

婦女子:(姓)召史,(姓)女,(姓)父,(姓)德.

D.奴婢 : 寺奴婢, 官奴婢, 校奴婢.

婢, 婢(名).

職役의 混淆 현상이 극심한 18·19세기 상황속에서 직역에 따른 이러한 신분분류는 어쩌면 무의미한 분류가 아니겠는가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이와 같이 분류한 職役이 만일 해당 身分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판명되었을 때, 이를 토대로 한 통계적 처리가 매우 허구적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職役을 일일이 분석해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후일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 계속적인 보완을 거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濟州島의 社會身分構造의 일면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해해 보고자 하는 한, 현재로서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住民의 時期別 身分構成 樣相

住民의 身分·職役別 構成을 통하여 身分構造와 그 전체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크게 1801년의 寺奴婢 혁파와 1894년의 甲午改革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1894년 갑오개혁 이전의 19세기를 다시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전체 4時期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I期는 1801년 寺奴婢 혁파를 기

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시기, Ⅱ期는 19世紀 前半, Ⅲ期는 19世紀 後半, Ⅳ期는 갑오개혁 이후의 시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체 주민의 신분을 고려해야 하나, 편의상 호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 1786年(Ⅰ期)의 身分·職役別 構成

Ⅰ期の 경우 4개 마을의 호적이 동일 시기인 1786년의 戶籍을 기본으로 분석하였으나, 今勿路里의 경우 해당 式年の 호적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795년의 호적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전체 戶主의 身分·職役別 構成을 작성한 것이 <表 4-2>이다.

Ⅰ期の 각 身分層의 전체 비율은 兩班 17.6%, 中人 21.8%, 常民 15.4%, 奴婢 45.2%이다. 이를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이분화 시켜보면 支配層이 39.4%, 被支配層이 60.6%로 피지배층이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지배층의 대다수는 奴婢들이다.

이 시기 각 身分의 특징을 살펴보자. 兩班 職役者 64호 중에 儒生의 직역을 칭하는 호주가 41호로 단연 많다. 그 외로 校生 8호, 幼學 3호, 檢事복·출신·무과급제가 각 2호, 副司果·留鄉別監·留鄉座首·鄉貢進士가 각 1호에 불과하다. 다른 마을에 비하여 中文里가 유생을 칭하는 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4개 마을에서는 가장 양반의 세력이 강한 班村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향교가 있었던 마을인 今勿路里이며, 自丹里에는 이 시기에 양반 직역자가 1호에 불과하여 이 시기에 있어서는 거의 無班村이었음을 알 수 있다.

中人의 대부분은 業武와 將官의 직역을 칭하고 있는 戶主戶들이다. 본래 業武는 兩班子技로서 武를 業으로 하는 者의 役名이었으며, 業儒와 마찬가지로 양반의 직역이었으나, 숙종 22년에 서얼의 文武之稱으로 확정·시행되어 庶孽職役化함으로써 班·常의 중간적 존재인 중

<表 4-2> 1786年度(I期) 戶主의 職役別 分布

里 職役	年	東城 1786	自丹 1786	中文 1786	今勿 1795	合 計
副司果	1					1
兼司僕				1	1	2
出身	1	1				2
武科初試	1				1	2
儒生	6			30	5	41
幼學				1	2	3
留鄉別監				1		1
留鄉座首	1					1
鄉貢進士				1		1
校生				7	1	8
(姓)氏					2	2
合 計	10	1	41	12	64	
%	9.9	1.5	32.0	18.2	17.6	
品 官			1		1	1
忠 翊	2				1	3
城 將	4		1	4		9
把 總		1				1
將 官	9	10	6	5	30	
業 武	7	3	16	1	27	
鄉 吏		1				1
記 官			2	3	5	
鎮 訓			2		2	
合 計	22	15	28	14	79	
%	21.8	22.1	21.9	21.2	21.8	
小 童		1	1	4		1
假 率			5			12
使 令			1			1
旗 牌	3	3	3			9
鎮 撫	2	1	4			7
防 軍	4	1	2			7
烽 軍	1					1
遺 軍	1					1
奮 漢				1		1
紙 匠	1					1
弓 匠	1					1
席 匠	1					1
放 砲 手	1					1
良 人	1				5	6
(姓)召史	1		1			2
(姓)女	1	1	1	1		4
合 計	19	8	18	11	56	
%	18.8	11.8	14.0	16.7	15.4	
官 奴 婢	5					5
奉常寺奴	4	4	13	2	23	
禮賓寺奴	2	1	2	1	6	
內膳寺奴	9	6	3	4	22	
內資寺奴	9	10	13	5	37	
軍器寺奴			4		4	
掌篆院奴	1	1	2	1	5	
司膳寺奴	3	4	1		8	
典醫監奴	2	1	1	1	5	
仁壽府奴	2	1	2	5	10	
仁順府奴	7	4			11	
司帝監奴	2	4		2	8	
宗親府奴		1			1	
仁順府婢	1	2			3	
司帝監婢	1	2			3	
內資寺婢		2		1	3	
內膳寺婢		1			1	
奉常寺婢	2				2	
校 奴				6	6	
校 婢				1	1	
合 計	50	44	41	29	164	
%	49.5	64.7	32.0	44.0	45.2	
總 計	101	68	128	66	363	
%	100)	(100	100)	100)	(100	

인으로 인식되었다. 뿐만 아니라 업무의 직역은 有役下層民들의 피역과 지위향상을 위한 모속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²⁰⁾ 장관은 각 군영의 종9품 초관 이상의 무관을 지칭하지만, 地方軍에서의 장관은 실질적으로 중앙의 관품을 지니고 있는 계층을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은 양반과 일반 양민과는 구별되는 중인의 상층부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品官, 城將 등의 직역과 六房官衙의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기관 및 각 鎭²¹⁾에 소속되었던 訓導 등이 중인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인층의 분포는 4개 마을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常民層은 假率, 鎭撫, 旗牌, 防軍 직역 순으로 나타난다. 4개 마을의 분포는 큰 차이 없이 주민의 11.8%에서 18.8%에 이르고 있다.

I 期의 경우 두드러진 특징은 奴婢戶가 전체 45.2%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 중에 私奴婢戶는 전혀 없으며 모두 公奴婢戶이다. 공노비호 중에서도 官奴婢戶 5호와 校奴婢戶 7호를 제외하면 152호가 寺奴戶로 대부분 內奴婢임을 알 수 있다. 寺奴戶에서도 內資寺奴婢, 奉常寺奴婢, 內贍寺奴婢의 戶를 합한 것이 88호나 차지하고 있다.

(2) 19世紀 前半(Ⅱ期)의 身分·職役別 構成

19世紀前半(Ⅱ期) 住民의 身分·職役別 構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1807년, 1825년, 1843년의 호적을 분

20) 李俊九, 「朝鮮後期の ‘業儒·業武’ 와 그 地位」, 『震檀學報』60, 1985.

21) 당시 제주는 9개 鎭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즉, 제주목 관할의 禾北鎭·朝天鎭·別防鎭·涯月鎭·明月鎭과 정의현 소속의 水山鎭·西歸鎭, 그리고 대정현 소속의 慕瑟鎭·遮歸鎭이다(『濟州兵制烽臺摠錄』, 규장각 도서 No4485).

석하였다. <表 4-3>은 3式年分の 戶主戶를 신분·직역별로 구분한 것이고, 이를 토대로 신분별 호주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 <表 4-4>이다.

<表 4-3>을 통해 Ⅱ期(19世紀前半)의 職役別 특성을 알아 보면, 먼저 양반 신분층에서 명월진 만호이다. 명월진에는 처음에 조방장이 임명되었으나, 어사 李壽鳳의 啓門에 의하여 1763년(영조 39)에 만호로 승격시키고, 제주의 出身 중에서 3인을 병조에 추천하면 병조에서 임명하였다. 그 임기는 30개월이다.²²⁾ 부호군·사과·부사과·검사복·중추부사·통덕랑·장사랑 등의 관품직역자가 상당수 나타난다. 물론 관품취득자가 모두 중앙의 實職을 역임한 것은 아니다. 濟州子弟 혹은 代加, 또는 납속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대부분은 散職에 해당한다.

그리고 출신과 무과초시의 직역이 보이는데, 출신은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아직 職을 받지 못한 자를 의미하며, 무과초시는 제주목사의 주관하에 행하여진 일종의 都試에 입격한 자를 의미한다.²³⁾

幼學·校生の 직역과 留鄉座首·留鄉別監 등 鄉廳의 직역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Ⅰ期の 호적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掌議, 齋長 등 향교의 직책과 관련된 직역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양반층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이와 같은 직역의 취득을 통하여 그들

22) 「耽羅防營摠覽」, 軍任條.

初以助防將 因癸未御史李壽鳳啓門 陞爲萬戶 以本州出身備望報兵曹入啓下批 瓜限三十朔. 『耽羅誌草本』(李源祚, 濟州大耽羅文化研究所 影印), 卷 2, 鎮堡條 p.115.

23) 제주지역에서의 무과시험의 예를 찾아보면, 1854년(철종 5) 5월 19일에 鐵箭과 片箭의 兩技로 시험하고 있다. 그 결과 五矢 入格에 閑良 李彦吉(25세), 閑良 高元錫(36세)을 시취하였으며, 四矢에 閑良 鄭錫寬(32세), 閑良 高才彦(28세), 閑良 高漢龍(42세), 閑良 洪元集(40세), 閑良 高龍謹(23세), 閑良 金命任(39세), 閑良 金才允(31세)을 시취하였다(「濟州啓錄」, 咸豐 4年 5月 26日, 규장각도서 No.15099).

<表 4-3> 19世紀前半(Ⅱ期) 戶主의 職役別 分布

(단위는 戶)

年 職役	1807年					1825年					1843年				
	東城	自丹	今勿路	中文	計	東城	自丹	今勿路	中文	計	東城	自丹	今勿路	中文	計
明月萬戶						1				1					
副護軍				1	1						1				1
司果												5		1	6
副司果	2	3			5	2		1	1	4	1	2		2	5
兼司僕				1	1	1	1		1	3					
中樞府事												2		1	3
通德郎		1			1		1			1					
將仕郎				1	1	1				1	1				1
出身						1	5		2	8	1	2	1	1	5
武科初試	1		1		2	7	1	6	2	16	1	1	1	1	4
儒生	10	1	8	11	30	7		10	17	34	4	1		13	18
幼學	1	1	4	6	12	3	2	2	6	13	3	1	2	14	20
留鄉別監	1			8	9	1			8	9	1			8	9
留鄉座首				3	3	1			5	6	1			3	4
鄉貢進士	1			1	2				2	2					
掌議				7	7	2		2	8	12	6		4	3	13
訓長									1	1	1				1
齋長								1	1	2			1	1	2
校生			2	2	4	5	1	1	4	11	3	3	9	16	31
祠生												1			1
業儒											1				1
(姓)氏				3	3			1	1	2				5	5
合 計	16	6	15	44	81	32	11	24	59	126	25	18	18	69	130
品官		1	2	4	7	1		3	7	11	5	3	6	16	30
忠翊衛			1	1	2			1		1					
助防將			1	1	2	2		1		3	2				2
千總	1				1	2	1	1		4	7	1	2	1	11
城將	4	4	2	3	13	5	3		6	14	8	8	3	12	31
把總	1	3		1	5	1	3	1	3	8	2	3	1	2	8
御營肖官											1				1
將官	15	6	9	13	43	12	15	11	25	63	7	6	6	17	36
平役軍官				4	4										
鎮書記								1		1			1		1
鎮訓導		1			1	1	1			2	2				2

年 職役	里	1807年					1825年					1843年				
		東城	自丹	今勿路	中文	計	東城	自丹	今勿路	中文	計	東城	自丹	今勿路	中文	計
業閑 戸郷 記執 作假 貢譯 馬璫 源郎 老職 廟生	武良	7	2	1	11	21	13	8	3	14	38	5			3	8
	長吏	3	1			4	11		1	1	13	16	4	2	4	26
	官事	1				1	1				1	4	1	1	4	10
	吏生	4		1	1	6	2			2	4					
	吏生		1	2	2	5	8	1		3	12	7	1			8
	監				3	3	1		4	1	6	2		3	1	6
	郎廳						3			8	11	6	1		2	9
	通政	1			1	2	3		1		4		1		1	1
	生		1	2		3										
												1				1
復小 城假 使書 羅騎 旗鎮 平直 募軍 防軍 烽軍 遺軍 牙兵 果直 院直 漆直 沓漢	戸童									2	2	2		4		4
	丁率				1	1										2
	令員	1	2	4		7	6	2	7	2	17	9	9	4	19	41
	將將		1	1		2	3	1			4	5				5
	牌無	4	2	4	9	19	6	3	2	5	16	3		2	3	8
	軍軍	2				2		1			1					
	軍軍		3	1	2	6	2	4	2		8	1	2	1		4
	軍軍	5	1		2	8	4	3	1	4	12	9	4	2	7	22
	兵直	2				2	1	1			2		2			2
	直直	2		1	1	3	4	1	2		5	6	1			7
合 計	募防			1	1	2		1			3			2		2
	烽遺	6	1	1	2	10		4			4	3	1	1		5
	牙果	2	1	1	2	6	1	1			2					
	院漆							1		1	1					
	沓漢	1	9	1		11	1	3		1	5	2		1		3
			1		2	3				1	1				1	1
					1	2				1	1					
					2	2										
					5	8	3	1			4	2	1	3		6
		1	1	1												
合 計		37	20	22	45	124	67	32	28	71	198	76	30	25	63	194

年 職役	里	1807年					1825年					1843年				
		東城	自丹	今勿路	中文	計	東城	自丹	今勿路	中文	計	東城	自丹	今勿路	中文	計
群牧	頭子	2	4	1	1	2										
習紙	馬匠			2	6	14	3	6	1	3	13		1		3	4
鐵冊	匠	1			1	1	1	1			2	1				1
冊	匠					1	1	1			2					
弓	匠	1				1	1				1					
席	匠			1		1			1		1					
矢	人		1			1	1				1					
匠	人	2	1			3	4	2			6	3				3
藥	漢			1		1										
軍器	直								1		1					
書堂	直	2				2	2				2					
無職	役		2			2		2	1	1	4	1				1
老	閑	4	3	5		12	3	1	2	2	8	1	1			2
皮	匠						1				1	1	1			2
(姓)召	史	7	4	3	7	21	4		1		5	7		1	3	11
(姓)女		5				5	2				2	6				6
(姓)德			5			5	1				1					
(姓)父				1	2	3						2			1	3
合	計	50	42	30	47	169	56	41	21	22	140	64	23	21	37	145
官	奴	4	1			5	8	1			9	10			1	11
官	婢	3				3						3				3
校	奴			5		5	1		3		4					
校	婢			4		4	1		3		4					
合	計	7	1	9		17	10	1	6		17	13			1	14
總	計	110	69	76	136	391	155	85	79	152	481	178	71	64	170	483

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중인 신분층에서는 業武·城將·品官·閑良·將官의 직역자가 많은 부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戶長·執事·記官·作吏 등 鄉吏層의 증가도 주목된다. 또한 千總의 직역자 역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조방장·천총·파총·성장은 제주 地方軍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조방장은 명월진을 제외한 8개진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며, 천총은 본래 제주지역 속오병 1부의 총책임자로 2사의 파총 2인과 10초의 초관 10인, 그리고 초군 1,340명(각 초에 초군 134명)을 이끌고 있었다. 천총의 수는 1847년(헌종 13) 이전에는 3인이었으나, 헌종 13년에 2인이 加設되었다. 파총은 본래 6인에서 역시 헌종 13년에 4인이 가설되어 모두 10인이다. 성장은 각 읍성에 있는 城丁軍의 지휘자인데, 그 수는 제주 4인, 대정 2인, 정의 2인으로 모두 8인이다.²⁴⁾ 그러나 위 표의 1843년을 기준해서 볼 때, 천총·파총·성장의 직역자가 각각 11호, 8호, 31호로 나타나고 있어 문헌상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이들의 직역을 양반으로 분류하지 않고 중인으로 분류한 것이다.

셋째, 상민 신분의 경우 假率과 鎭撫 직역자가 일정한 선에서 증가하고 있다. 넷째, 노비층의 경우 寺奴戶가 모두 사라지고 官奴婢와 校奴婢戶만이 존재하고 있다. 여전히 私奴婢戶는 나타나지 않는다. 官奴婢戶는 관아가 있었던 大靜縣城내의 東城里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校奴婢戶의 경우 鄉校가 위치하고 있던 今勿路里에 분포하고 있다. 寺奴戶가 한 戶도 나타나지 않는 점은 무엇때문일까. 이에 1807년 이전의 호적을 검토해 올라가 본 결과, 1801년의 호적에는 공노비호가 나타나지만 1804년의 호적에서는 공노비호가 한 호도 확인

24) 「耽羅營事例」(제주대 박물관 소장), 軍任條 參照.

할 수 없었다. 이는 1801년의 公奴婢 革罷²⁵⁾가 취해진 결과, 제주 지역의 공노비들이 모두 良人 身分化 되었음을 의미한다.

1801년에 혁파된 공노비는 內寺奴婢 36,974명,各司奴婢 29,093명으로 모두 66,067명이었다.²⁶⁾ 그런데 공노비가 혁파되기 7~8년전인 1793년경, 제주 지역의 공노비 수효는 15,699명²⁷⁾이다. 이는 당시 공노비 혁파의 수에 비하면 2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간에 공노비 수효가 감소했다 할지라도 공노비 혁파 당시 제주 지역에는 20%이상의 되는 공노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좁은 제주 지역에 왜 그렇게 많은 공노비가 존재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추후 규명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 생각된다.

Ⅱ期の 전체적인 身分構造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시 시기에 따라 兩班・中人・常民・奴婢의 신분으로 구분한 것이 <表 4-4>이다.

<表 4-4> 19世紀前半(Ⅱ期) 身分別 戶主의 分布

(비율은 %)

年度 身分	1807年		1825年		1843年		平均	
	戶數	比率	戶數	比率	戶數	比率	戶數	比率
兩班	81	20.7	126	26.2	130	26.9	112	24.8
中人	124	31.7	198	41.2	194	40.2	172	38.1
常民	169	43.2	140	29.1	145	30.0	151	33.4
奴婢	17	4.4	17	3.5	14	2.9	16	3.5
合計	391	100	481	100	483	100	452	99.8

25) 이에 대해서는 平木實, 『朝鮮後期奴婢制研究』, 知識産業社, 1989, pp.192-204 참조.

26) 앞의 책, p.197.

27) 「濟州大靜旌義邑誌」, 濟州牧 奴婢條, 旌義縣 奴婢條, 旌義縣 奴婢條, 『邑誌 6:濟州道』(亞細亞文化社, 1983).

Ⅱ期(19世紀前半)의 각 신분별 구성비의 평균은 兩班戶가 24.8%, 中人戶가 38.1%, 常民戶가 33.4%, 奴婢戶가 3.5%이다. 18세기 후반인 I 期에 비하여 兩班戶 7.2%, 中人戶 16.3%, 常民戶 18.0%가 증가한 반면에 奴婢戶는 41.7%나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兩班戶과 中人戶의 증가는 여러가지 요인 즉, 지배계층의 자연적인 인구 증가와 피지배계층의 避役에 의한 인구의 감소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모두 감안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일단 상민층에서의 신분 상승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고자 한다. 상민층의 일부가 양반·중인으로 신분이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常民戶가 18.0%나 증가한 이유는 1801년의 공노비 혁파로 18세기 말까지 광범하게 존재했던 內寺奴婢가 모두 양인 신분화되었기 때문이다. 奴婢戶의 경우 모든 內寺奴婢가 양인화되었기 때문에 공노비 중에 官奴婢와 校奴婢만 존재하였다. 따라서 노비층은 3.5%로 현격하게 감소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각 연도별(1807년->1825년->1843년)로 보면, 兩班戶는 20.7% -> 26.2% -> 26.9%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中人戶는 31.7% -> 41.2% -> 40.2%로 양반에 비해서 높은 수치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常民戶는 43.2% -> 29.1% -> 30.0%로 중인호의 증가와 유사한 수치로 감소되고 있다. 奴婢戶(관노비·교노비)는 4.4% -> 3.5% -> 2.9%로 常民戶와 같이 감소되고 있다. 이는 1901년을 계기로 제주지역의 신분변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19世紀 後半(Ⅲ期)의 身分·職役別 構成

Ⅲ期の 身分・職役別 구성은 1861年分과 1879年分의 호적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각 式年の 호적에서 戶主의 職役別 구성을 보면 <表 4-5>와 같다.

<表 4-5> 19世紀後半(Ⅲ期) 戶主의 職役別 分布

(단위는 戶)

年度 職役里	1861年					1879年				
	東城	自丹	今勿路	中文	計	東城	自丹	今勿路	中文	計
副護軍		1		1	2	1				1
司果	2	3			5	2	1			3
副司果	1			1	2					
兼司僕	1				1					
中樞府事	1	3			4	1				1
將仕郎	2				2					
出身	1		1		2	1	1	1		3
武科初試		1			1			1		1
校生	2	4	10	11	27	12	19	11	17	59
院生	7	6	2	6	21	1	1			2
祠生	2	3		2	7				1	1
儒生				3	3				1	1
幼學	6	1	4	20	31	3	1	4	27	35
留鄉別監	3	1		4	8	5		2	5	12
留鄉座首	1			2	3			2	1	3
風憲	3				3					
掌議	9		4	6	19	13	1	12	11	37
訓長	2			1	3				1	1
青衿				1	1	1				1
齋長			4	1	5				3	3
(姓)氏	1			2	3	1			2	3
合 計	44	23	25	61	153	41	24	33	69	167

年度 職役里		1861年					1879年				
		東城	自丹	今勿路	中文	計	東城	自丹	今勿路	中文	計
品官	防	11	10	9	14	44	29	20	12	24	85
祠助	將						1				1
巡防	將	1				1			1		1
千將	將	1				1	1				
城摠	將	9	7	7	3	26	12	10	10	3	35
把摠	將	9	9	7	7	32	5	3	6	1	15
將別	官	3	3	3	2	11	6	4	1	1	12
業將	武	7	3	3	6	19	3		1		4
閑武	良						1	2			3
戶武	長	6				6	1				1
鄉吏	吏	14	4	5	5	28	14	1	8	2	25
記執	官	7			4	11	11		1	5	17
作事	事			1	1	2	1		2		3
假吏	吏	7	4	2	3	16	12	2		2	16
貢吏	生	5		1		6	4				4
鎮訓	導	2	1			3					
製述	生	1	1		1	3	3				3
願納	議	2				2					
老職	通	1				1				1	1
漢生	生		1			1	1				1
待生	生	1				1	1				1
接生	生	1				1					
合	計	88	43	38	46	215	107	42	42	39	230
義士	蔭								1		1
孝復	蔭			1		1			2		2
假使	戶	1	1			2	4	1	3		8
書	率	14	4	3	11	32	23	5	3	9	40
	令	4			1	5	12			1	13
	員	2		2	3	7	1		1		2

年度 職役里		1861年					1879年				
		東城	自丹	今勿路	中文	計	東城	自丹	今勿路	中文	計
旗手	牌	3	3			6	3	1			4
旗手	無	1				1	4				4
鎮軍	器	7	1	1	2	11	6				6
直募	監							1			1
防牙	軍	5				5					
果	軍		1	3	1	5		1	5		6
番	軍	5	1	3		9	6		1		7
習	兵	3				3	3				3
紙	直	1	1			2	1	1			2
皮	漢	1		1	2	4			1	2	3
匠	馬	3				3	2				2
藥	匠	1				1					
書	人						1				1
修	漢	1				1	1				1
孝	直								1		1
(姓)召	軍	1				1					
(姓)女	子	1				1					
(姓)德	史	3			4	7	8	2		2	12
(姓)父		1				1					
		3			1	4	1				1
							4				4
合 計		61	12	14	25	112	80	12	19	14	125
官 奴		6				6	7				7
合 計		6				6	7				7
總 計		199	78	77	132	486	235	78	94	122	528

Ⅲ期(19世紀 後半)의 身分變動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身分別 職役의 특성을 살펴보자. 첫째, 兩班戶에 있어서 儒生의 직역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반면에 幼學・留鄉別監・掌議・校生의 직역이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中人戶에 있어서는 品官・閑良・戶長・執事・城將・千總・把總이 많은 戶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 시기 중인층의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직역은 品官과 千總의 직역이다. Ⅱ期(19世紀 前半)와 각 직역의 평균수²⁸⁾를 산출하여 비교했을 때, 品官은 16호에서 64호로, 千總은 5호에서 30호로 각기 4배, 6배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業武의 직역은 Ⅱ期(19世紀 前半) 22호에서 Ⅲ期(19世紀 後半)에는 3호로 兩班戶에서 유생의 감소와 마찬가지로 중인호에서는 업무의 직역이 현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준다. 또한 장관의 직역 역시 47호→11호로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업무・장관의 직역자들이 품관 혹은 천총의 직역을 칭하거나, 양반으로의 신분 상승을 의미한다.

셋째, 常民戶의 감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직역은 書員・鎭撫와 牧子이다. 특히, 목자의 직역은 Ⅱ期에 10호였던 것이 Ⅲ期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의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牧場經營의 쇠퇴와 일정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假率・使令의 직역은 증가하고 있다. 넷째, 奴婢戶는 校奴婢가 거의 소멸하는 가운데 官奴婢 역시 감소의 현상을 나타낸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表 4-6>을 만들어 검토하기로 한다. Ⅲ期(19世紀 後半)의 신분구조는 兩班戶 31.5%, 中人戶 43.8%, 常民戶 23.4%, 奴婢戶 1.3%이다. 이를 Ⅱ期 신분구조의 전체

28) 각 職役의 평균수 산출은 품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하면, Ⅱ期の 경우 1807년, 1825년, 1843년의 품관호의 수를 더하여 3으로 나눈 수치이고, Ⅲ기는 1861년 1879년의 수를 더하여 2로 나눈 수치이다.

<表 4-6> 19世紀後半(Ⅲ期) 身分別 戸主의 分布

(비율은 %)

年度 身分	1861年		1879年		平均	
	戸 數	比 率	戸 數	比 率	戸 數	比 率
兩 班	153	31.5	167	31.5	160	31.5
中 人	215	44.2	230	43.5	222.5	43.8
常 民	112	23.0	125	23.7	118.5	23.4
奴 婢	6	1.2	7	1.3	6.5	1.3
合 計	486	99.9	529	100	507.5	100

평균과 비교하여 보자. 兩班戶 24.8%→31.5%, 中人戶 38.1%→43.8%, 常民戶 33.4%→23.4%, 奴婢戶 3.5%→1.3%로 각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양반호가 6.7%, 중인호가 5.7%의 증가를 보인 반면, 상민호는 10.0%, 노비호는 2.2%나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Ⅲ期の 특징은 常民戶의 감소에 따른 中人戶·兩班戶의 증가로 특징 지을 수 있다.

(4) 1898年(Ⅳ期)의 身分·職役別 構成

Ⅳ期の 身分·職役別 構成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 해당하는 시기로 제주도의 신분구조가 갑오개혁을 계기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898년의 호적을 분석함으로써 Ⅳ期の 특징을 이해하고, 나아가 Ⅲ期の 신분구조와 비교 검토해보기로 한다. 먼저 Ⅳ期の 職役別 구성을 보면 다음 <表 4-7>과 같다.

<表 4-7> 1898年(Ⅳ期) 住民의 身分・職役別 構成

職役	里	東城	自丹	今勿路	中文	計
通德郎				3		3
出身				3	3	6
武科初試	5			1		6
儒生					1	1
幼學	3	6	4	20		33
留郷別監	10	25	19	30		84
留郷座首	2	5	3	7		17
風憲	1		1			2
掌議	54	86	135	115		390
齊長			1	1		2
校生	1	1	10	4		16
祠生	1					1
(姓)氏	2	2				4
合計	79	125	180	181		565
%	48.5	79.1	81.4	86.2		75.1
品助	14	4	3	13		34
防官			2			2
千總	3	4	7			14
巡別			1			1
城將	2	2	1			5
把將		2	1			3
將總	1	3		1		5
業官		1				1
閑武				2		2
執良	6		4	1		11
作事	1	1		1		3
貢吏	5		1			6
老職通政	3					3
待關生	2	3	2	1		8
鎮吏	1					1
	2					2
合計	163	158	221	210		752
%	100	100	100	100		99.9

職役	里	東城	自丹	今勿路	中文	計
合計	40	20	22	19		101
%	24.5	12.7	10.0	9.0		13.4
孝復			2			2
蔭戸	8	4	11			23
率令	14	2			3	19
使將	2		1			3
羅旗				3		3
鎮牌	1	2				3
鎮無	2					2
軍器監		1				1
募軍直			2			2
果番		1				1
減直		1				1
教寧				1		1
郷解	1		1			2
軍器直	1					1
齊直	1					1
免番	2					2
(姓)召史	10		1			11
無職役			1	4		5
合計	42	13	18	10		83
%	25.8	8.2	8.1	4.8		11.0
官奴	2					2
校奴			1			1
合計	2		1			3
%	1.2		0.5			0.4
總計	163	158	221	210		752
%	100	100	100	100		99.9

Ⅳ期(1898年)의 신분구조는 兩班戶가 75.1%, 中人戶가 13.4%, 常民戶가 11.0%, 奴婢戶가 0.4%이다. 이를 Ⅲ期の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兩班戶 31.5% -> 75.1%, 中人戶 43.8% -> 13.4%, 常民戶 23.4% -> 11.0%, 奴婢戶 1.3% -> 0.4%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Ⅳ期에 이르러 양반호가 격심하게 증가한 반면에 중인호와 상민호는 현격히 줄어 들고 있다. 노비호의 경우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1894년의 갑오개혁으로 노비제도가 혁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까지 끈질기게 존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兩班戶의 증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직역은 掌議의 직역이다. 장의의 직역은 Ⅲ期の 1879년에 비하여 10배 이상(37호->390호)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대부분의 중인·상민층의 직역자들이 掌議의 직역을 청함으로써 양반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제주 지역의 경우, 19세기 말에 와서 장의의 직역에 대한 冒錄·冒稱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의의 직역자 중에는 실지 양반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 지역의 신분제 연구에 있어서 掌議 職役者에 대한 좀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길 수 밖에 없다. 중인호에서는 품관·천충·성장의 직역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身分의 時期別 變化와 特徵

지금까지 언급했던 身分變動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濟州地域 身分變動의 추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즉, 각 시

기별 양반·중인·상민·노비의 백분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통해 신분제의 동요·해체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他郡縣과 비교함으로써 제주 지역의 특징을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제주 지역의 身分別 변동상황을 각 時期別로 세분한 것이 <表 4-8>이다.

<表 4-8> 時期에 따른 身分別 戶數의 百分比

(%)

時 期 區 分	I 期	II 期				III 期			IV 期
	1786年	1807年	1825年	1843年	平均	1861年	1879年	平均	1898年
兩班戶	17.6	20.7	26.2	26.9	24.8	31.5	31.5	31.5	75.1
中人戶	21.8	31.7	41.2	40.2	38.1	44.2	43.5	43.8	13.4
常民戶	15.4	43.2	29.1	30.0	33.4	23.0	23.7	23.4	11.0
奴婢戶	45.2	4.4	3.5	2.9	3.5	1.2	1.3	1.3	0.4
計	100	100	100	100	99.8	100	100	100	99.9

<表 4-8>을 통해 첫째, 兩班戶의 百分比는 I 期에 17.6%, II 期에 24.8%, III 期에 31.5%로 점차 증가를 보이다가, IV 期인 1898년에는 75.1%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III 期에서 IV 期에 이르는 20 여년간에 양반호의 증가가 2배 이상 이루어지고 있어 당시 제주지역의 사회가 상당히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中人戶의 百分比는 I 期 21.8%, II 期 38.1%, III 期 43.8%, IV 期 13.4%로 I 期에서 II 期로 진행하면서 중인호가 16.3%의 증가를

보인다. 다음 Ⅱ期에서 Ⅲ期는 완만한 형태로 증가하다가, Ⅲ期の 1879년에 43.5%에서 Ⅳ期인 1898년에 13.4%로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인계층이 양반호로의 성장을 의미한다.

셋째, 常民戶의 百分比는 Ⅰ期에 15.4%였으나 Ⅱ期인 1807년에 43.2%로 현격한 증가를 보이는 데, 이는 1801년 內寺奴婢 혁파에 따른 결과였다. 그후 상민호는 Ⅱ期の 전체평균 33.4%에서 Ⅲ期の 전체평균 23.4%로 Ⅱ期에서 Ⅲ期로 진행하는 동안 10.0%의 감소를 가져왔다. 그리고 Ⅲ期の 1879년에 23.7%에서 Ⅳ期인 1898년에 11.0%로 12.7%가 역시 감소하고 있다. 상민층에서도 역시 상층 신분으로의 신분변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넷째, 奴婢戶의 百分比는 Ⅰ期에 45.2%에서 Ⅱ期の 1807년에 4.4%로 사노비와 일부의 공노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노비호가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801년 內寺奴婢의 폐지로 公奴婢 가운데 官奴婢와 校奴婢를 제외하고 모두 양인화되었기 때문이다. 官奴婢戶와 校奴婢戶로 구성된 노비호는 Ⅱ期の 평균 3.5%에서 Ⅲ期에 1.3%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1894년의 갑오개혁으로 노비제도의 혁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Ⅲ期에 1.3%이던 노비호는 Ⅳ期에 와서 0.4%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관노비와 교노비의 공노비가 끈질기게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상을 통해 18·19세기 제주 지역의 身分變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얻어 낼 수 있다. 18세기말인 Ⅰ期の 특징은 주민의 약 반에 가까운 수가 공노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민의 절대적인 부족현상이 초래된 가운데 약 40%의 양반·중인이 존재하고 있어 신분폐쇄성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1801년의 공노비 혁파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즉, 1801년의 공노비 혁파는 제주지

역 신분해체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1801년 이후 Ⅱ期는 兩班과 中人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1801년의 內寺奴婢 혁파로 인하여 상민호가 Ⅰ期에 비하여 Ⅱ期인 1807년에 갑자기 증가했다가, 그후 점차 감소해 나갔다.奴婢는 1801년 내시노비 혁파에 따라 官奴婢・校奴婢를 제외한 모든 公奴婢가 양인화되었기 때문에 4% 내외의 분포를 보이다가 점차 감소되어 나간다.

이와 같은 신분해체의 현상은 Ⅲ期에 와서 제주지역의 사회 제현상과 맞물리면서 계속 진행되다가 1894년의 갑오개혁을 계기로 Ⅳ期인 1898에 이르러 양반의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中人和 常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그리고 관노비・교노비는 노비제가 1894년에 제도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존속하는 양상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주 지역의 신분변동은 他郡縣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미 先學들에 의해 연구된 바가 있는 大邱府・蔚山府・彦陽縣의 신분별 戶數의 백분비를 인용하여 제주 지역과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表 4-9> 大邱府・蔚山府・彦陽縣의 身分別 戶數의 百分比

A. 大邱府²⁹⁾

(%)

區分 時期	1690	1732	1789	1858
兩 班 戶	9.2	18.7	37.5	70.3
常 民 戶	53.7	54.6	57.5	28.2
奴 婢 戶	37.1	26.6	5.0	1.5

29) 四方博, 앞의 논문, p.126.

B. 蔚山府³⁰⁾

(%)

區分 時期	1729	1765	1804	1867
兩 班 戶	26.29	40.98	53.47	65.48
常 民 戶	59.78	57.01	45.61	33.96
奴 婢 戶	13.93	2.00	0.92	0.56

C. 彦陽縣³¹⁾

(%)

區分 時期	1711	1798	1861
兩 班 戶	12.42	53.11	80.20
準 兩 班 戶	20.98	15.09	4.68
中 人 戶	1.34	2.07	2.82
常 民 戶	57.10	28.63	12.03
奴 婢 戶	8.22	1.08	0.26

<表 4-9> 大邱府·蔚山府·彦陽縣의 신분별 호수의 백분비에서 제주 지역과 비교 가능한 地域과 年度는 대구부의 1789년과 1858년, 울산부의 1804년과 1867년, 언양현의 1798년과 1861년의 경우이다. 그러나 비교 대상의 地域들을 볼 것 같으면, 身分을 서로 달리 구분하고 있는데서 오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濟州의 경우는 신분을 兩班-中人-常民-奴婢로 4分하고 있으나, 大邱·蔚山은 兩班-常民-奴婢로 3分, 彦陽은 兩班-準兩班-中人-常民-奴婢로 5分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 생겨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언양현

30) 鄭奭鐘, 앞의 책, p.249.

31) 金錫禧, 앞의 논문, 『人文論叢』 26, 1984, p.380.

의 경우, 준양반을 양반에 포함시켜서, <表 4-10>을 전체 3시기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表 4-10> 大靜縣과 大邱府·蔚山府·彦陽縣의 比較

時 期		18世紀末			19世紀初		19世紀 後半			
身分	年度	1786	1789	1798	1807	1804	1861	1858	1861	1867
	地域	大靜	大邱	彦陽	大靜	蔚山	大靜	大邱	彦陽	蔚山
兩班戶		17.6	37.5	68.2	20.7	53.47	31.5	70.3	84.8	65.48
中人戶		21.8		2.07	31.7		44.2		2.82	
常民戶		15.4	57.5	28.63	43.2	45.61	23.0	28.2	12.03	33.96
奴婢戶		45.2	5.0	1.08	4.4	0.92	1.2	1.5	0.26	0.56

<表 4-10>에서 대구·울산의 경우, 중인의 비율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인 이상의 모든 호를 지배신분층으로, 그리고 상민호와 노비호는 피지배층으로 일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兩班戶와 中人戶를 합친 지배신분층의 비율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786년의 제주 대정현이 39.4%일 때, 大邱는 1789년에 37.5%, 彦陽은 1798년에 70.27%로 대정현은 大邱와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彦陽보다는 30.87% 낮게 나타난다. 1807년 濟州가 52.4%일 때, 蔚山이 1804년 53.47%로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1861년 제주 대정이 75.7%일 때, 1858년 大邱가 70.3%, 1861년 彦陽이 86.9%, 1867년 蔚山이 65.48%로 제주는 대구·울산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언양에 비해서는 낮다.

이렇게 볼 때 제주 대정현 지배층의 비율은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에는 대구부·울산현과는 비슷하나 언양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오면서 제주 대정현 지배층의 비율은 대구부·울산현보다 5-10% 높게 나타나면서 언양현과의 간격도 18세기말에 30.87%이던 것이 11.2%로 상당히 좁혀지고 있다.

다음으로 피지배층의 비율에 있어서 확연히 드러나는 특징은 18세기말 제주 대정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노비호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경우는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하여 18세기말까지 노비층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다. 전체 피지배층의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18세기말의 경우 제주 대정현이 1786년 60.6%일 때, 1789년 대구가 62.5%, 1798년 언양이 29.71%이다. 19세기초의 경우, 1807년 대정현이 47.6일 때, 울산현은 46.53%이다. 19세기 후반의 경우는 대정현이 1861년에 24.2%일 때, 대구가 1858년 29.7%, 언양이 1861년 12.29%, 1867년 울산이 34.52%이다.

따라서 피지배층의 신분에 있어서도 18세기말에는 대정이 대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언양현에 비해서는 당연히 지배층과는 반대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와서 대정현의 피지배층의 비율은 대구·울산에 비해서는 낮은 반면에, 언양현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피지배층의 이러한 비율은 지배층 비율의 특징에서 본다면 당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제주지역 신분제의 해체 정도는 언양현에 비해서는 늦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구부·울산현에 비해서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점차 19세기 후반으로 올수록 언양현과의 간격도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제주의 신분해체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유동성을 띠고 있으며, 향촌사회가 급속히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요인이 19세기 후반 제주지역에서 전개되는 대소규모의 민란을 유발시키는 사회적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雇工·奴婢의 存在樣態

1. 雇工 및 雇主의 成分

(1) 雇工의 成分

문헌을 통한 朝鮮後期 雇工의 성격에 관한 연구는 이미 여러 편의 논고¹⁾가 있다. 그러나 논자들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견해²⁾들이 제

1) 宮原兎一, 「十五・十六世紀朝鮮の雇工について」, 『朝鮮學報』 11, 1957.

朴成壽, 「雇工研究」, 『史學研究』 8, 1964.

李鍾河, 『朝鮮王朝의 勞動法制』, 博英社, 1969.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農業變動・農學思潮)』, 一潮閣, 1971.

2) 이에 대해서는 이미 韓榮國이 정리한 바가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韓榮國, 「朝鮮 後期の 雇工-18・19世紀 大邱府 戶籍에서 본 그 實態와 性格-」, 『歷史學報』 81, 1979, pp. 81-82).

① 宮原兎一 : 15・16世紀의 雇工은 兩班士豪의 노비는 아니지만, 그 家長權 隸下에서 奴隸的인 勞力提供을 收取당하던 農業勞動人口로 양반토호의 私賤的 農奴小作人.

② 朴成壽 : 15-17세기의 高公은 주로 上層良人農家에 雇傭된「머슴型」 및 「날품型」의 농업노동자. 전자는 雇主家에 寄居하면서 노력을 제공하는 代價로 의식의 受給 이외에 소정의 보수를 받는 年雇勞動者, 즉 머슴을 뜻하고, 후자는 숙식과 함께 소정의 雇價(품삿)를 받는 품팔이를 의미한다.

③ 李鍾河 : 조선시대의 高公은 주로 平民家戶의 家長에게 장기간에 속되어 온갖 노동에 使役되었던「머슴과 노비의 중간적 형태의 인구」. 즉 노예적 노동관계에 있었던 점에서 는 노비와 같았지만 머슴과는 구별되며, 그 關係가 所

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후기 雇工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戶籍大帳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韓榮國이다. 氏는 18·19세기 大邱府 戶籍에 나타난 雇工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그후 朴容淑은 18·19세기 彦陽縣 戶籍大帳의 분석을 통하여 雇工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韓榮國은 먼저 朴成壽와 金容燮의 견해³⁾에 대해 關係資料와는 무관하게 연구자의 단순한 선입견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소산이라 비판하였다. 그는 조선시대의 雇工은 시기에 따라 성격이 서로 相異한데, 1783년 雇工法의 제정까지는 기본적으로 雇主家에 寄居하면서 衣食을 受給하는 대가로 雇主의 지시대로 力役을 제공하는 無賃의 使役人口를 의미하며, 1784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임금(5년에 10냥이상)과 기한(5년 이상)을 雇主와 약정하고 고주가에 寄食하면서 고주 지시대로 力役을 제공하는 고용인구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어 그는 大邱府의 호적을 분석한 결과 18·19세기 대구부의 고공은 農村이 아닌 都會地域에서만 보유하고 있으며, 고공의 대부분은 농업노동인구로 볼 수 없는 靑少年層의 婢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 주종은 仰役立案雇工(寄食할 바가 없는 乞人類의 인구가 스스로 고공이 되는 부류)보다는 收養立案雇工(흉년 등에 의하여 타인에 收養되어 力役을 제공하는 부류)임을 밝히었다.⁴⁾

한편 朴容淑은 彦陽縣 戶籍의 분석을 통하여 雇工은 양인과 노비

生 子女에까지 법적으로 계승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비와 구별된다.

- ④ 金容燮 : 17-19세기의 고공은 주로 經營型 富農層에 고용된 계절적인 賃勞動者(=短期雇工)와 특수 사정에 의하여 일반농민층이나 경영형 부농층이 아닌 계층에 주로 收容·使役되었던 예측적인 勞動人口(=長期雇工). 조선후기는 前者가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 앞의 주 참조.

4) 韓榮國, 「朝鮮 後期の 雇工」, pp.122-124.

로 구성되며, 19세기에 이르면서 점차 몰락한 良身分의 農民層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고공은 점차 女性化되는 경향을 보이며, 年齡別로는 19세기 초의 경우 미성년층이 50%를 차지하는 가운데 靑·少年層들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이들은 임금을 받는 長期雇工이나, 계절적으로 고용된 자유로운 賃勞動者인 短期雇工이 아니라,衣食住만을 제공받고 雇主에 人身上으로 예속된 無賃의 使役人口로 파악하였다. 또한 고공을 보유하고 있는 신분은 兩班과 準兩班層으로 이들 雇主는 經營型富農이나 上層良人農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⁵⁾

戶籍資料를 통한 雇工의 문제에 있어서 19세기에 오면서 雇工이 여성화되는 경향, 연령별로 청소년층이 대부분이란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雇工의 성분, 雇主의 신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고공의 성분에 있어서 大邱府의 경우는 농업노동인구로 볼 수 없는 收養立案雇工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彦陽縣에서는 몰락한 良身分의 농민층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雇主의 성분에 있어서도 대구부의 분석에서는 都會地域과 農村地域이라는 지역적 차이에 따라 雇主의 성분이 달리 나타나는 점을 중시하고 도회지역인 대구부의 고주는 상당 부류가 中庶層임에 비하여, 언양현의 경우는 兩班과 準兩班層, 나아가 이들의 성격을 經營型富農 혹은 上層良人農民層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공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지역의 호적 자료를 이용한 사례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大靜縣 지역의 戶籍中草를 통하여 雇工과 雇主의 成分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언급하고자 한다.⁶⁾

5) 朴容淑, 「18·19世紀의 雇工」, 『釜大史學』 7, 1983.

6) 雇工과 雇主의 數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의 分析은 제주지역

<表 5-1> 雇工 및 雇主戶의 數

(단위:雇工-名, 雇主-戶)

區 分	時 期 里	Ⅱ 期			Ⅲ 期		Ⅳ 期	總計
		1807年	1825年	1843年	1861年	1879年	1898年	
雇 工	東城里	2	3	6				11
	自丹里			1				1
	今勿路里			8	2			10
	中文里		1	8	3		9	21
	計	2	4	23	5		9	43
雇 主	東城里	2	2	5				9
	自丹里			1				1
	今勿路里			5	2			7
	中文里		1	7	2		2	12
	計	2	3	18	4		2	29

大靜縣 東城里·自丹里·今勿路里·中文里 호적중초에서 확인되는 雇工과 雇主의 수는 <表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雇工이 43명, 雇主戶가 29戶로 상당히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호당 고공의 보유는 1898년을 제외하면 1.25명에 해당한다. 이는 大邱府나 彦陽縣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⁷⁾

의 雇工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는 추후 많은 자료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하며, 여기서는 다만 제주 지역 고공의 특성을 간략히 언급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고공의 男女 관계를 추적해 보기 위하여 <表 5-2>를 작성하였다.

<表 5-2> 雇工의 性別 構成

(단위:명)

時 期 性別	Ⅱ 期			Ⅲ 期		Ⅳ 期	總計
	1807年	1825年	1843年	1861年	1879年	1898年	
男	2	3	12	1			18
女		1	11	4		9	25
合 計	2	4	23	5		9	43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Ⅱ期에 있어서는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나 Ⅲ期·Ⅳ期로 올수록 고공이 여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大邱府나 彦陽縣과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表 5-3>은 雇工의 年齡別 構成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며, <表 5-4>는 雇工의 身分別 構成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表 5-3>에 따르면 고공의 연령은 16세에서 45세에 이르는 壯年層이 많은 분포를 차지한다. 그 외의 연령에서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1-15세의 유년층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는 대구부와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都會地域과 農村地域이라는 지역적 차이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7) 대구부는 雇主戶當 雇工數가 시기에 따라 1.00인에서 1.18인으로 대정현에 비하여 낮은 편이나, 언양현은 1.25인에서 1.66인으로 대정현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다.

<表 5-3> 雇工의 年齡別 構成

(단위:명)

時期 年齡	Ⅱ期			Ⅲ期		Ⅳ期	總計
	1807年	1825年	1843年	1861年	1879年	1898年	
1 - 15	1	1	4	1			7
16 - 30	1	3	7			4	15
31 - 45			9	4			13
46 - 60			2			3	5
61 -			1			2	3
計	2	4	23	5		9	43

<表 5-4> 雇工의 身分別 構成

時期 身分	Ⅱ期			Ⅲ期		Ⅳ期	總計
	1807年	1825年	1843年	1861年	1879年	1898年	
中人	1	1	6				8
常民	1	3	15	5		9	33
奴婢			2				2
計	2	4	23	5		9	43

雇工의 身分別 構成을 보면, 良人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中人和 소수의 奴婢로 이루어져 있다. 중인으로 분류되는 雇工의 호적상 職役으로는 業武, 品官, 閑良, 作吏 등이 나타난다. 常民의 경우

使令, 直軍, 平役軍, 齋直, 假率, 鎭撫, 書員, 募軍 등의 직역을 칭하고 있는 자들이 고공을 형성하고 있다. 노비는 두 사례가 모두 婢로 구성되어 있다. 상민의 직역을 칭하는 자나 노비가 고공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문제는 중인의 직역을 칭하고 있는 자들이 고공화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신분상 이들의 직역이 중인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매우 몰락한 부류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통설로 인식되어 온 雇工의 신분은 良人과 賤人으로 구성되며, 19세기에 올수록 良人の 雇工化가 날로 감소되어 간데 반하여, 奴婢의 雇工化가 증대되어 진다는 이해는 제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되어 질 수 없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물론 소규모의 사례를 가지고 제주 고공의 성격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어디까지나 추론에 불과하며, 추후 광범한 고공의 사례를 찾아냄으로써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雇工의 父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43명 중에 19명에 불과하였다. 父의 職役을 보면 業武 1, 出身 2, 記官 2, 戶長 2, 假率 2, 千總 1, 書員 3, 前將官 1, 鎭撫 2, 良人 1, 私奴 2의 사례가 나타난다. 부의 직역으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고공의 신분은 중인에서 노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고공의 母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하겠으나, 불행하게도 호적에는 雇工의 母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즉, 호적상에서 雇工의 기록은 고공 자신과 父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기⁸⁾때문에 母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8) 「1843年 中文里 戶籍中草」 9統 5戶 假率 周宗彦이 보유하고 있는 雇工의 기록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雇工 鎭撫 金東采 年二十九乙亥 父 鎭撫 德三’

(2) 雇主의 成分

雇工을 保有하고 있는 雇主戶는 어떠한 職役을 칭하는 자들이며, 身分別로 보았을 때 이들의 구성은 어떠한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당시 각 신분의 경제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土地나 牛馬의 규모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자료가 없는 현재로서는 곤란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戶籍에 나타나는 奴婢의 所有 못지 않게 高公의 保有 실상을 통하여 이들의 경제력 수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表 5-5> 雇主의 身分⁹⁾

時 期 身 分	Ⅱ 期			Ⅲ 期		Ⅳ 期	總 計
	1807年	1825年	1843年	1861年	1879年	1898年	
兩 班		2	6	3		2	13
中 人	2	1	7	1			11
常 民			4				4
奴 婢			1				1
計	2	3	18	4		2	43

<表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雇工을 保有하고 있는 계층

9) 각 身分에 따라 구별한 雇主의 職役은 다음과 같다.

兩班 : 儒生, 留鄉座首, 訓長, 掌議, 齋掌, 校生, 院生.

中人 : 閑良, 閑良復戶, 前戶長, 鄉吏, 貢生, 千摠, 把摠, 城將.

常民 : 鎭撫, 假率, 使令, 營畚漢.

奴婢 : 書堂婢.

은 兩班과 中人層으로 대부분의 支配層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兩班層에서는 司果 · 儒生 · 留鄉座首 · 訓長 · 掌議 · 齋長 · 校生 · 院生의 職役을 稱하는 者, 中人層의 경우는 閑良 · 千總 · 把總 · 城將 등의 職역과 前戶長 · 鄉吏 · 貢生 등 향리층의 職역을 칭하는 부류이다. 常民層에서는 鎭撫 · 假率 · 使令 · 營畚漢의 職역자들이다. 奴婢層의 경우는 한 사례의 확인이 가능하였는데, 書堂婢 李女가 이에 해당한다.¹⁰⁾ 支配層에서 많은 雇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丹城縣의 경우¹¹⁾와 마찬가지로 農村社會가 지니는 특성이 아닌가 생각된다.

2. 私奴婢와 그 所有戶의 成分

農業의 주된 조선사회에서 農地와 노동력의 확보는 그 가문의 번영과 몰락에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土地와 奴婢는 兩班의 2대 재산으로 중요시 되어 왔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경우 兩班家の 토지 규모를 알려 주는 자료가 없는 이유로, 토지 소유면에서 양반가의 경제력을 측정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戶籍에 나타나는 奴婢 所有의 실상을 통하여 양반가의 경제력 수준 뿐만 아니라, 노비 소유의 職役者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職役자들의 경제력 수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0) 「1843年 東城里 戶籍中草」, 34統 3戶 參照.

11) 韓榮國에 의하면 都會지역에서는 주로 上級官屬戶, 官奴婢戶, 下級官屬職이나 匠人職을 지닌 平民戶들이 비교적 많은 雇工을 보유하고 있으나, 農村지역에서는 주로 兩班 및 準兩班戶와 平民戶들이 약간의 雇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韓榮國, 앞의 논문, 『歷史學報』 81輯, 1979, p.102).

그럼 먼저 제주지역 私奴婢의 존재 형태는 어떠했을까? 이를 李衡祥의 「耽羅狀啓抄」¹²⁾를 통하여 이해해 보자.

本島 백성들이 품은 원망 가운데, 牧子와 鮑作이 가장 심하다고 하여도 오히려 私奴의 원망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대개 목자가 苦役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한 곳의 役이 될 뿐, 사노비에 이르면 그 횡침하는 바의 것이 顔面을 바꾸고 번갈아 나와서 서로 侵責하니, 결단코 지탱하여 보전하기가 어렵습니다.¹³⁾

즉, 사노비의 원망이 목자·포작에 비하여 매우 심함을 말해 주고 있다. 牧子·鮑作의 苦役은 한 곳의 役에 불과하지만, 私奴婢에게서 역(身貢)을 거두는 자는 한 둘이 아니었으므로 사노비의 원망이 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왜 제주지역의 사노비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을까?

당시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노비는 대략 4,000여 명이나, 이 중에서 본래 주인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는 천 여명에 불과하였

12) 李衡祥은 1653년(孝宗 4)에 태어나서 1733년(英祖 9)에 사망하였는데, 字는 仲玉, 號는 瓶窩 또는 順翁이다. 그는 1701년(肅宗 27)에 濟州牧使로 除授받았으나, 실지 그는 1702년 6월경에야 到任하였으며 이듬해 6월에 遞任되었다. 그는 1년 여간의 제주목사로 있으면서 「耽羅狀啓抄」, 「濟州民帑狀」, 『耽羅巡歷圖』, 『南宦博物』 등 제주도에 관련된 많은 저술을 남겼다. 이 가운데 「耽羅狀啓抄」는 그가 제주목사로 재임할 당시 제주도민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조정에 보고 하였던 내용을 모아 놓은 것이다. 「耽羅狀啓抄」는 1982년에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 영인한 『瓶窩全書』 卷10에 수록되어 있다.

13) 「耽羅狀啓抄」, 『瓶窩全書』 卷1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p.490.

本島民怨中 牧子鮑作 雖曰尤甚 是如爲白良置 猶不及於私奴之怨者 盖以牧子 雖若猶爲一處之役 而至於私奴婢 則其所橫侵者 換面迭出 互相侵責 則決難支保乙仍于.

다. 나머지 3,000여 명은 本主를 전혀 알 수 없는 사노비들인 셈이다. 이들을 마땅히 관아에 예속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아에서는 400년 전의 私賤案으로 이들을 載錄하였다¹⁴⁾. 이에 官家에 왕래하는 자는 그 안을 상고하여 조상의 노비, 친구의 노비라 칭하거나 관가와 결탁하여,

무리배와 모리배가 혹은 官家와 결탁하고 혹은 本主에게 牌旨를 받아 甲이란 자가 와서 侵責하면, 乙이란 자가 다시 이르니, 1년 내에 1인이 당하는 침해는 많으면 혹 6·7處에 이르고 적어도 2·3處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¹⁵⁾

라 한 바와 같이, 사노비를 침해하는 자가 많게는 6·7處, 적게는 2·3處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사노비들은 본주인 1처에만 신공을 납부한다 할지라도 그 역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역을 6·7처에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사노비의 원망이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역의 부담을 이기지 못한 사노비는 ‘或有의死者 或有溺死者’¹⁶⁾라 하여 목을 매거나 물에 빠져 죽는 자가 생기게 되었다.

노비의 주인이 제주도가 아닌 士大夫들은 제주도에 노비가 거주한다 하더라도 分配하는 文記를 작성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제주도에 거주하는 노비들에게 身貢을 받기 위하여 노비를 파견하기도 지리적 조건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에 부임되어 오는

14) 앞의 책, p.490.

15) 앞의 책과 같음.

無賴之輩 牟利之徒 或인緣於官家 或受牌於本主 甲者來侵 乙者復至 一年內一人被侵 多或至六七處 小不下二三處.

16) 앞의 책, p.491.

관원에게 부탁하여 신공을 거두고는 半分하는 상황이었다.¹⁷⁾ 따라서 대부분의 사노비들은 本州(濟州)에 예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제주지역의 사노비의 수는 점차 감소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있어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사노비의 규모는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 또한 필자가 분석하고 있는 바의 戶籍에는 私奴婢戶가 한 戶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기 제주지역의 사노비는 대부분 主人家에 예속되어 주인가의 家事에 使役되는 率居奴婢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戶籍에 나타나는 私奴婢의 所有戶를 總戶數에 대비해 보면 <表 5-6>과 같다.

<表 5-6> 總戶數에 대한 私奴婢所有戶의 占有比

時 期 區 分	I 期	II 期			III 期		總計
	1786年	1807年	1825年	1843年	1861年	1879年	
總戶數	363	391	481	483	456	529	2,703
奴婢所有戶	3	4	3	4	4	4	22
雇工保有戶		2	3	18	4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호는 지극히 미미한 수치이다. 이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토지의 가치가 증대된 반면에, 노비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약화되었고, 그리고 전국적인 신분해체 경향속에서 사노비

17) 앞의 책, pp.490-492.

의 감소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너무나 적은 수치라 생각된다.

더구나 18세기 후반의 경우 제주 지역의 경우 公奴婢層이 45.2%였음에도¹⁸⁾ 불구하고 사노비의 수가 지극히 적다는 사실은 애초부터 제주지역의 경우 私奴婢의 존재가 상당히 미약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주지역 대부분의 양반들은 노비를 소유하지 못한채, 거의 일반 농민이나 다름없는 경제적 생활을 영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奴婢를 소유하고 있는 戶의 직역을 파악해 보면, 幼學·留鄉別監·留鄉座首·前訓長·掌議·前明月鎭萬戶 등의 兩班 職役者, 戶長·執事와 前城將·把摠 등의 中人 職役者들이다. 그러나 양반 직역자와 중인 직역자의 노비 소유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즉, 양반의 경우는 4~5口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으나, 중인은 대부분 1口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1894년 제도적으로 노비제가 폐지된 이후에 이들이 소유했던奴婢의 경우 雇傭, 傭女로 기재되어 나타난다.¹⁹⁾ 그러나 이들의 대우는 이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奴婢를 지속적으로 소유해 온 가문은 古阜 李氏에 불과한 데, 이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양반 직역자를 칭하는 부류들의 경제력은 일반 상민층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음을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3. 公奴婢의 存在樣態

(1) 公奴婢의 數

18) <表 4-2> 참조.

19) 「1898年 中文里 戶籍中草」, 3統 5戶 參照.

公奴婢는 王室 및 中央과 地方의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使役되던 노비들을 말한다. 이들은 役의 귀속에 따라 內需司 소속의 內奴婢, 中央官府 소속의 寺奴婢, 地方官衙 소속의 官奴婢, 鄉校 소속의 校奴婢, 驛 소속의 驛奴婢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내노비와 교노비를 私奴婢로 파악하려는 견해들도 없지 않다.²⁰⁾ 그러나 「公私賤 國俗 內奴·寺奴·驛奴·校奴 謂之公賤 士庶之奴 謂之私賤」²¹⁾이라 하여 내노비와 교노비도 공노비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필자는 內奴婢·寺奴婢·官奴婢·校奴婢를 모두 공노비로 파악한다.

1793年(正祖 17)경에 작성된 「濟州大靜旌義邑誌」²²⁾의 奴婢條를 참조하여 당시 제주도내의 공노비 수를 살펴보면 다음 <表 5-7>과 같다.

<表 5-7>에 의하면 1793년경 제주도의 공노비 규모는 濟州牧이 9,211口, 大靜縣이 1,298口, 旌義縣이 5,188口로 모두 15,697口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아니지만, 실지 공노비 수는 이 보다 많은 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위 기록상으로는 仁壽府奴婢가 대정현에는 전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1795년 今勿路里 호적에서는 仁壽府奴戶가 5호나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의현의 경우에 있어서도 관노비와 교노비의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실제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된다. 즉, 정의현의 官衙와 鄉校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속에

20) 校奴婢를 私奴婢로 파악하고 있는 견해는 李章熙, 「奴婢制의 崩壞」(『한국사』 13, 국사편찬위원회, 1978, pp.488-489)를 참조할 수 있으며, 內奴婢를 私奴婢로 인식하고 있는 논문은 池承鐘, 「朝鮮前期 內需司의 性格과 內需司奴婢」(『韓國學報』 40, 1985)가 대표적이다.

21) 『星湖僿說』 卷四의 下, 公賤條.

22) 「濟州大靜旌義邑誌」(奎章閣所藏 No.17436)는 亞細亞文化社에서 1983년에 『邑誌六:濟州道』로 影印 간행하였다.

<表 5-7> 1793年頃 濟州島の 公奴婢 數

三邑 所屬	濟州牧		大靜縣		旌義縣		合計
	奴	婢	奴	婢	奴	婢	
內需司	352	372					724
內資寺	1,023	1,815	68	89	1,503	1,733	6,231
內贍寺	675	1,373	81	103	121	765	3,118
奉常寺	254	744	81	98	102	185	1,464
仁順府	316	579	36	98	95	135	1,259
仁壽府	194	291			102	172	759
司宰監	2	5	50	47			104
禮賓寺	60	196	53	73			382
司贍寺	101	264	52	61	75	103	656
宗親府		3	18	24			45
掌隸院	157	264	13	19	21	45	519
大君傍	23	18					41
軍器寺			33	47	12	19	111
典醫監			46	58			104
官奴婢	48	53	23	16			140
校奴婢	12	5	8	3			28
院奴婢	8	4					12
合計	3,225	5,986	562	736	2,031	3,157	15,697

서 여기에 소속된 노비가 1口도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공노비의 규모는 15,697口 보다는 다소 많은 수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어떻든 1793년경의 15,697口라는 공노비 수는 18세기 초의 公奴婢

數 24,743口²³⁾에 비해서 9,000여 구가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8세기 말에 이르면 공노비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던 시노비가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²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는 사노비가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²⁵⁾ 이는 그 만큼 제주지역의 공노비에 대한 구속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공노비들은 免賤을 강하게 원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한 면천이 행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공노비가 남을 수 밖에 없었던 요인 중의 하나로 私奴婢의 公奴婢化를 지적할 수 있다. 즉,

섬 안의 公賤은 대부분 免賤할 마음이 있습니다. 私賤을 本主의 所居官에게 사거나 혹은 差奴가 들어 왔을 때에 사도록 하되, 壯奴婢의 免賤은 私奴婢 5口를 사서 납부하면 특별히 면천을 허락하고, 10세 이하 50세 이상의 노비의 면천은 사노비 3口를 사서 납부하면 특별히 면천을 허락하십시오

23) 李衡祥, 『南宦博物』(韓國精神文化研究院 影印本, 1979), 奴婢條 參照. 이에 의하면 公奴婢의 수는 官奴 165口, 官婢 149口, 內需司奴婢 427口, 各司奴婢 23,948口, 大君房奴婢 26口, 鄉校奴婢 21口, 書院奴婢 7口로 모두 24,743口이다. 이는 당시 제주도 인구 43,515명(李衡祥, 『耽羅巡歷圖』,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影印本, 1979, p.43)의 56.9%에 해당한다.

24) 당시 公奴婢 감소의 요인은 二重收貢에 따른 冒避, 逃散 또는 身貢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노비안에서 漏脫시키거나, 出生·物故·逃故·移徙 등에 대한 보고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隱漏者가 많아졌기 때문이다(全炯澤, 『朝鮮後期奴婢身分研究』, 一潮閣, 1989, pp.110~119).

25) 이는 丹城의 寺奴婢 수의 변화와 비교 했을 때 확연히 드러난다. 단성의 경우 金相煥, 앞의 논문, p.63 참조.

地域	1678年	1704年	1750年	1786年	1793年頃
丹城 濟州	119	23,948	11	1	14,793

요. 內奴婢가 사들인 자는 內司에 예속시키고, 寺奴婢가 사들인 자는各司에 예속시키고, 官奴婢가 사들인 자는 官家에 예속시킨다면 公的으로는 다섯 배의 이득이 있고 私的으로는 免賤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本主의 이로움은 그 값(사노비의 값)을 받는 것이고, 島民에게는 원래의 雜類가 없게 됩니다. 일시에 변통하여 萬世에 永賴케 한다면 牧民이나 禦衆이 다 편할 뿐 아니라, 免賤者가 良役에 들어가니 防軍이 저절로 넉넉하여지고 相換者가各司에 편입되니 牧子가 심히 넉넉하고 內奴의 수가 많아지니 貢物이 저절로 감절이 되고 官奴의 수가 많아진 즉 官役이 헐해질 것입니다.²⁶⁾

라 한 바와 같이, 공노비가 일정한 액수의 사노비를 사서 관에 납부하면 특별히 면천을 허락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즉, 공노비가 본주의 소거관이나 차노(본주가 신역을 받기 위하여 제주에 파견한 노)가 들어 왔을 때에 사노비를 매입하여 장노비는 5구, 10세 이하 50세 이상의 공노비는 3구를 관에 납부하면 면천을 허락하였다. 이때에 면천을 원하는 공노비가 內奴婢·寺奴婢·官奴婢인가에 따라 그들이 사서 관에 납부한 사노비를 본래 면천을 원하는 공노비의 소속관아에 각기 예속시켰다. 그럼으로써 공노비에게는 면천의 즐거움을

26) 「耽羅狀啓抄」, pp.491-492.

島中公賤 亦多有免賤之心 或買私賤於本主·所居官爲白去乃 或買於差奴入來時爲白去乃 壯奴婢免賤 則私奴婢五口買納是白去等 特許免賤爲白遣 十歲以下 五十歲以上 奴婢免賤 則私奴婢三口買納爲白去等 特許免賤爲白乎矣 內奴婢所買者 屬於內司 寺奴婢所買者 屬於各寺 官奴婢所買者 屬於官家 則公有五倍之得 私有免賤之樂 本主利其受價 島民元無雜類 一時變通 萬世永賴 牧民禦衆 俱爲兩便叱分不俞 免賤者入於良役 則防軍自裕 相換者入於各司 則牧子甚優 內奴數多 則貢物自倍 官奴數多 則官役可歇.

줄 수 있었고, 사노비에게는 많게는 6·7처, 적게는 2·3처에 부담하고 있던 신역²⁷⁾을 한 곳에 부담함으로써 사노비의 원망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공노비를 양인화함으로써 양역이 충실해 질 수 있는 이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노비들이 대거 공노비화 됨으로써 이들로부터 거두어들인 貢物이 배로 늘어나는 이익과 관노비의 役을 덜어주는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사노비 4,400 여명 중에 어느 정도의 수가 공노비화 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사노비의 공노비화 추세가 점차 진행되고 있었다.

(2) 公奴婢의 役

일반적으로 公奴婢戶의 호적이 일반호적과 다른 점은 일반호적에서는 戶主와 妻의 四祖가 기재되게 되어 있으나, 공노비의 경우는 호주와 그 처의 四祖가 아니라 父母 및 祖父母만이 기재되는 점이다.²⁸⁾ 그러나 1714년(肅宗 40)에 「甲午式戶籍事目」이 실시된 이후 점차 四祖와 母名 그리고 소속 官主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²⁹⁾

그럼 제주지역 公奴婢戶의 기재 양식과 내용을 호적에서 몇 사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事例 1. 1783年(正祖 7) 東城里 戶籍中草

1統 2戶 內資寺奴營紙匠佐千弘年五十五己酉本大元父寺奴太碩年七十六戊子祖正兵日先曾祖正兵末叱金外祖名不知母寺婢有玉妻奉常寺婢萬玉年五十三辛亥本茂安父寺奴世貴祖曾祖名不

27) 註 14) 참조.

28) 朴容淑, 『朝鮮後期鄉村社會研究』, 慶北大博士學位論文, p.70 참조.

29) 「甲午式戶籍事目」, 규장각도서 No.12317.

公私賤 各立爲戶 四祖母名及官主 分明開錄.

知外祖寺奴韓宗立本清州母同寺婢韓眞
率前妻女仁順府婢尙月年二十七丁丑母名不知
率外孫子同寺奴營紙匠金萬石年二壬寅
率花妻仁順府婢日尙年四十八丙辰父寺奴梁白日母名不知
率妻弟同寺婢萬碧年四十一癸亥

事例 2. 1789年(正祖 13) 東城里 戶籍中草

13統 3戶 官奴姜尙龍故代弟官奴成彥昌年二十四丙戌本昌寧父鎮撫
春永祖書員以完曾祖納粟通政進業外祖鄉吏洪才永本南陽
母同官婢雪中梅年四十八壬戌
率妹同官婢桂蟾年二十庚寅父良人文德晚
率外姪子同官奴吳時見年二戊申父良人命夏
率弟同官奴崔東年十三丁酉父良人益憲
次弟同官奴尹永吉年九辛丑父良人復厚
率姪子假率姜衣孫年八壬寅父官奴尙龍

事例 3. 1795年(正祖 19) 今勿路里 戶籍中草

3統 1戶 校奴李成年三十九丁丑本完山父鎮撫五立祖良人取完曾祖
名不知外祖寺奴吳之寬本海州
母同校婢仁德年七十丙午
妻奉常寺婢永月年四十一乙亥本不知父寺奴次億祖良人廷
己曾祖私奴金外祖私奴姜同本大完(元)母同寺婢仁賓
率子同寺奴募軍萬水年十五辛丑
次子同寺奴募軍萬兼年十三癸卯
次子同寺奴募軍萬石年七己酉
率女同寺婢萬今年五辛亥

제주도의 경우, 事例 1. 2. 3.에서 보면 寺奴戶·官奴戶·校奴戶 모두 戶主와 妻의 四祖를 분명히 밝히는 것을 원칙이었다. 다만 四祖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不知라 기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노비 호의 호주와 처의 경우 모두 姓과 本貫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거의 모든 공노비는 성과 본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호적 기재상에 있어서 공노비 소유 관아의 기재를 제외하면 양인의 호적과 특별하게 다른 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1786년(正祖 10) 東城里戶籍과 中文里戶籍, 1789년(正祖 13) 自丹里戶籍, 1795년(正祖 19) 今勿路里戶籍의 분석을 통하여 공노비 가운데 관노비와 교노비를 제외한 寺奴婢의 良役實態를 이해해 보면, <表 5-8>과 같이 나타난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良役을 담당할 인구가 부족하게 되자 국가에서는 노비들을 점차 軍役に 충당함으로써, 노비들에게 從良의 기회를 넓혀가고 있었다.³⁰⁾ 이러한 현상은 군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양인이 부담하는 양역에까지 확대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제주지역의 경우에서도 특히 대정현의 경우는 인구가 적어 役에 응해야 할 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³¹⁾ 이에 公奴婢들을 良役に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³²⁾ 소위 身賤良役의 현상이 매우 일반화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表 5-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公奴의 86.5%가 良役을 부담하고 있다. 防軍·牙兵 등의 소위 六苦役層에 해

30) 平木 實, 앞의 책, 1989, pp.185-187.

全炯澤, 앞의 책, 1989, pp.202-210.

31) 『顯宗改修實錄』 卷12, 顯宗 5年, 11月 丁酉條.

32) 李元鎮, 『耽羅志』, 濟州牧 牧養條.

李衡祥, 「耽羅狀啓抄」, p.468.

<表 5-8> 寺奴婢의 良役實態

役	公奴婢	仁順府奴	奉常寺奴	仁壽府奴	司帝監奴	內子寺奴	內膳寺奴	典醫監奴	禮賓寺奴	軍器寺奴	司膳寺奴	掌隸院奴	宗親府奴	計
紙匠	印	1												1
紙匠	匠	1				3	1							5
羅將	將	1												1
醫生	生	1												1
羅將	率	1										1		2
牧子	丁	1												1
匠人	人員	2	2		1		1				1			7
書城	手	1	2	1	2	6	1		2	4		2		21
守城	木	1												1
山直	尺				1									1
除番	軍	1	1			2	1	1						6
果牧	軍	1	1											1
防水	直	1	1										1	3
習子	子	1	2	1		4	4	3	1		1		1	17
鐵匠	軍		3			1	4				2	1		11
書馬	匠		1		1		1							2
鎖記	馬		1								1			2
番漢	記		1			2	1				1			3
使令	漢		1			1	2							5
牙兵	令			1		5					1			4
譯生	兵					2			1					7
募軍	生					1								2
弓人	軍					1								2
記官	人						1					1		1
其奴	官							1						1
	他	1	4	1	2	4	3		1					16
合	計	15	20	4	7	32	21	5	5	4	7	5	1	126

당하는 軍役뿐만 아니라, 紙匠·匠人·水鐵匠·守城木手 등의 手工에 해당하는 직역, 또한 당시 고역으로 인식되던 牧子·果直·番漢 등의 직역에 주로 공노비들을 충당하고 있다. 심지어는 記官·譯生·醫生 등 중인의 직역으로 생각되는 役에도 공노비가 진출하고 있다. 공노비로서 書員의 직역을 칭하는 경우가 20명이나 되고 있어, 이들의 良役實狀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3) 公奴婢의 結婚樣態

公奴婢의 婚姻樣態에서 나타나는 配偶者의 분석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일찍이 노비의 결혼양태에 대해서는 몇 편의 論考가 있다.³³⁾ 韓榮國의 경우, 1609년의 울산 호적의 분석을 통하여 私賤의 경우 60%, 公賤의 경우 27%가 交婚하고 있음을 밝히고, 私賤의 交婚率이 높은 것은 소유주의 노비증식 기도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리고 公賤은 원래 賤賤相婚의 성향이 강했으나 점차 良賤交婚이 확대되었음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공노비층이 점차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하여 간 데에 있었다고 지적하였다.³⁴⁾ 다시 말해서 공노비의 경우는 사노비와는 달리 소유주의 노비증식 기도가 거의 없이 노비와 배우자의 의사에 의해 혼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교혼의 증가는 양인층의 지위 하락과 노비의 지위상승의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면 제주지역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33) 韓榮國, 「朝鮮中葉의 奴婢結婚樣態(上·下) — 1609年の 蔚山府 戶籍에 나타난 事例를 中心으로 —」, 『歷史學報』 75·76(1977); 77(1978).

朴容淑, 『朝鮮後期鄉村社會研究』, 慶北大博士學位論文, 1986.

金相煥, 「朝鮮後期 公奴婢의 身分變動」, 『慶北史學』 12, 1989.

34) 韓榮國, 앞의 논문.

먼저, 大靜縣 4개 마을의 戶籍에서 확인되는 公奴婢의 年齡別 分布를 나타낸 것이 <表 5-9>이다.

<表 5-9> 公奴婢의 年齡分布

區分	1-10	11-15	16-25	26-35	36-45	46-60	61以上	?	計
寺奴	60	27	35	23	29	52	33		259
寺婢	71	27	31	48	43	73	36	3	332
官奴	2	1	3			1			7
官婢			3	2	2	1			8
校奴			2	1	2	1			6
校婢		1			1		1		3
計	133	56	74	74	77	128	70	3	615
%	21.6	9.1	12.0	12.0	12.5	20.8	11.4	0.5	99.9

<表 5-10> 公奴의 結婚樣態

本人	配偶者	東城里	中文里	自丹里	今勿路里	合計	%
寺奴	寺婢	24	30	15	10	69	79.3
校奴	寺婢				4	4	4.6
	合計	24	30	15	14	73	83.9
寺奴	良女	3				3	3.4
	召史	7		1	1	9	10.4
官奴	召史	2				2	2.3
	合計	12		1	1	14	16.1
總計		36	30	16	15	87	100

공노비의 연령별 구성은 1~15세 까지가 30.7%, 16~60세 까지가 57.3%, 60세 이상이 11.4%의 분포를 나타낸다. 이들 중에 公奴의 결혼양태는 <表 5-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寺奴는 81사례 중에 85.2%가 서로 婢와 相婚하는 모습을 보인다. 寺奴의 교혼은 14.8%에 지나지 않는다. 校奴와 官奴의 혼인은 사례가 매우 적어 이를 토대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교노는 相婚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官奴는 2사례 모두 交婚이 이루어 지고 있다.

<表 5-11> 公婢의 結婚樣態

本人	配 偶 者	東城里	中文里	自丹里	今勿路里	合計	%
寺婢	寺 奴	25	30	18	12	85	80.2
	官 奴	1				1	0.9
	校 奴				4	4	3.8
	合 計	26	30	18	16	90	84.9
寺婢	良人弓匠	1				1	0.94
	業武馬隊	1				1	0.94
	紙匠束伍	1				1	0.94
	良人營遺軍	1				1	0.94
	良人防軍	2	1			3	2.8
	良人遺軍			1		1	0.94
	良人城丁		1			1	0.94
	假率馬隊				1	1	0.94
	西歸鎮訓導		1			1	0.94
	慕瑟鎮訓導		1			1	0.94
	記 官				1	1	0.94
	業 武			1		1	0.94
	忠 翊 衛		1			1	0.94
	儒 生		1			1	0.94
	合 計	6	6	2	2	16	15.1
總 計		32	36	20	18	106	100

전체적인 公奴의 혼인양태는 83.9%가 상혼을 하고 있어 노비간의 혼인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公奴의 혼인에 있어서 16.1%만이 相婚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노비간의 상혼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제주지역의 공노비들은 여전히 그들의 지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으로 公婢의 혼인 양상은 어떠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官婢와 校婢의 혼인 사례가 없어서 여기서는 寺婢에 국한하여 살펴 수 밖에 없다. <表 5-11>에 의하면 전체 106개의 사례 중에 奴와의 相婚은 모두 90개의 사례로 84.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은 寺奴와의 相婚으로 당시 寺奴와 寺婢간의 혼인이 거의 일반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寺婢의 交婚은 모두 16개 사례로 15.1%에 이른다. 이 수치는 公奴의 교혼율 16.1%와 거의 비슷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寺婢의 교혼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보면, 대부분이 양인과의 혼인이었으나 記官·業武·忠翊衛 등의 職役을 칭하는 자와의 혼인 사례가 각기 한 사례씩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儒生의 직역을 칭하는 자와의 혼인 모습도 보이고 있어, 公奴에 비하여 배우자 계층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VI. 鄉吏層의 地位와 身分·職役變動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鄉吏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다. 그것은 향리가 郡縣의 최고 통치자인 守令을 도와 국가의 통치 명령을 지방민에게 침투, 실현시키는 실질적인 지방민의 지배자로 지방 통치의 성패는 이들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鄉吏層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地方 制度史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身分構造의 해명, 鄉村社會構造의 변화와 관련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鄉吏層의 조직구조, 향리 지식인층의 성장, 향리의 신분 변동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도 향촌사회가 갖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향리의 범주 또는 그 조직의 내부 질서 등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장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향리의 신분 변동에 관해서도 다양한 논문들이 축적되었지만, 연구자들에 따라 향리 가계의 신분이 일반적으로 상승되었다고 보거나,¹⁾ 이와는 달리 향리층이 양반으로의 신분

-
- 1) 金俊亨, 「朝鮮後期 蔚山地域의 鄉吏層 變動」, 『韓國史研究』56, 1987.
——, 「朝鮮後期 鄉吏層의 변동 - 彦陽 지역의 예를 통한 접근」, 『慶尙史學』6, 1990.
金弼東, 「朝鮮後期 地方梨胥集團의 組織構造(上·下)-社會史的 接近-」, 『韓國學報』28-29, 1982.
全宇哲, 「朝鮮後期 鄉村社會에 있어서의 吏胥階層의 研究-丹城戶籍의 分析을 통한 事例研究-」, 『震檀學報』60, 1985.
山內弘一, 「李朝後期 鄉吏身分移動與否考 - 丹城縣戶籍臺帳にくる 鄉吏系家門の事例研究-」, 『上智史學』33, 1988.

상승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는 견해,²⁾ 또는 당시 전반적인 신분 상승 추세와는 달리 양반에서 향리로 그 신분이 낮아지기도 했다는³⁾ 등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연구 대상 지역이 서로 상이하였다는데, 일차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全宇哲과 山內弘一은 단성지방의 全州 崔彦良 가문, 桂勝範은 단성지방 陝川 李後男 가문, 金俊亨은 울산 및 단성지방의 향리 가문, 李勛相은 거창·경주·안동지방의 향리 가문, 崔承熙는 준호구 또는 호구단자를 통해 남해지방의 향리 가문을 각각 다루었다.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 鄉吏家門의 身分變動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당시 향리의 신분구조와 그 변동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리층을 형성하는 職役의 지역적 특성뿐만 아니라, 각 지역 향리 가문의 事例研究가 더욱 요청된다고 하겠다.

본 장의 서술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의 분석은 다음의 동성리 호적자료에 의하였다. 동성리의 호적 자료에 국한한 것은 향리의 대부분이 대정현 관아가 위치했던 동성리 호적에 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마을의 호적에서도 향리층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동성리 호적에 국한하여 파악하더라도 향리의 대체적인 신분변동의 규명은 가능하리라고 생각 된다.

2) 李勛相, 『朝鮮後期の 鄉吏』, 一潮閣, 1990.

桂勝範, 「朝鮮後期 丹城地方 陝川 李後男 家系の 職役과 身分」, 『古文書研究』 3, 1992.

3) 崔承熙, 「朝鮮後期 鄉吏身分移動與否考 - 鄉吏家門古文書에 의한 事例研究 -」, 『金哲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3; —, 「朝鮮後期 鄉吏身分移動與否考(2) - 草溪 卞氏 鄉吏家門古文書에 의한 事例研究-」, 『韓國文化』 4, 1983.

- 1)乾隆 39年 10月 日 東城里 統籍冊 ----- 1774年(英祖 50)
- 2)乾隆 51年 正月 日 丙午式 ----- 1786年(正祖 10)
- 3)嘉慶 12年 正月 日 東城里 丁卯式 ----- 1807年(純祖 7)
- 4)嘉慶 21年 正月 日 東城里 ----- 1816年(純祖 16)
- 5)道光 5年 正月 日 大靜縣 東城里 乙酉式 ---- 1825年(純祖 25)
- 6)道光 14年 正月 日 大靜縣 東城里 甲午式 --- 1834年(純祖 34)
- 7)道光 23年 正月 日 大靜縣 東城里 癸卯式 --- 1843年(憲宗 9)
- 8)道光 29年 正月 日 大靜縣 東城里 己酉式 --- 1849年(憲宗 15)
- 9)咸豐 11年 正月 日 大靜縣 東城里 辛酉式 --- 1861年(哲宗 12)
- 10)同治 9年 正月 日 大靜郡 東城里 庚午式 --- 1870年(高宗 7)
- 11)光緒 5年 正月 日 大靜郡 東城里 己卯式 --- 1879年(高宗 16)
- 12)光緒 14年 正月 日 大靜縣 東城里 戊子式 -- 1888年(高宗 25)

편의상 9年 간격의 시차를 두고 분석하였으나, 해당 式年의 호적이 없을 경우 그에 가장 가까운 식년의 호적중초를 이용하였다. 또한 필요시에 따라 이외의 호적중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다.⁴⁾

1. 時期別 鄉吏 輩出 家門

제주도에도 일찍부터 향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초기 제주도의 향리는 육지 지역과는 달리,

4) 東城里 戶籍中草의 현존 여부는 本考의 2장 <表 2-3> 참조.

鄉吏는 그 役을 대대로 전하여 그 고을과 함께 흥망을 같이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주의 경우 향리는 入役하지 않고 오로지 典吏에게 일임하니, 향리를 두는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향리 또한 禮法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고을안의 일을 하나도 아는 것이 없어 신이 괴이하여 그 까닭을 물은 즉, 고을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옛날에 安撫使 趙原이 일시적인 편의로 良民 가운데 글자 아는 사람 30여 명을 뽑아서 典吏라 칭하고, 記官의 役을 대행하게 하던 것이 지금까지 고쳐지지 못하여, 아침에 전리가 되었다가 저녁에 鎭撫나 千戶가 되므로 백성들이 다투어 하고자 합니다. 향리는 다만 屯田에서 부역하며 漁獵·興販 등 雜役에 종사할 뿐이다’라고 합니다.⁵⁾

라 한 바와 같이 屯田에 부역하면서 漁獵·興販 등 雜役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 연유는 安撫使 趙原이 良民 가운데 글자를 아는 사람 30여 명을 선출하여 典吏라 칭하고, 그들에게 末端地方行政의 실무를 담당케 한데서 비롯되었다. 趙原이 都安撫使로 재임한 기간이 1406년 9월에서 1409년 윤4월이니까 이 기간에 典吏의 직책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제주지역에는 600여 명의 鄉吏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典吏가 존재하고 있는 한, 그들은 제주 지방행정에서 수령

5) 『世宗實錄』, 世宗 9年, 6月 丁卯條.

鄉吏世傳其役 與本邑同休戚者也 濟州不役鄉吏 專任典吏 有乘置吏之法 吏亦非徒不諳禮法 官中之事 一無所知 臣怪問其故 鄉人皆曰 昔者安撫使趙原 以一時之便 擇良民識字者三十餘人 稱爲典吏 以代記官之役 至今不革 朝爲典吏 暮爲鎭撫千戶 民爭欲之 鄉吏則只役於屯田漁獵興販等雜事而已.

과 배제된 양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초기 제주도 지방의 행정 실무는 典吏라는 특수 계층에 의행 수행되었다. 그러나,

또한 제주의 각 고을 향리수가 600여 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 지식인 典吏의 役을 맡을 만한 자가 없어 따로 전리를 두어서 奉足을 지급하여 우대하며 軍役을 담당할 백성을 줄이겠습니까. 청컨대 다른 州郡의 例에 의하여 향리로 하여금 六房의 책임을 맡도록 하고 전리를 혁파하여 軍額에 충당하도록 하십시오.⁶⁾

라 한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427년(세종 9) 이후 제주도에서도 점차 지방 행정의 실무를 鄉吏層에 전담시키기 시작하여 조선후기는 완전히 향리들이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⁷⁾

요컨대 朝鮮後期 제주도 지방 鄉吏의 대체적인 額數를 보면 다음 <表 6-1>과 같다. 이 표는 어디까지나 鄉吏 액수의 대체적인 윤곽을 이해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먼저 기록의 부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正祖年間(1780-89)의 자료에는 大靜縣의 향리 액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의 그것이다. 다음으로 吏 또는 人吏로 기재된 경우 그것을 모두 향리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정현 향리의 수는 18세기 후반의 경우 60여명 내외로 여겨

6) 앞의 책과 같음.

且濟州各官鄉吏之數 至於六百餘人 其中豈無識者可任典吏之役者 而別置典吏 優給奉足 以減軍役之民哉 請依他州郡例 令鄉吏掌六房之任 革典吏以充軍額.

7)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이 참고가 된다.

拙稿, 「朝鮮時代 濟州島 地方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濟州島史研究』 創刊號, 1991.

진다. 19세기에 오면서 吏額의 증가가 일반적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⁸⁾

<表 6-1> 朝鮮後期 濟州 地域 鄉吏의 額數

時 期	鄉吏의 額數	典 據
1704年頃	吏 730名, 醫生 62名, 律生 32名, 漢譯生 56名, 倭譯生 33名	『南宮博物』誌吏條
1765年頃	鄉假吏 141名, 醫生 24名	『耽羅防營摠覽』, 緣吏廳
正祖年間 (1780-89)	濟州牧: 鄉吏 168名, 醫生 24名, 譯生 52名, 倭生 53名 大靜縣: ?, 旌義縣: 鄉吏 42名	『濟州邑誌』, 濟州牧; 大靜縣: 旌義縣, 各 官職條
1791年	大靜縣: 鄉假吏 52名, 醫生 2名	『辛亥大靜縣釐正節目』
1793年頃	濟州牧: 人吏 306名, 大靜縣: 人吏 86名, 旌義縣: 人吏 157名	『濟州大靜靜義邑誌』, 濟州牧: 大靜縣: 旌義縣, 軍額條
1841年頃	濟州牧: ?, 大靜縣: 人吏 86名, 旌義縣: 人吏 152名	『耽羅誌草本』, 大靜縣: 旌義縣, 軍額條

제주도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도 향리 액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841년경의 액수는 1793년경과 별로 다름이 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邑誌 작성시 이전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東城里 戶籍中草에서 대정현 향리의 배출 상황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 <表 6-2>를 작성하였다.

8) 張東杓, 「18·19세기 吏額 增加의 현상에 관한 研究」, 『釜大史學』 9, 1985 參照.

<表 6-2> 時期別 郷吏를 輩出한 家門

時期	家門 職役	晉州河	南原趙	古阜李	鎭川宋	晉州姜	平澤林	忠州池	濟州高	濟州韓	金海金	濟州鄭	濟州梁	密陽朴	晉州秦	南平文	坡平尹	豐川任
1807	戶長	1																
	記官																	
	郷吏		1	3		1												
	貢生				1													
	作吏																	
1816	戶長	1			1													
	記官			1			1	1										
	郷吏			2														
	貢生					1												
	作吏								1									
1825	戶長				1													
	記官		1	2		1	1	1		1	1							
	郷吏	2																
	貢生			1		1					1							
	作吏			1		1					1							
1834	戶長		1	1														
	記官		1	3		1	1	2		1	2	1	1					
	郷吏	1																
	貢生		1															
	作吏		1								1							
1843	戶長		2	1														
	記官			2		1					4							
	郷吏																	
	貢生				1													
	作吏	2		1				1			1		1					

時期	家門 職役	晉州河	南原趙	古阜李	鎮川宋	晉州姜	平澤林	忠州池	濟州高	清州韓	金海金	清州鄭	濟州梁	密陽朴	晉州秦	南平文	坡平尹	豐川任
1849	戶長		1			1				1	1							
	記官										1							
	鄉吏																	
	貢生				1													
	作吏			2		1		1	1		2	1						
1861	戶長			1		2				1	1	1		1				
	記官																	
	鄉吏																	
	貢生			1							1							
	作吏			1				1			2		1		2			
1870	戶長		1	1		2				1	2	1	2					
	記官										1							
	鄉吏																	
	貢生		1	1							1					1		
	作吏			2	1				1		1							
1879	戶長			1		2				1		1	2					1
	記官										1							
	鄉吏		1															
	貢生		1								1			1		1		
	作吏					2			1		2						1	
1888	戶長		2	1						1	1		1					
	記官																	
	鄉吏																	
	貢生															1		
	作吏		1	1		1			1		3						1	

東城里 戶籍中草를 통해서 볼 때 大靜縣의 향리를 배출한 가문은 모두 17개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시 동일 가문내에서도 가계를 달리하는 경우로 구분하면 약 40여 가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를 그 지위가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전시기에 걸쳐 戶長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平澤林氏, 忠州池氏, 濟州高氏, 晉州秦氏, 南平文氏, 坡平尹氏 등의 가문은 새롭게 향리 가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얻었을 뿐, 아직 그 家勢는 미약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호장을 배출한 가문 중에서도 古阜李氏, 晉州姜氏, 晉州河氏, 金海金氏 등을 제외한 가문은 비록 호장을 배출했지만 지속적인 배출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위 표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첫째, 1807년 향리의 가문은 古阜李氏, 晉州河氏, 南原趙氏, 鎭川宋氏⁹⁾, 晉州姜氏에 불과하였으나 그 이후 새로운 가문들이 향리층으로 진입함으로써 향리층이 다양화 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平澤林氏, 忠州池氏, 濟州高氏, 淸州韓氏, 金海金氏, 濟州梁氏, 密陽朴氏, 晉州秦氏, 南平文氏, 坡平尹氏, 豐川任氏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흥 향리 가문의 대부분은 평민층에서 상승되고 있다. 다만 진주진씨의 경우 1861년 作吏인 秦尙祿의 父 榮好의 父-祖-曾祖가 留鄉別監-學生-學生으로 기재되어 있어 마치 양반 가문에서 하강된 것으로 보이지만 1816년, 1825년, 1843년의 호적증초에 의하면 秦尙祿의 父는 書堂直-書堂直-假率을, 본인은 官奴를-官奴-官奴를 칭하고 있어 전통적인 양반 신분으로 추정할 수 없다.

둘째, 향리층에 진입했다가 이탈되는 계층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晉州河氏, 平澤林氏를 들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가계를 살펴계 되면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當代에 양반 신분으로 상

9) 1843년 이후의 호적증초에서는 本貫이 礪山으로 변화되고 있음.

승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가문의 상당수는 양반으로 상승해 나가기 위한 여러의 직역 특히 品官·千摠·城長의 직역을 취득하거나, 혹은 납속직을 칭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2. 家系別 職役 變動의 推移

다음으로 향리의 가계별 직역 변동의 추이를 통해서, 신분변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자.

(1) 李繼昌 · 益昌의 家系

단 한번의 職役 변동도 없이 모두 記官으로 기재되어 있는 盤-厚林-長壽를 부-조-증조로 하는 이 가계는 대정현 향리의 대표적인 가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繼昌·益昌은 1774년 統籍冊과 1783년, 1786년, 1789년 戶籍中草를 통해서 볼 때 직역이 掌隸院奴로 기재되어 있고 母는 掌隸院婢 林今으로 나타나¹⁰⁾ 父의 정상적인 후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계창은 宗親府婢 升安을, 익창은 奉常寺婢 山德을 각기 아내로 맞이 했고, 계창의 아들인 春元·春興·春赫은 宗親府奴, 익창의 아들 春三·春采·春恒은 奉常寺奴로 기재되어 있다.¹¹⁾ 이는 당시 신분 계승에 있어서 從母法이 강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가계가 점차 신분이 상승되기 시작한 계기는 아들대에 그

10) 「東城里 戶籍 中草」, 1774年 12統 5戶; 1783年 12統 5戶, 13統 1戶; 1786年 12統 3戶, 12統 4戶; 1789年 11統 5戶, 12統 1戶.

11) 「東城里 戶籍 中草」, 1783年 12統 5戶, 13統 1戶.

[illegible]

들의 처를 良女로 맞이하면서 부터이다. 물론 계창·익창이 당대에 각기 기관, 호장을 칭하고 있으나 나이가 모두 60이 넘는 상태여서 그 직역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여겨진다.

이 가문에서 지속적으로 가계가 확인되는 쪽은 계창의 長男 春元과 익창의 三子 春恒이다. 먼저 춘원부터 살펴보면, 그는 40대 후반에 助防將의 직역을 칭한 이후 그 직역은 死後에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春元은 東懋·東華·東煥·東煜 4자를 두었는데, 동혁은 兼折校尉 龍讓衛 副司果 千摠, 동화는 武科初試를 통해 城將,¹²⁾ 동환도 무과초시에 합격하여 助防將(千摠助防將)의 직역을 칭하였다. 반면 동욱은 鄉吏->記官->戶長을 거쳐 나이 60에 성장의 직역을 칭하고 있다. 1816년에 그는 戶籍上으로 記官의 직역을 칭하였는데, 「丁丑 六月 日 大靜縣衙中 日記」 여러 곳에서 그가 향리층으로 官廳色의 직임을 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³⁾

동욱에서 확인되는 鄉吏職은 그 다음 대에 가서는 형제들이 모두 作吏·記官·鄉吏·貢生·戶長 등의 직역을 칭하고 있다.¹⁴⁾

한편, 春恒은 향리로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즉, 鄉吏->記官->兼折校尉 行龍讓衛 副司果 千摠의 직역 변동을 보이는데, 천총은 1849년 그의 나이 74세에 얻은 직역이며, 그후 이 직역은 사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이 이 직

12) 1817년 대정현감 金仁澤이 저술한 「丁丑 六月 日 大靜縣衙中 日記」(李鍾學소장), 7월 초2일조에 의하면, 「營門에서 두 城將을 뽑을 제사가 왔으므로 前期 待邊廳에 영을 내렸는데 柳葉箭三巡에 二中 五分이 첫째였다.」라 하여 일정한 시험에 통과해야 성장의 직역을 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 「大靜縣衙 日記」라 칭함.

13) 金仁澤, 「大靜縣衙 日記」, 1817年 6月 1日, 7月 3日條 참조.

14) 「東城里 戶籍 中草」, 1843年 16統 1戶.

역을 칭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향리 - 또는 일반 평민 - 들이 양반 계층으로 상승해 나가
기 위한 노력이, 이 千摠 혹은 城將의 직역을 주로 칭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앞서 춘원의 가계에서도 동혁과 동환은 천총을, 동화와
동욱은 성장을 중요한 직역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춘향은 7子を 두었는데, 戶長으로는 장남 顯貞, 3남 顯邦, 4남 顯
恭이 배출되었고, 2남 顯庚은 記官, 5남 顯承, 6남 顯宏, 7남 顯武는
作吏를 칭하였다.¹⁵⁾

여기서 잠시 직역 변동이 이루어 지고 있는 장남과 6남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장남 顯貞의 경우는 貢生->作吏->記官
->戶長->千摠으로, 6남 顯宏은 作吏->閑良->千摠으로 직역이 변동
되고 있다. 이 경우도 천총을 신분 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직
역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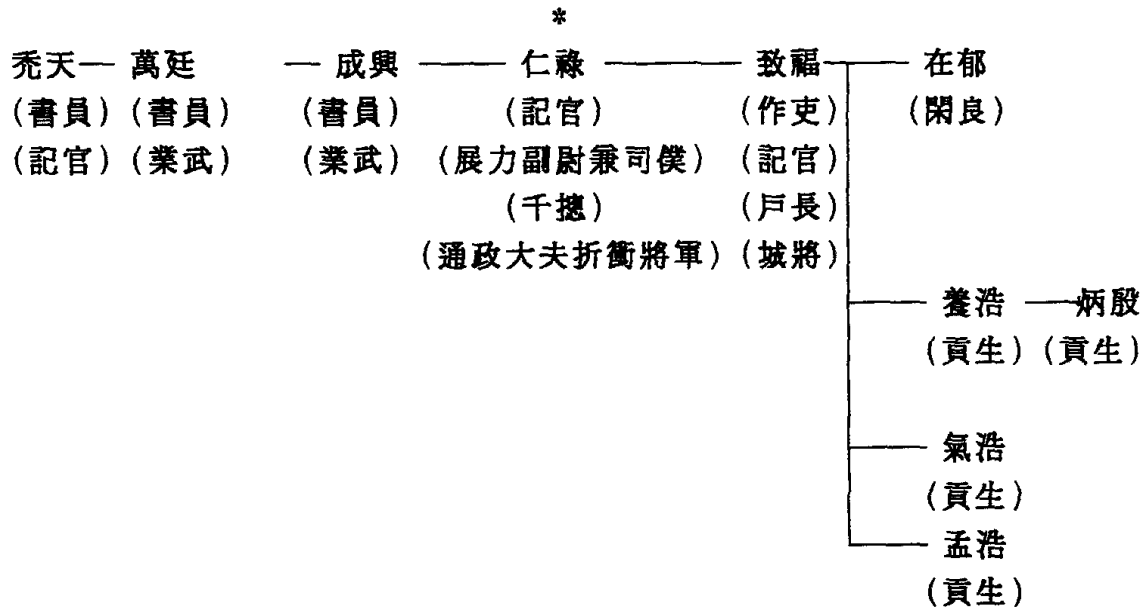
(2) 金仁祿의 家系

<圖 6-2>의 가계도를 보면, 이 가문은 仁祿이 1840년대 記官의
직역을 칭하면서 향리의 직역을 맡게되는데, 부-조-증조에 대한 업
무-업무-기관의 직역은 追尊되어 진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의 직역
변동을 보면 기관->전력부위검사복->천총->통정대부절충장군으로
나타나는데 통정대부절충장군은 그의 나이가 80세 이후이므로 老職
이 확실하다. 또한 그의 아들 치복은 作吏->記官->戶長->城將으로
직역의 이동을 보이고 있다.¹⁶⁾ 문제는 이 가문의 경우도 천총·성장으

15) 「東城里 戶籍 中草」, 1849年 16統 3戶.

16) 「東城里 戶籍 中草」, 1843年 23統 4戶, 1861年 2統 4戶; 1870年
2統 4戶; 1879年 17統 3戶, 1888年 17統 3戶.

〈圖 6-2〉 金仁祿의 家系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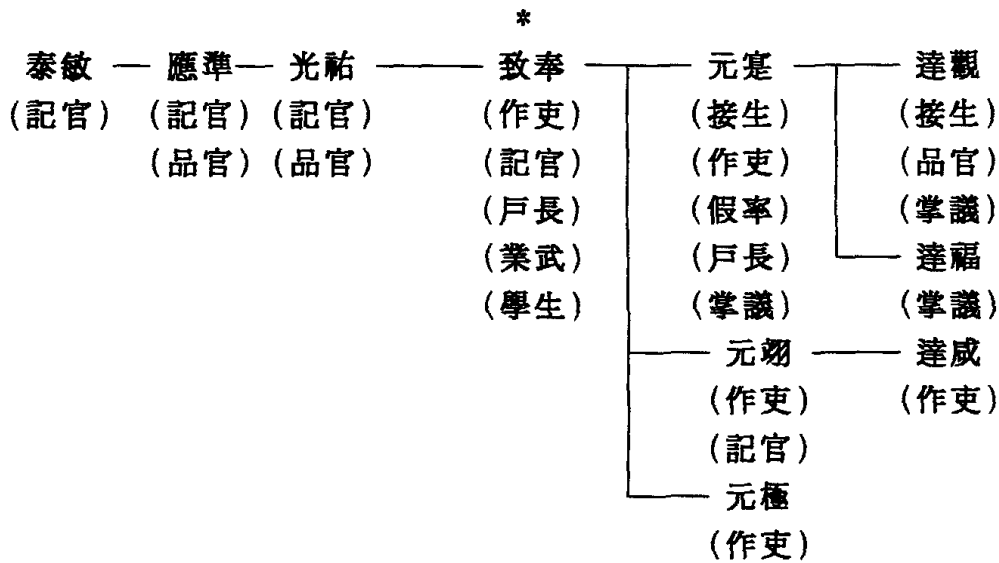
로 직역이 변동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천
총·성장을 종전대로 평민의 직역으로 규정한다면¹⁷⁾ 이는 신분이 하강
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천
총·성장의 직역은 평민 신분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앞서 치복이 호장
으로의 꾸준한 성장은 1861에 그가 厘正으로 호적작성에 참여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후 그는 1870년 호적 작성시에는 監考로
참여하기도 한다.¹⁸⁾

(3) 金致奉의 家系

17) 조성윤, 앞의 논문, 『한국의 전통사회와 신분구조』.

18) 「東城里 戶籍 中草」, 1961年, 1870年 末尾 參照.

<圖 6-3> 金致奉의 家系圖



이 가문은 점차 모록을 통해 양반 가문으로의 성장을 꾀한 대표적인 가문이라 생각된다. 즉, 김치봉의 경우 역시 1834년부터 호적 작성에 厘正으로 참여하면서¹⁹⁾ 作吏->記官->戶長->業武->學生으로 직역이 변동되고 있다. 1885년 호적을 참고하였더니 치봉의 직역은 死後임에도 品官이었다. 이 직역이 1888년 중초에서는 학생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보아, 품관과 학생은 死後에 추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학생을 양반 직역으로 보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조선후기에는 ‘生稱幼學 死稱學生’이 일반화되어 있어 생존시 상민 또는 중인 신분이 사후에 학생을 칭했을 경우, 그것은 단순한 모록 이상의 추존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²⁰⁾

그러나 이 가문의 경우 치봉의 아들 元寔과 손자 達觀이 1888년 호적에서 掌議를 칭하고 있고, 그리고 각기 그들의 아내가 氏를 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봉의 증손자는 幼學을 칭하고 있어 모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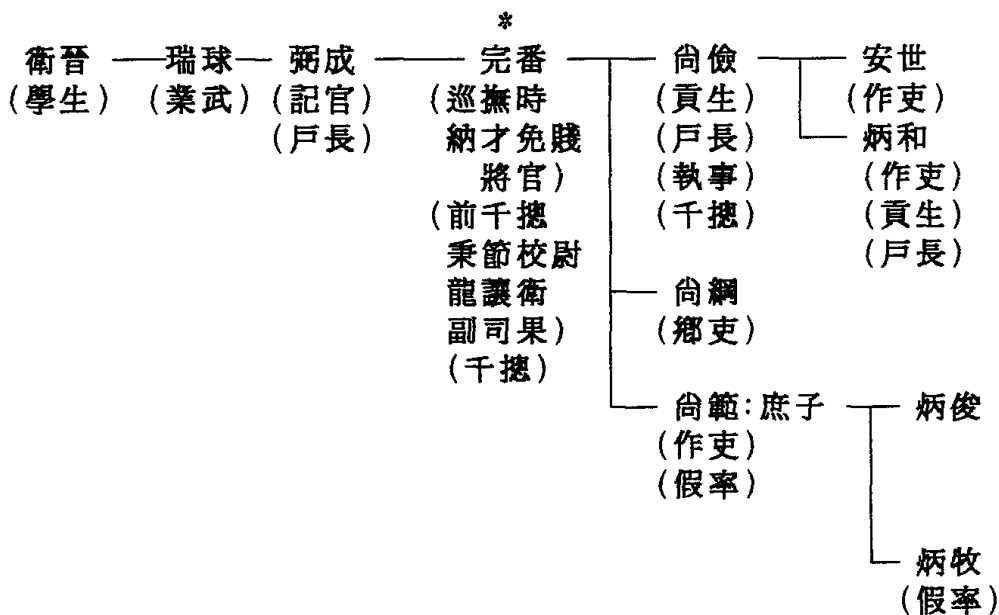
19) 「東城里 戶籍 中草」, 末尾 參照.

20) 李俊九, 앞의 책, p.232.

의한 양반 가문으로의 성장을 엿볼 수 있다. 그 후 지속적으로 양반 가문으로의 성장이 가능했는지 아니면 호적 작성자와의 결탁에 의해 이 식년의 호적중초에서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는지는 이후의 호적중초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언할 수 없다.

(4) 趙完番의 家系

<圖 6-4> 趙-完番의 家系圖



이 가문은 능력을 바탕으로 중인 신분으로 상승한 가문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이러한 추정을 가능케 하는 것은 1783년 호적중초에 完番의 직역이 장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것은 '巡撫時納才免賤'²¹⁾이라 한 사실에서 제주목사가 대정현 巡撫時에 그의 재주(武才 혹은 경제력)를 받아들여 부여한 직역임을 알 수 있다. 3년 후에는

21) 「東城里戶籍中草」, 1786年 5統 5戶 參照.

그의 부 필성이 記官隨率이라는 직역으로 호적 작성시 監考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²²⁾ 그후 필성은 戶長(77세)으로 완번은 전천총병절교위용양위부사과->천총으로 직역이 변동되어 사후에는 계속 천총을 칭하고 있다.²³⁾ 그의 아들 尙儉의 경우 공생->戶長->집사->천총의 직역변동을 보이고 있는데,²⁴⁾ 이 두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것은 천총의 직역이다. 즉, 천총을 평민 신분으로 규정할 때 이 가문은 신분하강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상검의 신분이 하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炳和는 作吏->공생->戶長으로 직역이 변동되면서 중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이다.

신분제 사회에서 父子가 각기 평민과 중인신분으로 함께 거주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자식이 중인 신분이면 오히려 先代에 대한 신분을 追尊의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그에 해당하는 職役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 관행이었음에도 천총의 직역을 계속 기재하고 있는 것은 당시 천총이 평민 신분의 직역이 아니라는 단정을 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이 가문에 있어서 주목되는 것은 제주도의 경우 서자에 대한 차별은 계속 유지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즉 완번의 庶子 尙範은 아버지가 생존시에는 作吏를 칭했으나, 그 이후 가솔로

22) 「東城里戶籍中草」, 1789年 5統 5戶 및 戶籍中草의 末未 參照.

23) 「東城里 戶籍 中草」, 1783年 5-5; 1789年 5-2; 1807年 4-1; 1816年~1849年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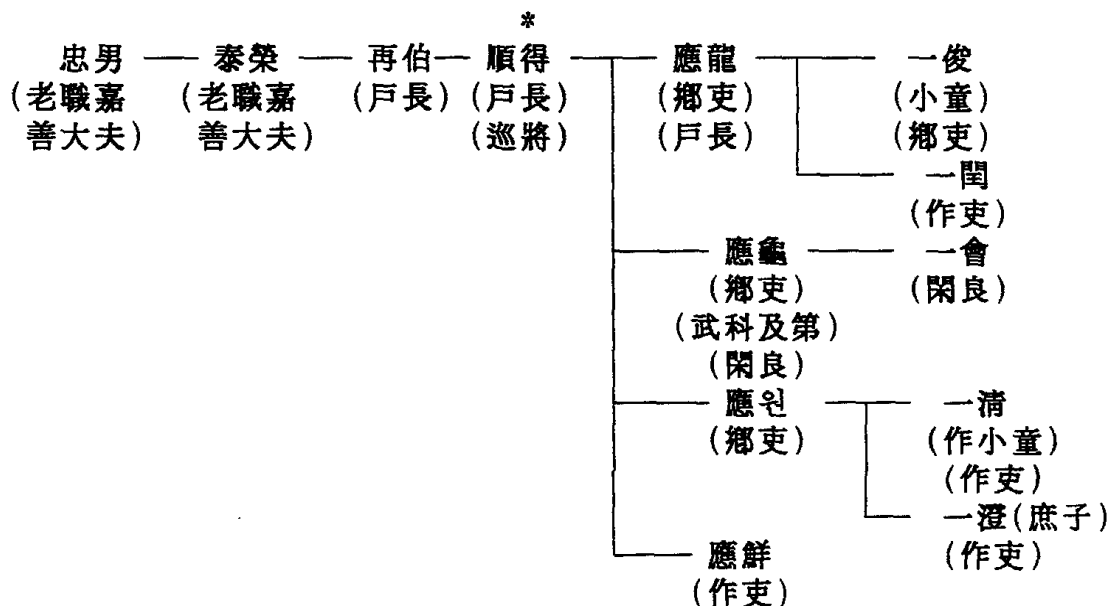
24) 1816년과 1819년 호적중초상에는 상검의 직역이 공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817년 실지 그의 직임은 刑吏였다. 이는 貢生이 향리였음을 입증시켜 준다고 하겠다.(金仁澤, 「大靜縣衙 日記」, 1817년 7월 19일조 및 9월 14일조 참조.

직역이 변동되면서 평민신분으로 하강되고 있어 향리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의 형 상점의 가계와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²⁵⁾

(5) 河順得의 家系

河順得의 직역은 1807년 호적에서 호장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향리 직역을 계승하는²⁶⁾ 것으로 보아 19세기 초 이 지역의 전형적인 향리 집안으로 보인다. 즉 향리의 직역은 아들에서 다시 손자에 이르

<圖 6-5> 河順得 家系圖



기 까지 계속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둘째 아들인 應龜의 경우는 향리로 있으면서 무과에 급제하여 동일 신분내에서도 좀더

25) 「東城里 戶籍 中草」, 1861年 9-2, 34-3; 1870年 34-1; 1879年 24-2; 1888年 34-2.

26) 「東城里 戶籍 中草」, 1807年 12-3.

되기 이전 內贍寺奴였다.²⁹⁾ 그러나 祖 枝晩이 寺奴 -> 書員 -> 良人 -> 書員 -> 記官, 부 萬興은 寺奴 -> 書員 -> 記官으로 직역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³⁰⁾ 이는 김응천이 기관에 오른 이후 父와 祖에 대한 追尊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지 실지 이들이 자력에 의한 직역 이동은 아니라 생각된다.

김응천의 가계가 향리가문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820년대부터이다. 즉, 1825년 호적중초에 의하면 본인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들이 모두 作吏를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50년대 이후 그의 차남 重煥이 호장으로 진출했으나, 이 가문은 한말까지 향리의 직역을 계속 칭하고³¹⁾ 있어 양반으로의 진출은 불가능하였다.

이상의 6개 향리가문의 직역변동을 통해서 18세기 후반 공노비계층이 향리가문으로 진출하는 등 신분변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리고 향리 직역자들은 양반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천충·성장의 직역을 취득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3. 鄉吏의 婚姻實態

다음으로 향리들의 지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향리들의 혼인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그 표를 작성한 것이 <表 6-3>이다.

29) 「東城里 戶籍 中草」, 1786年 18統 2戶.

30) 「東城里 戶籍 中草」, 1825年 30統 3戶; 1831年 26統 4戶; 1849年 13統 1戶; 1861年 13統 1戶; 1870年 13統 1戶.

31) 「東城里 戶籍 中草」, 1888年 12統 5戶, 22統 4戶; 1898年 12統 5戶.

<表 6-3> 19C 大靜縣 鄉吏의 婚姻實態

番 號	鄉 吏			妻 系				典 據 年：統-戶
	本貫	姓 名	職 役	本貫	妻父名	稱號	職役：父，祖，曾祖	
1	晉州	河俊	吏	濟州	高仁	召史	戶長，記官，嘉善	1834:15-1
2	礪山	宋丙	作吏	金海	甘兼	召史	戶長，記官，戶長	1870:20-2
3	晉州	河應	鄉吏	晉州	姜東	召史	戶長，鎮撫，書員	1825:16-3
4	南原	趙炳	貢生	古阜	姜道	召史	戶長，鎮撫，良人	1870:34-1
5	南原	趙承	戶長	金海	李名	召史	記官，嘉善，學生	1888:5-3
6	晉州	姜信	戶長	金海	金受	召史	記官，旗牌，閑良	1879:33-2
7	古阜	李顯	鄉吏	咸德	玄允	召史	記官，記官，記官	1807:12-4
8	清州	韓成	記官	密陽	朴恒	召史	記官，記官，記官	1825:19-4
9	豐川	任尙	戶長	古阜	朴命	召史	記官，武初，司果	1879:32-5
10	忠州	池益	記官	濟州	李成	召史	記官，書員，書員	1816:20-3
11	濟州	梁用	記官	古阜	李春	召史	記官，戶長，記官	1834:33-3
12	晉州	姜周	作吏	南原	趙禮	召史	記官，戶長，千總	1879:18-1
13	濟州	高永	作吏	完山	李一	召史	鎮吏，鎮吏，鎮吏	1879:42-4
14	南原	趙弘	記官	晉州	河順	召史	嘉龍護，戶長，老嘉	1825:15-1
15	金海	金彭	作吏	慶州	金宇	召史	掌議，把摠，將官	1888:24-5
16	南原	趙尙	戶長	順興	安昌	召史	忠翊衛，忠翊衛，忠	1834:3-5
17	濟州	梁在	戶長	金海	金榮	召史	品官，兼司僕，業	1870:30-3
18	南原	趙孟	戶長	豐川	任孝	召史	閑良，業武，記官	1861:14-1
19	錦成	鄭永	戶長	仁同	張喆	召史	閑良，閑良，通政	1861:27-5
20	興陽	宋德	貢生	長城	張申	召史	閑良，閑良，閑良	1843:23-1
21	晉州	河順	戶長	晉州	宋初	召史	老嘉，老嘉，納通	1807:12-3
22	古阜	李春	鄉吏	金海	金應	召史	武科出身，納通，	1807:13-1
23	古阜	李東	記官	完山	李春	召史	秉龍副，把摠，通	1816:15-4
24	古阜	李命	作吏	濟州	高萬	召史	秉千總，城將，鎮	1825:17-2
25	濟州	梁啓	作吏	完山	李弼	召史	司果，業武，業武	1861:18-4
26	晉州	姜昌	戶長	金海	金天	召史	司業，兼司僕，老	1861:21-3
27	南平	文長	貢生	濟州	丁衣	召史	業武，業武，武初	1879:9-4
28	金海	金重	戶長	南平	文興	召史	業武，忠翊衛，書	1861:6-5
29	南原	趙呂	鄉吏	晉州	姜奎	召史	院生，助防將，將	1879:10-4
30	古阜	李源	貢生	密陽	朴宗	召史	院生，品官，將官	1870:32-3
31	金海	金仁	記官	海州	吳興	召史	定龍僕，乘司，展	1834:23-4
32	古阜	李顯	戶長	濟州	梁宗	召史	千總，業武，記官	1861:33-5
33	晉州	姜大	貢生	南陽	洪範	召史	千總，將官，通政	1825:20-5
34	古阜	李顯	記官	濟州	高成	召史	城將，老通，納通	1834:32-2
35	金海	金之	戶長	清州	鄭成	召史	城將，晉州，晉州	1870:44-5
36	古阜	李希	戶長	金海	金才	召史	城將，把摠，業武	1888:33-5
37	古阜	李希	貢生	密陽	金太	召史	城將，把摠，訓判	1825:32-4

番 號	鄉 吏			妻 系				典 據 年 : 統-戶
	本貫	姓 名	職役	本貫	妻父名	稱號	職役: 父, 祖, 曾祖	
38	古阜	李致恭	作吏	濟州	高昌業	召史	城將, 品官, 城將	1849: 28-4
39	坡平	尹尙友	作吏	古阜	李興儉	召史	城將, 戶長, 戶長	1879: 37-3
40	光山	金興福	作吏	晉州	姜??好	召史	書員, 記官, 業武	1888: 18-5
41	平澤	金道春	作吏	金海	金南宋	召史	書員, 書員, 記官	1834: 33-4
42	金海	金宗奎	作吏	晉州	姜成同	召史	書員, 書員, 不知	1825: 29-4
43	晉州	姜仁得	作吏	金海	姜道碧	召史	書員, 書員, 書員	1825: 32-1
44	金海	金錫萬	作吏	金海	金錫萬	召史	書員, 書員, 學生	1834: 17-2
45	晉州	姜尙祿	作吏	金海	金先發	召史	書員, 書員, 老嘉	1861: 17-1
46	晉州	姜順孫	作吏	善豐	郭榮得	召史	書員, 良人, 良人	1849: 23-4
47	清州	池益亨	作吏	坡平	成弼	召史	書員, 忠翊衛, 書	1834: 25-4
48	晉州	宋榮憲	貢生	海州	吳廷魯	召史	前將官, 前將官, 老	1809: 8-1
49	鎮川	宋榮憲	戶長	濟州	高命益	召史	將官, 城將, 通政	1825: 11-3
50	晉州	姜東啓	戶長	海州	吳廷漢	召史	將官, 將官, 老嘉	1825: 19-5
51	清州	韓龍祿	戶長	金海	金成好	召史	將官, 將官, 通政	1870: 17-3
52	濟州	高奉允	作吏	古阜	李允宗	召史	將官, 鎮撫, 記官	1849: 10-4
53	晉州	河應龍	鄉吏	完山	李彦澤	召史	將官, 把摠, 老通	1825: 16-1
54	晉州	姜孝儉	鄉吏	大元	金錫稀	召史	前將官, 前將官, 學	1807: 18-3
55	務安	朴信弘	戶長	水原	白彦宗	召史	鎮撫, 空, 鎮撫	1861: 3-2
56	濟州	高宗直	作吏	咸德	康 0 0	召史	鎮撫, 貢生, 貢生	1816: 13-2
57	晉州	姜興松	作吏	晉州	姜盛玉	召史	鎮撫, 作吏, 假率	1888: 40-5
58	南原	趙道洽	作吏	晉州	姜明憲	召史	鎮撫, 展力, 鎮撫	1888: 26-2
59	金海	金應天	記官	全州	李 根	召史	鎮撫, 鎮撫, 閑良	1834: 26-4
60	金海	金致奉	記官	古阜	李命再	召史	鎮撫, 學生, 學生	1834: 20-1
61	金海	金才建	記官	密陽	孫大成	召史	旗牌, 旗牌, 通政	1879: 41-5
62	金海	金在孝	作吏	晉州	秦永宗	召史	假率, 防軍, 書員	1879: 28-1
63	平澤	金林奉	記官	東萊	鄭義允	召史	良人, 業武, 業武	1816: 8-2
64	晉州	姜順明	戶長	大元	佐允泰	召史	匠人, 書員, 書員	1849: 18-2
65	金海	金信秋	記官	晉州	姜信太	召史	直軍, 書員, 書員	1825: 21-1
66	古阜	李明源	作吏	耽津	崔弼恒	召史	官奴, 學生, 不知	1843: 21-5
67	金海	金德弘	貢生	昌寧	成順兼	召史	空, 祖·曾祖 不知	1861: 41-3

먼저 妻의 호칭을 살펴보면 위의 67개의 사례 모두가 召史로 기재되어 있다. 신분에 따른 부녀자의 호칭 문제에 있어서 夫에 준하는

지 生父를 따르는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氏로 기재된 경우 양반가의 부녀자로 파악하고 있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³²⁾ 물론 이 경우 씨를 칭했다 할지라도 양반가의 부녀자가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씨는 그녀가 양반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 요건들 중의 한 가지로 어떤 부녀자가 양반이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례에서 향리들의 혼인 상대자가 모두 召史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부녀자와 호칭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향리들 자신의 혼인은 양반가와 엄격히 격리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혼인 양상에서 볼 때 향리들은 그들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반으로의 성장은 사실상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 이들의 결혼 상대자는 주로 어떤 직역을 칭하는 가문과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우선 향리 職役層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한 사례가 1번에서 14번까지 14개이다. 이는 67개의 사례 중에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丹城縣 향리들의 8%에 지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혼권의 범주가 신분보다는 더욱 폐쇄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많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물론 대정현 향리들이 그들만이 통혼하기에는 그들의 숫자에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다음 같은 향리층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 신분층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경우가 15번에서 39번까지 25개의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천총과 성장을 중인 신분으로 파악하였다. 이들 사례 중에서 15번 金彭連의 妻父가 掌議, 29번과 30번의 경우 妻父가 院生으로 기재되어 있어 마치 양반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15번의 경우 祖·

32) 李俊九, 앞의 책, pp.15~19.

曾祖의 직역이 把總·將官이고, 딸이 召史를 칭하고 있다. 그리고 29번의 경우는 祖·曾祖의 직역이 造방장·장관, 30번의 경우는 祖·曾祖의 직역이 품관·장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딸은 召史를 칭하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이들 세 가문은 적어도 전통적인 양반 가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21번 하순득의 妻父인 宋初定の 경우 老職 嘉善大夫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가문의 경우 1807년 호적중초에 초정의 아들 榮發이 千摠 秉折校尉 龍讓衛 副司果를 칭하고 있고, 榮憲이 향리 직역을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인 신분으로 파악하였다.³³⁾

위의 두 유형을 동일 신분층내의 결혼으로 볼 때, 대정현 향리들 중의 약 60%는 같은 신분내에서 혼인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신분제의 동요속에서도 단성, 울산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제주 지역 향리들은 혈연적 신분귀속성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었음을 의미한다.

67번 父의 직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향리들의 혼인 유형은 처부의 직역이 書員인 경우가 8개 사례, 將官인 경우 7개 사례, 鎭撫인 경우가 6개 사례, 그리고 기타 5개는 각기 旗牌·假率·良人·匠人·直軍의 직역을 칭하고 있다. 어느 유형의 혼인 형태도 양반 직역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어쨌든 제주지역의 향리들은 양반 가문과 혼인을 맺기에는 현실적 벽이 너무나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19세기 신분 변동이 심한 동요를 보이면서 양반의 수가 급증되는 일반적인 상황속에서도, 제주도 향리들의 경우 양반 가문과의 혼인을 통한 향리 자신이 양반 신분으로 진입하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향리의 신분상승이 사

33) 「東城里 戶籍 中草」, 1807년 19統 3호, 19統 4戶 參照.

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앞서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리 자신이 향리 직역에서 양반 직역을 칭하는 사례는 없었지만, 이들은 城將·千總의 직역을 일시 취득한 후, 점차 양반신분으로 진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官奴의 딸을 처로 맞이한 경우가 66번 이명원으로 한 사례가 보이는 데, 이 경우 崔弼恒의 가문이 조상 대대로 관노 가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일정한 죄의 대가로 일시적으로 관노에 처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울산 지역의 향리를 분석한 바 있는 김준형은 18세기 전반 내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평민층에 새롭게 상승해 부류-향리층을 포함해서-들이 부녀자 호칭을 일관되게 「姓」으로 기재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 독자적인 권위(非兩班·非常民)를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었다³⁴⁾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리 호적중초에서 새로 향리층으로 진입하는 부류들이 평민층과 구별하기 위한 이러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4. 奴婢·雇工의 保有狀況

향리의 신분변동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제적 기반도 아울러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리의 토지소유 실태 및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奴婢와 雇工의 규모를 파악하는 일이다. 그러나 제주지역 향리들의 토지소유 규모를 살필 수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의 해명은 현재로서 향리들이 보유하고 있던 奴婢와 雇

34) 金俊亨, 앞의 논문, 1987, p.54.

고이 어느 정도인지를 호적중초에서 살피는 길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表 6-4>는 향리층의 경제적 기반을 이해하기 위해 작성한 향리들의 노비 및 고공의 보유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表 6-4> 鄉吏層의 奴婢·雇工 保有現況

鄉吏層	所有 雇工 및 婢	典 據
前戶長 河順得	雇工 業武 宋信榮 15 父 業武 光化	1807:12-3
鄉吏 李顯祿	雇工 平役軍 李光烈 19 父 前將官 春戒	1807:12-4
戶長 河順得	雇工 業武 金初彬 30 父 業武 茂宅	1816:15-3
貢生 姜大有	雇工 作吏 梁連進 23 父 空 信協	1825:20-5
	雇工 使令 金奉采 26 父 空 夢得	
戶長 李東煜	雇工 高成集 39 父 將官 千浩	1843:16-1
戶長 鄭永	雇工 防軍 佐日弘 41 父 空 仁彦	1861:27-5
	雇工 假率 梁永儉 29 父 空 信孝	
戶長 梁在喆	婢 尹德 19 母 同婢 李德	1870:30-3

<表 6-4>는 향리 중에서도 주로 호장이雇工과婢를 소유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奴를 소유한 사례는 찾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富를 축적한 향리의 奴 소유는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향리들은 노비 보다는 고공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공의 직역으로 업무·작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中人 직역의 신분이 고공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다.

노비와 고공을 소유한 향리들은 모든 式年의 동성리 호적중초를 살피게 되면 더욱 많은 사례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향리들 중의 상당수는 노비와 고공을 소유할 정도로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들의 신분을 점차 상승시켜 나갔다.

이상을 요약하면 향리의 배출 가문을 통해 1807년 향리의 가문은 古阜李氏, 晉州河氏, 南原趙氏, 鎭川宋氏, 晉州姜氏에 불과하였으나 그 이후 새로운 가문들이 향리층으로 진입함으로써 향리층이 다양화되어지고 있었다. 즉 평택임씨, 충주지씨, 제주고씨, 청주한씨, 김해김씨, 제주양씨, 밀양박씨, 진주진씨, 남평문씨, 파평윤씨, 풍천임씨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류 중에 본래 양반 신분에서 오하려 신분을 하강이동시켜 향리층에 진입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향리층에 진입했다가 이탈되는 계층이 존재하였으나, 이들이 향리의 직역에서 바로 양반의 직역으로 진출되지는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향리의 가계별 職役 변동의 추이를 살핀 결과, 향리들의 직역 이동을 통한 상층 신분으로의 상승 욕구는 강하게 나타나지만, 鄉吏層의 직역에서 바로 양반 신분의 직역으로 이동하는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랐다. 이는 제주 지역의 경우 양반 가문과 中人 가문을 엄격히 구분했었던 관행을 잘 반영해 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은 향리의 직역에서 千總·城將의 직역으로 이동하려는 모습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천종·성장의 직역을 향리를 포함한 중인 계층이 양반신분으로 상승하기 위한 과도적 단계의 직역으로 파악하였다. 즉, 향리층들이 바로 양반 신분으로 상승되지는 않지만, 일시 성장·천종의 직역을 취득한 이후 점차 양반신분으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향리의 혼인실태를 통해서 향리들의 혼인은 양반가문과 엄격히 격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60%에 가까운 향리는 동일 신분층인 中人 家門과 통혼을 하고 있고, 그 외는 평민 층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양반 가문과 혼인을 행한 향리 가문은 한 사례도 없었다. 이는 제주지역의 향리가 단성지역의 향리에 비해 신분귀속성이 강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향리들 중에는 奴婢와 雇工을 보유할 정도로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이 토대가 되어 천총·성장 등의 직역 취득이 가능했을 것이며, 이는 양반으로 진출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였으며, 이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양반으로 진입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VII. 畓漢의 身分的 地位와 身分·職役 變動

1. ‘六苦役’層과 畓漢의 役

朝鮮時代 濟州地方에는 소위 六苦役이라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었다. 6고역이란 그 자체가 고유한 職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제주도 지역에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여섯 가지 직역을 총칭해서 부르는 보통명사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六苦役은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따랐다. 즉 본래는 牧子·畓漢·船格·果直·潛女·鮑作을 지칭하였으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牧子·鮑作·紙匠·遺軍·畓漢·船格을¹⁾ 19세기 전반에는 牙兵·牧子·防軍·果直·船格·畓漢²⁾ 혹은 鮑作·畓漢·牧子·防軍·船格·牙兵을³⁾ 지칭하였다.

시대에 관계 없이 牧子·畓漢·船格은 줄곧 6고역층에 속하였으나 果直·潛女는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점차 6고역층에서 이탈되어 갔으며, 그 대신 하위군병인 牙兵·防軍·遺軍 혹은 종이를 만드는 紙匠이 소속되어 6고역층을 형성하였다.

제주지역의 경우 官屯畓을 경작하는 자를 畓漢이라 칭하였다.⁴⁾

1) 『備邊司謄錄』 178冊, 正祖 15年, 2月 20日條.

2) 李源祚, 『耽羅錄』 中, 1842年(憲宗 8), 4月 27日, 上領閣書條, 別紙.
島中所謂六苦役者 爲小民切骨之痛 而鮑作前已革罷 畓漢近又減米 牧子亦有給料 獨防軍也 船格也 牙兵也 在邊固尤宜加恤 而窮餓困苦萬不成樣 若以此穀設科 則足爲入防赴番 及因公越海時糧米之資 此爲島民第一施惠也.

3) 앞의 책(下), 1843년(憲宗 9) 正月, 六苦歌.

담한은 또한 그들이 경작하는 畓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營畓漢 · 牧畓漢 · 三姓祠畓漢⁵⁾ · 畓漢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영담한은 제주목사가 집무하는 곳을 營廳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청 소속의 관둔담 경작자이고, 목담한은 제주목 소속의 담한, 삼성사 담한은 삼성사 소속의 담한, 담한이라고만 기재된 것은 대정현 소속의 담한을 의미한다.

18세기 후반 濟州三邑 관둔담의 소유규모를 보면 대체적으로 다음 <表 7-1>과 같다.⁶⁾

- 4) 畓漢이란 용어의 유래는 문헌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畓에 물을 데는 사람을 「담하니」라 칭하는 제주의 속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담한이 官屯畓 경작자란 사실은 다음의 사료를 참고할 수 있다.

『濟州邑誌』(1780-1789), 濟州牧, 俸廩正租條. 三邑分在 乾水畓 各定畓漢 每秋捧上 元七百二十四石十二斗一 升九合內 營捧三百六十九石三斗四升 牧捧三百五十五石八斗七升九合.

앞의 책, 大靜縣, 俸廩條.

本無官月畓 故官畓種六石零 定畓漢耕作 納米八十一石零 別星支供 及官用上下.

『耽羅防營總覽』(1760-70년대), 戶房庫條.

營畓七庫 并租種六石九斗七升落只 畓漢五十九名 每年耕作 水畓一斗付 所出米十二斗 乾畓一斗付 所出六斗 一年所捧 合白米五十六石十二斗六升.

- 5) 三姓祠 畓漢의 예는 1852년 中文里 戶籍中草 22-5, 戶長 金大鉉의 戶에 侄子 應伯의 경우이다.

- 6) 『濟州邑誌』, 濟州牧 水田條.

官私屯并 三百五結 八十三負九束內 一百五結六十負 在大靜 五十結二十負 在旌義 實一百五十結三負九束內 二十九負一束民畓除 一百三十四結三十九負乾畓 十五結三十五負八束水畓.

『濟州邑誌』, 大靜縣 水田條.

公私田并 一百九十九結五負二束內 州官田一百五結六十負.

『濟州邑誌』, 旌義縣 水田條.

十六結五十七負內 荒草陳雜畓 及營牧畓官屯畓 并十一結十七負除 實五結四十六負.

<表 7-1> 濟州三邑 官屯畓의 所有規模

濟 州	大 靜	旌 義
149結 74負 8束 水畓: 15結 35負 8束 乾畓: 134結 39負	93結 45負 2束	16結 57負

三邑의 官屯畓은 주로 제주목이 明月畓 · 都畓 · 院畓 · 訥畓, 대정현이 毛洞畓 · 遮歸畓, 정의현이 池畓 · 烘爐畓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다.⁷⁾ 실제 三邑의 행정구획의 크기에 비하여 대정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둔답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관둔답을 경작하는 답한의 규모는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濟州事例」 日用各庫條에 3읍 소재 屯畓作者의 수가 207명이고, 時在畓漢의 수는 163명⁸⁾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로 미루어 보면 답한의 수는 대체적으로 200여명 내외로 추정된다.

관둔답의 收稅는 水畓이 1결당 白米 12斗, 乾畓의 경우는 白米 6斗였다. 이는 1521년 목사 李耘이 장계를 올려 奏達함으로써 定式化되었다. 그 후 1791년 李鴻運 목사에 의해 1/5을 감하는 조치가 취해졌고, 1824년과 1838년에 任聖臯 목사와 李元達목사에 의해 액수는 알 수 없지만 각각 減米되기에 이른다.⁹⁾

7) 「濟州事例」, 日用各庫條 參照.

8) 앞의 책과 같음.

9) 李源祚, 『耽羅誌草本』, 濟州 俸畧條.

官需米: 三邑所在 官屯畓 分授作者 水畓一斗種 捧白米十二斗 乾畓 捧白米六斗 中廟辛巳 牧使李耘 狀聞定式 正廟辛亥 李鴻運 啓請改量減米五分一 純廟甲申 任聖臯改量減米 戊戌李源達 又改量牧使時 捧九十七石零 判官時 捧一百二十石零.

<表 7-2> 官屯畓의 收稅

資 料	營 捧	牧 捧	大靜縣捧	旌義縣捧
耽羅防營摠覽 ¹⁰⁾ (1760-70年代)	水畓:1斗付-米12斗 乾畓:1斗付-米 6斗 合 白米 56石 12斗 6升			
濟州邑誌 ¹¹⁾ (1780-89年頃)	369石 3斗 4升	355石 8斗 7升 9合	81石	
濟州大靜旌義 邑誌 ¹²⁾ (1793年)	水畓:1斗種-白米 12斗 乾畓:1斗種-白米 6斗 1年 所捧 186石	水畓:1斗種 -白米 12斗 乾畓:1斗種 -白米 6斗 1年所捧 146石	左 同 1年所捧 86石	左 同 1年所捧 94石
耽羅誌草本 ¹³⁾ (1842-43年)	97石	120石	86石	78石

10) 『耽羅防營摠覽』, 戶房庫條.

營畓七庫 并租種六石九斗七升落只 畓漢五十九名 每年耕作 水畓一斗付 所出米十二斗 乾畓一斗付 所出六斗 一年所捧 合白五十六石十二斗六升.

11) 『濟州邑誌』, 俸畚正租條.

12) 『濟州大靜旌義邑誌』, 濟州 俸畚條.

官需米:以官屯畓 分授作者 水畓 則一斗種 捧白米十二斗 乾畓則捧白米六斗 牧使一年所捧 爲一百八十六石 判官所捧 爲一百四十六石.

앞의 책, 大靜 俸畚條.

官需米:以官屯畓 分授作者 水畓 則一斗種 捧白米十二斗 乾畓則捧六斗 一年所捧 八十六石 使客支供米 亦以此用之.

앞의 책, 旌義 俸畚條.

官需米:以官屯畓 分授作者 水畓 則一斗種 捧白米十二斗 乾畓則捧六斗 一年所捧 九十四石 使客支供 亦以此用.

13) 李源祚, 『耽羅誌草本』, 濟州 俸畚條.

官需米:三邑所在 官屯畓 分授作者 水畓一斗種 捧白米十二斗 乾畓 捧白米六斗 中廟辛巳 牧使李耘 狀聞定式 正廟辛亥 李鴻運 啓請改量減

資 料	營 捧	牧 捧	大靜縣捧	旌義縣捧
耽羅誌 ¹⁴⁾ (憲宗年間)	97石	120石		
耽羅誌 ¹⁵⁾ (光武年間)			86石	78石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로 1840년대 이후 답한의 경제적 여건은 여타의 6고역층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고역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시대별 관둔답의 收稅 액수는 <表 7-2>와 같다.

2. 畓漢의 身分의 地位

畓漢의 職役은 다른 지방의 戶籍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명칭으로 제주지역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職役名이다. 이 명칭이 언

米五分一 純廟甲申 任聖臯改量減米 戊戌李源達又改量牧使時 捧九十七石零 判官時 捧一百二十石零.

앞의 책, 旌義 俸畧條.

官需米:官屯畓 一年所捧 七十八石.

앞의 책, 大靜 俸畧條.

官需米:官屯畓 一年所捧 八十六石.

14) 『耽羅誌』(日本東京大學所藏本), 俸畧條.

官需米:三邑所在 官屯畓 分授作者 水畓一斗種 俸白米十二斗乾畓 捧白米六斗 中廟辛巳 牧使李耘 狀聞定式 正廟辛亥 李鴻運 啓請改量 減米五分一 純廟甲申 任聖臯改量減米 戊戌李源達 又改量 牧使時 捧九十七石零 判官時 捧一百二十石零.

15) 『耽羅誌』(南萬里編纂本), 大靜 旌義 各 俸畧條 參照.

제부터 직역명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관둔답의 존재로 볼 때 조선전기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답한이란 직역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신분층에게 부과되었으며, 그들의 신분적 지위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戶籍中草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I 期(18世紀 後半) 답한의 신분적 지위를 살피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 <表 7-3>과 <表 7-4>이다. <表 7-3>은 조선시대의 경우 가계와 신분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답한의 신분적 지위를 추적해 보고자 한 것이다. 호적의 자료는 1783년(正祖 7)에서 1798년(正祖 22)에 해당하는 것이다.

<表 7-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795년 今勿路里 7統 2戶의 姜成現을 제외하면, 良人 신분가계로 단정할 수 있는 답한직역자는 전혀 없다. 18세기 후반(I 期)에 답한의 대부분은 公奴婢에서 충당되고 있다는 사실을 <表 7-3>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답한의 직역은 良人役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본래 답한의 직역이 賤役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후반에 주로 천인 계층으로 충당된 것은 그 직역이 갖는 고역으로 말미암아 양인층들이 그 役을 기피하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반적으로 관둔전의 경작에 관노비를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15세기 후반 이후는 병작경영이 일반화되었음에도¹⁶⁾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경우는 공노비들의 身役에 의해 충당되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리고 답한은 畓이 있는 지역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논이 없는 지역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즉 위 표의 自丹里는 대부분

16) 李景植, 「朝鮮初期 屯田의 設置와 經營」, 『韓國史研究』 21·22, 1978.

<表 7-3> I 期(18世紀 後半) 畚漢 職役者外 妻 四祖의 職役

資 料	봉-호	담한 호주 및 직역자				호주의 4조				妻	妻의 四祖				母		비 고
		姓名	本 貫	年	職 役	父	祖	會祖	外祖 姓·本貫·職役		妻	父	祖	會祖	外祖	戶主	
1783년 史城里 호적	11-4	池益浩	忠州	50	內資寺奴 營番漢	前將官	記官	展力副尉 兼 司僕 留鄉監首	李 遠山 寺 奴	掌隷院婢	私奴	鄉吏	不知	私奴	內資 寺婢	掌隷 院婢	
	19-1	李成實	占卑	12	內贈寺奴 營番漢	私奴	不知	不知	高 濟州 官 奴						內贈 寺婢		
	22-4	李中必	占卑	44	奉常寺奴 宿漢	寺奴	記官	記官	金 金海 寺 奴								
	25-2	李應春	院山	33	內贈寺奴 營番漢	養源婢	將目	老職 通政大夫	朴 密陽 老職 嘉善大夫						內贈 寺婢		
1795년 今勿路里 호적	"	李應宅	"	26	"	"	"	"	"	仁順府婢	寺奴				內贈 寺婢	內贈 寺婢	이응춘의 弟
	7-2	姜成現	晉州	26	良人 番漢	前將官	錄撫	納粟 通政大夫	李 古阜 錄撫	金召史	前將官	折衝 將軍	正兵	不知			
	4-5	金道成		20	內資寺奴 營番漢	典醫監 奴牧子	正兵	納粟 判官		李义	巡防軍	不知	不知	不知	內資 寺婢		
	7-5	地漢祥		69	司贈寺奴 番漢												
1798년 今勿路里 호적	14-1	張萬甫	海州	34	內贈寺奴 營番漢	葉武	納粟 通政	通政大夫	林 羅州 通政大夫	典醫監婢	記官	記官	書員	記官		典醫 監婢	
	4-1	宋寺徽	懷德	8	禮賓寺奴 營番漢	禮賓寺 奴給格	葉武 寺奴	老職 嘉善大夫	金 金海 良人						仁順 府婢		송석승의 子
	9-2	白貴太		27	奉常寺奴 營番漢	奉常 寺奴	寺奴	戶長									
	12-5	金永得	金海	58	奉常寺奴 營番漢	寺奴	寺奴	正兵	高 濟州 寺奴	奉常 寺婢	寺奴	寺奴	校生	寺奴	內資 寺婢	奉常 寺婢	
1789년 白丹里 호적	1-4	任寶京	南陽	46	內資寺奴 營番漢	假吏	寺奴	寺奴	梁 濟州 寺奴	司帝監婢	寺奴	良人	寺奴	寺奴	內資 寺婢		
	4-2	金德甲	金海	69	內贈寺奴 營番漢	不知	司帝 監奴	私奴	不知								
1795년 白丹里 호적	3-3	宋石松	懷德	42	禮賓寺奴 番漢	葉武	가선 대부	老職通政	梁 濟州 正兵	仁順府婢	良人	寺奴	不知	寺奴		禮賓 寺婢	

火田地域으로 畚이 전혀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水鐵匠¹⁷⁾ 마을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도 畚한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大靜縣民중에 營畚漢·牧畚漢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대정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營廳 혹은 牧廳 소속의 畚을 경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들은 수시로 제주목에 있는 畚의 경작을 위해서 동원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실제 거주지와 경작하는 畚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아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는 畚한 외의 직역의 경우도 대정현·정의현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제주목의 역을 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음에서도 알 수 있다.¹⁸⁾

<表 7-4>는 畚한 직역을 지니고 있는 공노비들이 어느 中央官廳에 예속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공노비들의 소속 관청은 內膳寺->內資寺·奉常寺->禮賓寺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섬시와 내자시는 왕의 가족들이 거처하는 각 궁에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는 內供의 御庫 구실을 하였던 곳이다. 예빈시는 賓客宴享, 宗廟親享때의 享官 諸執事에 대한 日餉, 耆老所 春秋宴의 供饋를 담당하는 관청이었으며, 봉상시는 祀典所載 京中の 여러 神廟와 壇場에 대한 고찰을 專掌하던 관청이다. 당시 제주지역에는 이와 같은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들이 도내 인구의 약 50% 이상을 점하고 있었다.

17) 水鐵匠은 무쇠를 다루는 장인을 말한다. 수철은 일명 生鐵로 器皿·農器·鐵錢을 만드는데 사용된다(『成宗實錄』 권27, 성종 4년 2월 丙寅條). 자단리는 제주도에서 기명과 농기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하다.

18) 이와 같은 경우는 각 호적중초에서 쉽게 산견할 수 있다.

1786년 자단리의 호적중초를 예로들면 州牧子(2통 2호), 營水鐵匠(2통 3호, 13통 3호), 營假吏(7통 3호), 營紙匠(9통 3호, 14통 1호) 등이 그것이다.

<表 7-4> I 期(18世紀 後半) 畚漢 職役者の 身分

身分	公奴婢					良人	計	總計
	內資寺奴	內膳寺奴	奉常寺奴	禮賓寺奴	計			
名	3	6	3	2	14	1	1	15
%	20.0	40.0	20.0	13.3	93.3	6.7	6.7	100

<表 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期(18世紀 後半)에 畚漢의 신분적 지위는 대부분 賤人이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良人 계층이 소수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4개 마을에서 1894년 갑오개혁 이전의 II·III時期에 답한 職役者로 확인된 것은 총 47명이었다. 이들 답한의 四祖와 그 妻의 四祖를 정리한 것이 <表 7-5>이다.

답한 직역자 47명 중에 四祖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것이 36명이며, 妻系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4명에 불과하였다. 일반적으로 처계에 대한 기록이 부실하다. 또한 답한 직역자의 경우, 남의 집을 借入해서 생활하는 경우가 11명이어서 4조 확인이 전혀 불가능 하였다. 이는 19세기에도 답한의 경제적 여건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한 직역자들의 나이는 3세에서 73세에 이르고 있어¹⁹⁾ 16세가 되기 이전에 이미 직역이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이 되어도 免役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여러 邑誌類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島民들은 60세 이상의 면역은 커녕 태어나자

19) [中文里 戶籍中草] 1828년 28-5 강순현의 경우와 [自丹里 戶籍中草] 1804년 10-5 고귀재의 경우.

<表 7-5> 19世紀(Ⅱ・Ⅲ期) 畚漢의 四祖와 그 妻의 四祖

자료	봉-호	호 주			호주의 4조				치			치의 4조				비 고		
		姓名	本貫	年	職役	父	祖	曾祖	外祖 姓・本・職役	姓	本貫	年	호칭	父	祖		曾祖	外祖 姓・本・實・職役
今戶 1801년	5-5	姜成現	晉州	45	담한	전장관	관생	관생	李 古阜 濟州	金	金海	50	召史	전성장	관생	高 濟州	관생	借入 처 1804, 16-3. 자 평역군 처 1837, 33-1. 借入
今戶 1801년	13-1	梁統現	濟州	39	담한	관생	유별	관생	高 濟州	金	金寧	30	召史	관생	관생	金 金海	관생	
今戶 1801년	14-2	趙仁成	南原	68	목담한	목자	관생	관생	安 順興	李	古阜	25	父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今戶 1801년	15-1	金道成	金海	25	영담한	목자	관생	관생	安 順興	李	古阜	49	父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中戶 1801년	4-1	金得奉	金海	14	영담한	관생	관생	관생	安 順興	李	古阜	49	父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借入
自戶 1804년	4-4	金仁太	鼎州	45	영담한	관생	관생	관생	安 順興	李	古阜	49	父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自戶 1804년	7-2	李賢彬	濟州	62	목담한	관생	관생	관생	安 順興	李	古阜	49	父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自戶 1804년	9-5	佐東ト	濟州	62	영담한	관생	관생	관생	安 順興	李	古阜	49	父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自戶 1804년	10-5	高貴才	濟州	73	목담한	관생	관생	관생	安 順興	李	古阜	49	父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子:馬養軍, 渠直, 平役軍, 世 安召史 66
中戶 1804년	1-2	金德實	金海	33	목담한	관생	관생	관생	安 順興	李	古阜	49	父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中戶 1804년	21-4	安東日	咸興	40	담한	관생	관생	관생	安 順興	李	古阜	49	父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中戶 1807년	5-2	康德興	咸興	31	담한	관생	관생	관생	安 順興	李	古阜	49	父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中戶 1807년	10-4	元仁象	原州	43	서담	관생	관생	관생	李 古阜 濟州	金	金海	34	父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母 李女 44 처 1822, 20-2 借入 借入
中戶 1807년	27-1	姜興宗	晉州	29	품담	관생	관생	관생	李 古阜 濟州	金	金海	21	召史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東戶 1807년	14-5	梁奉甲	濟州	26	담한	관생	관생	관생	李 古阜 濟州	金	金海	42	父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中戶 1810년	20-5	安光國	空	28	담한	관생	관생	관생	李 古阜 濟州	金	金海	26	父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中戶 1810년	27-4	玄德倫	空	29	담한	관생	관생	관생	李 古阜 濟州	金	金海	32	父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자:출복도망(1858, 24-3) 借入, 김득봉의 외조카 借入 모 金召史 69, 자:담한
今戶 1813년	9-4	姜必太	空	47	담한	관생	관생	관생	李 古阜 濟州	金	金海	29	父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今戶 1813년	12-4	趙廷山	咸安	37	담한	관생	관생	관생	李 古阜 濟州	金	金海	24	召史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自戶 1816년	14-4	梁同	濟州	47	목담한	관생	관생	관생	李 古阜 濟州	金	金海	29	父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東戶 1819년	27-5	金德海	金海	28	담한	관생	관생	관생	李 古阜 濟州	金	金海	39	父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借入, 김득봉의 외조카 借入 모 金召史 69, 자:담한
東戶 1819년	31-1	金永奉	光州	33	영담한	관생	관생	관생	李 古阜 濟州	金	金海	39	父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中戶 1822년	3-4	高漢采	濟州	14	영담한	관생	관생	관생	李 古阜 濟州	金	金海	39	父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中戶 1822년	28-5	朴春業	空	10	담한	관생	관생	관생	李 古阜 濟州	金	金海	39	父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自戶 1828년	16-3	金道信	金海	39	영담한	관생	관생	관생	李 古阜 濟州	金	金海	39	父	관생	관생	高 濟州	관생	

자 료	통-호	호 주			호주의 4조				처				처의 4조				비 고		
		姓名	本貫	年	職役	父	祖	曾祖	外祖 姓·本·職役	姓	本貫	年	호칭	父	祖	曾祖		外祖 姓·本貫·職役	
白戶 1828년	18-2	李光用	山阜	27	답한	훈도	남봉	기관		不知	禹	22	召史	업무	업무	金	金海	진무	借入 借入 借入, 자:영기패
中戶 1828년	28-5	康順賢	空	3	답한														
中戶 1828년	31-5	池云采	空	9	영답한														
自戶 1831년	5-5	金宗泰	金海	43	목답한	부사과	진사	空	梁	濟州	空	33	召史						김도신의 자 자:포방군
自戶 1831년	14-3	金興秀	金海	64	목답한	업무	노동	가리	梁	咸德	空								
中戶 1831년	33-4	金京旭	金海	18	답한	영답한	방군	서원	梁	晉州	공생	38	父	장관	학생	金	金寧	업무	
今戶 1834년	7-2	朴信庚	密陽	40	답한	업무	초관	남속통	梁	晉州	정								자:假奉 자:방군
東戶 1834년	30-4	高壽榮	濟州	45	영답한	장관	출신	성장	梁	咸德	空								
東戶 1834년	32-1	趙益宗	咸安	42	답한	식군	신부	신부	梁	金海	서원	33	召史	서원	노·직통	金	金海	萬手牌	
中戶 1837년	28-5	姜上旭	晉州	31	답한	서원	남봉	서원	梁	咸德	서원								借入 저 1846, 7-5. 제:군기직, 모군, 모군
今戶 1840년	7-5	姜宗成	晉州	23	답한	기관	기관	기관	梁	平澤	空	15	女	假奉	학생	梁	濟州	空	
今戶 1840년	13-5	佐東福	益州	25	답한	보군	空	空	梁	金海	空								
今戶 1852년	5-3	姜海東	大元	45	답한	석장	서원	서원	梁	金海	空								母 父 68 母 高德 56
中戶 1852년	9-2	金奉緣	金海	16	답한	空	업무	空	梁	金海	空								
中戶 1852년	22-5	金應伯	金海		삼답				梁	金海	空								
中戶 1852년	25-5	姜信雄	晉州	23	답한	원직	서원	남속통	梁	晉州	정								妹 父 39 저 1882, 7-5. 강종성의 자 강종성의 자
自戶 1867년	5-2	姜庚云	晉州	49	답한	장관	학생	학생	李	古阜	전사							空	
今戶 1870년	7-5	姜岐興	晉州	15	답한	답한	업무	기관	左	靑松	업무	32	召史	서원	서원	金	金海	空	
今戶 1870년	7-5	姜陽興	晉州	11	답한	답한	업무	기관	黃	昌原	직군								강종성의 자 借入
中戶 1870년	26-3	康義文	咸德	5	영답한	영답한	직군	서원	梁	晉州	직군							假奉	
自戶 1873년	8-2	金東日	咸德	7	답한	직군			梁	昌原	직군	46	父	서원	서원	高	濟州	假奉	
中戶 1879년	25-5	康順連	咸德	61	영답한	직군			梁	昌原	직군							假奉	

* 자료: 자단리 호적 금호: 금물로리 호적 중호: 중문리 호적 동호: 동성리 호적 노통: 노작통경대부 전사: 전력부위경사복 남통: 남속통경대부 유별: 유향별감
 노결첨: 노직결충장군첨지중추부사 남판: 남속판관 업답: 업무제락답한 서답: 서원남강답한 품답: 품관할출답한 재답: 재락답한 삼답: 삼성사답한 결장: 결충장군

마자 역이 부과되어 壯丁 1인이 10역을 겸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20) 답한의 직역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답한 직역자의 처에 대한 호칭은 名 · 父 · 女 · 召史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4명 중에 召史 8명, 父 7명, 名 6명, 女 2명 순으로 나타난다. 召史의 경우 常民 또는 中人身分 婦女子의 호칭으로 생각되며, 名·父·女는 상민층에서도 하층계층의 부녀자를 주로 호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표를 통해서 볼 때, 19세기 답한의 신분적 지위는 중인 신분의 서얼 출신자라든가(양통현의 경우), 業武의 試射에서 떨어진 자(강덕홍의 경우), 서원에서 落講한 자, 품관층에서 割出된 자(강홍종의 경우)들을 포함하는 양인 신분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은 가계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상당수가 18세기의 공노비 계층과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예:김도성, 좌동복, 강종성 등). 그렇기 때문에 답한 직역자 또는 처의 4조에 대한 기록이 부실하며, 모르는 경우가(예:父 祖 曾祖 外祖名 不知) 상당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3. 畚漢의 身分變動

(1) 職役變動

1894년 이전의 II(19世紀 前半)·III(19世紀 後半)時期에 있어서, 답

20) 『瓶窩全書』 瓶窩先生文集, 濟州民막狀, P.30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南宦博物』誌貢條, PP.134~13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한의 신분변동을 알아 보기 위하여 그들의 직역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즉 답한 직역자들이 답한의 역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들은 어떠한 직역을 칭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신분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表 7-6> 19世紀 畚漢 職役者의 職役變動을 작성하였다.

<表 7-6> 19世紀 番漢 職役者의 職役變動 現況

年 度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현	거	비	고
姓 名	1801	1804	1807	1810	1813	1816	1819	1822	1825	1828	1831	1832	1837	1840	1843	1846	1849	1852	1855	1858	1861	1864	1867	1870	1873	1876	1879	1882	1885	1888	1891	1894	1897				
金仁太		영담원(45)	영담원(48)	영담원(51)	영담원(54)	영담원(57)	영담원(60)		영담원(65)	영담원(69)	靈興(靈)	靈興(靈)																							自戶:2)4-4, 3)4-3, 4)14-5, 5)13-5, 6)7-5, 7)7-4, 9)5-3,10)6-4, 11)6-2,		
李賢勝		牧畜員(62)	목사원(65)	서원(68)	목사원(71)	목사원(74)	서원(77)			서원(86)	서원(89)	서원(靈)																							自戶:2)7-2, 3)7-2, 4)6-4 5)6-2, 6)5-4, 7)5-5, 今戶:10)9-2, 11)9-2, 12)9-2		
佐重卜		영담원(62)	空(靈)																																自戶:2)9-5, 3)9-5		
高貴才		牧畜員(73)	牧畜員(76)	空(79)	노한(82)	노한(85)																												自戶:2)10-5, 3)10-5, 4)10-2, 5)9-5, 6)14-5			
李 興						牧畜員(77)	牧畜員(80)		牧畜員(84)	牧畜員(87)	담원(92)	담원(靈)																							自戶:6)14-4, 7)14-3, 9)12-5, 10)13-1, 11)11-1, 12)11-1		
李光用										담원(27)		담원(30)								담원(40)				담원(41)											自戶:10)18-2, 寬戶:12)8-4, 24)8-4		
金聖德									스승목자(36)	영담원(39)	영담원(42)	영담원(45)	영담원(48)	영담원(51)	영담원(靈)																				自戶:9)16-3, 10)16-3, 中戶:11)33-4, 12)33-4, 13)33-4, 14)28-4		
金興壽											牧畜員(64)	牧畜員(67)	牧畜員(70)	牧畜員(73)	영담원(76)	영담원(靈)																			自戶:1)14-3, 2)14-2, 13)13-4, 14)13-4, 15)14-3, 16)13-5		
金宗壽											牧畜員(43)	牧畜員(46)																							自戶:1)15-5, 12)15-5,		
吳康云																						사방군(44)	담원(49)												自戶:22)15-2, 23)15-2		
金重日																									담원(7)	담원(10)	담원(13)								自戶:25)18-2, 26)18-2, 27)18-1		
吳新實												舊軍(24)	舊軍(27)	舊軍(30)	舊軍(33)	舊軍(36)	作吏(43)	과직(46)	담원(49)	담원(53)	담원(56)	서원(59)	서원(靈)												今戶:11)15-3, 12)15-3,13)15-3, 14)15-3, 15)15-3, 16)15-3, 17)15-3, 18)15-3, 19)15-3, 20)15-3, 21)15-3, 22)15-3, 23)15-3		
金聖成	영담원(25)	영담원(28)	영담원(31)	목자(34)					목자(46)	목자(49)	목자(52)																								今戶:1)15-1, 2)16-3, 3)15-1, 4)14-3, 6)12-3, 9)12-3, 10)12-3,		
趙廷中			담원(26)	목자(34)	담원(37)				舊軍(49)	軍部直(52)	軍部直(55)	軍部直(58)	軍部直(61)	軍部直(64)																					寬戶:3)28-2, 今戶:4)15-4, 5)15-4, 8)12-1, 9)12-1, 10)12-1, 11)12-1, 12)12-1, 13)12-1		
朴德茂												담원(40)	목자(43)	담원(46)	담원(49)	담원(52)																			今戶:12)7-2, 13)7-2, 14)7-2, 15)7-2, 16)7-2		
吳宗成													作吏(30)	담원(33)	담원(36)	담원(39)	담원(42)	담원(45)	담원(48)	담원(51)	담원(54)	담원(57)	담원(60)	담원(63)	담원(66)	담원(69)	담원(72)	담원(75)	담원(78)	과직(靈)	호장(靈)	호장(靈)	호장(靈)			今戶:13)7-5, 14)7-5, 15)7-5, 16)7-5, 17)7-5, 18)7-5, 19)7-5, 20)7-5, 21)7-5, 22)7-5, 23)7-5, 24)7-5, 25)7-5, 26)7-5, 27)7-5, 28)7-5, 29)7-5, 30)7-5	28)부의 적비 作吏->官에서 담원 轉
佐重顯														모군(22)	담원(25)	담원(28)	모군(31)	모군(34)	모군(37)	모군(40)	모군(43)	모군(靈)													今戶:14)13-5, 15)13-5, 16)12-6, 17)12-6, 18)12-6, 19)12-5, 20)12-5, 21)12-5,		
吳俊興																																				今戶:24)7-5, 25)7-5, 26)7-5, 27)7-5, 28)7-5, 29)7-5, 30)7-5, 31)7-5	강릉성의 자. 轉 과동복의 女 佐重
吳興興																																				今戶:24)7-5, 25)7-5, 26)7-5, 27)7-5 28)7-5, 29)7-5	강릉성의 자
趙仁成	목담원(68)	목담원(71)																																		今戶:1)14-2, 2)13-5	
吳成鳳	담원(45)	서정원(48)	전장원(51)	전장원(54)	전장원(57)	전장원(60)	전장원(63)	전장원(66)	전장원(69)	전장원(靈)																									今戶:1)15-5, 2)15-4, 3)15-4, 4)15-4, 5)15-4, 6)15-4, 7)15-4, 8)15-4, 9)15-4, 10)15-4		

여 백

(출제 가능 주제)
 1) 답안형 - 自(자)가한 호적증상, 승부·굴복조 호적증상, 승부·중첩조 호적증상, 重(중)첩성리 호적증상, 입양·입양취득단락, 서당·사관간단단락, 혼담·혼판간단단락, 입속; 입양계약무효
 2) 는 나더, 친누관계로 볼 때 나아가 족외는 경우 호적증상에 근거했을. 옳은 적역이 가해되지 않았음을 의미.
 3) 형명은 다만 학박으로 자를 호적에 개편된 한자를 따름.
 4) 장자의 부원을 보는 법칙은 만(만) 325-4 ~ 1807년 적용 4호.

여 백

<表 7-6>을 토대로 다시 職役 變動別로 Ⅱ期·Ⅲ期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이 <表 7-7> Ⅲ·Ⅳ時期(19世紀) 답한 직역자의 직역변동 유형이다.

<表 7-7> Ⅱ·Ⅲ時期(19世紀) 畚漢 職役者의 職役變動 類型

단위:명, ()는 %

時期 職役變動	Ⅱ時期	Ⅲ時期	計
畚 漢	7	3	10(21.3)
畚 漢 -> 募 軍	1		1(2.1)
畚 漢 -> 書 員	1	1	2(4.3)
畚漢 -> 書員 -> 記官	1		1(2.1)
畚漢 -> 作吏 -> 逃亡		1	1(2.1)
畚漢 -> 戶長 -> 千摠		1	1(2.1)
畚 漢 -> 牧 子	2		2(4.3)
畚漢 -> 牧子 -> 畚漢	1		1(2.1)
畚漢->牧子->畚漢->直軍	1		1(2.1)
畚漢->牧子->畚漢->將官	1		1(2.1)
畚 漢 -> 將 官	2		2(4.3)
畚漢 -> 將官 -> 品官	1		1(2.1)
畚漢 -> 將官 -> 果直	1		1(2.1)
畚漢 -> 業武 -> 將官	1		1(2.1)
畚漢->業武->復戶假率	1		1(2.1)
畚漢職役으로 移居	9	4	13(27.7)
未 詳	5	2	7(14.9)
計	35	12	47(99.9)

위 <表 7-7>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답한 직역자는 Ⅱ時期가 35명에서 Ⅲ時期에 12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점차 후기로 올수록 답한 직역자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상당수의 답한 직역자들이 후기로 올수록 답한의役에서 이탈해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답한 직역자들 중에는 평생 답한의 고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가 10명으로 전체의 21.3%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6고역의 하나인 牧子로 직역이 변동된 자와 목자로 직역이 변동되었다가 다시 답한의 역을 칭하고 있는 자, 그리고 果直으로 직역이 변동된 자를 합하면 14명으로 29.8%에 해당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Ⅱ時期에 해당한다. 따라서 답한 직역자들의 상당수는 당대에 신분을 변동시키는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 이들의 가계를 하나하나 분석해 들어가게 되면, 보다 생생한 변동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17명의 직역 변동자 중에서 양반신분으로까지 신분이 상승된 경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인 신분으로의 상승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7명이다. 즉 畚漢->戶長->千總, 畚漢->書員->記官, 畚漢->牧子->畚漢->將官, 畚漢->將官, 畚漢->將官->品官, 業武->復戶假率²¹⁾로의 직역변동자들이 그들이다. 어쨌든 Ⅰ期(18世紀後半)에 대부분의 공노비층에서 충당된 답한 직역자들이 1801년 공노비 혁파이후 중인신분으로까지 그들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은 당시 사회의 역동성을 짐작케 한다.

21) 儒品과 假率은 영조 21년경 부터는 고강과 시사에서 떨어진 자는 상민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영조 21년 5월 계미조에 제주목사 윤식이 본도의 일을 장계로 논하였는데 「유품과 가솔들을 考講과 試射에서 떨어뜨려 기병, 보병에 충당했는데 이들이 성이나서 심야에 客舍의 殿牌를 봉안한 곳에 모여 뺨을 하였다.」라 한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 家系의 分析

1) 金道信의 家系

1828년 自丹里 戶籍에 營畚漢으로 있는 道信의 家系圖를 작성한 것이 <圖 7-1>이다.

자단리 호적에서 도신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825년이다.²²⁾ 이 당시 도신은 직역이 8所 牧子 즉 대정현 관할에 있는 8所場에 소속된 목자였다. 그러나 그의 동생 道林은 형보다 앞선 1819년 16통 6호로 자단리의 맨 마지막 戶에서 처 姜召史와 단둘이서 살고 있었다.²³⁾ 당시 도림의 직역은 鐵匠이다.

아마 철장의 기술을 습득한 도림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水鐵匠 마을로 유명한 自丹里에 이사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후 형인 도신이 아우를 따라 자단리로 집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匠人 기술을 갖지 못한 도신은 목자에서 영답한으로 직역이 변화되지만 苦役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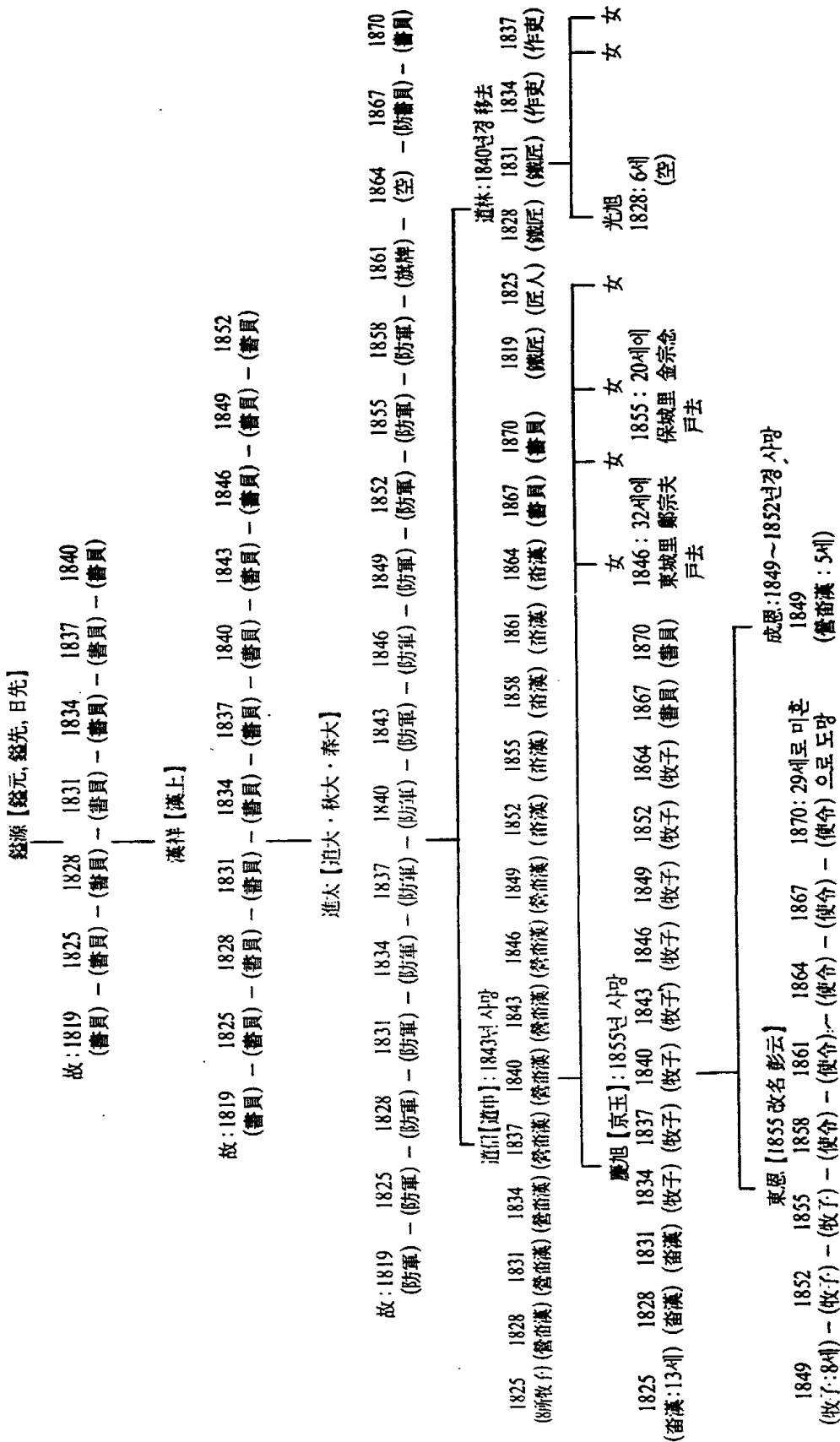
1831년 이후 김도신은 기존의 자단리(신당, 덕수리)호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1831년에 자단리는 分里되어 新堂里로 개명되기에 이른다. 자단리의 호수는 1828년 87戶에서 신당리로 개명된 1831년에는 70戶로 17戶가 감소되는 데,²⁴⁾ 자단리는 이 17戶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東·西廣을 지칭하는 마을로 축소되었다. 김도신은 축소된 자단리에 거주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것이 분명할 것이다.

도림은 여전히 기존의 자단리(신당리, 덕수리)에 거주하였는 데

22) 「自丹里戶籍中草」 1825년 16-3.

23) 「自丹里戶籍中草」, 1819년 16統 6戶 參照.

24) 「自丹里戶籍中草」 1831년 表題 參照.



직역이 作吏로 변동되어지고 있다.²⁵⁾ 도림은 10여 년간의 鐵匠 생활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분상승이 점차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림 역시 1840년 이후로 이곳을 떠났다. 도림의 직역상으로 볼 때, 그의 거주지를 관아가 있는 大靜縣城 부근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東城里의 호적에 찾아보았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아마 西城里로 이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나, 호적이 현존하지 않으므로 확인할 길은 없다.

한편 1831년 自丹里 호적에서 사라졌던 道信은 우연히도 中文里 戶籍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1843년 사망하기까지 營菴漢의 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답한의 직역이 자손에게 계속 세습되어지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도신의 아들 慶旭 그리고 손자 成恩이 일시 그 직을 세습하고 있는 것이다.²⁶⁾

이 가계는 1861년 金東恩(개명 彭云)에 의해 四祖에 대한 신분을 모략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牧子(父), 菴漢(祖), 防軍(曾祖), 防軍(外祖)을 書員-書員-旗牌-旗牌로 각기 모략하는 모습을 엿 볼 수 있다.²⁷⁾

그러나 1864년의 호적에는 父와 祖의 직역은 牧子와 菴漢으로 환원되었고, 증조와 외조의 직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²⁸⁾ 이는 1861년에는 籍吏와의 결탁에 의하여 모략의 가능하였으나, 1864년에는 호적작성에 강한 규제력이 적용되어 적리와의 결탁에 의한 모략이 불가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신분 모략의 시도 결과 1867년 이후는 부-조-증조가 모두 서원으로 모략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도신의 장손인 東恩은 목자에서

25) 「自丹里(新堂里) 戶籍中草」 1834年 12統 5戶.

26) 「中文里 戶籍中草」 1831년 33-4, 1834년 33-4, 1837년 33-4, 1840년 26-4 참조.

27) 「中文里 戶籍中草」, 1861年 26統 3戶.

28) 「中文里 戶籍中草」, 1864年 26統 2戶.

使令으로 직역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그는 결국 1870년 29세의 나이로 도망을 선택하고 말았다.²⁹⁾ 그 이후 이 가계에 대한 추적은 불가능하다. 이 김도신의 가계는 先代에 대한 모략을 통하여 답한의 직역에서 다른 직역으로 이동하려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 답한 직역자의 세습현상을 엿볼 수 있다.

2) 安東日의 家系

<圖 7-2>는 1804년 답한 직역을 칭했던 安東日을 중심으로 작성한 家系圖이다. 1786년에 동일은 호주로서 校生の 직역을 칭하고 있었다. 안동일의 先祖를 보면 學生(父)-學生(祖)-學生(曾祖)으로 나타나고 있어 마치 양반가문으로 보인다.³⁰⁾

그러나 안동일의 가계는 적어도 양반신분은 아니었음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母의 호칭이 氏->召史->氏로 일관되지 않으며, 더구나 外祖는 前將官이었고, 그의 처는 召史를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가문은 중인가문으로 모략을 통해 양반신분으로의 상승을 도모했던 가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804년에 오면 신분이 답한으로 하강되었다.³¹⁾ 1789~1798년 사이의 호적이 현존하지 않아 그간의 사정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신분하강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료가 주목된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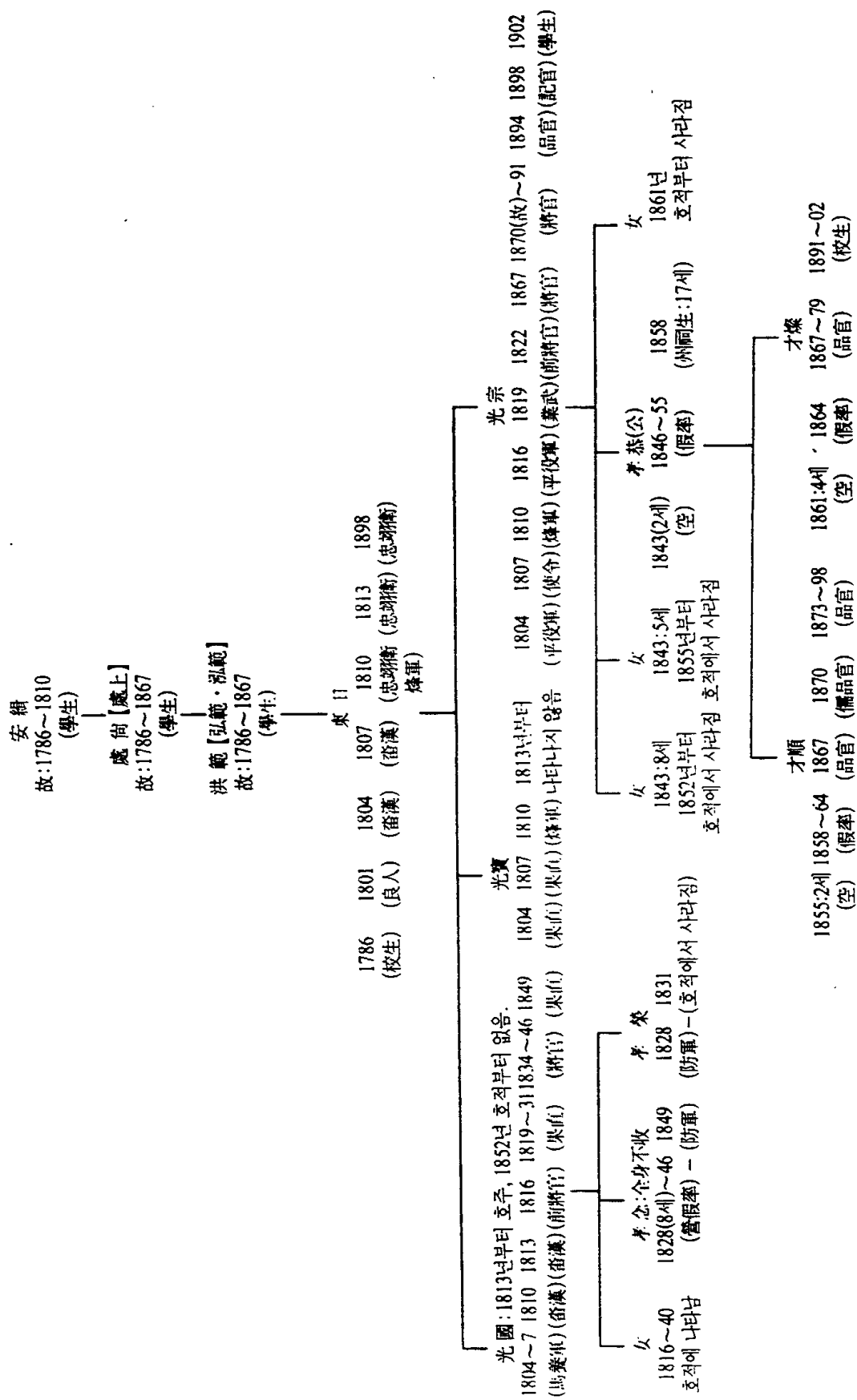
제주목사 尹植이 本道の 일을 狀啓로 논하였는데 儒品과 假率들을 考講과 試射에서 떨어뜨려 騎兵, 歩兵에 충당했는

29) 「中文里戶籍中草」, 1870年 26統 2戶.

30) 「中文里戶籍中草」, 1876年 29統 1戶.

31) 「中文里戶籍中草」, 1804年 21統 5戶.

<圖 7-2> 安東田の採茶風景圖



데 이들이 성이나서 심야에 客舍의 殿牌를 봉안한 곳에 모여 뗏을 하였다고 한다.³²⁾

라 한 바와 같이 儒品과 假率은 18세기 중반까지 본래 중인 신분이었으나 영조 21년경 부터는 考講과 試射에서 떨어진 자는 상민화하여 군역에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안동일의 경우도 이와 같이 고강에서 낙강되었기 때문에 점차 신분이 하강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 가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1810년 동일의 子 光國은 답한, 光寶·光宗은 烽軍의 직역을 지니고 있는데, 동일 자신은 忠翊衛로서 烽軍의 직역을 지니고³³⁾ 있는 점이다. 충익위는 17세기 중반 이후 상민의 군역보다는 조금 대우받는 반·상의 중간존재였으며, 또한 충익위의 역은 일반군역과 달리, 그 役이 閑歇하였으므로 良丁들의 모속을 유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³⁴⁾ 따라서 안동일은 충익위를 모속함으로써 점차 신분상승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子 光國의 직역이 19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將官-果直을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후반 이후에 와서야 중인 신분으로의 상승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의 三子 光宗은 죽은 후에야 품관으로 追贈되고 있다.³⁵⁾

3) 姜宗成의 家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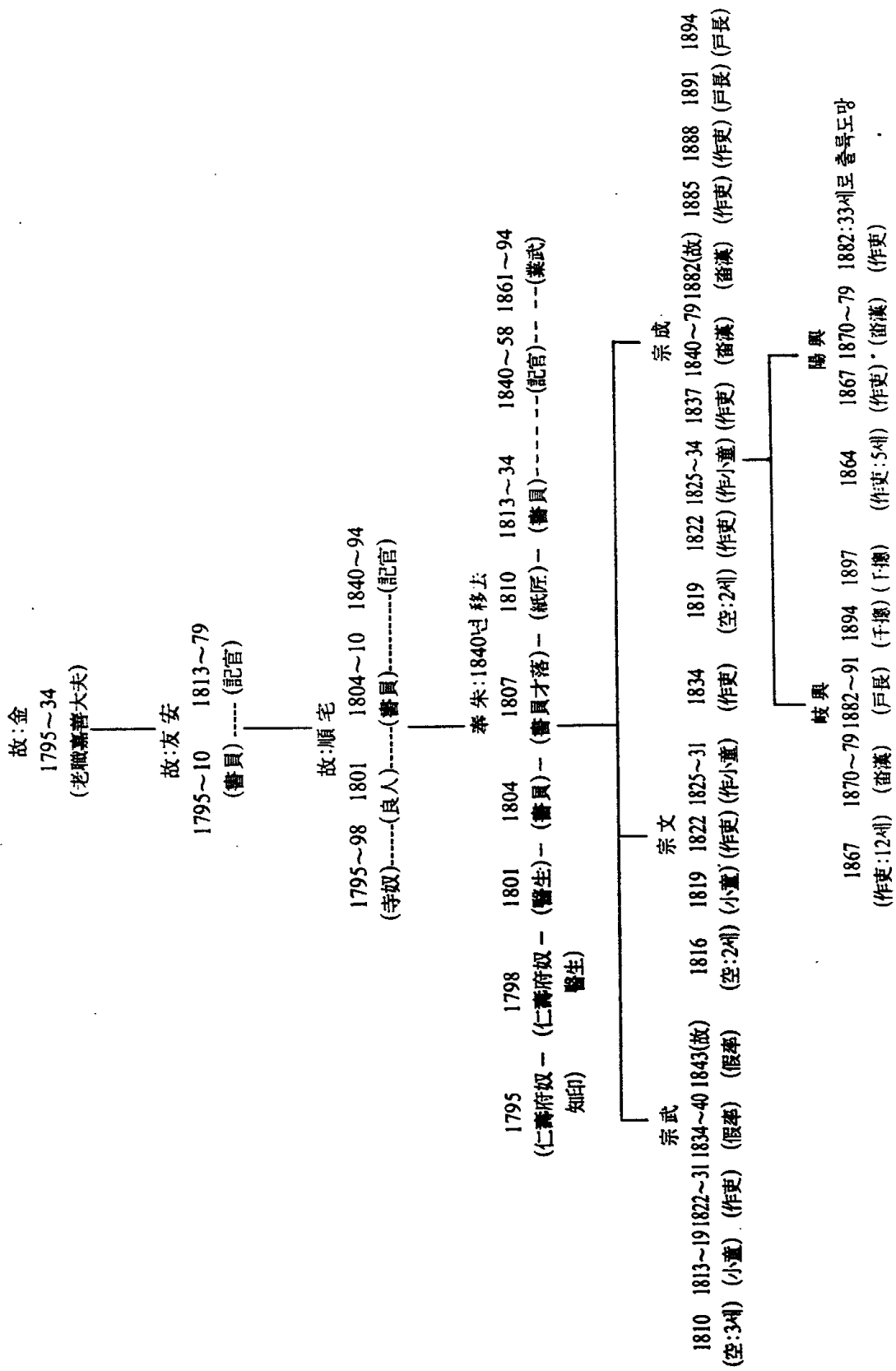
32) 『英祖實錄』卷61, 英祖 21年, 5月 癸未條.

33) 「中文里戶籍中草」, 1810年 20統 5戶.

34) 李俊九, 「朝鮮後期の 諸衛屬과 그 地位變動」, 『朝鮮史研究』第1輯, 伏賢朝鮮史研究會, 1992, PP.224~230.

35) 「中文里戶籍中草」, 1816年, 1819年, 1822年, 1825年, 1828年, 1831年, 1834年, 1837年, 1840年, 1843年, 1846年, 1849年의 20統 2戶, 1858年의 3統 5戶 參照.

圖 7-3 可成宗義採家圖



<圖 7-3>은 1840년 답한의 직역을 칭한 이후 단 한번의 직역변동도 없이 답한의 직역을 유지하고 있는 姜宗成의 家系圖이다. 종성의 父 奉朱는 생존시에 仁壽府奴 知印->仁壽府奴 醫生->醫生->書員->紙匠->書員으로 직역이 변동되고 있으며, 그리고 1840년에 今勿路里를 移居하면서 記官을 칭하고 있다. 死後에는 業武로 추증되었다.³⁶⁾

奉朱는 宗武 · 宗文 · 宗成 세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父가 1840년에 金勿路里를 이거하기 이전에는 作小童에서 종무는 가솔, 종문과 종성은 作吏로 직역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³⁷⁾

그러나 봉주가 종문을 데리고 어디론가 이사를 가게되면서 종성의 가계는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3년뒤인 1843년에는 그의 큰형 종무가 사망하고 20세의 나이로 戶主를 인계한 종성의 직역은 작리에서 답한으로 변동되었다³⁸⁾. 당시 답한은 1824년과 1838년의 減米로 경제적 상황이 약간 호전되기는 했지만 6고역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 후 그는 평생 답한의 직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였다.³⁹⁾ 심지어 그의 아들 岐興과 陽興도 답한직을 세습하고 있는 현상이었다. 1882년 기홍은 戶長으로 신분이 상승되어 이미 故人이 된 父의 직역을 作吏로 모칭하였으나, 官에서는 赤色으로 畚漢이라 정정해 놓고 있다. 이 가계는 적어도 강종성의 子 기홍이 1882년 이후 호장의 직역을 칭하면서 점차 중인 신분으로의 상승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⁴⁰⁾ 그러나 양반 신분으로의 진출은 신분제가 사실상 폐지된 189

36) 「今勿路里戶籍中草」 1795年, 1798年, 1801年, 1804年, 1810年, 1840年, 1861年の 7統 5戶 參照.

37) 「今勿路里戶籍中草」 1828年, 1831年, 1834年, 1837年の 7統 5戶.

38) 「今勿路里戶籍中草」 1843年 7統 5戶.

39) 「今勿路里戶籍中草」 1870年, 1873年, 1876年, 1879年の 7統 5戶.

40) 「今勿號里戶籍中草」 1882年 7統 5戶.

4년 이후에도 불가능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기흥 자신의 직역이 1894년과 1897년 호적에 千總으로 나타나는 점에서⁴¹⁾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6고역층의 하나인 답한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을 살펴해보았다. 제주 지역의 호적중초에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답한은 관둔답을 경작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들은 경작하는 畓이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 營畓漢·牧畓漢·三姓祠畓漢·畓漢 등으로 기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6고역층의 하나인 답한은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관아에 납부하였는데, 1521년에 마련된 定式은 水畓이 1결당 白米 12斗, 乾畓이 1결당 백미 6斗였다. 그러나 농업환경이 좋지 못한 제주지역의 경우, 그를 감당해야 하는 답한의 직역은 애초부터 고역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畓漢의 役을 완화해 줄 목적으로 1791년, 1824년, 1838년 3차례에 걸쳐 減米 조치가 있었지만, 답한의 직은 여전히 6苦役層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답한의 경제적 여건은 好轉되지 않았던 것 같다.

今勿路里·東城里·自丹里·中文里 호적중초를 통해 본 답한의 신분적 지위는 I 期(18世紀 後半)의 경우 93.3%가 공노비였다. 이들 공노비의 소속 관청은 內贍寺 -> 內資寺·奉常寺 -> 禮賓寺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때 I 期 답한의 역은 주로 公賤에서 충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의 경우, 답한의 역은 1801년 공노비가 혁파됨에 따라 業武의 試射에서 떨어진 자, 서원에서 落講한 자, 품관층에서 割出된 자들을 포함하는 양인 신분이 주로 役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관노비로 답한 직역을 충당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41) 「今勿路里戶籍中草」 1894年, 1897年の 7統 5戶.

직역 변동을 통해 본 답한의 신분변동은 양반신분으로의 상승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인신분으로의 상승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7사례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답한은 한번 답한의 직역을 지게되면 생전에 그 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21.3%였고, 목자·과직 등 6苦役層으로 직역이 변동된 자를 합하면 29.8%에 이르고 있다.

가계분석을 통해 답한의 신분변동을 추적한 결과 답한 직역이 자손에게 세습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金道信의 가계의 경우 그의 아들 慶旭, 손자 成恩에게로 이어졌으며, 安東日의 가계에서는 그의 아들 光國에게, 강종성의 가계에서는 그의 두 아들 岐興·陽興 모두에게 세습되고 있었다.

그리고 3차례에 걸친 減米 조치에도 불구하고 답한 직역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김도신의 가계에서 그의 손자 동은과 강종성의 가계에서 그의 아들 양홍의 출륙도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중인으로의 신분을 상승시키려는 모습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VIII. 結 論

本稿는 濟州島라는 특정 지역의 事例를 통하여 18·19세기 신분변동의 실상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는 大靜縣 4개 마을의 戶籍中草, 즉 東城里 戶籍中草 36책, 中文里 戶籍中草 41책, 今勿路里 戶籍中草 47책, 自丹里 戶籍中草 45책 등 모두 169책을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들 호적중초는 1783년에서 1908년에 이르는 總 125年間の 시기에 해당하며,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신분변동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러면 이상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요약·정리 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濟州島는 1105년(숙종 10)에 탐라국이 소멸되고, 高麗의 한 郡縣으로 편제되었다. 그뒤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제주도에는 東·西阿幕이 설치되었다. 동·서아막은 목마장을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牧舍에 불과하였지만, 제주도의 행정구획 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즉, 고려말 東·西道縣體制의 형성이라든가, 조선 태종 16년(1416)에 이루어진 濟州牧·大靜縣·旌義縣의 三邑 設置가 그것이다. 제주목의 관할 하에 있었던 대정현은 18세기 후반에 左面·右面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모두 22個 里로 형성되어 있었다.

한편, 제주의 호적제는 호적작성 방법에서부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은 호적작성 방법으로 호구의 대충을 기록하는 寬法이 시행되었으나, 제주도에서는 1戶·1口도 빠뜨리지 않는 覈法이 실시되었다. 나아가 제주도에서는 里 단위로 호적중초가 철저하게 작성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다.

戶籍中草는 일차적으로 戶籍의 改修를 위한 자료로 작성되었으나, 그후 각 마을에 보관하면서 人口의 移動 혹은 徵稅·徵役에 참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戶籍中草의 作成은 각 마을이 한 단위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각 마을의 厘正·監考·別有司·尊位 등이 중

심이 되어 각 戶에서 거두어 들인 戶口單子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호적중초를 작성하여 해당 官廳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호적중초는 해당 관청에서 異常有無를 확인하고, 각 面마다 일일이 官印을 찍은 후에 마을로 다시 돌려 보내졌다.

濟州地域의 戶籍中草는 타지역의 호적대장 혹은 호적중초와 비교했을 때 몇가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戶籍大帳의 戶는 실제의 호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제주지역 戶籍中草상의 戶는 실제 戶를 거의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주도 호적중초에 기재된 내용은 호적대장보다 매우 충실하며, 때문에 사료로써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記載樣式에 있어서 호적대장은 각 호마다 내용을 連書하고 있지만, 제주지역 호적중초는 마치 戶口單子를 그대로 모아 놓은 것처럼 別行으로 기재하고 있다. 셋째, 남의 집을 일정 기간 빌려 지내는 자들을 「借入」으로 기재하여 구분해 놓고 있다. 넷째, 제주지역 호적중초상의 戶는 한 家屋을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을에 分居하게 되면, 실제 호주를 중심으로 한 戶에 모두 편입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戶籍大帳에 비하여 濟州地域 戶籍中草는 1~15歲에 이르는 인구의 조사가 철저하게 행해졌다.

戶籍을 통해서 본 大靜縣의 戶口構造는 19세기 초인 1807년에 1人에서 14人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戶當 平均 人口數는 4.48人이었으나, 19세기 후반이 될수록 戶口構造는 다양해졌다. 1861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人에서 41人까지 33等級으로 확대되었으며, 戶當 平均 人口數는 7.36名으로 나타났다. 男女의 性比는 1~15歲의 경우가 가장 양호한 85.0%였으며, 16~60歲는 68.2%로 性比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적 특성에 혹은 男丁의 避役에 따른 女多의 상황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大靜縣의 年齡別 人口構造는 거의 피라미드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주민의 신분변동은 전체적으로 4時期로 구분하여 호적중초를 분석하였다. I 期는 公奴婢가 혁파되는 1801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시기로 설정하고 1786년의 호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I·III 期는 편의상 18年間의 간격을 두고 살펴 보았는데, II 期(19세기 전반)는 1807년, 1825년, 1843년의 호적을 중심으로, III 期(19세기 후반)는 1861년, 1879년의 호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IV 期는 1894년 甲午改革 이후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1898년의 호적중초를 이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身分構成의 推移를 4時期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兩班戶는 I 期(1786년)에 17.6%에서 III 期(19세기 후반)에는 31.5%로 완만한 형태로 증가를 보이다가 IV 期(1898년)에 75.1%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兩班戶의 증가와 관련한 職役의 특징은 II 期에 이르기까지 儒生·幼學·校生·留鄉座首·留鄉別監의 職役이 끊임없이 증가하다가, III 期에 오면 儒生의 職役이 거의 사라지고 掌議·齋長의 직역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IV 期の 兩班戶 증가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직역은 掌議의 직역이었다.

둘째, 中人戶는 I 期(1786년)에 21.8%에서 III 期(19세기 후반)에는 43.8%로 兩班戶와 마찬가지로 100여 년간 거의 2배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IV 期(1898년)에 이르면 13.4%로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인의 신분변동은 III 期까지는 끊임없이 증가를 보이다가, IV 期 兩班戶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中人戶가 급격히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中人戶에서 두드러진 職役의 특징은 I 期の 경우 業武가 중인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II 期에 와서 業武 외에 品官·城將·閑良·千摠의 직역과 戶長·執事·記官 등 鄉吏層의 職役이 중요한 중인호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향리층의 증가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III 期の 특징은 業武의 소멸, 品官·千摠 직역의 증가가 중인호의 증가를 주도하다가, IV 期에는 千摠·品官의 감

소가 중인호의 감소를 주도하고 있다.

셋째, 常民戶는 I 期(1786년)에 15.4%였으나 II 期(19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1807년에 53.2%로 현격한 증가를 보이는 데, 이는 1801年 內寺奴婢 혁파에 따라 공노비가 해방된 결과였다. 그후 常民戶는 II 期の 1807년에 43.2%에서 III 期(19세기 후반)에 23.4%로 70여년간 32.1%나 현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그리고 IV 期(1898년)에는 11.0%로 크게 감소하였다.

넷째, 奴婢戶는 I 期(1786년)에 45.2%이던 것이 II 期(19세기 전반)인 1807년에 4.4%로 일부의 奴婢戶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노비호가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고 있다. 이는 1801년 內寺奴婢의 폐지로 公奴婢 가운데 官奴婢와 校奴婢를 제외하고 모두 良人化되었기 때문이다. II 期에 4.4%이던 奴婢戶는 III 期(19세기 후반)에 1.3%로 다소 감소되고 있다. 당시의 奴婢戶는 官奴婢戶와 校奴婢戶인데, 이를 통해 볼 때 시대가 후대로 올수록 官奴婢와 校奴婢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III 期에 1.3%이던 노비호는 IV 期(1898년)에 0.4%로 감소되기는 했으나, 노비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官奴婢와 校奴婢가 끈질기게 존속되고 있다.

이러한 제주 지역의 신분변동을 다른 지역과 비교한 결과, 제주의 신분제는 18세기 말까지 신분폐쇄성이 강하게 남아 있었으나, 1801년을 계기로 심한 동요 현상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욱 심하게 전개되었으며, 1894년 갑오개혁을 전후한 시기에는 더욱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즉, 1801년을 계기로 공노비의 절대적 감소가 단행되었다면, 1894년의 갑오개혁을 계기로 양반의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당시 제주 향촌사회의 역동성을 확인시켜 준다

雇工과 奴婢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제주지역의 雇工은 III 期(19世紀 後半)로 올수록 女性化되고 있었으나, 年齡은 靑少年層보다는

壯年層이 압도적이었다. 고공의 신분 역시 몰락한 良人農民이나 賤人만이 아니라, 業武·閑良·品官 등 中人의 職役을 칭하는 부류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공을 보유했던 雇主戶의 직역으로는 儒生·留鄉座首·訓長·掌議·齋長·校生·院生 등의 양반 직역자, 閑良·千摠·把摠·城將과 前戶長·鄉吏·貢生 등 鄉吏層의 직역을 칭하는 중인이 대부분이었다.

私奴婢 所有戶의 직역을 파악해 보면, 幼學·留鄉別監·留鄉座首·前訓長·掌議·前明月鎭萬戶 등의 兩班 職役者, 戶長·執事와 前城將·把摠 등의 中人 職役者들이다. 양반의 경우는 4~5口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으나, 중인은 대부분 1口의 노비만을 소유하고 있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배계층은 노비를 소유하지 못한 채 일반 평민이나 다름없는 경제적 생활을 영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I 期(1786年)에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던 공노비층에는 代口從良이 국가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받아 들여지면서 상당수의 私奴婢들이 공노비층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반면에 사노비는 점차 감소하였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공노비들은 다른 지역의 공노비와 달리 姓·本貫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良役人口의 부족에 따라 공노비의 대부분은 良役に 충당되고 있었다. 공노비의 혼인양상은 약 85%에 가까운 수치가 노비간 相婚이 행해지고 있었으며, 交婚의 비율은 15%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공노비층의 폐쇄성을 의미한다.

19세기 제주지역의 신분변동이 심한 동요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향리를 배출했던 家門은 19세기 이후로 을수록 다양화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향리층으로 진출하는 家門들 중에는 본래 兩班이 신분이 下降되어 향리층이 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新興 鄉吏層의 대부분은 下層 階層에서 끊임없이 성장한 부류들이었다. 향리층과 양반의 괴리현상은 향리의 혼인실태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향리

층과 양반과의 혼인은 매우 제약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향리들은 兩班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千總·城將 등의 직역을 취득함으로써 양반으로의 성장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었다. 이에 기반이 된 것이 향리들 중에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奴婢·雇工 保有戶가 실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은 그들이 상층 신분으로 신분을 상승시키는 데, 매우 유용했을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지방에서 ‘六苦役’層의 하나였던 畚漢의 경우, I 期(18世紀 後半)에 있어서 이들의 신분은 대부분 公奴婢에 해당했다. 따라서 답한의 직역은 주로 身賤役良을 통한 免賤의 방안으로 公賤에 의해 충당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801년의 공노비 혁파에 따라 II·III 期(19世紀)에는 業武의 試射에서 떨어진 자, 書員에서 落講한 자, 品官層에서 割出된 자들을 포함하는 양인 신분층이 畚漢의 役을 담당하고 있었다. 職役變動을 통해 본 畚漢의 신분변동에서 兩班身分으로의 상승은 단 1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中人 身分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7명이었다.

이상과 같이, 제주지역의 신분제는 1801년 이전까지는 신분 폐쇄성이 강하게 남아 있었지만, 1801년의 공노비 혁파를 계기로 신분제의 동요·혼요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하층민의 상층민으로의 진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19세기의 제주 향촌사회는, 단기간에 걸쳐서는 다른 어느 지역 못지않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분제가 해체되고 있었다. 이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의 시기인 1898년의 시기에서 볼 때 양반의 수가 75% 내외로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신분제의 심한 동요는 또한 19세기 후반 제주지역의 민란을 유발시킨 사회적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제주지역의 신분제 연구에 있어서 우선적인 작업은 무엇보다도 신분제 연구의 1차적 자료가 되는 호적증초의 계속적인 발굴

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호적상에 나타나는 同族部落의 특성
婚姻樣相, 妾의 지위, 양반층의 증가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掌議 직
역자, 또는 千摠·把摠·哨官·城將·將官 등 地方軍과 관련이 있는 직역
의 지위도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여 백

參考文獻

1)史料

- 「甲午式戶籍事目」. 奎章閣圖書 No.12317.
- 『萬機要覽』. 서울:景仁文化社, 1972.
- 『備邊司謄錄』. 서울:國史編纂委員會, 1982.
- 「成冊規式甲午式」. 奎章閣圖書, No.12318.
- 『承政院日記』. 서울:國史編纂委員會, 1961.
- 『新增東國輿地勝覽』. 서울:民族文化推進會, 1970.
- 『輿地圖書』. 서울:國史編纂委員會, 1973.
- 『日省錄』. 서울:서울대 古典刊行會. 1971.
- 宋炳基外. 『韓末近代法令資料集』. 서울:國會圖書館, 1970.
- 『朝鮮民政資料 牧民篇』. 서울:朝鮮印刷株式會社, 1942.
- 『朝鮮王朝法典集』. 서울:景仁文化社, 1972.
- 『朝鮮王朝實錄』. 서울:國史編纂委員會, 1971.
- 『增補文獻備考』. 서울:東國文化社, 1959.
- 『秋官志』. 서울:中樞院, 1939.
- 『韓國地理學叢書 各道邑誌』. 서울:亞細亞文化社, 1984.
- 『戶口總數』. 서울:서울대 古典刊行會, 1971.
- 「戶籍謄關冊」. 奎章閣圖書, No.12332.
- 丁若鏞. 『與猶堂全書』, 서울:景仁文化社, 1970..
- 李衡祥. 『耽羅巡歷圖、南宮博物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3
- 『生活生態調查(其二)濟州島』. 朝鮮總督府, 1929.
- 「濟州牧關牒」. 奎章閣圖書 No.15125.
- 「濟州牧場救弊完文」. 奎章閣圖書 No.7839.

「濟州牧還穀會計成冊」. 奎章閣圖書 No.16150, 16151, 16152.

「濟州啓錄」. 奎章閣圖書 No.15099.

「濟州兵制烽臺摠錄」. 奎章閣圖書 No.4485

「濟州三邑上田穀會計成冊」. 奎章閣圖書 No.20359.

「羅里浦事實」. 奎章閣圖書 No.4559.

「耽營關報錄」

「邱吏救弊節目」. 奎章閣圖書 No.19382.

『耽羅啓錄』

「耽羅防營摠覽」

『濟州大靜旌義邑誌』. 奎章閣圖書 17436.

『濟州邑誌』. 奎章閣圖書 10796.

李元鎮. 『耽羅志』

李衡祥. 『瓶窩全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李源祚. 『耽羅錄』

李源祚. 「耽羅誌草本」

「濟州事例」

「耽羅事例」

「耽羅營事例」

「戶籍所定式條例成冊」

「三邑戶籍人口穀及統籍米救弊節目」

「戶總人總穀總分排定例」

「籍草紙本錢設置節目」

「考籍人情木防給節目」

「考籍人情木防給節目」

「統籍冊及食物冊防幣節目」

「戶口穀代錢救幣節目」

「戶籍紙本錢設置節目」

「大靜縣 執事案」(乾隆 伍十伍年 正月 日)

金仁澤. 「大靜縣衙中日記」(1817年 6月 日)

「橘林書院儒案」(1750년, 1860년, 1892년)

「儒案」(大靜鄉校:1670년-1811년)

「三姓祠儒案」(1747년-1868년)

「三姓祠百齋生復設記」(1848년)

「武科及第先生案」(1558년-1815년)

「明月鎮萬戶先生案」(1764년-1895년)

「安民庫節目」(1756년)

金淨. 『濟州風土錄』

金尙憲. 『南事錄』

李健. 『濟州風土記』

金錫箕. 『耽羅紀年』

金奉玉編譯. 『朝鮮王朝實錄中耽羅錄』, 제주문화방송, 1986

林悌. 『南溟小乘』

「書啓輯錄」. 奎章閣圖書 No.15083.

「各道查驗關草」. 奎章閣圖書 No.18085.

「諭濟州父老軍民耆民人等書」. 奎章閣圖書 No.7859.

「耽羅賓興錄」. 奎章閣圖書 No.4792.

「推刷都監儀執」. 奎章閣圖書 No.14933.

「校田劃給節目」(濟州鄉校所藏)

「耽羅鄉籍」(濟州鄉校所藏)

「鄉案」(濟州鄉校所藏)

「鄉案」(광무6년:濟州鄉校所藏)

「濟州鄉案」(崇禎辛酉:濟州鄉校所藏)

「鄉案」(光武3년:濟州鄉校所藏)

「耽羅鄉案」(嘉慶十六年:濟州鄉校所藏)

「各面訓長設置節目」(濟州鄉校所藏)

「兩齋改定節目」(濟州鄉校所藏)

「縉紳先生案」(濟州鄉校所藏)

『蓮榜錄』(濟州鄉校所藏)

『濟州牧상救弊完文』,奎章閣圖書 No.7839.

『京邸新定式節目』,奎章閣圖書 No.7839.

『濟州內需司無後奴婢已上田畝因該司關文改打量庚子以後改己巳至陳起區別成冊』,奎章閣圖書 No.20586.

2)研究書

權仁赫·趙尙濟.『韓國近代農民抗爭史』,서울:느티나무, 1993.

金斗憲.『韓國家族制度史研究』,서울:서울대출판부, 1969.

金泳謨.『朝鮮支配層研究』,서울:一潮閣, 1977.

金容燮.『朝鮮後期農業史研究 (1) (2)』,서울:一潮閣, 1970, 1971.

金載珍.『韓國의 戶口와 經濟發展』,서울:博英社, 1967.

宋俊浩.『朝鮮社會史研究』,一潮閣, 1987.

尹熙勉.『朝鮮後期 鄉校研究』,一潮閣, 1990.

李光奎.『韓國의 家族과 宗族』,民音社, 1990.

李樹健.『韓國中世社會史研究』,一潮閣, 1984.

李榮薰.『朝鮮後期 社會經濟史』,한길사, 1988.

李存熙.『朝鮮時代地方行政制度研究』,一志社, 1990.

李俊九.『朝鮮後期身分職役變動研究』,一潮閣, 1993.

李勛相.『朝鮮後期の 鄉吏』,一潮閣, 1990.

이해준외.『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법』,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3.

- 全炯澤.『朝鮮後期奴婢身分研究』,一潮閣,1989.
- 鄭奭鍾.『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一潮閣,1983.
- 鄭亨愚.『朝鮮時代 書誌史研究』,韓國研究院,1983.
- 車文燮.『朝鮮時代軍制研究』,檀國大學校 出版部,1973.
- 崔在錫.『濟州島의 親族組織』,一志社,1979.
- 崔弘基.『韓國戶籍制度史研究』,서울대 출판부,1975.
- 平木實.『朝鮮後期奴婢制研究』,知識産業社,1989.

3)研究論文

- 姜萬吉.「朝鮮後期 雇立制 發達 — 差備軍과 造募軍의 雇立化를 中心으로 —」,『韓國史研究』13, 1976.
- .「朝鮮後期 雇立制 發達 — 早隸・羅將을 中心으로 —」,『世林韓國學論叢』第1輯, 1978.
- 姜祥澤.「朝鮮後期 嶺南地方 書院의 身分變化」,『釜大史學』17, 1993.
- 桂勝範.「朝鮮後期 丹城地方 挾川 李後男 家系의 職役과 身分」,『古文書研究』3, 1992.
- 高昌錫.「耽羅의 郡縣設置에 대한 考察」,『論文集』14, 濟州大, 1982.
- .「元代의 濟州島牧場」,『濟州史學』창간호, 1985.
- .「朝鮮後期 濟州島 田畝文記의 研究 — 高在一氏 所藏文記를 中心으로 —」,『耽羅文化』13, 1993.
- .「朝鮮中期 奴婢의 所有權紛爭 — 1662년 濟州牧官立案 —」,『濟州文化研究』,玄旨 金榮墩博士華甲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 編, 1993.
- .「沙溪里 綾城具氏家와 그 文書」,『耽羅文化』14, 1994.
- 姜萬生.「韓末 日本의 濟州漁業 침탈과 島民의 대응」,『濟州島研究』3, 1986.
- 權仁赫.「哲宗朝 濟州民亂의 檢討 — 濟州牧按察狀啓膽錄을 중심으로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三英社, 1985.

- .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 『李元淳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教學社, 1986.
- . 「19세기초 梁濟海의 謀變實狀과 그 性格」, 『耽羅文化』 7, 1988.
- . 「조선후기 제주의 「事例」와 사료적 가치」, 第9回國史編纂委員會 史料調查委員會議 發表要旨, 1994.
- 權延雄. 「朝鮮時代 奴婢制 研究動向」, 『제5회 국제학술회의논문집』,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 權泰煥·愼鏞廈. 「朝鮮王朝時代 人口推定에 關한 一試論」, 『東亞文化』 第14輯, 1977.
- 金甲周. 「朝鮮後期の 養戶」(上·下), 『歷史學報』 85·86, 1980.
- 金東仁. 「朝鮮初期雇工研究」, 『崇實史學』 1집, 1982.
- 金東栓. 「朝鮮朝 濟州地方縣監의 實態分析—『濟州 大靜 旌義邑誌』의 先生案條를 중심으로 —」, 『濟州島研究』 2집, 1985.
- . 「朝鮮時代 濟州島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濟州島史研究』, 창간호, 1991.
- . 「18·19세기 畚漢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 『歷史民俗學』 제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1993.
- . 「19세기 戶籍制 運營의 弊端과 對策 — 제주지방 호적관련 節目을 중심으로 —」, 『濟州文化研究』, 玄旨金榮墩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編, 1993.
- . 「18·19세기 濟州島 鄉吏의 身分變動」, 제주도연구회 학술발표요지, 1993.
- . 「濟州牧 官衙施設」, 『古文化』 제42·43합집, 1993.
- 金相煥. 「朝鮮後期 公奴婢의 身分變動 — 17·8세기 丹城縣 戶籍臺帳을 中心으로 —」, 『慶北史學』, 第12輯, 1989.
- 金錫禧. 「朝鮮王朝後期の 慶尙道 丹城縣 戶籍大帳에 對하여」, 『釜山大學校 文

- 理大學 論文集』14집 (인문사회과학편), 1975.
- 朴容淑. 「朝鮮王朝後期の 慶尙道 丹城縣戶籍大帳에 關하여(II)」, 『釜山大 文理大 論文集』17집 (인문사회과학편), 1978.
- 朴容淑. 「18世紀 農村의 社會構造 — 慶尙道 丹城縣의 경우 — 」, 『釜大史學』3집, 1979.
- . 「慶尙道 丹城縣 戶籍大帳에 關한 研究 — 18世紀 逃亡·移去戶를 中心으로 — 」, 『人文論叢』24, 1983.
- . 「朝鮮後期 慶尙道 彦陽縣 戶籍臺帳에 關하여」 『釜大史學』7집, 1983.
- . 「18·19세기 戶口의 實態와 身分變動 — 新例 彦陽縣 戶籍大帳을 中心으로 — 」, 『人文論叢』26, 釜山大, 1984.
- . 「朝鮮後期 地方社會史 研究動向과 課題 — 戶籍臺帳 研究를 中心으로 — 『韓國文化研究』5, 1992.
- 金洋植. 「1901年 濟州民亂의 再檢討」, 『濟州島研究』6, 1989.
- 金泳謨. 「朝鮮後期の 身分概念과 身分構造의 變化」, 『현상과 인식』2권 11호, 1978.
- . 「韓末 漢城府民의 身分構造와 그 移動」, 『省谷論叢』11집, 1980.
- . 「朝鮮後期の 身分構造와 그 變動」, 『東方學志』26, 1981.
- 金容晚. 「朝鮮後期 私奴婢에 關한 一研究 — 兩班家 古文書分析을 通하여 — 」, 『嶺南史學』제2집, 1986.
- . 「朝鮮時代 士族의 奴婢所有權 研究 — 그 성격과 이동 형태를 中心으로 — 」, 『大邱史學』第35輯, 1988.
- . 「朝鮮時代 私奴婢 一研究 — “新奴婢” 개념설정을 위한 試論」, 『嶺南史學』第4輯, 1989.
- . 「朝鮮時代 17 18C 民衆의 動向 — 奴婢層을 中心으로 — 」, 『國史館論叢』37집, 1992.
- 金容燮. 「朝鮮後期에 있어서의 身分制의 動搖와 農地 所有 — 尙州量案研究의

- 一端 — 』, 『史學研究』 15, 1963.
- 金仁杰. 「朝鮮後期 鄉案의 性格變化와 在地土族」, 『金哲俊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3.
- . 「朝鮮後期 鄉村社會構造의 變動」, 『邊太燮博士 華甲紀念史學論叢』, 三英社, 1985.
- . 「조선후기 신분사 연구현황」, 『韓國中世社會 解體期の 諸問題(下)』, 近代史研究會編, 한울, 1987.
- . 「조선후기 향촌사회 권력구조 변동에 대한 시론」, 『韓國史論』 19, 1988.
- 金俊亨. 「朝鮮後期 身分制・鄉村秩序의 研究現況과 『국사』教科書의 內容分析」, 『歷史教育』 39, 1986.
- . 「朝鮮後期 蔚山地域의 鄉吏層變動」, 『韓國史研究』 56, 1987.
- . 「朝鮮後期 鄉吏層의 변동 — 彦陽地域의 예를 통한 접근 — 』, 『慶尙史學』 6, 1990.
- 金弼東. 「朝鮮後期 地方吏胥集團의 組織構造 — 社會的 接近 — 』(상하), 『韓國學報』 28・29, 一志社, 1982.
- 南都泳. 「朝鮮牧子考」, 『東國史學』 18, 1965.
- 盧明鎬. 「山陰帳籍을 통해 본 17世紀初 村落의 血緣樣相」, 『韓國史論』 5, 1979.
- 盧鎮英. 「17世紀初 山陰縣의 社會構造와 그 變動」, 『歷史教育』 25, 1979.
- 文守弘. 「朝鮮後期 身分制動搖의 一考察 — 納粟策・空名帖發給을 中心으로 — 』, 『東國大學校 論文集』 1, 1982.
- 朴成壽. 「雇工研究」, 『史學研究』 18, 1964.
- 朴性植. 「18세기 丹城地方의 社會構造 — 丹城戶籍所載 職役別統計를 中心으로 — 』, 『大丘史學』 15・16집, 1978.

- 朴容淑. 「朝鮮後期の 婚姻實態 — 1717년의 丹城戶籍을 중심으로 — 」, 『釜大史學』 4집, 1980.
- . 「18・19世紀의 奴婢와 雇工 — 慶尙道 彦陽縣 戶籍의 分析 — 」, 『人文論叢』 26, 1984.
- . 「朝鮮後期 鄉村社會構造에 관한 研究 — 18・19세기 同性婚을 중심으로」, 『釜山史學』 8, 1984.
- . 『朝鮮後期 鄉村社會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86.
- . 「朝鮮後期の 挾戶 — 丹城戶籍의 事例를 중심으로 — 」, 『釜山大 師大 論文集』 14, 1987.
- . 「18・19世紀의 雇工 — 慶尙道 彦陽縣 戶籍의 分析 — 」, 『釜大史學』 7집, 1983.
- 朴贊殖. 「17,8세기 濟州島 牧子의 實態 — 李衡祥의 ‘耽羅狀啓抄’를 중심으로 — 」, 『濟州文化研究』, 玄旨 金榮墩博士華甲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 編, 1993.,
- 裴在弘. 「朝鮮後期の 庶孽許通」, 『慶北史學』 10, 1987.
- 白承鍾. 「慶尙道 丹城縣 都山面 文太里의 私奴 興宗과 興龍 一家 — 1678년부터 1789년까지 — 」, 『震檀學報』 70, 1990
- 徐義必. 「18世紀 蔚山地方 鄉班社會研究 — 身分變化를 통해서 본 社會變動」, 『崇田語文學』 3집, 1974.
- . 「17・8세기 納粟策의 實施와 그 成果」, 『歷史教育論集』 15, 1990.
- 宋 復. 「兩班體制的 支配持續性：中人階級の 構成과 機能을 중심으로」, 『社會階層-理論과 實際』, 茶山出版社, 1991.
- 宋俊浩. 「 신분제를 통해서 본 조선후기 사회성격의 일면」, 『歷史學報』 133, 1992.
- 宋贊植. 「朝鮮後期 校院生考」, 『國民大學論文集』 11, 1976.
- 수잔 신. 「17세기 金化 地域의 社會 構造」, Occasional Papers on Korea I, 『朝

- 鮮身分史研究』, 法文社, 1987.
- 愼鏞夏. 「1894년의 社會身分制의 폐지」, 『韓國近代社會史研究』, 一志社, 1987.
- 楊萬鼎. 「淳昌地方의 兩班家門에 對한 考察」, 『宋俊浩教授停年紀念論叢』, 1987.
- 梁鎮健. 「朝鮮時代 濟州教育思想史 研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1.
- 呂重哲. 「聚落構造와 身分構造」, 『韓國의 社會와 文化』,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吳甲均. 「奮武功臣으로 인한 身分變動」,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三英社, 1985.
- 劉承源. 「朝鮮初期 驛吏의 身分의 地位」, 『論文集』 10輯, 聖心女大, 1979.
- 은기수. 「조선후기 인구자료로서의 호적에 관한 일연구」, 『한국 사회의 신분 계급과 사회 변동』,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제8집, 1987.
- 李光奎. 「朝鮮朝 後期の 社會構造와 變動 — 蔚山地域 戶籍을 中心으로 —」, 『韓國文化』 5, 1984.
- 李範稷. 「朝鮮前期의 校生身分」, 『韓國史論』 3, 1976.
- 李成茂. 「朝鮮時代 奴婢의 身分의 地位」, 『韓國史學』 9, 1987.
- . 「朝鮮初期 奴婢의 從母法과 從父法」, 『歷史學報』 제115집, 1987.
- 李樹健. 「朝鮮初期 戶口 研究」, 『論文集』 5輯, 嶺南大學校, 1972.
- . 「朝鮮初期 戶口의 移動現象」, 『韓國學論叢-霞城李瑣根博士古稀紀念論集-』, 형설출판사, 1974.
- . 「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社會史의 一研究」, 『韓國史學』 9, 1987.
- . 「朝鮮後期 書院奴婢 身貢에 대한 研究 - 陶山書院 奴婢 身貢案을 中心으로-」, 『民族文化論叢』 10, 1989.
- 李榮薰. 「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時代 奴婢의 經濟的 性格」, 『韓國史學』 9, 1987.
- 李載鏞. 「朝鮮後期の 奴婢研究」, 『崇田大論文集』 3, 1971.

- 李鐘日. 「朝鮮後期の 嫡庶身分變動에 대하여 — 綾城具氏 左政承公派의 嫡庶是非를 중심으로 — 」, 『韓國史研究』 65, 1989.
- . 「朝鮮後期の 沒落兩班에 관하여 - 大邱帳籍上의 辛州殷氏를 중심으로 -」, 『水屯朴永錫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上), 1992.
- 李俊九. 「朝鮮後期 兩班身分 移動에 관한 研究 — 丹城帳籍을 中心으로 — 」, (上)·(下) 『歷史學報』 96·97, 1982·1983.
- . 「朝鮮後期 身分構造理解의 諸問題 檢討」, 『大邱史學』 34, 1988.
- . 「朝鮮後期の 閑良과 그 지위」, 『國史館論叢』 5집, 1989.
- 李昌基. 「濟州島의 性別 年齡別 人口構成」, 『人口保健論集』, 제2권 제2호, 1982.
- . 「濟州島의 人口成長」, 『耽羅文化』創刊號, 1982.
- . 「濟州島의 家口構成」, 『人文研究』 9집, 1988.
- 李清圭. 「上古時代 濟州島文化의 研究」, 제9회 한국상고사학회 발표요지, 1993.
- 李泰鎮. 「朝鮮後期 兩班社會의 變化 — 신분제와 향촌사회 운영구조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 」, 『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1992.
- 李海濬. 「朝鮮後期 晉州地方 儒戶의 實態 — 1832年 晉州鄉校修理記錄의 分析 — 」, 『震檀學報』 60, 1980.
- . 「朝鮮後期 한 兩班家의 奴婢所有實態 — 公州中湖 慶州李家 所傳 戶口單子分析 — 」, 『湖西史學』 8·9合, 1980.
- . 「朝鮮後期 長興傍村의 村落文書 — 湖南地方 한 同族部落의 組織」,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三英社, 1985.
- . 「朝鮮後期 향촌사회질서의 변화와 기층민 문제」, 『大丘史學』 37집, 1989.
- 李助相. 「居昌愼氏 世譜의 간행과 鄉吏派의 編入 — 朝鮮後期 鄉吏의 身分移動問題에 대한 再檢討 — 」, 『白山學報』 33, 1986.

- 任敏赫. 「朝鮮後期の 幼學」, 『清溪史學』 8, 1991.
- 張東杓. 「18 19세기 吏額增加의 현상에 관한 研究」, 『釜大史學』 9, 1985.
- 全炅穆. 「19세기 말에 작성된 南原 屯德坊의 戶籍中草와 그 성격」, 『古文書研究』 3, 1992.
- 全宇哲. 「朝鮮後期 鄉村社會에 있어서의 吏胥階層研究 — 丹城戶籍의 分析을 통한 事例研究」, 『震檀學報』 60, 1985.
- 全炯澤. 「朝鮮後期 奴婢勞動에 있어서의 雇立制」,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三英社, 1985.
- . 「17·18世紀 私奴婢의 存在樣態 — 扶安金氏古文書에 의한 事例分析 — 」, 『李元淳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1986.
- 鄭德基. 「朝鮮王朝時代 戶口變遷의 社會經濟史的研究」, 『湖西史學』 2집, 1973.
- 鄭奭鍾. 「朝鮮後期 社會身分制의 崩壞 — 蔚山府戶籍臺帳을 중심으로 — 」, 『19世紀의 韓國社會』, 大東文化研究院, 1972.
- 鄭勝謨. 「鄉村社會 支配勢力의 形成과 組織化 過程」, 『第19回東洋學學術會議講演抄』, 檀國大, 1989.
- . 「朝鮮後期 丹城縣의 身分構成比 變化와 그 動因」, 『泰東古典研究』 9집, 1993.
- 鄭演植. 「17·18世紀 良役均一化政策의 推移」, 『韓國史論』 13, 1985.
- 趙錫坤. 「光武年間の 戶政運營에 관한 小考」, 『大韓帝國期の 土地制度』, 民音社, 1990.
- 조성윤. 「조선후기 제주도 지방의 신분구조」, 『한국의 전통사회와 신분구조』, 문학과지성사, 1991.
- . 『조선후기 서울 주민의 신분구조와 그 변화』,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2.
- 池承鍾. 「朝鮮後期 社會와 身分制의 動搖」, 『韓國의 社會와 文化』 제10집,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

- 秦榮一. 「濟州島·沖繩地域史에 대한 比較史試論」, 『耽羅文化』11, 1991.
- 蔡尙植. 「18·19世紀 同族 特殊部落의 實態 — 新例 彦陽縣 戶籍臺帳을 중심
으로 — 」, 『釜山大 人文論叢』26, 1984.
- 崔權默·韓基範. 「17世紀의 同姓婚 — 丹城戶籍을 中心으로 — 」, 『人
文科學研究所論文集』9-2, 忠南大學校, 1982.
- 崔承熙. 「戶口單子·准戶口에 대하여」, 『奎章閣』7, 1983.
- . 「朝鮮後期 鄉吏身分變動與否考 — 鄉吏家門 古文書에 의한 事例研究
— 」, 『金哲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3.
- . 「朝鮮後期 鄉吏身分移動與否考(2) — 草溪卞氏鄉吏家門 古文書에 의한
事例研究 — 」, 『韓國文化』4, 1983.
- . 「朝鮮後期 身分變動의 事例研究 — 龍宮縣 大丘白氏家古文書의 分析
— 」, 『邊太燮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1985.
- . 「朝鮮後期 幼學·學生의 身分史的 意味」, 『國史館論叢』1, 1989.
- 崔永浩. 「幼學·學生·校生考 — 17세기 身分構造의 變化에 대하여 — 」, 『歷
史學報』101, 1984.
- 崔允榛. 「高敞鄉校 東·西齋 儒生案에 대한 檢討」, 『宋俊浩教授停年紀念論
叢』, 1987.
- . 「17·18世紀의 慶尙道 丹城縣의 住民構成(1) — 위 시기에 작성된 丹
城縣戶籍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 — 」, 『全羅文化研究』5, 1991.
- 崔在錫. 「朝鮮後期 都市家族의 形態와 構成 — 大邱戶籍을 中心으로 — 」,
『人文論輯』第19輯, 高麗大學校, 1974.
- . 「朝鮮後期 常民의 家族形態 — 谷城縣戶籍을 中心으로 — 」, 『湖南
文化研究』7, 1975.
- . 「17世紀初의 同姓婚 — 山陰帳籍의 分析 — 」, 『震檀學報』46·47합
병호, 1979.
- 崔 虎. 「朝鮮後期 驛村에 대한 一考察 — 丹城縣 戶籍大帳을 中心으로 — 」,

『中央史論』 4, 1985.

韓基範. 「17世紀初 丹城縣民의 身分構成 — 戶籍分析을 中心으로 — 」, 『湖西史學』 10집, 1982.

韓榮國. 「府의 戶口와 그 構成分布」, 『大丘市史』 第1卷, 1973.

——. 「18・19世紀 大邱地域 社會變化에 關한 一試論 — 大邱府戶籍의 「新戶」 中心으로 — 」, 『朝鮮學報』 80, 1976.

——. 「朝鮮中葉의 奴婢結婚樣態(上) — 1609年の 蔚山府戶籍에 나타난 事例을 中心으로 — 」, 『歷史學報』 75・76합집, 1977.

——. 「朝鮮中葉의 奴婢結婚樣態(下) — 1609年の 蔚山府戶籍에 나타난 事例을 中心으로 — 」, 『歷史學報』 77집, 1978.

——. 「朝鮮後期の 雇工 — 18・19世紀 大邱戶籍에서 본 그 實態와 性格 — 」, 『歷史學報』 81, 1979.

——. 「朝鮮後期の 挾人・挾戶 — 彦陽縣 戶籍大帳의 挾戶口를 中心으로 」, 『千寬字先生還歷紀念韓國史學論叢』, 正音社, 1985.

——. 「朝鮮王朝 戶籍의 基礎的 研究」, 『韓國史學』 6, 1985.

——. 「朝鮮後期の 身分制 變動에 對한 研究現況과 課題」, 『第19回東洋學學術會議 講演抄』, 1989.

——. 「朝鮮 初期 戶口統計에서의 戶와 口」, 『東洋學』 19집, 1989.

韓永愚. 「미국내 한국 신분자료 및 조선시대 신분사 연구동향에 對한 研究」, 『韓國史論』 13, 1985.

——. 「朝鮮時代 中人的 身分階層的 性格」, 『韓國文化』 9, 1988.

黃正夏. 「朝鮮後期 算員집안의 研究 — 泰安李氏 사례분석을 中心으로 — 」, 『韓國史研究』 66, 1989.

4) 國外

四方博. 「李朝人口に關する 身分階級別的觀察」, 『朝鮮經濟の研究』 3, 1938.

- 有井智徳.「李朝 初期の 戸籍法について」,『朝鮮學報』第30・40輯, 1966.
- 西川孝雄.「17・8世紀 安東・星州兩班「戸籍」の一検討」,『名古屋大學 東洋史研究報告』1, 1972.
- 井上和枝.「李朝後期慶尙道丹城縣の社會變動 — 學習院大學藏丹城縣戸籍大帳研究 — 」,『學習院史學』23, 1985.
- 武田幸男.『學習院大學藏 朝鮮戸籍大帳の基礎的 研究 — 19世紀 慶尙道 鎭海縣の戸籍臺帳について』,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1977.

여 백

<附錄>

1. 1786年(正祖 10) 東城里 戶籍中草

統 戶	戶 主			戶主 四親の 職役				妻			戶主妻 四親の 職役				家 口 構 成	備 考		
	職 役	姓 名	年 本貢	父	祖	曾祖	外祖職役	姓 本貢	姓(名)	呼稱	年 本貢	父	祖	曾祖			外祖 職役	姓 本貢
1-1	業武	姜□老	40	晉州	鎮撫	業武將官	鎮撫	高	高	召史	39	鎮撫	鎮撫	鎮撫	曹員	金 ?	子 鎮撫小童 9 水子 良人 7 水女 3 繼母 高召史 59	
1-2	內資寺奴 僧祇匠	佐□弘	58	大元	寺奴 (79)	正兵	正兵	知	---	奉常寺婢	56	寺奴	--不	知--	寺奴	韓 濟州	前妻女 仁順附婢 30 外孫子 同寺女 僧祇匠 5	戶主母寺婢 妻母奉常寺婢
1-3	仁順附奴 羅將 隨卒	張□釋	53	長城	寺奴	寺奴	鄉吏	吳	海州	典醫監婢	33	內醫司奴 (59)	老職通政	寺奴	正兵	文 福城	女 典醫監婢 11 子 典醫監奴 官廳直 5	戶主母同寺婢 妻母典醫監婢 (61)
1-4	內資寺奴 直軍	姜□貴	31	晉州	業武	鎮撫	寺奴	任	豐州	良女	29	寺奴	寺奴	寺奴	正兵	金 金海	子 鎮撫小童 6 子 鎮撫小童 3	
1-5	內職寺奴	皇□業	76	平壤	正兵	寺奴	鎮撫通政	高	濟州	仁順附婢	43	寺奴	老職善善	老職善善	老職善善	姜 晉州	子 仁順附奴 直軍 14 女 仁順附婢 6 子 仁順附奴 除番軍 5 子 仁順附奴 3	戶主母內職寺婢 妻母仁順附婢
2-1	良人 弓匠	林□成	29	羅州	良人	業武	前將官	高	濟州	內職寺婢	21	寺奴	正兵	私奴	正兵	鄭 濟州	女 內職寺婢 3	妻母同寺婢
2-2	僧祇婢	安□雄	65	順興	良人	學生	業武	梁	濟州	召史	50	業武	業武	正兵	展力副尉 兼司僕	許 陽川	花妾 宗親附婢 58 繼子 宗親附奴 曹員 19	
2-3	業武馬廐	姜□老	60	晉州	鎮撫	業武	曹員	安	黃日	內資寺婢	57	寺奴	寺奴	不知	忠竭衛 老職通政	朴 密陽	母 安召史 77 女 內資寺婢 24 子 內資寺奴 小童 9 花妾 內資寺婢 44 花妾子 內資寺奴 小童 9 花妾子 內資寺奴 小童 4	妻母：內資寺婢

5-1	儒生	金口範	19	一徒	前風憲 (51)	幼學	留鄉監首	通儒郎武 科及第	吳	和順	金德	良女	39	金海	寺奴	---	---	不知	---	母 吳氏 48 妹 氏 17
5-2	忠翊衛	林口永	67	咸安	府奴	書具	納粟通政	良人	高	濟州	金德	良女	39	金海	寺奴	---	---	不知	---	前妻女 內資寺婢 39 外孫女 內資寺婢 7 外孫子 內資寺奴 遞歸防軍 5 次女 內資寺婢 27
5-3	儒生	高口新	29	濟州	學生	留鄉別監	學生	通儒郎 武科及第	吳	和順										子 良人
5-4	前城將	趙口番	26	南原	記官隨亭 56	業武	學生	正兵	許	陽川	吳	召史	32	海州	前將官	老職嘉善 大夫同知 中樞府事	鄉吏	書具	高	母 奉常寺婢 62 女 8, 5, 2 庶弟 業武 11 借入 良人 紙人 32 借入 良人 借入 良人 直軍 31
5-5	良人 紙匠東五	金口賢	50	光州	良人	學生	通訓大夫 成均館典 籍	學生	高	濟州		司宰監婢	48	晉州	書具	業武	老職嘉善 行龍營衛 副議軍	書具	高	妻外侄子 司宰監奴果直 5 妾母 司宰監婢
6-1	良人 營連軍	金口東	61	金海	正兵	正兵	不知	正兵	朴	不知		奉常寺婢	58	大元	寺奴	正兵	正兵	寺奴	金	妻 侄子 奉常寺奴 遞歸防 軍 13 妾母 奉常寺婢
6-2	業武	柳口濟	32	文化	學生	學生	秉節校尉 龍營衛副 司果	業武	金	金海	林	召史	28	盈州	前將官	前將官	老職	前把總	高	母 金召史 42 子 假率 4 借入 司膳寺奴 幕登防軍 46
6-3	儒生	柳口仁	22	文化	學生	學生	學生	留鄉別監	高	濟州	吳	氏	22	軍威	留鄉別監	留鄉別監	留鄉監首	良人	妻	奉母 高氏 45 奉祖母 金氏 70 女 5 妹 20
6-4	前將官	吳口采	27	和順	總知訓鍊 院奉事	千總	秉節校尉 行龍營衛 副司果	展力副尉 兼司農	高	濟州										母 氏 49 妹 14
6-5	前城將	吳口胤	53	和順	前把總 (80)	秉節校尉 龍營衛副	秉節校尉 龍營衛副	業武	姜	晉州	金	氏	55	金海	貢生	貢生	貢生	展力副尉	金	子 校生 23 女 9, 8, 5

7-1	內隴寺女 墓志防軍	成口己	59	昌寧	寺叔	良人	正兵	司果	司果	寺叔	林	盈州	姜	召史	53	大元	寺叔	鐵鑪	留鄉別監	寺叔	金	金寧	女 召史 37 外孫子 葉武 12 女 召史 28 外孫女 3	戶主母:內隴寺婢
7-2	禮賓寺叔	高口大	71	濟州	寺叔	正兵	留鄉座首	老職通政	林	盈州				典醫監婢	63	咸安	寺叔	書具	納粟通政	寺叔	高	濟州	女 典醫監婢 35 外孫子 典醫監叔 小童 14 妻弟 典醫監婢 57	戶主母:禮賓寺婢 妻母:典醫監婢
7-3	奉常寺婢	車德	16	不知	寺叔	不知	---	寺叔	金	金海														戶主母:奉常寺婢
7-4	樂武馬隊	柳口彬	16	文化	樂武	前將官	樂武	前把總	吳	和順	姜	晉州	姜	召史	23	晉州	良人	書具	鐵鑪	寺叔	高	濟州	母 吳召史 44 妹 女 17 女 3	
7-5	儒生	許讓	33	陽川	前將官	學生	樂武	樂武	姜	晉州	柳	氏	氏	34	文化	學生	學生	學生	秉憲校尉 龍?尉置 司果	學生	李	古阜	孝母 姜氏 64 子 良人 因軍 10 妹 16	
8-1		高召史	51	濟州	學生	良力副尉 兼司候	老職通政 兼知中樞 府事	記官	金														母 良女 72 異父同生弟良女 38 外孫子 良人 直軍 5 異父同生弟 良女 28	
8-2	舊族婢	高口釋	22	濟州	樂武	樂武	司候	納粟折衝 將軍	姜														母 姜召史 59 妹 20	借入 金召史 47
8-3	樂武馬隊	高口順	61	濟州	學生	良力副尉 兼司候	老職通政	樂武	梁	濟州	高	召史	召史	43	濟州	良力副尉	學生	學生	老職通政	周	興州	女 14 花姜良女 37 花姜女 3		
8-4	內隴寺叔 墓志防軍	趙口成	52	咸安	寺叔	書具	書具	-不知	-	-				良女	34	大元	書具	鐵鑪	留鄉別監	-不知-	-		德女良女 24 德孫子 鐵鑪小童 5 次德孫子 良人 2	戶主母:內隴寺婢

10-3	儒生	高口祥	46	濟州	品官	學生	留鄉別監	萊武	金	羅州	金	氏	45	金海	萊武	老職嘉善	老職嘉善	學生	成德	女 5 次女 3
10-4	前將官	吳口晉	41	海州	前將官	老職嘉善 同知中樞 府事	鄉吏	書員	高	濟州	金	召史	34	金海	前將官	鄉吏	記官	納粟通政	李	古阜 子 萊武 5 花妾 鄭召史 27
10-5	良人綠軍	柳口文	31	文化	儒生 (66)	學生	乘館校尉 龍宮衛副 司果	前城將	李	古阜	梁	氏	24	濟州	前城將	萊武	前將官	前將官	姜	晉州 奉母 李氏 68 子 良人 煙軍 3
11-1	前城將	吳口寶	39	海州	前將官	老職嘉善 同知中樞 府事	鄉吏	書員	高	濟州	池	召史	39	忠州	萊武	前將官	記官	良人	姜	晉州 子 萊武 전신불수명 11 次女 5 次子 萊武 3
11-2	內資寺奴 營舊漢	池口浩	53	忠州	前將官	記官	展力副尉 兼司僕留 鄉座首	寺奴	李	遼山										戶主母 李 內資寺婢 女 李 9
11-3	仁順府奴 書員	梁口全	63	濟州	萊武	留鄉別監	正兵	書員	金	金海	李	召史	37	貴日	萊武	宣務郎主 轉	通政	貢生	宋	汝溝 女 10 次女 3 戶主母 李 內資寺婢 妾母 李 奉常寺婢
11-4	內膳寺奴 防軍	金口東	62	金海	校奴	-不知	---	寺奴	張	長城		奉常寺婢	59	金寧	寺奴	寺奴	---	不知	---	前妻女 奉常寺婢 32 戶主母 內膳寺婢 妾母 奉常寺婢
11-5	奉常寺奴 直軍	姜口發	42	晉州	校奴	正兵	-不知	寺奴	高	濟州		內資寺婢	47	金寧	寺奴	寺奴	寺奴	李	羅州	戶主母 奉常寺婢 妾母 內資寺婢
12-1		白召史	53	水原	良人	良人	-不知	正兵	金	金海										女 良女 26 外孫子 良人 煙軍 5 外孫女 3 子 繼繼 19
12-2	仁順府奴 守城木手	姜口訓	56	晉州	監奴	萊武	留鄉座首	寺奴	金	金海		司膳寺婢	45	古阜	寺奴	寺奴	寺奴	寺奴	李	貴日 子 司膳寺奴 防軍 9 次女 司膳寺婢 7 前妻子 仁順府奴 官奴 20 戶主母 仁順府婢 妾母 司膳寺婢

12-3	장노 記官	李昌	55	古卓	記官	記官	記官	記官	納粟通政	林	益州	池	召史	20	忠州	納粟嘉善	老親嘉義 行龍營衛 副總軍	良人	書員	李	古卓	子 奉常寺奴 書員馬殿24 婦 高召史 26 孫子 貢生 4 次子 奉常寺奴 書員馬殿 19 婦 李召史 27 孫子 良人 兩脚不入病 4 次女 奉常寺婢 15 次子 奉常寺奴 小童 11 花妾妻 姜召史 41 花妾妻 召史23 花妾女 良女 5	戶主母장여인비 妻母奉常寺婢
12-4	鐵嶽 城丁	李蔚	18	古卓	宗親府奴 書員馬殿 (38)	記官 (53)	記官	記官	書員	金	金海	池	召史	20	忠州	萊武	前將官	記官	良人	姜	晉州	祖母 宗親府婢 63 母 金召史 42 弟 鐵嶽小童 10, 8 次妹 女 3 三寸 金召史 30 外傍 祖母 宗親府婢 54 異姓5寸 宗親府婢 31, 次孫女 良女 2 異姓5寸 宗親府奴 營軍器 書員 21 異姓 5寸 宗親府婢 15	
12-5	留鄉監首	池口浩	67	忠州	學生	學生	留鄉監首	學生	學生	金	光州	康	氏	66	咸陽	學生	學生	備知 訓鍊院	老親通政 大夫學生	女	咸陽	子 前風憲 42 次子 幼學20,次子 幼學27 孫子 幼學 13 子姜 高召史 42 庶孫子 萊武 4 庶孫女 2 妻 奉常寺婢 62	生父留鄉別監

13-1	前將官	池口必	58	忠州	前將官	記官	留鄉座首	記官	留鄉座首	記官	李	古卓	元	召史	60	原州	前將官	展力副尉 兼司儀	展力副尉 兼司儀	影繼主簿	夫	濟州	子 前將官 33 婦 姜召史 27		
13-2	奉常寺奴	吳口達	71	海州	私奴	鄉吏	鄉吏	鄉吏	鄉吏	鄉吏	-	--		典醫監牌	53	金寧	寺奴	--不知-	---	私奴	李	古卓	德女 典醫監牌 20 次女 典醫監牌 10 妹 奉常寺牌 50	戶主母:奉常寺牌 姜母:典醫監牌	
13-3	內資寺奴 納栗通政	金口富	70	金海	姜武上 老職通政	寺奴	老職通政	寺奴	老職通政	寺奴	宋	遼山		禮賓寺牌	36	務安	寺奴	老職通政	學生	記官	李	古卓	子 禮賓寺奴 小童 8 同族姪子內膳寺奴弓人64	戶主母:內資寺牌 姜母:禮賓寺牌	
13-4	鐵鑪	甫采	20	平壤	內膳寺奴 書員 (43)	寺奴	寺奴	寺奴	寺奴	寺奴	金	金海	吳	召史	17	海州	前城將	前將官	老職善善 大夫同知 中樞府事	前城將	元	原州	母 金召史 47 妹 召史 22 弟 姜武 12		
13-5	官牌	遼山	34	金海	姜武	納栗善善 大夫	記官	寺奴	寺奴	寺奴	姜	晉州											女 3 牌 35 奴代納官奴 9	戶主母:官牌	
14-1	官奴	姜口龍	23	晉州	留鄉別監	學生	留鄉別監	學生	留鄉別監	鄉吏	洪	南陽	金	召史	29	金海	良人	寺奴	寺奴	寺奴	高	濟州	母 官牌 45 弟 異父同生 官奴 21 妹 異父同生 官奴 17 弟 異父同生 官奴 10		
14-2	官奴	吳口得	14	軍威	留鄉座首	留鄉別監	留鄉座首	留鄉別監	留鄉座首	良人	金	金海											母 官牌 46 兄 異父同生 官奴 22 妹 異父同生 官牌 23 姪女 2, 妹 異父同生 官牌 19 姪女 2		
14-3	司宰監奴 匠人東五	姜萬	58	晉州	寺奴	私奴	--	私奴	--	不知--	-	--		奉常寺牌	52	金寧	寺奴	寺奴	不知---	不知---	--		戶主母:司宰監牌 姜母:奉常寺牌		
14-4	司膳寺奴 匠人	任口立	57	豐川	鄉吏	鄉吏	鄉吏	鄉吏	鄉吏	私奴	李	古卓		內資寺牌	45	濟州	寺奴	寺奴	寺奴	良人	康	咸德	子 內資寺奴 官廳職 4 姪子 內資寺奴 5	戶主母:司膳寺牌 姜母:內資寺牌	

14-5	司隸寺取 防軍	金□陸	32	金梅	奉常寺取 譯生 (67)	譯生	納粟通政	正兵	遼	原州	仁順府牌	31	古卓	書員	記官	記官	寺取	文	福城	女 仁順府牌 9 子 仁順府取 3 庶母 司宰監牌 56	戶主母 司隸寺牌 妻母 仁順府牌
15-1	良人 放砲手	趙□孝	34	咸安	記官 (62)	書員	書員	書員	禹	丹陽										母 良女 58 妹 召史 24 外姪女 9 次外姪女 2	
15-2	仁順府取 匠人東五	趙□福	62	咸安	寺取	正兵	正兵	鎮撫	姜	晉州	內資寺牌	61	濟州	寺取	正兵	正兵	寺取	文	福城	女 內資寺牌 20 子 內資寺取 匠人 12 保授來廣主罪人 43	戶主母 仁順府牌 妻母 內資寺牌
15-3	仁順府取 書員	姜□連	33	晉州	寺取	監取	樂武	納粟通政	金	金海	內資寺牌	33	咸安	寺取	寺取	正兵	正兵	高	濟州	女 內資寺牌 9 妹 仁順府牌 24	戶主母 仁順府牌 妻母 內資寺牌
15-4	奉常寺取 防軍	金□悅	19	金梅	書員	納粟通政	寺取	書員	高	濟州	仁順府牌	17	不知	官取	良人	不知	書員	金	金海		戶主母 奉常寺牌 妻母 仁順府牌 49
15-5	奉常寺牌	德甘	33	咸安	記官	正兵	正兵	記官	金	金海										母 奉常寺牌 68 子 奉常寺取 小童 6 女 奉常寺牌 2	
16-1	內資寺取 書員馬隊	麗道	30	金梅	書員	記官	納粟通政	官取	張	玉山	召史	22	晉州	留鄉別監	訓鍊院奉 事留鄉別 監	東館校尉 行禮營衛 副司果	學生	李	古卓	母 李召史 42 子 鐵線小童 4	戶主母 內資寺牌
16-2	前出身 御營總官	宋□現	37	竹山	前城將 (63)	納粟折衝 將軍欽知 中樞府事	納粟通政	納粟通政	李	古卓	氏	41	晉州	前千總	前把總	記官納粟 通政	書員	金	全州	母 李召史 57 子 樂武 57 次女 8 妹 召史 25 外姪女 5 次外姪女 2 保授定配爲奴罪人	

16-3	前將官	吳□漢	29	海州	前將官	老職嘉善 大夫同知 中樞府事	鄉吏	書員	高	濟州	金	召史	32	金海	錄撫	錄撫	鄉吏	納粟通政	李	古阜	前妻女 仁壽附牌 11 次女 仁壽附牌 5 次女 仁壽附牌 3	
16-4	內驢寺奴 書員馬殿	宋□盧	21	竹山	명길교위 行廳 ⁸ 衛 副司果 (41)	納粟嘉善 同知中樞 府事	納粟折衝 將軍食知 中樞府事	納粟通政	姜	晉州	姜	召史	27	晉州	前將官	前城將	姜武	前城將	金	金海	母 內驢寺牌 44 弟 內驢寺奴 小童 12 保校 充軍罪人 33	
16-5	禮賓寺奴 牧子	李□申	55	完山	記官	書員	納粟通政	正兵	金	金海		內驢寺牌	52	張城	寺奴	寺奴	私奴	正兵	林	盈州	前妻子 內驢寺奴 營使令 28 次女 禮賓寺奴 防軍 19 次子 禮賓寺奴 遮歸鎮書記 14 姪子 禮賓寺奴 匠人東五 19	戶主母禮賓寺牌 妻母內驢寺牌
17-1	姜武	崔□室	49	永山	訓導	訓導		老職嘉善 大夫	金	金海	吳	召史	35	海州	前將官	老職嘉善 大夫同知 中樞府事	鄉吏	書員	姜	晉州	母 姜召史 64 子 姜武 15 次女 15 次子 良人 軍器直 3 次女 2	
17-2	仁順附奴 直軍 城丁	金□番	31	?	書員	學生	學生	寺奴	魏	長興		司宰監牌	28	金寧	寺奴	記官	書員	寺奴	姜	晉州	母 仁順附牌 59 妻母 司宰監牌 59 女 司宰監牌 5 次女 司宰監牌 2 前妻子 良人 小童 11 次子 姜武 8	
17-3	屬買奴 奴	羅□星	54	羅州	良人	---	--	不知--	-		女	司驢寺牌	44	咸德	寺奴	正兵	嘉善	寺奴	秦	晉州	前妻女 良女 18	戶主母私牌 妻母司驢寺牌

17-4	司宰監牌	姜月义	46	晉州	書員	老職嘉善	書員	高	濟州											子 司宰監奴 匠人 12 弟 司宰監牌 44	戶主母: 司宰監牌
17-5	良女	柳母	46	文化	良人	記官	良人	桑	濟州												
18-1	仁順府奴 除番軍	李永	58	古阜	寺奴	---不知-	寺奴	尹	海南	李令	良女	32	古阜	寺奴	寺奴	寺奴	不知	文	福城	兄 仁順府奴 69 妻男 良人直軍 37	戶主母: 仁順府牌
18-2	內膳寺奴 直軍	金口興	39	金海	寺奴	正兵	官奴	高	濟州	(朴)世 令	宗親府牌	33	密陽	寺奴	寺奴	寺奴	不知	---	---	母 內膳寺牌 68 子 內膳寺奴 小童 8 子 內膳寺奴 3 妹 內膳寺牌 33 異姓4寸 內膳寺奴 33 異姓4寸 內膳寺奴 15	妻母內膳寺牌
18-3	前將官	高口星	51	濟州		老職通政	老職嘉善			夫	召史	32	濟州	書員				金	金海	母良女 69 女 12 孟山縣移配爲罪人 37	良女 69
18-4	官奴令舍	鄭伯	59	清州	老職嘉善	正兵	正兵	高	濟州	姜	召史	45	大元	書員	鐵兼	留鄉別監	---不知	---	---	兄 營假軍 72 妹 司宰監牌 48 妹 良女 42	借入 寺奴 69 保授爲奴罪人 57
18-5	良人 席匠 東五	文口得	52	福城	良人	正兵	正兵	崔	原州												
19-1	典醫監奴 直軍	李口芳	61	完山	老職嘉善 大夫	鄉吏	老職通政	金	金海	(李)	內膳寺牌	42	古阜	寺奴	寺奴	寺奴	書員	趙	咸安 案	子 內膳寺奴 知印 15 母 典醫監牌	戶主母典醫監牌 妻母內膳寺牌
19-2	典醫監奴 官奴	林口祥	21	寧州	書員	書員	書員	柳	文化											母 典醫監牌	
19-3	內膳寺奴 記官城丁	姜口宗	42	晉州	納粟通政	納粟通政	納粟通政			金	召史	32	金寧	義武	---	---	不知	---	---	母 梁召史 53 子 良人 都廳直 4 姪女 良女 8 姪女 良女 6	

19-4	內隴寺奴	高□寶	53	濟州	寺奴				私奴	寺奴	金	金寧	(安)	司隴寺牌	53	順興	良人	----	不知----	--	---	子 內隴寺奴 明月防軍13 妻弟 內隴寺牌 33	戶主母:內隴寺牌
19-5	司隴寺奴 牧音漢	趙□先	59	咸安	書員	書員	不知----	----		不知	--	宋	召史	48	遼山	業武	展力副尉	嘉善	高	濟州	弟 司隴寺奴 牧音漢 58	戶主母:司隴寺牌	
20-1	良人 明月防軍	金□昌	43	金海	仁順附奴 書員(67)	寺奴	寺奴	寺奴	寺奴	金	金海	(黃)	仁順附牌	42	忠州	寺奴	寺奴	-不知-	金	金海	母 良女 70 妻母 仁順附牌 63 女 仁順附牌 8 子 仁順附奴 煙軍		
20-2	良人 明月防軍	金□白	42	金海	寺奴	前將官	展力副尉	--不知-		---	---	李	良女	54	完山	寺奴	寺奴	不知----	---	---			
20-3	前將官	金□兩	42	金海	前將官	正兵	正兵	納粟通政	宋	密陽	成	召史	41	昌寧	良人	書員	書員	書員	河	子 營旗牌 15 次女 5 次女 3			
20-4	良人 明月防軍	高□已	48	濟州	書員		老職通政	校生	金	金海	高	召史	49	濟州	良人	---	不知----	---	---	女 9			
20-5	奉常寺奴 營水鐵匠	崔□云	45	永山	寺奴	寺奴	通政	通政	趙	南原	(李)	仁順附牌	46	完山	寺奴	通政	寺奴	金	金海		戶主母:奉常寺牌		
20-6	營旗牌	梁□維	64	濟州	象司僕		象司僕	業武	安	順興	宋	召史	48	遼山	業武	展力副尉		高	濟州				
20-7	內資寺奴 牧使令	金□德	56	金寧	寺奴	寺奴	寺奴	寺奴	崔	乾津	(高)	內資寺牌	48	濟州	寺奴	寺奴	不知----	---	---	女 內資寺牌 11	戶主母:內資寺牌		

2. 1786년(正祖 10) 中文里 戶籍中草

統 戶	戶 主				戶主 四組의 職役				妻				戶主妻 四組의 職役				家 口 構 成	備 考		
	職 役	姓 名	年	本貫	父	祖	曾祖	外祖職役	姓 本貫	姓(名)	呼稱	年	本貫	父	祖	曾祖			外祖 職役	姓 本貫
1-1	儒生	金□鏞	36	光州	學生	折衝將軍 食知中樞 附事	老驍通政	折衝將軍 食知中樞 附事	高	李	氏	34	古阜	學生	學生	鏞撫	學生	金	女5	
1-2	業武城丁	金□泰	35	光州	良人	學生	通訓大夫 行省司判 典籍	前將官	高	文	召史	35	福城	良人	展力副尉 兼司僕	正兵	留鄉別監	姜	女5	
1-3	奉常寺牧書員	金□采	32	金海	寺奴	寺奴	寺奴	寺奴	洪	趙	奉常寺婢	34	務安	寺奴	寺奴	寺奴	寺奴	金	寺奴 果直 7 寺奴 小童 3	
1-4	奉常寺牧書員馬隊	林□命	39	益州	寺奴	寺奴	納粟通政	寺奴	宋	姜	奉常寺婢	35	晉州	良人	良人	寺奴	寺奴	鄭	祖母 軍器寺婢 98 三寸 寺奴 74	戶主母 奉常寺婢
1-5	儒生 丁	高□至	50	濟州	業武	學生	學生	品官	吳	姜	氏	42	晉州	學生	學生	學生	兼司果	金	子 內資寺奴 小童 6 (母 內資寺婢 全義) 女 內資寺婢 5	
2-1	內膳寺牧子	李□永	46	完山	寺奴	寺奴	寺奴	書員	成	李	內資寺婢	33	古阜	寺奴	正兵	私奴	寺奴	金	子 寺奴 果直 3 女 內資寺婢 11	戶主母 內膳寺婢 妻母 內資寺婢
2-2	業武	元□賢	17	原州	前將官	展力副尉 兼司僕	展力副尉 兼司僕	業武	金										妹召史15 次妹女10	
2-3	禮賓寺牧書員東五	康□周	35	大元	書員	業武	留鄉別監	寺奴	金	安	典醫監婢	37	順興	業武	業武	業武	留鄉別監	玄	咸德	
2-4	儒生	玄□衡	40	咸德	學生	學生	宣務郎南 部主簿	展力副尉 兼司僕	高	金	氏	51	光州	學生	學生	老驍通政	前戶長 老驍通政	康	咸德	率女氏26 次女氏22 水子良人倅軍10
2-5	營旗婢	金□貴	58	金海	鏞撫	老驍通政	鏞撫	業武	高	德進	鄉女	43	古阜	學生	留鄉別監	老驍通政 留鄉庶首	記官	康	咸德	率女17 率子業武6

3-1	軍器寺奴 書員東五	金口大 31	金梅	書員	寺奴	寺奴	寺奴	寺奴	書員	朴	福城	張	召史	28	長興	展力副尉 兼司僕	展力副尉 兼司僕	秉節校尉 龍守衛 副司果	鎮撫	高	濟州	妹 軍器寺婢 27 外姪女 軍器寺婢 2	
3-2	軍武	康口福 32	咸梅	軍武	展力副尉 老職嘉義 大夫折衝 將軍兼知 中樞府事	展力副尉 奉訓郎司 僕寺判官	軍武	張	召史	28	長興	展力副尉 兼司僕	展力副尉 兼司僕	秉節校尉 龍守衛 副司果	鎮撫	高	濟州	母 姜召史55					
3-3	典醫監奴 攸子城丁	李口達 51	古卓	正兵	納栗通政	寺奴	納栗通政	林	盈州			奉常寺婢 57	57		書員						사은 內資寺奴 57		
3-4	儒生	吳口花 52	軍威	學生	學生	留都監首	學生	姜	晉州	趙	氏	南陽	學生	學生	展力副尉 兼司僕	老職通政	洪	南陽	率女氏27 外孫子良人2 率子良人烽軍12				
3-5	奉常寺奴 遞歸防軍	朴口必 49	福城	寺奴	寺奴	私奴	寺奴	姜	金寧		內膳寺婢 45	寺奴	寺奴	寺奴	寺奴		宋	沃濟	奉常寺婢 6				
4-1	奉常寺奴	鄭連 36	康津	寺奴	寺奴	寺奴	寺奴	洪	南陽														
4-2	內資寺奴 直軍 東五	姜口完 39	晉州	寺奴	寺奴	鎮撫	寺奴	文	福城	文	司膳寺婢 43	寺奴	寺奴	寺奴	私奴	私奴	李	古卓	子 司膳寺奴 小童 8 次子 司膳寺奴 果直 5				
4-3	內資寺奴 書員 東五	金口應 43	金梅	記官	記官	記官	鄉吏	林	豐川		奉常寺婢 41	寺奴	寺奴	寺奴	私奴	私奴	金	金寧	女 奉常寺婢 12 子 奉常寺奴 知印 18 女 奉常寺婢 6				
4-4	鎮撫	許見 44	陽川	前將官	學生	軍武	軍武	高	濟州	金	召史	35	金海	前將官	秉節校尉 龍守衛 副司果	老職 嘉 善大夫	洪	南陽	率女19 次女12 妻男 明月防軍3				
4-5	禮賓寺奴 書員	鄭口興 34	濟州	書員	私奴	正兵	寺奴	金	金梅	李	奉常寺婢 29	29	古卓	書員	書員	鎮撫	林	盈州	母 奉常寺婢 68 子 奉常寺奴 2				
5-1	內資寺婢	姜口梅 53	晉州	寺奴	寺奴	鎮撫	寺奴	文	文化											子 內資寺奴 牧畜漢 東 伍 32			

5-2	儒生	李□秀	38	古阜	儒生	儒生	儒生	學生	學生	寺奴	寺奴	學生	學生	金	光州	金	金	氏	45	金海	學生	學生	學生	學生	留鄉別監	姜	晉州	率女8	
5-3	奉常寺奴 攸子東五	金□澤	33	金海	寺奴	寺奴	寺奴	寺奴	洪	南陽		仁順府牌	33	順興	營旗牌	老職嘉善 大夫	書員	書員	金	金海	女金禧8								
5-4	前將官	元□恩	32	原州	前將官	展力副尉 兼司僕	展力副尉 兼司僕	正兵	林	盈州	林	召史	29	務安	前將官	納栗嘉善	納栗嘉善	納栗通政	姜	晉州	母林召史61 率妹女28 率子業武6 次子良人4								
5-5	儒生	吳□忠	33	軍威	學生 生父學生	留鄉別監	留鄉別監	留鄉別監	金	金寧	金	氏	27	光州	儒生	學生	中訓大 司道 寺副正	留鄉別監	金	羅州	母金氏60								
6-1	業武	宋□花	26	沃溝	業武 生父業武	學生	學生	學生	李	完山	姜	召史	32	晉州	業武	鎮撫	業武納栗 通政	學生	梁	濟州	率女?12 子業武6								
6-2	前將官	元□成	46	原州	前將官	展力副尉 兼司僕	展力副尉 兼司僕	正兵	林	盈州	羅	召史	42	羅州	鎮撫	納栗通政	納栗通政	老職嘉善	白	原州	率女15 率子業武14 次子良人3								
6-3	前將官	姜□老	35	晉州	業武 (61)	鎮撫	鎮撫	學生	梁	濟州	吳	氏	32	軍威	學生	留鄉別監	學生	學生	玄	咸德	母梁召史67 率子良人順軍5 率三寸妻金召史63(良 人)								
6-4	良人 防軍	崔□先	59	耽津	正兵	鄉吏	鄉吏	鄉吏	金	金海		良女	51	和同	良人	良人	良人	良人	宋	羅州									
6-5	內資寺牌	天今	57	金海	寺奴	寺奴	寺奴	寺奴	姜	晉州																			
7-1	奉常寺奴 攸子	高石	28	濟州	寺奴	寺奴	寺奴	寺奴	李	古阜											饒妹奉常寺婢47								
7-2	業武	康□興	10	咸德	業武	業武	業武	業武	安	順興											母良女45								

7-3	儒生	李□新	52	古阜	學生	展力副尉 兼司僕	留鄉別監	留鄉別監	金	光州	宋	氏	43	沃溝	葉武	學生	學生	學生	學生	李	完山	率女 氏 26 次女 氏 23 次女 14 次女 8 次女 3	
7-4	儒生	李□泰	34	古阜	儒生 (60)	學生	學生	學生	梁	濟州	姜	氏	38	晉州	留鄉別監	訓鍊院 奉事 留鄉別監	折衝將軍 行龍宮衛 副議軍	學生				母 梁氏 762 率女 12,次女 3, 弟 儒生 17,妹氏 20	
7-5	內資寺奴 牧子城丁	金□白	66	金海	寺奴	寺奴	正兵	正兵	朴	東萊 (奉)	奉常寺婢	氏	59	南陽	寺奴	寺奴	寺奴	寺奴	夫	濟州	子 奉常寺奴 牧子 27 婦 良女 22		
8-1	儒生	李□新	34	古阜	學生	學生	留鄉別監	學生	玄	咸德	金	氏	32	金寧	留鄉別監	留鄉別監	學生	學生	梁	濟州	兄 梁氏 35(留鄉別監) 妹氏 16		
8-2	儒生	李□朴	39	古阜	學生	學生	留鄉別監	學生	吳	軍威											率弟 儒生 26		
8-3	儒生	李□成	62	古阜	學生	留鄉別監	留鄉別監	留鄉別監	姜	大元	姜	氏	57	晉州	學生	留鄉別監	秉節校尉 龍宮衛 副司果	學生	玄	咸德	率女 27 子 儒生 26 婦 許氏 27(儒生)		
8-4	仁壽府奴 牙兵	申□同	58	平山	寺奴	寺奴	寺奴	寺奴	成	南原	丁德	奉常寺婢	60	羅州	寺奴	寺奴	寺奴	寺奴	金	金海	妹 奉常寺婢 10		
8-5	儒生	金□泰	34	金寧	學生	留鄉別監	學生	學生	李	古阜	姜	氏	42	晉州	學生	留鄉別監	學生	留鄉別監	吳	軍威	率弟 幼學 20 率弟妻 玄氏 27(咸德儒生)		
9-1	營假率	康□寶	60	咸德	葉武	納粟 通仕郎 副直長	學生	學生	文	福城	梁	召史	52	濟州	留鄉別監	學生 老職 嘉善大夫	秉節校尉 龍宮衛 副司果	良人	高	濟州	子 營假率 6 女 5 次子 葉武 3		
9-2	仁壽府奴 牧子城丁	朴□春	47	福城	寺奴	寺奴	寺奴	寺奴	金	金海		內資寺婢	42	羅州	舊員	舊員	舊員	舊員	金	金海	母 內資寺婢 71 子 內資寺奴 募軍 6 借入 司膳寺婢 57 借入女 司膳寺婢 2		
9-3	鄉貢進士	李□仁	28	古阜	儒生 (52)	學生	學生	學生	金	金寧	金	氏	34	金寧	學生	留鄉別監	學生	老職嘉善 大夫同知 中樞府事	高	濟州	繼母 金氏 33 羅州(葉武) 子 3		

[illegible]

12-5	良人	金秀□	17	金寧	學生	學生	學生	前將官	高	濟州	高	南陽	元	高	氏	23	濟州	前將官	業武	學生	前將官	池	忠州	母 高氏 57	
13-1	奉常寺奴 習馬	鄭春	38	康祥	寺奴	寺奴	寺奴	寺奴	洪	濟州	洪	南陽	元	高	內膳寺婢	39	原州	前將官	記官	展力副尉 象司僕	寺奴	李	古阜	女 內膳寺婢 5	
13-2	奉常寺奴 掌瑟錄書 記	吳□京	64	軍威	留鄉別監	留鄉別監	留鄉別監	書員	安	原州	安	順興	林	高	內膳寺婢	41	盈州	錄書	正兵	納栗通政	錄書	邊	原州	女 內膳寺婢 17 女 內膳寺婢 11 子 內膳寺奴 지인 6 內膳寺奴 3	
13-3	業武	高□彦	33	濟州	展力副尉 象司僕 秉節校尉 龍營衛 副司果	前將官	錄書	留鄉別監	李	古阜	吳	古阜	吳	高	召史	28	軍威	學生	留鄉別監	學生	學生	李	古阜	母 李召史 68 宰子 良人 2 宰庶祖母 金召史 49 (儒生) 宰庶叔女 13	□素의 칭호에서 氏를 召史로 敬正 하고 있음.
13-4	奉常寺奴 頭木	姜□白	76	晉州	良人	正兵	展力副尉 象司僕	私奴	夫	濟州	金	濟州	金	高	司膳寺婢	69	金海	老職通政	寺奴	官奴	寺奴	李	完山	女 司膳寺婢 21	
13-5	良女	金德	75	金海	寺奴	寺奴	寺奴	寺奴	許	陽川	良女 父(寺 奴)	陽川	良女 父(寺 奴)	高		32									
14-1	內資寺奴 書員馬殿	元□成	57	原州	記官	錄書	正兵	納栗通政	吳	軍威	李	軍威	李	高	軍器寺婢	59	古阜	錄書	錄書			金	金海	子 軍기寺奴 舊員東五 22 父 內膳寺婢 29 孫子 內膳寺奴 2 女 內膳寺婢 15	
14-2	舊假率	金□釋	58	麗州	業武	業武	學生	展力副尉	文	福城	金	福城	金	高	召史	61	金海	貢生	記官	記官	學生	高	濟州	宰女 召史 19 外三寸 文召史 58	
14-3	業武	池承□	38	忠州	良人	業武	納栗通政	正兵	康	咸德	高	咸德	高	高	召史	43	濟州	學生	學生	學生	納栗善 大夫	文	福城	祖母 文召史 91 宰子 良人 2 宰妾 奉常寺婢 33(寺奴)	

16-2	儒生 干牙兵	李□翊	45	古阜	學生	留鄉別監	學生	姜	晉州	金	氏	46	光州	學生	通訓大夫 司道寺副 正	留鄉座首	學生	高	濟州	子 儒生 12 婦 金氏 26 子 良人 8 女 2
16-3	儒生	李□成	17	古阜	展力副尉	留鄉座首	留鄉座首	洪	南陽	金	氏	28	羅州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吳	軍威	母 洪氏 62 母 吳氏 48 女 3
16-4	內資寺奴 牧子城丁	金□秀	48	金寧	寺奴	寺奴	寺奴	安	密陽											妹 內資寺婢 41 外姪女 內資寺婢 3 外5寸女 內資寺婢 25 外6寸 孫子 內資寺奴 果直 4
16-5	品官	玄□彬	66	咸德	學生	營職奉事	紫武	金	光州	金	氏	59	金寧	學生	學生	學生	展力副尉	文	福城	
17-1	記官	李□英	66	古阜	緇撫	緇撫	展力副尉 兼司僕	金	金海											子 鄉吏馬殿 28 婦 朴召史 33 子妾 池召史 32 水子 鄉吏 16 花妾子 內膳寺奴 小童 東 五 20 花妾婢 內資寺婢 38
17-2	內資寺婢	生德	57	耽津	私奴	寺奴	寺奴	金	金海											女 內資寺婢 27
17-3	儒生	金□元	39	光州	學生	品官	學生	高	濟州	許	氏	41	陽川	學生	訓鍊院奉 事行禮司 衛副司果	前將官	紫武	玄	咸德	子 良人奉軍 8 水子 良人 4 妹氏 59
17-4	軍器寺奴 書具東五	~20号	55	甘沔																
21-1	緇撫隨卒	池□大	27	忠州	紫武 57	紫武	納粟通政		咸德	高	召史	26	濟州	紫武	前將官	學生	紫武	梁	濟州	母 康召史 55 妹女 32, 水妹女 19 第 紫武 8 妹夫 紫武 城丁 29

21-2	良人 丁	城	梁口雄	52	濟州	司儀	司儀	司儀	司儀	司儀	金	金海	軍器寺牌	39	威德	良人	正兵	正兵	正兵	梁	濟州	母 軍器寺牌 57 女 軍器寺牌 10 兄 良人 56 弟 良人 50 妻弟 軍器寺牌 28
21-3	儒生		金口晉	50	光州	學生	司道寺副 正	通仕郎 台義 院有良	學生	金	金海	仁壽府牌	43			記官						子 仁壽府奴 小童 8 子 仁壽府奴 小童 4
21-4	校生		金口秋	28	金寧	業武 57	留鄉別監	留鄉庶音	業武	高	濟州	姜	氏	27	晉州	學生	學生	展力副 尉兼司儀	業武	高	濟州	母 高氏 49 妹氏 16 弟 良人 奉軍 5
21-5	軍器寺奴 書員		金口元	43	光州	學生	品官	學生	書員	林	福城	金	司宰監牌	47	金海	記官	記官	記官	姜	晉州	女 司宰監牌 8 女 司宰監牌 3 儀女 司宰監牌 25	
22-1	業武		康口應	9	咸德	錄撫	憲義大夫 折衝將軍 同知 中樞府事	奉訓 郎司 儀寺 外官	業武	梁	濟州											母 梁召史 43 借入 高召史 62
22-2	內資寺奴 書員馬殿		金口澤	46	金海	記官	記官 老驍 憲書	記官	記官	林	豐川		仁順府牌	49	盈州	記官	書員	書員	寺奴	宋	興陽	子 仁順府奴 2 花妾 奉常寺牌 39 女 奉常寺牌 11 子 奉常寺奴 8
22-3	業武		高口議	36	濟州	前將官	錄撫	錄撫老驍 憲書	錄撫	安	福城	金	召史	29	金海	品官	錄撫	錄撫				
22-4	奉常寺奴 崔漢		李口必	44	古阜	寺奴書員	記官	記官	寺奴	金	金海											
22-5	業武		高口順	17	濟州	展力副 尉兼司儀 57	業武	錄撫	展力副尉 兼司儀	玄	威德											繼母 姜召史 37 弟 業武 8 次妹 2 五寸 繼母 高召史 36

23-1	儒生	梁□進	45	濟州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李	古阜	姜	氏	33	晉州	儒生	鄉貢進士	學生	前將官	柳	文化	女氏 18 次女 5 子 2 同姓庶四寸妹 召史 56	
23-2	業武	金□海	54	金海	續繼	老職嘉善	老職通政	記官	學生	金	金海	高	召史	55	濟州	業武	業武	續繼	續繼	宋	沃溝	母 金召史 79 女 14, 次女 2 妾 仁順附婢 37	
23-3	儒生	高□遠	30	濟州	留鄉別監	學生	學生	留鄉監首	留鄉監首	姜	晉州	李	氏	25	古阜	儒生 世心 晝午 61	學生	展力副尉 兼 司僕	品官	吳	軍威	母 吳氏 70 女 2 妾 庶母 金召史 33	
23-4	儒生	李... 36	古阜	古阜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金	金海	玄	氏	30	咸德	學生	學生	學生	學生	金	光州	母 金氏 57	
23-5	展力副尉 兼 司僕	李□賢	59	古阜	老職嘉善	續繼	展力副尉 兼 司僕	貢生	貢生	康	咸德	丁	召史	51	羅州	續繼	嘉善大夫 折衝將軍 行龍營衛 副護軍	續繼	續繼	姜	晉州	女 召史 35 次子 續繼 34 婦 金召史 33 子 前將官 10 婦 金召史 21 次女 2	
24-1	軍器寺奴 書員	玄□衡	53	咸德	留鄉別監	留鄉別監	宣務郎中 副主簿	續繼	續繼	李	古阜		內膳寺婢	51								前妾 司膳寺婢 27 外孫女 內膳寺婢 3	
24-2	內資寺奴 事彩續弓 人	夫山	70	濟州	寺奴	寺奴	寺奴	寺奴	寺奴	黃	黃州	李	妾 軍器 寺婢	58	古阜	書員						女 軍器寺婢 33	
24-3	창예인노 書員 東五	李□遠	34	古阜	書員 (71)	書員	續繼	私奴	私奴	柳	文化	康	內膳寺婢	29	咸德	書員	書員	記官	書員	康	信川	子 內膳寺奴 2 子 內膳寺婢 74	
24-4	留鄉別監	金□驛	45	羅州	留鄉別監	學生	鄉貢進士	贈職宣務 郎長水道 察訪	鄉貢進士	高	濟州											妾 玄召史 52 子 業武 12, 婦 金氏 22 女 8, 次子 良人 3 兄 妾 姜氏 61 姪子 良人 10, 兄 妾 梁召史 47	

24-5	忠翊衛	安□朱	40	順興	寺奴 74	寺奴	寺奴	寺奴	寺奴	洪	南陽		軍器 寺牌	32	濟州	葉武	前出身	葉武	寺奴	許	陽川	母 內膳寺牌 57 女 軍器寺牌 5 次女 軍器寺牌 2 同姓 三寸 內資寺牌 54	葉母 軍器寺牌 57
25-1	校生	高□應	25	濟州	展力副尉 兼司儀兼 節校尉 龍守衛 副司果	前將官	鎮撫	留鄉別監	李	古阜	姜	氏	31	晉州	儒生	留鄉別監	留鄉座首	權知訓鍊 院 奉事	許	陽川	女 2		
25-2	內膳寺奴 營番漢	李□春	33	原州	營旗牌 (63)	書員	通政大夫	老職嘉善 大夫(92)	朴	密陽											外祖母 內資寺牌 88 弟 內膳寺奴 營番漢 26 弟妻 仁壽府牌 31 姪女 仁壽府牌 5		
25-3	儒生	金成□	30	金寧	學生	留鄉座首	學生	學生	李	古阜	姜	氏	33	晉州	學生	學生 老職嘉善 及知中樞 府事	學生	留鄉座首	高	濟州	女 5 子 良人 3		
25-4	良人 事務鎮訓 導	許成	48	陽川	葉武	學生	學生	葉武	李	古阜			內膳寺牌	34	濟州	前將官	鎮撫	書員	鄭	濟州	女 內膳寺牌 13 次女 內膳寺牌 5 姪兄 內膳寺牌 49		
25-5	內資寺奴 牧子城丁	金□日	58	金海	寺奴	寺奴	寺奴	寺奴					內資寺牌	51			寺奴	寺奴	高	濟州	前妻 良女 19 女 內資寺牌 5 姪男 內資寺奴 58		
26-1	儒生	李□宏	29	古阜	學生	學生	學生	留鄉座首	吳	軍威	池	氏	32	忠州	留鄉座首	學生	學生	學生	康	咸德	子 良人 4		
26-2	奉常寺奴 使 令東五	高□宅	41	濟州	寺奴	寺奴	寺奴	寺奴	金	金海	李	仁順府牌	53	古阜	書員	鎮撫	鎮撫	寺奴	朴	福城			
26-3	校生	高□應	39	濟州	前將官 63	前將官	鎮撫	學生	鄭	濟州	金	氏	40	金寧	學生	留鄉別監	留鄉座首	老職通政			女 2		
26-4	營旗牌	金□彥	39	金海	前將官	鎮撫	納粟影職 主簿	葉武	柳	文化			良女	30	濟州	書員	寺奴	寺奴	金	金寧	女 10 次女 5		

[illegible]

28-4	校生	姜□林	39	晉州	前出身	?	前城將	學生	白	太原	宋	氏	39	沃溝	葉武	學生	學生	?	學生	李	完山	子 校生 9 子 校生 5
28-5	儒生	梁國□	43	濟州	留鄉別監	留鄉別監	鄉貢進士 都訓長	展力副尉 兼司僕	邊	原州	李	氏	43	古卓	學生	學生	留鄉別監	留鄉別監	玄	咸德		
29-1	校生	安□日	21	順興	學生	學生	學生	前將官	金	金海	金	召史	34	金海	前將官	前將官	訓導院 奉事	葉武	文	福城	母 金氏 48 妻3寸 金召史 73	
29-2	明月嶺 假率	許昌	19	陽川	學生	學生	學生	書員	李	完山	玄	召史	24	咸德	葉武	?	老驛嘉善 行龍營衛 副護軍	?	?	?		
29-3		金召史	33	金海	前將官	續據	納粟影職 主簿	葉武	柳	文化											子 良人 7	
29-4	通德郎	邊□佐	74	原州	留鄉別監	前訓長	學生	學生	高	濟州	玄	氏	74	咸德	學生	學生	學生	留鄉別監	姜	晉州	婦 吳氏 43 孫子 幼學 13 孫子 8	
29-5	西歸防軍 良人	金□坤	49	光州	學生	學生	留鄉別監	學生	高	濟州	康	奉常寺婢	39	咸德	正兵	葉武	學生	學生	金	金海	子 奉常寺奴 栗直 5 妻母 奉常寺婢	
30-1	幼學	金□國	27	金寧	幼學	留鄉座首 行山馬 監牧	通政折衝 將軍行龍 營衛副護 軍山馬監 牧	學生	吳	軍威	李	氏	37	古卓	儒生	儒生	學生	學生	金	光州	女 10 子 良人 3	
30-2	西歸嶺 訓導	韓□仁	43	東萊	影職	葉武	訓導院 奉事	?	?	?	梁	仁寧府婢	24	濟州	書員	?	寺奴	寺奴	申	坪山	妻母 仁順府婢 48 女 仁順府婢 8 女 □同寺奴 3	
30-3	內資寺奴 營書員	宋□明	55	興陽	寺奴	通政	寺奴	寺奴	李	完山	高	仁壽府婢	54	濟州	寺奴	寺奴	不知	寺奴				
304	儒生	李□春	27	古卓	?	?	學生	學生	金	金海	玄	氏	30	咸德	學生	留鄉別監	留鄉別監	學生	金	金海	母 金氏 57 女 2	

[illegible]

3. 1789년(正祖 13) 自丹里 戶籍中草

統 戶	戶 主				戶主 四祖의 職役				妻				戶主妻 四祖의 職役				家 口 構 成	備 考
	職 役	姓	名	年 本貫	父	祖	曾祖	外祖職役	姓 本貫	姓(名)	呼稱	年 本貫	父	祖	曾祖	外祖 職役 姓 本貫		
1-1	仁順附叔 果直	姜	口点	39 晉州	書員	葉武	留都座首	寺叔	金	金海	夫德	37 昌原	寺叔	不知	不知	不知	女 孝常寺婢 姜德 15 次女 孝常寺婢 順良 12	母 仁順附婢 永德 妻母 孝常寺婢
1-2	掌院寺叔 書員	鄭	口兩	46 東來	正兵 (74)	老職通政	老職	通政 老職	汝	忠州	永每	49 濟州	寺叔	不知	不知	不知	子 內藏寺叔 營水銃匹 22 良女 10 - 母 良人 林 女 女 仁順附婢 6, 次子 內藏寺叔 遞歸防軍 4 妾 仁壽附婢 中德 42 饑子 內藏寺叔 外童 12 饑女 內藏寺叔 外童 12	母 掌院寺婢 叔永 妻母 內藏寺婢 金 尙
1-3	典醫監叔 山馬牧子	李	口元	32 全州	書員	書員	記官	記官	林	豐州	順每	33	葉武	嘉善 大夫	老職通政	不知	母 典醫監婢 成月 妻母 軍器寺婢 順玉	
1-4	內資寺叔 營釜杆	任	口京	46 南陽	假吏	寺叔	寺叔	寺叔	梁	濟州	春冊	46 陽州	寺叔	良人	寺叔	金海	母 內資寺婢 取眞	
1-5	內藏寺叔 牧子	高	口宅	44 濟州	寺叔	寺叔	正兵	寺叔	姜	晉州	成火	40 晉州	寺叔	寺叔	寺叔	李	子 內資寺叔 牧子 17 次子 內資寺叔 直軍 13 女 內資寺婢 高德 9 次女 內資寺婢 高今 2 妹 內資寺婢 23 次妹 內資寺婢 21 外侄女 內資寺叔 2	母 內藏寺婢 妻母 內資寺婢

2-1	司隴寺叔 叔子	成□巳	52	昌寧	寺叔	寺叔	寺叔	納粟 通政	寺叔	良人	寺叔	宋	懷德	永德	司宰 監婢	34	濟州	寺叔	不知	不知	不知	不知	不知	女同寺婢 11 次女同寺婢 5 子同寺叔 2	母 司隴寺婢 姜母 同寺婢
2-2	內隴寺叔 營水鐵匠	李憲	41	古阜	良人 (70)	私叔	私叔	私叔	寺叔	金	寺叔	金	金海										女內資寺婢 5 妹內資寺婢 31 外姪子內資寺叔 遼陽防軍 8 次姪女內資寺婢 得义 3 " " 金德 2 弟內資寺叔 水鐵匠 24 次妹內資寺婢 莫义 20 借入內資寺婢 85		
2-3	內資寺叔	朴□石	52	密陽	寺叔	寺叔	寺叔	寺叔	良人	金	金海	順良	金海	金海	內資寺婢	38	晉州	寺叔	不知	不知	寺叔	金	金海 " " 14 " " 14 " " 5 " " 2	母 內資寺婢 姜母 內資寺婢	
2-4	內隴寺叔 老汗	張萬	73	長城	寺叔	寺叔	寺叔	寺叔	寺叔	金	金寧	已义													
2-5	業武	姜□白	51	晉州	前將官	業武	老職通政	留鄉別監	留鄉別監	吳	軍威	文	文	?	?	46	福成	業武	學生	老職通政 留鄉別監	東節校尉 龍營衛 副司果	金	子業武 14 姜聚召史 35 子業武 7		
3-1	前將官	姜□發	54	晉州	前將官	業武	學生老職 通政	留鄉別監	留鄉別監	吳	軍威	安	安	?	?	46	順興	學生	學生	留鄉 別監	學生	池	女? 31 子業武 16 次子 8, 次子 6 次子 3		
3-2	前城將	林□周	39	盈州	養父： 嘉善 生父： 業武	通政	通政	通政	良人	姜	晉州	金	金海	召史	38	金海	執練官	空	正兵	留鄉別監	姜	晉州	女年 9 次女 2		

[illegible]

7-3	內資寺奴 牙兵	朴口寶	55	密陽	寺奴	寺奴	寺奴	寺奴	寺奴	金	金學	李	召史	47	古阜	正兵	納粟通政	學生	寺奴	高	濟州	子 假率 13 次女 11, 次子 營旗牌 9, 借入 外 內需司奴 21, " 姪女 內資寺牌 14 儀 外三寸 內資寺牌 62	母 同寺牌
7-4	前將官	金口泰	39	金海	前司儀	通政	通政	通政	通政	金	光州		召史	60								妾 軍器寺牌 仁父 30 妾兄 " 32 姪子 營旗牌 11	
7-5		安召史	70	順興	通政	通政	老職通政	通政	通政	高	濟州											舅母 內資寺牌 永禧 88	
8-1	前把總	李口完	69	完山	通政	老職通政	老職通政	老職通政	老職通政	金	金海	金	召史	69	金海	通政	通政	老職通政	通政	慎	居昌	子 展力副尉兼 司僕 35 婦 宋召史 35 (兼司僕) 孫女 13, 次孫女 3, 次子 展力副尉兼 司僕 31 婦 金召史(業武) 31, 孫女 9 雇工 內資寺奴 牙兵 金已英(早寺奴) 67	
8-2	內膳寺奴 牧子	崔口寶	51	竈山	寺奴	正兵	正兵	不知	不知	不 知	洪禧	洪禧	孝常寺牌	38	南陽	寺奴	不知	不知	寺奴	崔	竈山	妻男 同寺奴 權廳書員 21	母 同寺牌 妻母 同寺牌
8-3	前將官	鄭口宅	49	東萊																		僮子 內資寺奴 營書員 22 僮女 同寺牌 19 (書員)	母 內資寺牌
8-4	內資寺奴 營紙匠	文口夫	42	南平	書員	展力副尉	通政	通政	通政	宋	懷德	次永	仁順府牌	31	金海	寺奴	寺奴	寺奴	姜	晉州	子 同寺奴 果直 8 女 同寺牌 4 女 " 2	母 內資寺牌 妻母 同寺牌	
8-5	營鄉吏	鄭口萬	63	東萊	業武	老職通政	老職通政	通政	通政	徐	大丘											妹 良女 38 妻兄 良女 63 (寺奴) 借入 孝常寺奴 營習馬 39	
9-1	出身	宋口完	40	懷德	展力 副尉兼 司儀	嘉善大夫	老職通政 大夫	老職通政	老職通政	車	昌原	李	氏	42	完山	業武	嘉善大夫	老職通政 大夫	嘉善大夫	朴	武安	母 召史 68 子 業武 19, 次子 業武 17	

4. 1795年(正祖 19) 今勿路里 戶籍中草

統 戶	戶 主				戶主 四祖의 職役				妻				戶主妻 四祖의 職役				家 口 構 成	備 考
	職役	姓	名	年 本貫	父	祖	曾祖	外祖職役 姓 本貫	姓(名)	呼稱	年 本貫	父	祖	曾祖	外祖 職役 姓 本貫			
1-1	仁順府奴 知印	姜□周	22	晉州	寺奴	書員	嘉善大夫	鐵旗	姜	晉州						母:仁壽府婢 52 弟:仁壽府奴 지인 17 妹:仁壽府婢 11		
1-2	奉常寺奴 匠人	黃得	24	密陽	寺奴	私奴	老職通政	老職通政	張	長城	20	寺奴	---	不知---	---	母:同寺婢 45 妹 同寺婢 13 妹 同寺婢 16 女 同寺婢 2	妻母:同寺婢	
1-3	?(달라)																	
1-4	仁壽府奴	張□碧	17	長城	寺奴	私奴	私奴	寺奴	?	平山						母:同寺婢 50 弟:仁壽府奴 15 妹:仁壽府婢 8 異母同生 妹奉常寺婢 29		
1-5	假率馬殿	柳□非	50	文化	前將官	秉節校尉 行龍營衛 副司果	展力副尉 兼司農	業武	金	金海	48	不知	開良	通德郎		女 典醫監婢 18 子 典醫監奴 知? 13	妻母:典醫監婢	
2-1	前將官	姜□齊	16	晉州	業武	鐵旗	鐵旗	鎭栗折衝 將軍	金	金海								
2-2	司宰監奴 習馬 東五	金□順	50	金海	寺奴	寺奴	不知	寺奴	文	福城	38	寺奴	不知	私奴	?	子 司膳寺奴 14 女 司膳寺婢 8 妹 司膳寺婢 41 外姪女 司膳寺婢 13 外姪女 司膳寺婢 16	戶主母:司宰監婢 妻母:司膳寺婢	
2-3	校奴	?	53	麗州	寺奴	寺奴	私奴	私奴	洪	南陽	51	寺奴	---	不知---	---		母:校婢 妻母 仁順府婢	

2-4	前城將	梁□齊	33	濟州	前將官	學生	老職通政	構知 訓院院奉 事	姜	晉州	金	氏	31	金梅	?	展力副尉	學生	學生	學生	金	光州	母 姜氏 47 妻 金氏 31		
2-5	校奴	李□彙	16	不知	官奴	不知	不知	鎮撫	李	完山											母 校婢 李每 39 妹 校婢 李德 13			
3-1	校奴	李成	39	完山	鎮撫	良人	不知	寺奴	吳	海州		奉常寺婢	41	不知	寺奴	良人	私奴	私奴	姜	大元	母 校婢 70 子 奉常寺奴 募軍 15 子 奉常寺奴 募軍 13 子 奉常寺奴 募軍 7 女 奉常寺婢 5, 次女 奉常 寺婢 2	妻母 奉常寺婢		
3-2	仁壽府奴 紙匠	姜□寶	57	大元	書具	寺奴	寺奴	嘉善大夫	姜	晉州		仁順府婢	42	平山	寺奴	官奴	寺奴	私奴	任	羅州	子 同寺婢 16 女 同寺婢 11	母 仁壽府婢 妻母 仁順府婢		
3-3	幼學	池□彩	48	忠州	留鄉別監	留鄉別監	留鄉別監	學生	南	義寧	林	氏	50	羅州	學生	展力副尉 兼司僕 縣通政	宣務郎中 部主簿	陽川	許	陽川	子 幼學 22 女 氏 20 次女 17 次子 7.5 次女 4			
3-4	內資寺奴 譯生	林□葵	64	豐川	寺奴	寺奴	納栗通政	忠翊衛	朴	密陽		仁順府婢	70	福城	納栗通政	納栗通政	嘉善	納栗通政	高	濟州	子 仁順府奴 匠人 32 次女 同寺婢 22 外姪妹 1 外姪良女 27 借入 良人 62 借入 內膳寺婢 48	母 內資寺婢 妻母 仁順府婢		
3-5	內膳寺奴 營使令	姜□用	62	晉州	內膳寺奴 納栗通政	老職通政	寺奴	寺奴	金	金海		內資寺婢	52	長城	寺奴	寺奴	寺奴	鄉吏	吳	海州	子 同寺奴 匠人 14 子 同寺奴 知印 7 次女 同寺婢 5 生 同寺婢 4 生 同寺婢 2	妻母 同寺婢		

[illegible]

6-1	禮賢寺叔 募軍	金口必	19	金海	書員 (61)	寺叔	老韓嘉善	萊武	林	羅州	金	召史	17	金海	前將官	納粟通政	納粟通政	老韓通政	文	福城	兄嫂 李召史 22 姪女 8	戶主母 禮賢寺婢 56
6-2		柳口仁	23	文化	忠靖衛	秉節校尉 龍口衛副 司果	展力副尉 兼司僕	老韓通政	金	金海	金	召史	55	福城	老韓嘉善 折衝將軍 中樞府事 85	納粟通政	納粟通政	忠靖衛	朴	密陽	女 召史 20 次女 17 次女 16	
6-3	前將官	李口達	61	遼山	展力副尉 兼司僕	記官	書員	萊武	高	濟州	文	召史										
6-4	前城將	金口詰	34	金海	前城將 武科初試	展力副尉 兼司僕	萊武	前城將	李	遼山	李	氏	31	古阜	通德郎	學生	學生	學生	柳	文化	母 李氏 52 女 2 次女 8 生次弟 平役軍官 4	
6-5	假率	金口憲	13	金海	前執事	納粟通政	納粟通政	折衝將軍	文	福城											母 文召史 46 外嫡祖母 孝營寺婢 85 弟 平役軍 4	
7-1	幼學	李口林	42	古阜	幼學 74	留鄭別監	留鄭別監	學生	姜	晉州	姜	氏	39	晉州	學生	留鄭別監	留鄭別監	留鄭別監	李	古阜	子 幼學 14 女 12	
7-2	良人菴漢	姜口現	26	晉州	前將官	鹹鐵	納粟通政	鹹鐵	李	古阜	金	召史	34	金海	前將官	折衝將軍	正兵	不知	---	女 11 次女 2 次妹 19		
7-3	假率	林口彦	15	羅州	前將官	萊武	納粟通政	前將官	姜	晉州											母 姜召史 41 妹 11 生弟 2 從庶祖母 內膳寺婢 52 從祖母 林召史 71	
7-4	前城將	姜口白	36	晉州	前將官(6 1)	權知訓鍊 院奉事	納粟察訪	前將官	金	金海	李	氏	33	古阜	學生	留鄭別監	留鄭別監	學生	文	福城	祖母 林氏 82 母 金氏 61 女 13,	

9-4	儒生	文□采	47	南平	老縣通政 學生	學生	留鄉別監	秉節校尉 龍營衛司 果	金	金梅	許	氏	45	陽川	前把總	禮知訓導 院奉事	宣務郎中 部主簿	老縣通政 折衝將軍 致知中樞 府事	林	羅州	女 16 次女 4	
9-5	記官	李□統	34	遼山	展力副尉 兼司農	記官	書員	貢生	康	咸德										女 4 儀母 金召史 61		
10-1	校奴	姜□昌	37	大元	寺奴	----	不知	私奴	金	金梅										子 內膳寺奴 蔡軍 16 儀女 內膳寺婢 8		
10-2	內膳寺奴 紙匠	李□友	48	遼山	鐵鑪	記官	書員	寺奴	林	羅州	柳	召史	44								戶主母 內膳寺婢	
10-3	展力副尉 兼司農	金□康	49	金海	秉節校尉 行龍營衛 司果	秉節校尉 行龍營衛 司果	展力副尉	學生	梁	濟州										子 燧軍 18 花妾 內膳寺婢 39		
10-4	內資寺奴 牙兵	金□永	49	金海	寺奴	寺奴	寺奴	寺奴	洪	大元											戶主母 內資寺婢	
10-5	良人	池□興	11	忠州	幼學	學生	留鄉別監	學生	高	濟州										母 高氏 40 弟 良人 5		
11-1	記官	趙永□	44	咸安	記官	書員	正兵	書員	姜	晉州		內需司婢	31	金梅	記官	書員	業武	正兵	姜	晉州	女 內需司婢 2 前妻女 典醫監婢 18 借入 仁壽府婢 41	妻母同寺婢
11-2	前將官	池□昭	42	忠州	業武	前將官	記官	良人	姜	晉州	姜	召史	35	晉州	鐵鑪	鐵鑪	鐵鑪	良人	洪	南陽	子 毅率 19 次女 9 次女 8 次女 4	
11-3	儒生	吳□三	16	軍威	學生	學生	留鄉別監	都訓長	金	金梅											母 儀 金氏 46 弟 儒生 14 兄 儀 李氏 35 姪子 平役軍官 4	
11-4	儒生	李□林	36	古阜	儒生	留鄉別監	留鄉別監	學生	姜	晉州	梁	氏	34	濟州	學生	學生	老縣通政 同知中樞	留鄉別監	李	古阜	女 11 生次女 4	

13-5	內資寺牌	次令	35	金梅	寺奴	寺奴	正兵	--不知-	--	---										女 內資寺牌 3		
14-1	內贈寺奴 營使令	姜□濟	42	晉州	寺奴	納粟通政	老職通政	--不知-	--	---										女 內資寺牌 2		
14-2		池氏	42	忠州	學生	留鄉庶首	留鄉庶首	學生	玄	咸嘉										子 內贈寺奴 營使令 13		
																				次子 內贈寺奴 3		
																				子 良人 7		

여 백

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Status Structure Of Cheju-Do
Residents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By The Analysis Of Hojukchungcho Of Daejung-Hyun-

Kim, dong-jun

Dep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Advisor; Prop. Cha, Moon-Sup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show the reality of the social status change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specific area of Cheju-Do(濟州島). To do so, this dissertation makes use of Hojukchungcho of (戶籍中草) Daejung-Hyun(大靜縣), Cheju-Do, as a basic material. The analysis of Hojuk(戶籍) in this dissertation shows two characteristic aspects. First, according to Jikyeok(職役) registered in Hojuk, the social status of residents in Daejung-Hyun is divided into Yangban(兩班), Chungin(中人), Sangmin(常民) and Nobi(奴婢), and the change process of the social status of people who belong to each social status is to be examined. Second, we are to understand the concrete aspects of the social status change through the social status change of people who belong to Hyangri(鄉吏) and Taphan(沓漢) group.

The whole social status structure of Cheju area is to be examined

from the point of four time periods such as the year of 1786(Period I), the early part and late part of the 19th century(Period II and III), the year of 1898(Period IV). Yangbanho(兩班戶) was 17.6% in Period I, 24.8% in Period II, 31.5% in Period III and 75.1% in Period IV. Chunginho(中人戶) was 21.8% in Period I, 38.1% in Period II, 43.8% in Period III and 13.4% in Period IV. Sangminho(常民戶) was 15.4% in Period I, 43.2% in 1807 of Period II(the average of Sangminho was 33.4% in Period II), 23.4% in Period III and 11.0% in Period IV. Finally, Nobiho(奴婢戶) was 45.2% in Period I, 3.5% in Period II, 1.3% in Period III and 0.4% in Period IV.

Let us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ocial status in each period. In 1786 Kongnobi(公奴婢) was about 50% of residents, Yangban and Chungin about 40%, but the number of Sangmin was absolutely short. We can point out the relative difficulty of the transition between the social status a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is period. But this characteristics came to change entirely as the result of the release of Kongnobi in 1801.

In other words, the release of Kongnobi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collapse of the social status system in Cheju-Do. Yangban and Chungin continued to increase during Period II and III since 1801, and we can suspect that this phenomenon resulted from the rising to the upper social status from the lower social status. In 1807(Period II) Sangmin also multiplied because a great number of Kongnobi rose to the common people, but Sangmin began to decrease gradually afterwards because Sangmin sought to rise to another upper social status. All of Kongnobi except Kannobi(官奴婢) and Kyonobi(校奴婢)

became the common people by the release of Kongnobi in 1801 and Nobi constituted 4.4% of all residents in Period II and about 1.2% of all residents in Period III. Period IV after Kabogaehyuk shows the characteristics that the rapid increase of Yangban resulted in the relative decrease of Chungin and Sangmin and that Nobi continued to remain in spite of the abolition of Nobi system in 1894.

The social status system in Cheju-Do, when compared with that of other areas, shows the relative difficulty of the transition between the social status until the end of the 18th century but shows a great deal of the unsettledness since 1801. Toward the late part of the 19th century this unsettledness of the social status system in Cheju-Do accelerates further than in other areas, and this proves the dynamic power of the rural community of Cheju-Do at that time.

In the end of the 18th century Kongnobi, who formed about 50% of the Cheju-Do residents, had both the last name and the family origin, and most of them shared even a role of the common people. When we look into the marriage aspects of Kongnobi, we can know the fact that while 85% of Kongnobi got married within the same class, only 15% of Kongnobi got married to the people of other social status. This indicates a great difficulty of the transition to other social status from Kongnobi. Kokong(雇工) and Sanobi(私奴婢), who Hyangrichung (鄉吏層) and Yangban almost possessed, were of small number. As the time passed, the number of women in Kokong increased considerably, a lot of Chungin as well as the collapsed farmers were included in the social status of Kokong and the age of Kokong was mainly in the prime of life.

On the other hand, as the social status system showed a great deal of unsettledness in Cheju-Do in the 19th century, Hyanggricheung sought to rise to the social status of Yangban after they got the temporary Jikyeok(職役) of Chunchong(千摠) and Sungjang(城將) with the basis of their wealth. The social status of Taphan, who had charge of one of the most difficult six roles in Cheju-Do, was almost Kongnobi in the late part of the 18th century. While the unsettledness of the social status system since 1801 enabled them to rise to the upper class, some of them remained the Jikyeok of Taphan(沓漢) which was succeeded to their descendents.

As we have seen so far, the social status system in Cheju-Do shows the relative difficulty of the transition between the social status before 1801 but shows a great deal of unsettledness and an indication of collapse by the release of Kongnobi in 1801. As a result, the lower class continued to rise to the upper class, and the rural community of Cheju-Do in the 19th century, when compared with other areas, was breaking down the social status system rapidly during the short time. This unsettledness of the social status system could exert act as the social background on the common people's big and small uprings which took out in Cheju-Do in the late part of the 19th century.